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 유 · 권 채 리



입법평가 연구 17-15-④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 유 · 권 채 리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 Refugee Act

연구책임자 : 최 유(연구위원)
Choi, You
권채리(부연구위원)
Kwon, Cherry

2017.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 연구사업의 하나로서 2012년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실시함
- 한국은 유럽과 같은 대규모 난민유입사태에 직면해 있지는 않음. 그렇지만 인권 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난민법」을 제정함
- 「난민법」은 과거에 난민을 규정하던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독립한 단행법으로 규정함. 아시아 최초로 단행법으로서 「난민법」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국가로서 위상을 높였다고 발표함
-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을 목적으로 함.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은 난민인정절차와 처우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처우의 수준은 국내법이 정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에 관하여 몇 개 조문에 불과하였지만, 제정된 「난민법」은 난민인정절차와 처우에 관하여 총47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난민법」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법률임. 「난민법」은 제정 당시 및 현재까지 법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법무부 사이에 쟁점사항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있음

- 또한 최근 세계적인 난민문제로 인하여 난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새롭게 제정된 「난민법」이 국제규범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적정한 난민 인정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프랑스에서 실시된 프랑스 난민법에 대한 사전입법평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프랑스 난민법에 대한 사전입법평가는 프랑스 난민법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평가를 하여 보다 효과적인 난민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난민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여겨짐
- 「난민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법은 아니라는 점이 특징임. 즉, 「난민법」 제정은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난민 관련 인권단체의 요청 등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제정됨. 이 보고서는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및 「난민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난민법」에 대한 국민의 입법적 공감대를 확인하고자 함
- 「난민법」 규정에 대한 국회 개정안 및 인권시민단체와 법학계의 규범적 분석 및 대안을 정리함. 이러한 분석과 대안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확인하여 입법 자료를 마련하고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난민법」과 국회 개정안

-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 공포번호 11298로서 제정·공포됨

- 「난민법」 제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난민법」 제정은 난민의 인권보호 및 처우보장 그리고 유럽연합 등 단독법전화하는 국제적인 추세,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난민법」 제정 이후 국회에는 13개의 개정안이 상정됨 이러한 개정안들의 내용은 난민인정 절차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과 현재의 「난민법」에 빠져 있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제도 마련 그리고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등임

▶ 난민현황과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관련 통계의 변화

- 2011년 처음으로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넘는 이래로 2012년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남
- 그에 비해서 난민인정은 2014년 94명, 2015년 105명, 2016년 98명에 그치고 있음.
그 중 일부는 이미 난민인정을 받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가족결합 난민임. 따라서 실제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수는 2012년 25명, 2013년 5명, 2014년 18명, 2015년 13명, 2016년 17명에 불과함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난민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
- 그와 비교하여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2014년 539명, 2015년 194명, 2016년 246명으로 난민인정자보다 높은 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는 시리아 난민 등 전쟁난민들의 급증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국내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2016년 한해 전체 난민 신청자 7,542건 중에 2,974명이 있었음. 이를 두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남용적 신청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난민요건의 발생으로 귀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필요함
- 동시에 난민신청기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됨
- 난민처우와 관련해서 인도적체류자는 처우보장을 받지 못함
- 난민신청자의 기초생계비 기준은 국민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음. 1인가구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기초생계비는 2017년 기준으로 428,000원인데, 이는 생계급여비 495,879원임
-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대상은 2014년 88명, 2015년 130명, 2016년 200명 등 난민신청자 대비 2~3%에 불과함

▶ 체계성 및 목적조향의 분석

-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 「난민법」은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독립함
 - 다만 난민의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일부 조항은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난민법」은 난민의 본질상 「출입국관리법」과 분리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즉, 「난민법」은 일반적인 외국인 행정과 다른 법적 절차와 지위가 규정함
 - 이민 등 다른 외국인보다 난민은 특별한 절차인 인정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평가됨

- 난민의 경우에 박해의 우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체류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주외국인과 유사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난민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 또한 재한외국인으로서 「난민법」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5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도 이에 해당됨
 - 난민의 비중이 아직 국내 체류 외국인에 비해서 소수라는 점에서 「난민법」상의 별개의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난민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상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난민법」의 목적조항의 분석
 -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임을 「난민법」 제1조가 규정함
 - 난민협약에는 전쟁난민 등이 포섭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법」은 난민협약 이외에 여러 난민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전쟁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의한 난민 또는 인도적체류자를 인정하고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난민법」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난민협약은 기본적인 인정절차와 처우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처우는 협약국의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한 면에서 「난민법」의 제정자체가 「난민법」 목적의 달성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 난민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앞서 본 난민현황에서 보듯이 난민인정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즉, 한국의 「난민법」 행정은 난민인정절차의 엄격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됨

▶ 난민인정절차

- 난민인정절차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정식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음
-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경우 「난민법」 제정과정에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영역으로 제도와 운용의 정당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됨
 - 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난민신청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입국 이전에도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회부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에 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부재함
 - 회부심사에 있어 핵심에 해당하는 불회부결정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
 - 불회부사유의 해석 관련, 일단 입국이 허용된 후에 진행되는 난민인정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난민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신청의 사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심사결과 입국이 거부되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출입국항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금된 상태에 놓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난민법」 제2조의 정의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의 지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부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장치를 비롯하여 출입국항에서의 처우 및 구금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한 실정임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제12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통역인이 통역을 담당함
 - 이외에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난민심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통번역의무 등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됨. 그러나 난민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업무부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 난민위원회의 구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난민법」 시행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됨
 - 법무부 산하기구인 난민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따라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가칭)난민심판원의 설립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최근에 난민신청건수 및 관련 소송 또한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위원 1인당 심사 건수의 부담이 과중하여 심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 처우 관련 난민분류의 문제점
 - 「난민법」은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와 인정자 그리고 인도적체류자로 분류하고 있음.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활동이외에는 처우보장에 받지 못하고 있음
 - 난민협약의 역사적 한계 및 난민개념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본다면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처우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난민인정자 처우 조항의 분석과 평가
 - 난민인정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서 난민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향후 난민인정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난민의 사회보장적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난민신청자 처우조항의 분석 및 평가
 - 난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금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 못미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생활수준의 최저기준이라는 점에서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생계비 지원 대상은 2014년에는 88명, 2015년에는 130명, 2016년에는 200명으로 매우 한정적임.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허가를 얻을 수 있음. 취업활동은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자유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립이 가능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허가해줄 필요가 있음
-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제40조 제1항의 생계비 지원, 제41조 주거 지원, 제42조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에서 정하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난민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 대상을 생계비지원, 주거 시설지원, 의료지원을 규정하고 교육지원은 제외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난민의 절차적 권리라는 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지나치다 할 수 있음.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함

▶ 프랑스에서 입법영향분석(étude d'impact)이라 함은 입법의 행정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재정적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8년도 개정 헌법에 명문화된 프랑스의 입법평가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에 의한 평가방식이지만, 난민법의 경우 제정법률에 대한 사전영향평가가 아닌 이미 시행 중인 난민법(외국인법전 제7권)의 개정인 까닭에 본 영향분석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비호 패키지(paquet d’asile)”로 불리는 난민에 관한 세 개의 유럽연합의 지침이 2013년 6월에 프랑스 국내법으로 수용되었고, 난민법 개정에 관한 영향평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음. 이는 EU의 난민처우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지가 난민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음을 뜻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 관련 규정이 국내적으로 수용된 과정 및 영향분석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입법 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프랑스는 사전 영향평가의 단계별 지표를 세워놓고 주요 정부발안법률안에 적용하여 분석함. 외국인법전의 비호권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호의 개혁에 관한 2015년 7월 29일자 법률」은 정부입법으로 영향 분석이 선행되었음. 따라서 동 법률의 사전적 영향평가방법론에 관하여 분석하고 사후평가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 프랑스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주요내용

- 2000년대 들어 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잇따른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고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해 상위규범인 헌법에 사전영향분석의 근거를 마련함
 - 영향분석의 대상은 정부제출법률안임
 - 영향분석서의 작성에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 및 국무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에서 담당하며, 콩세이테따(Conseil d’Etat) 및 의회의 사전통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영향분석서는 진단 및 입법의 필요성, 목적, 채택된 규범 외의 가능한 수단, 예상 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입법 시행 관련사항 등을 포함함

▶ 프랑스의 난민법제 개요

- 프랑스에서 비호권(droit d'asile)은 1946년 헌법전문에서 최초로 인정되어 현행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짐. 이에 더하여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비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프랑스는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근거하여 그 이듬해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을 제정함
 - 2004년도의 법전화 작업(codification)에 따라 난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에 관한 법전」(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CESEDA)(이하 외국인법전)에서 정하고 있음. 비호권(droit d'asile)에 관한 제7권(livre VII)(이하 프랑스 난민법으로 칭함)은 비호인정절차,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 비호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CNDA)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난민수용에 대한 1차 결정은 내무부 산하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에서 함. 여기서 난민불인정 처분이 내려지면 비호신청자는 특별행정법원인 비호법원에 항소를 거쳐 콩세이데따에 상고할 수 있음
- 2007년부터 프랑스의 난민신청 건수는 급증하여 2013년에는 무료 66,251건의 난민신청이 이루어짐
 - OFPRA와 CNDA의 인원충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난민신청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신청처리기간이 평균 16개월로 지연되었음
- 이에 신청처리기간의 단축 등 비호인정절차의 개선, 비호신청자의 보호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마련, 난민과 보충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 대상자의 처우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2014년에 제출되었음

▶ 2015년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 비호인정의 1차결정을 담당하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관련하여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함
 -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수리불가(irrecevabilité) 절차, 비호신청자가 협조를 거부한 경우 심사의 종료 또는 실권절차, 그리고 신속절차(procédure accélérée)이 이에 해당함
 - 강제퇴거 대상으로 보호처분 중인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면할 목적으로 비호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절차에 의함
- 비호신청자의 보호시설을 통합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신청자의 가족구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함
-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에의 거주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함. 그러나 비호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함
- 비호인정절차에 있어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인 소송절차 관련하여 개정안을 신설함. 사무국(OFPRA)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비호법원(CNDA)에 항소하는 경우 집행정지효력을 부여함. 그리고 신속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는 단독재판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함
- 법에 대한 접근성, 가족결합권, 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보호 인정자의 권리를 강화함
- 이와 같이 프랑스는 비호인정요건 및 심사절차, 보호인정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EU지침을 수용하며 유럽공동체의 기준에 부응하고자 함
- 남녀평등관점에서의 영향, 장애인에 대한 영향, 법적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행정적 영향, 법원의 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분석되었음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2014년 7월에 제출되어 상원과 하원의 왕복심의(navette parlementaire)를 거쳐 2015년 7월에 공포됨
-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는 정부발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에서 의회의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의 품질을 개선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 실무그룹의 규범적 영향분석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입법과정의 한 형식에 불과할지라도 입법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법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2015년의 난민법 개정은 EU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외국인법전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 따라서 비호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및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등에 대하여 처우를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안전한 (출신)국가(pays d'origine sûrs)의 목록에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시키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프랑스로의 난민유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 및 개정 난민법 사례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그 제도를 운용하는 문제로 귀결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 난민인식 조사

- 난민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 중 85.1%(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이 인지하고 있지만, 난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36.5%(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국민은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난민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파악됨

○ 난민의 특성 및 지위에 대한 국민 인식

- 우리 국민들은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에 82.7%가 동의함. 즉, 이민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특별한 법적 지위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
- 우리 국민들 본 난민수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36.3%), 난민이 자국으로 귀국 후 갖게 되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의 순서이었음. 반면 난민수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범죄발상 등 치안문제 및 테러 등의 우려(56.8%)가 가장 높았음

○ 난민지원 등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정부나 사회의 난민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난민 지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 12.7%에 불과하였음. 또한 사회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답변이 9.5%에 불과하였음

- 난민은 외국인 정책 대상자의 중요도 순위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27.7%),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22.1%), 외국인 투자자(15.7%), 이주노동자(15.3%) 이후로 5번째 순위(8.4%)인 것으로 조사됨
- 난민에 대한 정책적 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난민문제는 즉각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난민법에 대한 국민 인식
 - 난민법 제정의 의의에 관해서 국민들은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33.7%)와 난민 인정 절차의 구체화(28.2%) 등에 의의를 두었음
 - 즉,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난민법제정의 의의는 난민법 내용의 충실화에 관한 내용들임. 특이점은 우리 국민 18%는 난민법이 제정이 대한민국 건국 및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식함
- 「난민법」 집행과 관련한 국민 인식
 -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55.0%),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 지원(15.1%), 통번역 지원을 통한 난민요건의 공정한 심사(13.8%) 순으로 나타남
 -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별도의 통역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85.1%가 동의함
 - 난민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48.2%로 긍정적인 영향을 선택한 12.0%보다 높았음. 향후 난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와 주변지역에 대한 설득 및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난민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인식
 - 우리 국민들이 생각한 한국이 한 해 수용가능한 적정 난민의 수는 100명 이하가 45.3%이었으며, 100명에서부터 500명까지의 인원 에 대해서도 36.3%의 지지를 받음. 최근과 같은 정도의 난민수용을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난민수용인원을 늘리자는 입장도 상당한 수를 보임
 - 재정착난민과 관련해서는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28.1%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17%이었는데, 보통이라는 의견이 54.9%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재정착난민에 관한 인식이 한 쪽으로 모아지지 않음
 -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망명권의 규정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38.4%, 그리고 반대가 22.5%이었고, 보통이 39.1%로서 이 문제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한 쪽으로 모아지지 않음

▶ 「난민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난민개념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개념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협약난민 이외의 전쟁난민 등이 난민에 대해서 난민법개념의 개정보다는 난민법의 인도적체류자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 다수임(42.9%)
 - 그리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남

○ 난민협약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법」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난민협약은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92.9%가 동의. 다른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적용하여 협약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89.3%로 나타남 이에 따라 우리 「난민법」 해석에도 다른 국제인권규범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난민법」의 목적 달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법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난민인정률이 가장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42.9%의 전문가들이 동의. 그 다음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규정의 불비 21.4%,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14.3%)의 순서로 문제점이 지적됨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난민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35.7%)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32.1%)이었음

○ 「난민법」 개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법」상 가장 개정이 시급한 분야로는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률 제고’가 각각 25.0%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 1+2순위 응답으로는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50.0%)로 가장 높게 선택됨
- 개별규정과 관련해서는 「난민법」에 차별금지원칙과 난민아동 및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92.9%가 동의함
- 난민인정자의 경우에 완화된 귀화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75%가 동의함

○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인정신청자 입국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는 제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도 제2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5.7%로 나타남
- 다만 난민인정 반복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간이신속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42.9%), ‘신청기간 내지는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28.6%), ‘현재대로 둔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이유 명백성을 접수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50.0%), ‘접수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3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39.3%가 난민신청 기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적절한 제한기간으로 ‘6개월~1년 미만’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난민신청 불인정자가 법원에 최대 3심까지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나타났고,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78.6%로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난민인정절차가 신속해야 한다는 점과 불복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모두 동의하였음

○ 난민위원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선택에서는 ‘인적구성의 다양성’ 및 ‘민간위원의 확대’(각각 35.7%)가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1+2순위 응답에서는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난민위원회의 상설화를 긍정하는 의견이 89.3%이었으며, 상설시 기관소속은 법무부 외청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67.9%로 나타남

○ 난민 처우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우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53.6%로 나타남
- 난민신청자 대비 지원대상자 비율 평균은 25.82%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해 ‘생계급여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4.3%로 높게 나타남
-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전에도 일부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46.4%), ‘6개월 이전에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난민 수용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수용률이 낮다는 것이 「난민법」 및 난민행정의 가장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난민인정률에 관해서 ‘10~20% 미만’(32.1%), ‘30~40% 미만’(2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난민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3.6%로 ‘동의하지 않는다’(39.3%)보다 높게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견해가 예산과 인원의 문제로 보았지만, 적지 않은 수는 난민인정 절차와 실제 행정집행의 문제에 원인을 있다는 견해로 보임
- 난민제도 남용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신청 남용자에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난민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50.0%), ‘처벌이 아니어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난민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난민법」 및 난민정책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순위 응답으로는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각각 57.1%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설문결과는 향후 「난민법」 개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은 처우보장 및 통번역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마련임을 보여주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서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 난민법의 제정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규범론적·법사회학적·비교법적 방법론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난민 및 난민정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주제어 : 난민, 난민인정절차, 난민처우, 난민법, 난민위원회, 프랑스 난민법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KLRI”), through its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 conducted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on acts that have been valid for more than three years after enactment or amendment in 2017.
 - As one of the research projects, KLRI performed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on the Refugee Act that was enacted as Act (no. 11298) in 2012.
 - Unlike Europ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currently confronted with refugee crisis. Howev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and as a country standing for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Refugee Act.
 - The Refugee Act is a single law that is derived from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previously provided the definition of refugee.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the law raised the country’s status as the country standing for human rights since it was the first ever law regulating Refugee Act in Asia.
 - The aim of Refugee Act is to implemen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ules such a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lso known as ‘the 1951 Refugee Convention’.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refugees prescribe the principles on the procedures and treatment of recognizing and approving refugees. Detailed procedures and treatment of the refugee laws are to be set in accordance with municipal law.

-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ntained only a few provisions on refugees, while the recently enacted Refugee Act is composed of 47 legal provisions in total for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nd treatment.
 - The Refugee Act represents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the country in light of human rights. There still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among the scholars, civic organisations, and the Minister of Justice.
 - Also the issue of refugee has found itself selected as the research project topic in consideration due to increased attention to the recent worldwide refugee crisis.
- ▶ By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se whether the newly enacted Refugee Act properly fulfills the aim of international norm and defines an adequat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nd searches for any further solutions if not.
- This research seeks to find the implication by analys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on refugee act of France in 2014. The analysis, which has been improved over the last few decades, is expected to provide certain lessons to the way in which Korea's refugee act should look for better regulations for refugees.
 - One should note that the nature of Refugee law is not pertaining to people's right and duty. That is,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is implemented based mainly on the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request from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refugees. This report aims to find social and legislative consensus among the Korean people through a questionnaire asking people's basic awareness on refugees and the necessity of refugee law.

- Accordingly this paper looks at the amendment of National Assembly and normative analysi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from civic organizations and legal scholars. Through an expert questionnaire, such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to be assessed, and the ideas for legislation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will be laid out consequently.

II. Major Content

▶ Status of refugees

- The Refugee Act and its amendment by National Assembly.
 - The Refugee Act was enacted and declared on February 10th in 2012.
 -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d regulated the issue on the refugee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has been appraised to advocate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codification of the ways to protect the refugees' human rights and treatments and to promote consistency in these regulations.
 - Since the Refugee Act has been enacted, total 13 amendments were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Those amendments stressed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guarantee a fair opportunity, for provision of refugee admission system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current Refugee Act, and a guarantee of better treatment and refugee recognition system for humanitarian status holders.

- The Current Status of Refugees and the Change in the Statistics on Refuge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 Since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reached a new first of 1,000 in 2011, the number has rapidly increased up to 1,574 in 2013, 2,896 in 2014, 5,711 in 2015 and 7,542 in 2016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of Law in 2012.
 - However, the number of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ccounts for only 94, 105 and 98 in the year 2014, 2015 and 2016 respectively.
 - As part of these above, there was only 25, 5, 18, 13, and 17 of those who have been recognised as the refugees in the name of the reunification of the recognised refugees' families in the year 2012, 2013, 2014, 2015, and 2016 respectively.
 -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formal objection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dicating that it is hard for the refugee applicants to be approved at a preliminary screening.
 - In case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there have been the higher number of applicants granted; 539 in 2014, 194 in 2015 and 246 in 2016.
 - This data implies that there have been increase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following the war refugees including the Syrian crisis.
 - Also 2,974 out of 7,542 refugees applicants in 2016 applied for refugee status after the eligibility of stay has been expired. Some point out that it is the case of deliberate abuse in order for an extended validity period, but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es and statistics since some refugees are literally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

-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gulation on the period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re not eligible to receive refugee treatment.
- The standard of basic living costs for refugee applicants is lower than national living wage.
- In 2017 one single refugee's basic living cost is KRW 428,000 while the average standard of national living cost is KRW 495,879.
- Even the number of beneficiary for such living costs is only up to 3% out of the whole refugee status applicants; 88 in 2014, 130 in 2015 and 200 in 2016.

▶ Normative Review

Analysis of System and Object Clause

- The Relation between the Refugee Act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The Refugee Act is specified from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However, a few clauses on eligibility for provisional stay and immigration control is still regula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Despite of this, it is more reasonable that the Refugee Law and the Immigration Control Law need to be managed separ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refugees.
 - That is, another legal procedure and status is to regulate the Refugee law different from administrations for ordinary foreigners.
 - It appears to be reasonable that laws for refugees need to be maintained separately from ones for ordinary foreigners since refugees are regulated by their own legal procedures and treatment.

- In case of refugees they need to have a similar qualification to settled foreigners as they are eligible for stay until the concern of oppression and violence is disappeared.
- The Refugee Act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 Except for the cas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Refugee Act, refugees ar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s they are also foreigners staying in Korea.
 - Refugee is also included in the Article 5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hich specifies foreigners.
 - However it is not that necessary to set up master plans for refugees yet since the current rate of refugees is much lower tha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 Despite the current status, there needs to specification on what should be tackled on prospective master plans when it comes to the types of foreigners in Korea.
- Analysis of Refugee Act's Object Clause.
 - The article 1 of the Refugee Act makes clear that the act is to fulfill the Refugee Convention.
 - It can be seen that the objective of the Refugee Act is to recognis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to guarantee treatment in compliance with the Refugee Convention.
 - The Refugee Act defines basic admission process and the standard of treatment only, further detailed process and treatment is delegated to domestic laws.
 - Having considered this,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itself fulfills the purpose of the act.

- However, as can be seen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ts effect on the current refugee status, there is an issue on the fact that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way too low.
- That is; South Korea's refugee administration is too strict in terms of refugee admission and permission.
-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ce of enactment of the Act, one should wonder if such refugee administration has genuinely contribu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Apart from resettled refugees, the establishment of fair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rather than the regulation of the fixed number of possible recognised refugees, is a means of fulfilling the objective of Refugee Act.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has a dualised system of refugee admission at a Port of Entry and Departure and official procedure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 The Article 6 of the Refugee Law states the regulation on the refugee application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The legitimacy of this regulation and its management has been criticised as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the Refugee Law has continuously been questioned.
-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cknowledged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 those in Korea only. However a refugee status admission available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even before the arrival at Korea was newly intro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 The law only states the procedure of the refugee applicants receiving the results of the submission of refugee application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There is no such law that covers the action which the government should take if the refugee applicant disobeys the results on the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 As referred to the Article 4 of the Act, when the refugee applicants are rejected to enter the country based on the application evaluation results, they are detained and asked to stay in the waiting room of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 The Article 2 of the Refugee Law does not define the status of the refugee applicant who has made the application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With regards to this, there is an absence in the related law that guarantees the submitted application evaluation procedure and that regulates the treatment and detention of the refugee applicant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 The Korean government sets the following regulation to protect the refugee applicants' rights in the application process either for the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or for the refugee applicant who has received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assessment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and therefore applied for refugee status.
 - Refugee applicants are allowed to get advisory service from the attorneys (Article 12), request for those people whom they trust to accompany (Article 13), and request translator of the same gender.
 - The way in which the refugee application is assessed is regulated by imposing certain regulations on the verification of the Refugee status interview report, accessibility of certain documents, protecting the refugee applicants' personal profiles.

- There is a need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to be conducted for the regulations on voice or video recordings,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work during the interview.
- Those who are not recognised as refugees can raise a formal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d once this appeal ha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then submitted to the Refugee Committee. However, there are certain problems in the areas related to the Refugee Committees' organisation structure, independence, and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 With regards to the organisa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detailed explanation of it under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rather than considering that under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Refugee Act has been questioned.
- It is concerned whether, as an assessment body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fugee Committee'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re guaranteed. Hence, in order to secure such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e establishment of 'Refugee Tribunal',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chiefly deal with a formal objection on rejection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 The increasing burden of work per personnel has worsened the effectiveness and speed of assessment of the refugee applications, following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and related litigations has rapidly increased.

-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fugee Treatment Regulation
 - Difficulties in Categorising Refugees for Treatments.
 - The Refugee Act categorises the refugee applicants, the recognised refugee, and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with regard to the refugee treatment.
 -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n particular do not get sufficient treatment apart from the work permit.
 - If one considers the historical limitations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ambiguity in the concept of Refugees, there is a need to treat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like the way the recognised refugees are being treated.
 - The Analysis and the Examination of the Treatments of the Recognised Refugees.
 - Regardless of reciprocity, recognised refugees are to receive social security as do the ordinary Korean citizens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but amendments on the issue are needed since a few individual laws such as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es not specify the refugee status.
 - There are no social programmes dealing with education, housing, and medical care yet for recognised refugees, there is a need to provide similar programmes to the one for resettled refugees.
 - A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recognised refugees will be increasing, there is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y support and governance system for the guarantee of right for social security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Immigration Service.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reatment Clause for Refugee Applicants.
 - The amount of living expenses that have been granted to the refugees does not meet the minimum amount of that given to the citizens. Insofar as the concept of minimum amount of living expenses is considered, both of the refugees and the citizens need to get the same benefits.
 - The number of refugees who get financial help with their living expenses is highly restricted as only 88, 130, and 200 refugees got this support in year 2014, 2015, and 2016 respectively.
 - Refugee applicants can receive permission to work 6 months after they submit the refugee application.
 - Having these been considered, the employment activities of refugees need to be supported without any restriction on the durations as long as they have the ability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 More detailed support schemes are needed as there are no support facilities for housing and medical care apart from the one in Yeongjongdo in Incheon.
 - If the refugee applicant raises a formal objection, there may be certain restrictions imposed on the financial support for living expenses (the Article 40 of the Act), the provision of residential area (the Article 41 of the Act), the medical support (the Article 42 of the Act), and the educational rights (the Article 43 of the Act). The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Refugee Law regulates the financial aid, the residential area provision, and the medical aid, and excludes the educational support.

- As raising formal objections is one of the refugee applicants' procedural rights, and in fact, is one of the human rights, an unfair treatment would be considered unreasonable for those exercising their own rights.

▶ Comparative Review :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France

- Prospectiv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France aims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 of legislation by preliminarily analysing administrative, social, legal, economic, financial impacts of the legislations.
- France's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2008 has a form of evaluation on the basis of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In case of Refugee Act, however, Impact Analysis Report is defined as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the Refugee Act is the amendment of Foreign Code of Law.
- Three guidelines of European Union on refugees, called "Asylum Package", were accepted as the principle of municipal law in June in 2013 in France, and Impact Analysis Report deals with this. This links to France's background intention of amendment of Refugee Act in compliance with the EU's refugee treatment. Having considered this, this paper seeks implications for Korea's legislative evaluation by looking at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rules were transformed into Korea's municipal laws and by analysing what its impact has been.

- In France, an indicator table of impact assessment is settled beforehand and main government-passed bills or acts are applied into the table for analysis. ‘The 2015 Reform of the Act on Asylum’ which contains the whole amendment of asylum in Foreign Code was preceded as government’s legislation. Thus this paper analyses such preliminarily impact evaluation methodology and finds how to use it effectively at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Main Content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France

- Since the early of 2000 experts have criticised its effectiveness of impact assessment. The French government established the legal legitimacy of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within the Constitution, which takes higher hierarchy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08.
 - The purpose of impact analysis is to assess the bills passed by the executive.
 - A respective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re in charge of writing the impact analysis report. A pre control of the Conseil d’Etat and the council is guaranteed as part of the procedure.
 - Documenting of the impact analysis report is charged to the Ministers.
 - Impact analysis report includ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its evaluation, objectives, any other possible regulatory methods, foreseeable impacts, advisory and so forth.

► Overview of the Refugee Act in France

- The right of asylum in France has the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urrent the Fifth Republic Constitution ever since the right was firstly recognised in the Constitution in 1946. In addition to this, regulations on the right of asylum were newly written on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1993.
- France enacted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ople in 1952’ in compliance with the Geneva Convention on refugee status in 1951.
 - Following the codification in 2004, refugee issues are specified from ‘Code for Entry and Residence of Foreigners and Asylum Seekers’, CESEDA hereafter. The Chapter 7 book tackling the right of asylum, ‘France’s Refugee Act’ hereafter, contains asylum recognition process, French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ople (OFPRA), National Court of Asylum (CNDA) and so forth.
- The first screening to determine acceptance of refugees is undertaken by OFPRA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The number of refugee status applicants peaked reaching 66, 251 in 2013 particularly since 2007.
 -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received has rapidly increased; 66,251 of applicants applied for refugee admissions in 2013. The average period of the evaluation process was lengthened to 16 months as there was insufficient number of staffs in OFPRA and CNDA despite the manpower supplement.
- With this in mind, a bill that covers further development of the asylum recognition process; shortening the time taken for the application handling process, provision of protecting facilities, and the protection subsidiaire, was submitted in 2014.

▶ Main Contents of Impact Analysis Report on the Refugee Act of 2015

- A new procedure was phased in with regard to the first screening of asylum recognition in OFPRA.
 - ‘Inadmissible’ when there is no new issues to be reviewed at reexamination, ‘Screening close’ or ‘Expedited procedure’ when asylum applicants are uncooperative are the examples.
 - ‘Expedited procedure’ needs to be carried out if foreigners apply for legislative protection in order to exclude themselves from forced evacuation.
- There needs to be an integration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a standard in which the applicant’s family structure has been considered when determining a provision of financial aid for those who applied for legislative protection.
- Eligibility for staying in France until the end of every procedure including litigations is stipulated. But, in order to avoid a situation where asylum seekers congregate in a certain area regulations were introduced.
- The rights of refugees who are qualified for legislative protection covering the accessibility to laws, family unification rights, issuance of travel documents are protected.
- Likewise France has been making efforts to comply with the European Union’s guidelines of asylum seeking condition and examina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of refugees qualified for protection.
- Analysis of impacts of gender equality, disabled, legal, economic, social, administrative, court’s functions perspective was preliminarily undertaken.

► Analysis on the Refugee Act of 2015 in France

- ‘A legislative bill covering the reformation of the right of asylum’ has been handed in for the navette parlementaire and consequently has been proclaimed in July, 2015.
-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in France, where most of draft laws passed by the executive, can be understood as a structure that secures procedural legitimacy or legality, as well as improves the quality of law guaranteeing the legislature’s intervention.
 - Although the current pre-impact assessment system, in which the administrative body conducts the impact analysis, is merely part of the legislation process, it will indeed guarantee the credibility and stability of the law.
- The main objective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in 2015 was to alter the EU regulations to follow the municipal legislative structure and therefore to reflect it in the foreign legal citations.
- Despite this, the French act of including the largest number of countries in the ‘safe countries’ category has practically decreased the number of refugee inflows into France.
- Along this lin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e-conducted impact analysis and revised Refugee Law of France has indeed taken a huge role not only in preparing the related legislation but also in managing this law.

▶ Social Reivew

General survey

Refugee Awareness Survey.

-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85.1%(Very well & well) out of the Korean people are well aware of the term 'refugee', but only 36.5%(Very well & well) are aware of the current refugee status.

Public Awareness of the Nature of Refugee and Status.

- 82.7% of the Korean people agree with the idea that refugees are eligible for a special protection different from migrants. This means that they distinguish refugees from migrant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is in agreement of the refugee's special legal status.

Public Awareness of Refugee Policy (i.e. Refugee support).

- Those thinking that the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for refugees is working enough are only 12.7% out of total. Also 9.5% only answer that the Korean society's attention to the refugee issue is good enough. The Korean people recognise, at least implicitly, tha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refugees.

Public Awareness of the Refugee Act

- In light of the enactment of Refugee Act, the Korean people consider 'actualisation of provision for refugee treatment' (33.7%) and 'actualisation of refugee admission process' (28.2%) significant.
- This notes that the Refugee Act's legitimacy, rooted in legal and provisional details, gives rise to how the Korean people see the implications of enactment of the Act.

- Public Awareness of Refugee Act Implementation.
 - In terms of priority with regard to the Refugee Act Implementation and Policy, ‘Strict screening check for a proper refugee condition and admission process was ranked as a top (55.0%), then ‘Support for refugee’s sojourn including admitted refugees, refugee status applicant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15.1%) and ‘Fair treatment and interview for refugee admissions by providing interpretation service’ (13.8%) in order.
- Public Awareness of Prospective Refugee Policy.
 - 45.3% of total responded that the adequate number of eligible refugees per year in Korea is no more than 100, while 36.3% agreed that ‘100 to 500’ is also acceptable. That is, the majority of the people sees that the current status of refugees is reasonable to be maintained.
- Expert Survey
 - The Survey of the Expert’s Awareness on the Concept of Refugee.
 - 42.9% of the experts agreed on the fact that the notion of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n the current Refugee Law can be applied to the refugees who were not included in the types specified following the Refugee Convention.
 - Expert Survey on the Fulfilment of the Refugee Act’s Objectives.
 - 42.9% of total experts are in agreement that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is not most effectively working as the way it is under the current Refugee Act and Refugee Administration system. Those saying that the refugee admission and treatment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is worried are 21.4%, and treatment of recognised refugees is concerned is 14.3%.

- Expert Survey on the Need for Amendment of the current Refugee Act.
 - With regard to the perspective that the rate of the refugee recognition is low, Each of the three answers in the following holds 25.0% respectively; ‘Expedited procedures of refugee recognition’, ‘Treatment of refugee applicants at airport immigration’, and ‘Reconsideration of th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 Expert Survey on the Refugee Admissions Procedure.
 - With regards to the entry approval of the refugee applicant, the survey result stating that the policy, in which the refugee admitted into a country should go through the regular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when his/her refugee application is made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was the highest with 42.9% vote.
 - Moreover, 85.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ose refugees who have applied at the port of entry and departure also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fugee applica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of the Act.
 - 39.3% of those surveyed stated that certain restrictions need to be imposed on the refugee application period. With regards to this, 45.5%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ost appropriate refugee application period is ‘more than 6 months, but less than 1 year’.
- Expert Survey on the Refugee Committee related Issues.
 - With regards to the ways to improve the organisa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the need for ‘diversity in the workplace’ and ‘the ri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ommittee members’ scored the highest of 35.7% respectively. In terms of priority ranking, the need for ‘diversity in the workplace’ was ranked first with 78.6% of the responses.

- In addition to this, 89.3%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Refugee Committee. 67.9%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Refugee Committee should be run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 Expert Survey on the Treatment of Refugees.
 - 53.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exact same treatment of refugee needs to be guaranteed not only for the recognised refugees but also for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 With regards to granting permissions for the refugee applicants' employment seeking activities, 46.4% agreed that 'it is acceptable to allow them to get employed within 6 months period as long as certain restrictions are imposed' while 35.7% indicated that 'they should be allowed to get employed within 6 months time'.
- Expert Survey on the Acceptance of Refugees.
 - 32.1% and 28.6%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Korea should keep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to 'less than 10~20%' and 'less than 30~40%' respectively.
- Expert Survey on the Problem of Abusing the Refugee Law.
 - 'It is inadequat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use the term 'Fake Refugee' to refer to those who abuse the refugee application' is ranked as a top, which 67.9% of the respondents ticked.
- Expert Survey on the Future Refugee Law and Related Policies.
 - 46.4%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guarantee of the fair treatments of the recognised refugees, refugee applicants, and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s' needs to be prioritised when the Refugee Law enactment is considered.

III. Expected Effects

-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fugee Act has been fulfilling its essential purpose in enacting the Act and goes on to propose ideas for improvement by looking at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fugee Act.
- This research applied to normative, legal-sociological and comparative methodologies finds it itself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the legislative assessment dealing with municipal laws in Korea and by doing so conforming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 This study assesses the extent to which the Refugee Act has been properly validated and sets out the necessary basic data for adequate alternatives through the survey of people's awareness and the questionnaire of experts' knowledge on refugees and refugee policies.

▶ **Key Words** : Refuge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Refugee treatment, Refugee Act, Refugee committee

요 약 문	3
Abstract	25

제1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 51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5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56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58
I. 규범론적 평가	58
II.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58
III. 비교법적 방법론	59

제2장 「난민법」의 기초분석 / 61

제1절 난민의 헌법상 지위	63
제2절 국제법상의 난민	65
I. 국제법상의 난민 문제의 등장	65
II.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	66
제3절 「난민법」의 기초분석	70
I. 입법배경 분석	70
II. 제정연혁	72
III.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72
IV. 검토보고서	74
제4절 「난민법」 관련 입법현황	75
I. 「난민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75
II. 「난민법」 개정 관련 분석	93
제5절 난민 관련 현황	94

I. 난민 관련 국제 일반현황	94
II. 「난민법」 제정 이후 국내 현황	96
III. 난민처우 현황	101

제3장 규범적 분석 : 「난민법」의 체계성·효과성 분석 / 105

제1절 체계성 및 목적조항의 분석	107
I. 「난민법」의 체계성 분석	107
II. 목적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09
제2절 난민인정절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10
I. 인정절차 개관	110
II.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회부심사)	112
III. 국내 체류 중의 난민인정 관련	124
IV. 이의신청 관련	130
V.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점	135
VI. 소 결	138
제3절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41
I. 처우에 관한 조항 개관	141
II. 난민인정자 처우 조항의 분석과 평가	148
III. 난민신청자 처우조항의 분석 및 평가	158
IV. 인도적체류자 처우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65
V. 소 결	168

제4장 입법평가 방법론의 비교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 / 171

제1절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73
I. 비교연구의 목적	173

II.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74
제2절 프랑스의 난민법 제 개관	179
I. 난민법의 발전 및 특징	179
II. 2015년도 개정의 배경	183
제3절 프랑스의 난민법 개정 : 입법영향분석의 과정	185
I. 난민법 개혁에 대한 합의	185
II. 유럽공동체 지침의 수용	186
III. 비호권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187
제4절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190
I. 개 관	190
II. 비호인정요건 및 비호신청심사(Dispositions relatives aux conditions d'octroi de l'asile et à examen des demandes d'asile)	191
III. 보호에 관한 내용(Dispositions relatives au contenu de la protection) :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	207
IV. 소 결	215
제5절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217
I.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외국인법전」의 개정	217
II.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제도의 특징	219
III. 우리 난민법 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221
IV. 소 결	223

제5장

「난민법」 설문조사 / 229

제1절 개 관	231
제2절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232
I.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232
II.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235

제3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238
I. 난민에 대한 인식	238
II.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240
III.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242
IV. 헌법개정과 망명권 관련 인식조사	253
제4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254
I. 「난민법」 관련 의견	254
II.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의견	261
III.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268
IV. 난민수용 관련 의견	270
V. 난민정책 시행 관련 의견	272
VI. 난민제도 남용관련 의견	276
VII. 난민생계 지원에 대한 의견	278
VIII.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280
제5절 「난민법」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281

제6장 결론 / 285

제1절 사후평가의 결과	287
제2절 연구의 한계	293
참고문헌	295
부 록	305
• 부록 1 난민법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서	307
• 부록 2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서	419

제1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제1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난민법」은 2012년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 「난민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²⁾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을 통한 난민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새롭게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단행법의 형태로 「난민법」을 제정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사업은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행된지 3년이 지난 법률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목적의 달성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제정

2) 「난민법」 제1조

이 보고서는 「난민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나타난 난민관련 정부 통계나 실태파악조사 등을 분석하여 그 동안 「난민법」이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확인하고, 국회나 시민 단체 그리고 사회과학 및 법학계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최근 「난민법」 관련 쟁점들을 정리한 규범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난민에 관한 이슈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사회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등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여 인접지역인 유럽은 물론이며,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다.

난민은 국가안보 이상의 인간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간안보라는 인권보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의 난민은 단시간의 도피가 아닌 이주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난민과 보호국 공동체 국민들과의 통합 및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³⁾

난민을 둘러싼 국제레짐은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등의 이슈를 함께 함에 따라 매우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난민법」 제정 당시의 예상보다 많은 난민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제정당시에도 논의하였던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이 「난민법」의 개정안과 쟁점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모든 법률의 중요성은 똑같지만 「난민법」은 국제인권법의 이행법률인 동시에 국가주권에 근거한 영토고권상 출입국관리의 예외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인권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보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17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한

3) 기본적으로 난민문제의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재정착 등이 있는데, 현지 동화는 이주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정인섭·황필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10면

기조연설에서 1993년부터 시작된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와 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 정책의 이행,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한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지원,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양성평등 실천 등을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한국의 역할 내지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그 중에 하나로서 한국은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작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2천만불 공여국 클럽에 가입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난민의 수용과 지원은 한국이 식민지해방과 6·25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고도의 경제성장국가일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규약을 선도하는 국제인권국가로서 국가의 격(格)을 높이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적 의무라는 요청⁴⁾이 있는 반면에 난민의 입국은 출입국관리상의 예외로서 난민인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출입국행정상의 요청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국가주권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난민의 지원은 여전히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며, 국민과의 형평성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⁵⁾

국제인권법과 국가주권을 함께 고려하면서, 3년 동안 시행되어온 「난민법」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변화를 배경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처우 등 「난민법」의 규정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난민의 입국결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결정과는 달리 국제법상의 의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7권, 헌법재판소, 2016. 45면.

5) 대규모 난민에 직면한 유럽의 경우에는 ‘더블린 합의’를 통해서 유럽 내의 개별 국가들의 인도적 난민수용과 인정에 관해서 합의하고 있다. 최윤철, “유럽연합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5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50면.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사후적 입법평가의 경우에는 법률의 일부의 조문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의 연구에서는 「난민법」상의 중요한 개념, 난민인정절차, 난민의 처우 등 「난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행 「난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 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제2조).
-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제3조).
- 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향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제6조).
-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2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난민법」 제정이유 중 주요내용에서 인용함.

<http://law.go.kr/lisInfoP.do?lsiSeq=122977&ancYd=20120210&ancNo=11298&efYd=2013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검색일 2017. 5. 1.

- 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제24조).
- 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차. 난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제37조).
- 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 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인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난민법」을 중심으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에 「난민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문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하도록 한다.

다만 「난민법」 제24조의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부분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수용에 있어서 출입국항이나 이미 입국한 상태에서의 난민신청 이외에 세계 각지의 난민캠프 등에서 난민을 선발하여 국내에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재정착난민이라고 한다.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은 매년 일정한 인원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난민법」상 재정착난민규정을 도입하였다.

한국은 재정착난민의 수용을 보다 확대하려는 계획이지만, 현재 재정착난민수용은 시범사업 중이라는 점에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평가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서 난민의 수용과 지원이라는 「난민법」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 보고서의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 제정 이후 등장한 다양한 입법대안들 중에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발견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 또한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난민법」은 국민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규제와 비용에 대한 평가는 이 보고서에서는 하지 않도록 한다.

I. 규범론적 평가

규범론적 평가를 위해서 「난민법」의 입법연혁과 입법체계성 분석을 실시한다. 「난민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과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난민법」에 대한 규범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분석해 본다.

II.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난민법」 제정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는 「난민법」상의 중요한 조문에 대한 수용성 및 이해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난민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령의 규정들에 대한 수용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 대신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난민법」정책의 방향을 얻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난민법」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묻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난민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 비교법적 방법론

이 보고서는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프랑스 「난민법」에 관한 사전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난민법」에 주는 시사점과 함께 세계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지금의 난민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법정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한다.

제2장

「난민법」의 기초분석

제1절 난민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제법상의 난민

제3절 「난민법」의 기초분석

제4절 「난민법」 관련 입법현황

제5절 난민 관련 현황

제2장

「난민법」의 기초분석

제1절 난민의 헌법상 지위

건국헌법이래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난민’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의 헌법례는 ‘망명권’ 또는 ‘정치적 보호권’을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 또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과 함께 대법원은 망명권 내지 망명자보호권이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도출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⁷⁾

난민은 주로 난민협약상의 난민을 의미하는데 이 때에는 전쟁난민이나 경제난민 또는 환경난민이 포함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망명권 또는 정치적 보호권이 난민보다는 비교적 넓게 난민 등의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망명권 등은 차이를 갖게 된다.

우리 헌법이 난민에 관해서 명문이 규정이 없는 이유를 문헌연구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난민을 비호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헌법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난민에 대해서 갖는 무관심은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해서 갖는 무관심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 대판 1984.5.22. 84도39 판결

첫째, 헌법의 역사성이다. 우리 헌법이 갖는 역사적 조건과 환경은 건국당시에는 탈식민지 헌법으로서 한민족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건설이 목표라는 점에서 난민 및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적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국가적 조건이다. 문화적 조건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이민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고유문화로 구성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조건은 근대에 식민지이었던 역사적 조건과 결합하여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난민들 입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고유문화로 인해서 이민국가와 비교하여 피난처로 선택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지금의 유럽과 달리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국가라 볼 수 있다. 실제 「난민법」 제정이전에 대규모 난민은 1970년대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인 이른바 보트피플이었다. 1975년부터 베트남에서 3년간 11만명이 발생한 이래로 20년간 최대 추산치 200만명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은 부산 적십자 난민수용소를 설치하여 최대 600여명 정도의 베트남난민을 수용하였다. 발생한 난민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인데, 1995년까지 11만명 정도로 호주에 비교적 많은 수의 난민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난민발생지역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치적 조건이다. 건국 이래 우리 헌법은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난민 등 외국인 규정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헌법 개정은 기본권장을 신장하거나 새롭게 부각된 정치·사회적 이슈를 수용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 즉 민주화를 위한 개헌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난민 등 외국인 인권 관련 규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 개정과정은 주로 정치제도론이 중심이었으며, 기본권장의 일부 개정에서도, 일부 국민의 기본권적인 수요가 반영되었지만, 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외국헌법상의 기본권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및 제도적 수용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이른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및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관련 헌법사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난민법」 제정과 최근의 개헌논의 속에서 외국인 및 난민과 정치적 비호권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난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 원칙에 따라 난민수용의 헌법적 근거가 간접적이거나 있게 된다. 헌법 제5조의 해석을 통한 난민수용은 과거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그리고 「난민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부터는 「난민법」에 근거하게 되었다.

제2절 국제법상의 난민

I. 국제법상의 난민 문제의 등장

국제사회에서 난민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1950년 유엔총회에서 유엔난민기구 사무소가 최초로 창설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로서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채택되었다.

이후 세계 정치는 끊임없이 난민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1956년 소비에트연방의 헝가리 침입,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난민발생과 1970년대 동남아시아의 보트피플, 그리고 20세기말에도 아프리카와 유럽 발칸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난민, 21세기 초 콩

코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아시아에서의 난민발생, 최근의 시리아난민과 미얀의 르완다족 등 난민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난민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국제인권규범은 ‘난민협약’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 난민관련 내용은 다른 인권선언이나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고문방지협약 제3조 고문 위험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22조 난민아동에 대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아동의 보호, 원조, 가족재결합을 위한 협조제공

II.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

이른바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난민을 제한적으로 이해하여 난민의 범위를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으로 한정하였다. 1967년 1월 31일에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아래는 난민협약의 간략한 내용이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제2조	일반적 의무
제3조	무차별
제4조	종교
제5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제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제9조	잠정조치

제10조	거주의 계속
제11조	난민선원
제2장	법적 지위
제12조	개인적 지위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제14조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
제15조	결사의 권리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3장	유급직업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제18조	자영업
제19조	자유업
제4장	복지
제20조	배급
제21조	주거
제22조	공공교육
제23조	공공구제
제24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	행정적 조치
제26조	이동의 자유
제27조	신분증명서
제28조	여행증명서
제29조	재정상의 부담금
제30조	자산의 이전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제32조	추방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제34조	귀화
제6장	실시 및 경과규정
제35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제36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제37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제7장	최종조항

제38조	분쟁의 해결
제39조	서명, 비준 및 가입
제40조	적용지역조항
제41조	연방조항
제42조	유보
제43조	발효
제44조	폐기
제45조	개정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난민협약에서 난민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개념요소로서 1951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함께 첫째,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이외에는 협약상의 난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쟁난민, 환경난민, 경제난민 등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난민협약 자체가 주로 1950년대 이후의 동부유럽의 공산화 과정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서방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조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좁은 난민개념의 설정으로 인해서 난민협약 체결국들 중에는 인도적체류자 내지 보충적 비호대상자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쟁 난민등을 수용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다.

제3조는 난민에 대해서는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난민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 받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3년이 넘게 되면 입법상의 상호주의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난민에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에게는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동산 및 부동산(제12조), 국민과 동일한 저작권 및 공업유권(제13조), 비정치적이고 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결사의 권리(제14조), 국민과 동일한 재판받을 권리(제16조)가 있음을 협약은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으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제17조), 자영업(제18조)과 자유업(제19조)을 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 난민은 내국민과 동일하게 배급받을 권리(제20조)가 있으며, 자국민과 동일한 초등교육(제22조), 공공구제(제23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제24조)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주거(제21), 공공교육(제22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난민에 대해서는 난민이 권리를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 원조(제25조)와 이동의 자유(제26조)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제27조), 여행증명서(제28조)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을 당해서는 안되며(제32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제33조)

위의 두 조약은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직접규정하지 않고 있다.⁸⁾ 즉, 난민인정절차는 각 국의 내부법률로 정하되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난민협약은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난민의 수용이라는 국제인권법적 요청과 국가주권에 근거한 국경선 통제 즉, 출입국관리는 국가주권행사를 조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제3절 「난민법」의 기초분석

I. 입법배경 분석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2년에 ‘난민에 관한 중요한 국제협약인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3년에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여 국내법상 최초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4년 7월부터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법시행 초기에 난민인정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이후 200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도적체류자를 규정하고, 난민의 처우 노력 의무 및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노력을 보였다.

8) 김대순, 『국제법』, 삼영사, 2013. 970면.

또한 2010년의 개정에서는 난민신청자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⁹⁾ 국회와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으로는 충분한 난민에 대한 인정절차와 처우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난민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서 분리된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를 규정한 독립한 「난민법」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단일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이며, 이 법은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내용을 난민법에 보다 충실하게 규정하여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⁰⁾

한국의 실질적인 난민역사는 주권상실시기에 중국 간도와 러시아 사할린 등 외국 등으로 탈출한 해외동포 및 1950년 6·25전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건국과정에서 UN의 지원을 받았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전국토가 파괴되었을 때,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의 구호를 받았다. 즉,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아니지만 전쟁 실향민으로서 한국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베트남 보트피플을 위한 부산의 수용소를 설치하였으나, 난민들의 한국 거주보다는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인접주변 국가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난민발생이 없거나 적다는 점과 현재에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난민이 선호하는 국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국제적으로 난민문제가 확산되어 각 국가별 책임의 분산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난민수용과 재정착난민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국제적 역할을 위해서

9) 임현,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 법제처, 2014, 31면.

10) 위의 논문, 같은 면.

「난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II. 제정연혁

국회에 제출된 최초이자 유일한 ‘「난민법」 제정법률안’이 제18대 국회인 2009년 5월 25일 황우여의원 등 24인의 제안으로 접수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당시의 법률의 제명은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간략하게 단축되어 「난민법」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9년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2010년 4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및 다음해인 2011년 6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결국 2011년 12월 제304회 임시회와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에서 수정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12년 2월 10일 공포번호 11298로서 「난민법」이 제정·공포되었다.

III.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난민법」의 제정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에 따른 난민인정이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¹¹⁾

또한 난민인정절차가 신속하지 못하며, 투명성, 공정성에도 국내외적인 지적이 있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난민법」 제정안을 내었다.¹²⁾

11) 의안번호 4927,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2009. 5. 25. 2면.

12) 위의 의안 같은 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 가.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가능토록 함(안 제2조).
- 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예외 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함(안 제3조).
- 다.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라.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함(안 제6조).
- 마. 난민인정심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면접, 사실조사, 관계기관의 협조, 변호인의 조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유엔난민기구의 참여,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서류 등의 열람, 복사권, 비밀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인 명시함.
- 바.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9조).
- 사.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 구술진술의 기회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아.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27조).
- 자.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8조).
- 차.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카.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타.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을 명문화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결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 하.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난민법 제정이유 중 주요내용에서 인용함.

<http://law.go.kr/lisInfoP.do?lsiSeq=122977&ancYd=20120210&ancNo=11298&efYd=2013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방문일 2017. 5. 1.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 왜냐하면, 「난민법」 제정 이전의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난민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IV. 검토보고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있는 검토보고서는 최초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만 있다.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한 최종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없다.

최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당시의 「출입국관리법」이 난민협약 등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제정안은 난민신청자 등의 정보접근권과 변호인이나 통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러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제정안은 난민협약상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등이 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정안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검토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¹⁴⁾

또한 검토보고서는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난민법」을 분법화 하는 것은 5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

1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11, 5면.

15) 위의 검토보고서, 7~8면

첫째, 난민문제를 출입국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난민법」에서 난민의 기본적 지위 및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점
 셋째,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유럽연합에서는 가입국이 반드시 출입국 관리에 관한 법과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인권보호 차원에서 각국의 난민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난민정책의 일관적·체계적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즉, 검토보고서는 법체계상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고, 법의 역할 또한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제4절 「난민법」 관련 입법현황

I. 「난민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된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한 번은 타법개정이었으며, 현행 법인 2016년의 개정은 난민위원회 위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뇌물죄 처벌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¹⁶⁾ 「난민법」의 주요 내용은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난민법」은 현재까지 모두 13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6)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1. 2014년 6월 20일 박명재의원 등 13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난민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난민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난민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난민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난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난민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난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2) 경 과

2014년 11월 12일 제3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특별한 토론은 없었다.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3) 평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난민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현재에도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난민처우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중복 및 행정 낭비 소지가 있다는” 이견이 있음을 전제 한 후, 난민 지원에 관한 계획은 「난민법」에 근거를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⁷⁾

그 이유는 첫째, 난민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1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재룡,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 11. 3면.

기본법」보다 「난민법」의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며, 둘째, 난민의 개념에는 난민인정자만이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 체류 외국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¹⁸⁾

또한 세 번째 이유로서 통상 급부적 법률의 경우에 구체적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협의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며,¹⁹⁾ 네 번째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난민정책을 포함한 것은 그동안 「난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⁰⁾

2. 2014년 10월 14일 원혜영의원 등 11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위해서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²¹⁾

난민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난민불인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난민심의 또는 심리의 공개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비공개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²²⁾

(2) 경 과

이 개정안은 2015년 2월 5일 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별다른 토의 없이, 2016년 5월 29일 임기말로 폐기되었다.

18) 위의 검토보고서, 3면.

19) 위의 검토보고서, 4면.

20) 위의 검토보고서, 4면.

21) 의안번호 120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1면.

22) 위의 의안 2면.

(3) 평 가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심판의 행정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심사의 세부평가기준 방법을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²³⁾

또한 면담을 실시하여 난민을 지원하고²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에게 교부하여 신청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처분 결과를 수용하거나 불복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²⁵⁾

다만, 공개주의 원칙은 난민신청자의 신변이 노출되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행 「난민법」 제23조도 심의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²⁶⁾

3. 2015년 3월 9일 이원욱의원 등 11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 등은 그 자녀에 대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 등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²⁷⁾

2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5. 2. 4면.

24) 위의 검토보고서, 7면.

25) 위의 검토보고서, 9면.

26) 위의 검토보고서, 11면.

27) 의안번호 1420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5. 3. 9, 1면.

(2) 경 과

2015년 7월 15일 제33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와 2016년 2월 1일 제3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별다른 토의 없이 처리되지 않았다.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평 가

현행 「영유아보육법」²⁸⁾ 및 「유아교육법」²⁹⁾에 따라 국민에 대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내부 ‘사업지침’³⁰⁾을 통하여 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일하게 무상 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³¹⁾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현행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무상 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었다.³²⁾

28)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29)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30) 각 년도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사업지침 참조.

3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제14201호), 검토보고서, 2015. 7. 4면.

32) 위의 검토보고서, 5면.

그리고 현행 「난민법」이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난민신청자에게까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국가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³³⁾

다만, 검토보고서는 현행 법 제43조가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³⁴⁾

4. 2015년 5월 22일 홍익표의원등 10인 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자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³⁵⁾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단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³⁶⁾

(2) 경 과

이 개정안은 2015년 5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2016년 5월 29일에 의원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3) 위의 검토보고서, 5면.

34) 위의 검토보고서, 7면.

35) 의안번호 1523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22, 1면.

36) 위의 의안 3면.

(3) 평 가

검토보고서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⁷⁾

이에 덧붙여서 법 제41조³⁸⁾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³⁹⁾는 동 주거시설(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난민신청자 등’으로 규정하여 실제로는 인도적체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든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교육보장 규정에 준하여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인정하는 규정 등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없는 내용은 동 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⁴⁰⁾

5. 2015년 6월 18일 원혜영의원 등 10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37)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15234호), 검토보고, 2015. 11, 10면.

38)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0) 위의 의안, 10면.

첫째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위한 사전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기준의 법률 명시, 회부결정서 교부,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지원 과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전화통화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심사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¹⁾

둘째로,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난민신청자들의 기억 이외에도 소지한 자료를 참고해서 진술하거나 스스로 진술내용을 메모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여 난민이 난민상황을 입증해줄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⁴²⁾

셋째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⁴³⁾

(2) 경 과

이 법률안인 2015년 6월 19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었을 뿐이다. 그 이후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평 가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먼저 첫 번째 논점인 불회부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⁴⁴⁾의 내용을 법률로 격상

41) 의안번호 156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18, 1면.

42) 위의 법률안 의안원본, 2면.

43) 위의 법률안 의안원본, 같은 면.

44) 제 5 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⁴⁵⁾ 다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통지를 ‘회부결정서 교부’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인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6항⁴⁶⁾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⁷⁾

또한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⁸⁾

둘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전화 등 통신설비의 이용이나 의료지원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⁴⁹⁾

또한 난민이 메모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면접과정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검토보고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주장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⁵⁰⁾

셋째, 인도적체류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이는 「난민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규정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45)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제15648호), 검토보고서, 2015. 12. 6면.
- 46) 제 5 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47) 앞의 검토보고서, 7면.
- 48) 위의 검토보고서, 13면.
- 49) 위의 검토보고서, 15면.
- 50) 위의 검토보고서, 17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⁵¹⁾

6. 2015년 6월 18일 홍일표의원 등 13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서 면접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상 위법에 대한 통제와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와 이의신청기간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처분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⁵²⁾

(2) 경 과

2015년 6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2월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그 이후 별다른 논의없이 2016년 5월 29일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3) 평 가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첫째, 면접과정에서 난민들에게 자신의 대화나 모습이 녹음 또는 녹화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⁵³⁾

둘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난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는 법치주의

51) 위의 검토보고서, 20면.

52) 의안번호 156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5. 6. 18, 1~2면을 요약함.

5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15649호) 검토보고서, 2015. 12, 5면.

원칙상 국가행정작용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⁵⁴⁾

셋째, 난민불인정통지서 내용의 통·번역의무신설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다.⁵⁵⁾

넷째, 「난민법」 시행 이전에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난민법」의 지원규정 등을 소급해 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으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소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⁵⁶⁾

7. 2015년 6월 19일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지원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⁵⁷⁾

(2) 경 과

2015년 6월 22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 제338회 임시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54) 위의 검토보고서, 7면.

55) 위의 검토보고서, 10면.

56) 위의 검토보고서, 12면.

57) 의안번호 156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1면.

(3) 평 가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가족결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상 난민의 가족은 모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 난민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모두 난민인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마련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동시에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각각 난민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역시 준용규정을 마련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었다.⁵⁸⁾

8. 2015년 8월 19일 강기정의원 등 14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의료지원 등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리 침해 소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거시설이나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⁵⁹⁾

(2) 경 과

2015년 8월 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 제338회 임시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5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제15663호) 검토보고, 2015.12, 4면.

59) 의안번호 16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015. 8. 19, 1면.

(3) 평 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볼 때 시설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어 가급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⁶⁰⁾

9. 2015년 11월 16일 유승희의원 등 10인 개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난민법」의 성(性)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성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성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⁶¹⁾

(2) 경 과

2015년 11월 17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 제338회 임시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평 가

검토보고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사회적 의미로서 성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²⁾

60)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제16483호) 검토보고서, 2015.12, 4면.

61) 의안번호 1775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5. 11. 16, 1면.

62)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17759호) 검토보고서, 2015.12, 2~3면.

10. 2016년 6월 17일 박명재의원등 17인 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보장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난민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⁶³⁾

(2) 경 과

이 개정안은 2016년 6월 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까지 상정 중에 있다.

(3) 평 가

현재와 같이 재외국민기본법상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난민정책을 규정할 수도 있으며, 난민정책을 「난민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과 같이 「난민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검토 보고가 제출되었다.⁶⁴⁾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19대 때 제안하였던 것을 다시 제안한 개정안이다.

11. 2016년 6월 21일 홍일표의원등 10인 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서 면접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상 위법에 대한 통제와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류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와 이의신청기간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 또는 번역

63) 의안번호 30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1면.

6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검토보고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6. 11, 10면.

을 하여 처분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⁶⁵⁾

(2) 경 과

2016년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3) 평 가

이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홍일표의원이 제안한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평가도 그 당시와 같다.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첫째, 면접과정에서 난민들에게 자신의 대화나 모습이 녹음 또는 녹화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⁶⁶⁾

둘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난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는 법치주의 원칙상 국가행정작용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⁶⁷⁾

셋째, 난민불인정통지서 내용의 통·번역의무신설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다.⁶⁸⁾

넷째, 「난민법」 시행 이전에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난민법」의 지원규

65) 의안번호 38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1~2면을 요약함.

66)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385호) 2016. 11.

67) 위의 검토보고서, 9면.

68) 위의 검토보고서, 13면.

정 등을 소급해 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으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재정적 소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⁶⁹⁾

12. 2016년 8월 31일 홍익표의원등 10인 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자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⁷⁰⁾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단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함.⁷¹⁾

(2) 경 과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까지 계류 중에 있다. 회의록에서는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과 국민 간의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간단한 소개만 기록되어 있다.⁷²⁾

(3) 평 가

이 법률안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홍익표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재제출한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당시와 같다.

69) 위의 검토보고서, 17면.

70) 의안번호 198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8. 31, 1면.

71) 위의 의안 3면.

72) 제34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06. 11. 22, 27면.

검토보고서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³⁾

이에 덧붙여서 법 제41조⁷⁴⁾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⁷⁵⁾는 동 주거시설(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난민신청자 등’으로 규정하여 실제로는 인도적체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든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교육보장 규정에 준하여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인정하는 규정 등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없는 내용은 동 법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⁷⁶⁾

13. 2016년 9월 8일 황주홍의원등 12인 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위원회 위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처벌규정을 보완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즉,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

7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1982호), 검토보고서, 2016. 11, 10면.

74)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76) 위의 검토보고서, 10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안 제48조 신설).⁷⁷⁾

(2) 경 과

이 개정안은 2016년 11월 22일 제346회 정기회 국회 제8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2016년 11월 28일 제346회 정기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및 2016년 11월 30일 제9차 전체회의를 거쳐서 2016년 12월 1일에 원안이 가결되어 2016년 12월 20일 공포번호 14408호로 공포되었다.

「난민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2014년에 타법개정을 거친 것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은 이 법률안에 의한 개정이 유일하다.

(3) 평 가

검토보고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⁷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⁷⁹⁾

또한 검토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동 개정안의 경우, 난민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은

77) 의안번호 22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6. 9. 8, 1면.

7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6 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2225호) 검토보고서, 2016. 11, 5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 또는 취소·철회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서, 비록 난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실될 경우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수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⁸⁰⁾

II. 「난민법」 개정 관련 분석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인정 절차에서 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있었다.

그 중에는 메모 등을 사용가능하게 하자는 내용, 난민심사과정상의 대화나 모습이 녹음 또는 녹화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여 중요성을 인식시키자는 내용 등 공정한 난민심사과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관한 입법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개정의견은 그 동안 난민의 개인적인 진술, 기억, 태도 등으로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우리 난민인정절차의 한계를 인식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제도의 절차적 보완에 관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지금의 「난민법」이 규정한 장소이외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불회부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 법률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80) 위의 검토보고서, 6면.

셋째, 처우와 관련해서는 인도적체류자는 직업활동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보완하자는 입법대안이 제시되었다.

체류자격의 형식을 본다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다른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인도적체류자도 사실상의 난민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전체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률안이라고 평가된다.

제5절 난민 관련 현황

I. 난민 관련 국제 일반현황

유엔난민기구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전 세계의 난민과 난민유사 비호신청자, 귀환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등등이 모두 67,749,838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자 중에서 난민은 17,187,488명으로 집계하고 있다.⁸¹⁾

난민이 협약상 난민으로 개념포섭대상이 매우 좁다는 측면에서 비호신청자는 실질적인 난민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현황을 보면 난민 및 비호신청자 등 보호대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프리카이며, 그 다음으로 중동과 유럽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협약상의 난민은 유럽이 제일 많다는 점에서 난민협약이 유럽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실향민을 보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잠재적인 난민 또는 비호신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81) 유엔난민기구 한국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2.html> 최종방문일 2017. 9. 10.

<표> 전세계 보호대상자 현황⁸²⁾

	난민	비호 신청자	귀환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기타	합계
중동	2,681,971	183,598	3,421,084	12,129,833	372,461	21,394	18,810,341
중남미(카리브 해연안 포함)	322,403	88,056	204	7,584,816	2,460	63,330	8,061,269
유럽	5,199,942	1,397,587	656	3,004,851	570,534	84,451	10,258,121
아프리카	5,315,083	450,201	2,282,443	11,158,956	715,089	438,555	20,180,297
아시아	3,477,828	140,482	1,358,887	2,748,671	1,581,663	195,404	9,502,935
북미	370,291	566,584	-	-	-	-	936,875
합계	17,187,488	2,826,508	7,063,374	36,627,127	3,242,207	803,134	67,749,838

<표> 2014년 난민 지위 인정률⁸³⁾

국가	난민지위 인정률(%)
독일	41.6
스웨덴	76.7
이탈리아	58.5
스위스	70.5
프랑스	21.6
네덜란드	66.7
영국	38.6
벨기에	39.5
불가리아	94.2
덴마크	67.7
노르웨이	63.9
그리스	14.8
스페인	43.8
핀란드	54.0
몰타	72.6

82) 위의 홈페이지 보호대상자 현황, 위와 같은 날 방문.

83) 박선희, “프랑스의 난민정책 : EU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 제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16, 30면에서 재인용.

국 가	난민지위 인정률(%)
키프로스	76.2
루마니아	46.7
폴란드	26.7
헝가리	9.4
아일랜드	37.7

II. 「난민법」 제정 이후 국내 현황

1. 난민인정현황

<표> 연도별 난민심사 현황⁸⁴⁾

	신 청	심사 종료(13,393)			심사중(6,861)		철회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계	22,792	672	1,156	11,565	3,715	3,146	2,538
94~03	251	14	13	50	0	0	39
2004	148	18	1	7	0	0	9
2005	410	9	13	79	0	0	29
2006	278	11	13	114	0	0	43
2007	717	13	9	86	0	0	62
2008	364	36	14	79	0	0	109
2009	324	70	22	994	0	0	203
2010	423	45	35	168	0	0	62
2011	1,011	42	20	277	0	0	90
2012	1,143	60	31	558	0	1	187
2013	1,574	57	6	523	0	0	331
2014	2,896	94	539	1,745	129	241	363
2015	5,711	105	194	1,835	511	976	280
2016	7,542	98	246	5,050	3,075	1,928	731

84)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 자료집,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유엔난민기구 한 국대표부, 2017. 6. 19, 188면에서 인용.

연도별 난민심사 현황을 보면 2004년 이전에는 14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이전에는 2009년을 제외하면 한 해 동안의 난민인정자가 5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4년부터 대폭 늘어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 해 동안 100여명 안팎으로 난민인정을 받고 있다.

첫째, 난민인정자의 숫자가 늘었다. 「난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100여명 안팎으로 난민인정자의 수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 수에 비하면 난민인정자의 수가 100여명으로 고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난민법」 제정 이후인 2014년 이후로는 인도적체류자의 숫자도 늘어났다. 2014년의 경우에 시리아 난민에 대한 특별한 현상으로 인도적체류자가 539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모두 난민보다는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하는 숫자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보면 한국 난민심사과정이 협약난민 요건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보충적인 적용인 인도적체류자로 실질적인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최근 5년간 인정자 분류⁸⁵⁾

구 분	신 청	인 정						
		전체	1차 심사	이의 신청	재정착	가족 결합	법무부 소계	행정 소송
2012	1,143	60	25	-	-	20	45	15
2013	1,574	57	5	9	-	33	47	10
2014	2,896	94	18	53	-	20	91	3(2)*
2015	5,711	105	13	27	22	43	105	0
2016	7,542	98	17	10	34	34	95	3

85) 이슬, “난민 인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2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38면에서 인용.

셋째는 가족결합을 제외하고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 즉,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수는 2012년 25명, 2013년 5명, 2014년 18명, 2015년 13명, 2016년 17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난민불인정 처분 이후 1차 심사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에 전체 난민인정자인 94명 중에 이의신청으로 난민을 인정받은 경우가 53건이 나 있었다. 이 당시에는 「난민법」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요건을 해석하는 등 난민심사과정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난민인정자 중 가족결합을 제외한 새로운 난민신청인정자는 4명인데, 여전히 이의신청으로 난민인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도에도 전체 난민인정자 98명 중 3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4명이 가족결합 난민이며, 사실상 새로운 난민인정자는 1차 심사에서 17명 그리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10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이미 난민인정을 받은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난민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위의 표가 보여주고 있다.

2. 난민신청자 현황

<표>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⁸⁶⁾

	신 청	심사종료(13,393)			심사중(6,861)		철회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계	22,792	672	1,156	11,565	3,715	3,146	2,538
파키스탄	3,601	47	27	2,106	414	563	444

86)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 자료집,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유엔난민기구 한 국대표부, 2017. 6. 19, 189면에서 인용.

	신 청	심사종료(13,393)			심사중(6,861)		철회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이집트	2,503	11	3	1,471	328	506	184
중국	2,226	8	31	1,218	555	210	204
나이지리아	1,345	3	5	1,002	84	161	90
시리아	1,223	4	874	13	241	3	88
기타	11,894	599	216	5,755	2,093	1,703	1,528

난민신청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난민신청자의 수가 대폭 늘었다. 「난민법」 시행이후 난민신청자가 대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났다는 국제적 상황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적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난민신청자는 매년 백 명 정도였으나, 「난민법」 제정 무렵인 2012년부터 난민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⁸⁷⁾

계	'94 ~'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2,792	1,807	717	364	324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7,542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협약난민요건인 5가지 사유이외의 기타 사유에 의한 신청이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난민대상자 보다는 인도적 체류신청으로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다.⁸⁸⁾

87) 위의 자료집 같은 면.

88) 한국 「난민법」상에는 인도적 체류신청이 난민신청과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직권으로 인도적체류자 허가를 주고 있다.

<표> 사유별 난민인정(보호) 신청 현황⁸⁹⁾

구 분	계	종 교	정치적 사유	특정 구성원	인 종	국 적	기 타
총 누계	28,381	6,777	6,421	3,123	1,795	71	10,194
2017년	5,590	1,510	898	609	400	15	2,158

2017년까지 난민신청자의 총수는 2만 8천건이 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2017년 8월말까지의 출입국향 난민신청자는 785명에 불과하다.⁹⁰⁾

즉, 난민신청자 중에 대부분은 국내 거주 난민신청자들이다. 우리 「난민법」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주 노동자 중 상당수가 출국이전에 난민신청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난민법」 시행이후 대폭 증가한 난민신청자들은 거의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표> 체류기간 내 또는 도과이후의 난민신청자 현황⁹¹⁾

	계	체류기간내 신청자	체류기간 도과 후 신청자
전체 신청자	22,792	14,626	8,166
2016년 신청자	7,542	4,568	2,974

법무부 등에서는 난민요건자가 아닌 경우에도 난민신청을 하는 현상을 두고 「난민법」의 남용적 행위로 보고 있지만 「난민법」 자체가 난민의 요건을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어

8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7. 8, p.33.

90) 하용국,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 난민인권 토론회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자료집, 심기준의원실·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7. 9. 26, 12면.

91) 위의 자료집 196면. 표15. 난민인정 신청 시 합법/불법 현황

서 요건 아닌 자가 인도적 체류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생계비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매우 일부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나 통계가 발표된 바는 없다.

이주노동자가 귀국을 앞두고 박해의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체류기간이 초과하거나 귀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난민신청기간에 대하여 「난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요건 발생 후 일정기간 동안으로 난민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난민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항으로 신청자의 지위를 정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입국 이후 일정한 난민신청 기간을 두거나, 난민신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Ⅲ. 난민처우 현황

난민인정자 중에 기초생계비 또는 여러 사회보장지원을 받는 경우에 통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난민 중 상당수는 고국을 떠나오면서 여러 가지 박탈과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비호국에서도 최저 경제수준에 일정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의 의미는 단순히 체류허가만이 아니라 처우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난민협약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최소한 비호국 내의 다른 외국인과 동등한 또는 우선한 지원을 받도록 협약은 규정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액은 매년 법무부고시의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⁹²⁾

<표> 난민신청자의 기초생계비 지원⁹³⁾과 생계급여의 금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2014년	382,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2015년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2016년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2017년 ⁹⁴⁾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생계급여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비 급여액수는 국민들이 받는 생계급여보다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국민들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 국민들이 받는 생계비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한다고 하여서 「난민법」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최저생계비가 의미하는 바가 최저생활의 유지라는 점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이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한정된 수에 그치고 있다. 최근 난민신청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생계비 지원대상도 점차 그 수를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4년도에는 88명이었으

92)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93)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70% 상당액 지급한다. 위의 법무부고시에서 인용하였다.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9,600	510,160	660,100	809,000	959,700

94) 법무부고시 제2016-384호, 2017년 생계비 지원액에서 인용함.

나, 2015년에는 130명, 그리고 2016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났다.⁹⁵⁾

생계비 지원 대상의 확대는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표-에서 보듯이 난민신청자의 수가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자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난민신청자 중에서 2014년에는 3%, 2015년에는 2.2%, 2016년에는 2.6%에 불과하다.

<표>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대상자 현황

계	2014	2015	2016
22,792	2,896	5,711	7,542
	88	130	200
	3%	2.2%	2.6%

모든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도 지원대상자 한도를 모두 채워서 가령 2016년도의 매달 200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난민신청자 중에 생계비신청 대비 지원자를 생각해 보면 이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 줄 것이다.

다만, 위 표의 결과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난민법」 규정과 이를 운용하는 예산배정이 얼마나 형식적이며, 장식(粧飾)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95)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견수렴안, 법무부, 2017. 10. 12, 297면

제3장 규범적 분석 : 「난민법」의 체계성·효과성 분석

제1절 체계성 및 목적조항의 분석

제2절 난민인정절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제3절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제3장

규범적 분석 : 「난민법」의 체계성 · 효과성 분석

제1절 체계성 및 목적조항의 분석

I. 「난민법」의 체계성 분석

1.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난민인정절차와 처우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난민의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난민의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도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난민법」은 일반적인 외국인 행정과 다른 법적 절차와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난민행정은 출입국관리행정과 다르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정책 및 출입국정책의 예외로서 난민행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난민은 다른 이민이나 유학생, 관광객 등과는 다른 절차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출입국관리의 예외로서 「난민법」은 난민인정절차라는 분리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다.

둘째, 「난민법」은 출입국절차만이 아니라 입국 이후의 난민에 대한 기본적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에서 난민을 출입국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이주 노동자 등이 난민을 신청한 경우에 정부는 이를 이른바 ‘가짜난민’이라고 하여 난민신청의 남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체류기간 이후의 이주 노동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민법」상의 관심은 이들이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난민행정은 여전히 출입국관리의 시각에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난민은 이민을 포함한 출입국행정과 다른 측면에서 특별한 국제법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분리하는 것은 법체계상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2. 난민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난민 또한 재한외국인으로서 난민법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5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도 이에 해당된다. 재한 외국인 중에서 난민의 비중이 아직 소수라는 점에서 난민법상의 별개의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국민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상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난민은 이민 등 다른 체류 외국인과 다른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본다면 난민법상 독자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필요할 수 있다. 즉, 난민법에 난민을 위한 독자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목적 조항의 분석 및 평가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⁶⁾

여기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이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국제규범 내지 국내법규에 의해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에 포함되는 국제법규가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난민법」은 협약상 난민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난민인 경우를 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난민법」은 난민협약상의 협약난민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실질적인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어떤 국제법규에 따른 난민을 인정할지는 넓은 판단여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전쟁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과 관련한 난민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에는 이러한 협약들을 난민의 범주를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난민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석상 이를 인정하게 하는 경우는 「난민법」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협약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법적용의 기준이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협약들에 대해서는 예시사항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기준으로서의 목적조항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난민법」 제정과 집행으로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난민협약 등에 따른 난민인정절차와 처우에 관한

96) 「난민법」 제1조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협약의 내용 및 난민행정이 추구하는 난민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난민법」과 난민행정을 평가해 본다면 몇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발견된다.

첫째, 난민인정률이 낮다라는 점이다. 난민협약에서 특정한 난민인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률은 일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난민인정절차가 엄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난민처우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난민법」은 난민처우에 관해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 규정들이 실제로 난민들이 국내에 적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처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본다.

제2절 난민인정절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I. 인정절차 개관

1. 인정절차의 변화

출입국항에서의 외국인과 대한민국 안의 외국인은 각기 다른 절차에 의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된다. 즉 출입국항 난민신청과 정식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보호의 범주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보충적 보호 및 기타 인도적 보호까지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절차로 국한하는 것은 다소 좁은 범주이다.’⁹⁷⁾

97) 채현영, “대한민국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의 개선방향”, in 난민의 인권과 사법,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의 난민인정심사 그리고 난민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일컬어 난민인정절차로 표현하기로 한다.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경우 「난민법」 제정과 정에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영역⁹⁸⁾으로 「난민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회부결정 사유의 문제와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그 제도와 운용의 정당성을 놓고 나날이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으려면 동법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난민인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들은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제12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통역인이 통역을 담당한다.(제14조) 이외에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난민심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표> 「난민법」 제정 시 난민인정절차 관련 신설조항

조 항	내 용
제5조	난민신청절차(제5조)
제6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6조)
제7조	신청필요정보의 게시(제7조)
제8조 제4항	난민심사관(제8조 제4항)
제8조 제4항	심사절차의 생략제도(제8조 제5항)
제12조	변호(제12조)

법학회, 2017, 31면, 각주 2 인용.

98) 이재강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03면

조 항	내 용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13조)
제14조	통역(제14조)
제8조 제2항	동성의 면접관 요구권(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면접과정의 녹음·녹화요구권(제8조 제3항)
제15조	면담조서의 확인(제15조)
제16조	열람·등사(제16조)
제17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17조)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제20조)
제23조	심리의 비공개(제23조)
제21조	이의신청(제21조)

II.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회부심사)

「난민법」 제 6 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p>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p> <p>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도입

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난민신청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하여야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

만,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⁹⁹⁾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도를 두어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비호 신청을 전제로 임시상륙허가(“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아 상륙 후에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였다.¹⁰⁰⁾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입국 이전에도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서면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환승과정 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이후 출국대기실에서 대기 중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취지¹⁰¹⁾이고, 법원 또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를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확보 내지는 난민제도의 남용적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²⁾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전체 난민신청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5년 난민유입이 폭증함에 따라 출입국항을 통한 난민신청 또한 증가하면서 본

99)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난민 임시상륙허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100) 난민 임시상륙허가는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법」 제정 전에는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등에 근거하여 비호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난민법」 제정 이후 해당 부분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로 수정되었다.

101) 법제사법위원회는 「난민법」상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12.

10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처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2014누52093 판결. 인천지법 2014.5.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의 항소심 판결로서 상고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제도의 취약점이 두드러지는 계기가 되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난민인정제도의 경우 그 절차 및 심사에 대하여 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반해, 「난민법」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서 정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대단히 간략히 기술하고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는 난민인정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거나 또는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 「난민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회부심사에 있어 핵심에 해당하는 불회부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심사결과 입국이 거부 되면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출입국항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2013.7~2015.12 출입국항 난민신청 통계¹⁰³⁾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신청	회부	불회부	심사중
2013.7~	25	15	10	0									1	0	1	0
2014	71	26	45	0	70	26	44	0								
2015	393	284	109	0	6	2	4	0	1	1	0	0				

요컨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의 문제는 난민협약 당사국들의 난민협약상 의무와 국경 통제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으로¹⁰⁴⁾ 이는 난민행정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난민의 절차적·실체적 권리의 대립으로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103)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UNHCR, 2016, 13면.

104) 하정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 in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7, 33면.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회부절차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난민인정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3항) 난민신청의사를 밝히는 시기와 장소에 있어 ‘입국심사를 받는 때’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입국심사대에서의 난민신청 안내문을 실제로 접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이며¹⁰⁵⁾, 또한 강제송환금지 의무준수라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¹⁰⁶⁾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하여 출입국항의 어느 곳에서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대상을 항공사 직원, 세관 공무원 및 모든 출입국 공무원 등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¹⁰⁷⁾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리고 지체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게 한다.¹⁰⁸⁾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여부가 결정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며¹⁰⁹⁾,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105)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전계서, 20면.

106) ‘강제송환의 금지 의무는 특정국가의 국경 및 공해를 포함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 어디에서든지 적용되며, 이는 공항 내의 환승구역이나 출국대기실 등도 포함한다’, 채현영, 앞의 글, 37면.

107) 채현영, 앞의 글, 3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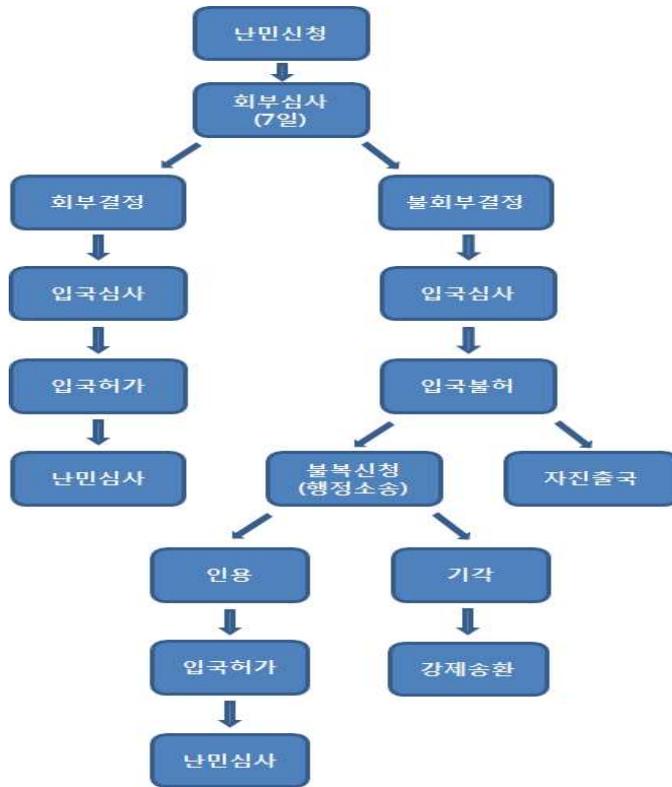
108)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109) “회부결정이 있는 경우 입국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되 다만 입국허가에 조건을 붙일 것인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원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vo.454, 대한변호사협회, 2015, 10면.

110)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6항.

거부되고¹¹¹⁾, 이 경우 강제송환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¹¹²⁾ 규정이 적용되어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된다.

<그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¹¹³⁾



111)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 후 입국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다.

112) 제76조(송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113) https://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RefugeeStatusPorts_pop.htm의 표를 일부수정 최종방문일 2017. 11. 15.

3.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규정 부재 : 불회부결정의 처분성 및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그런데, 현행 「난민법」에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회부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나 처우 등에 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부재하다.¹¹⁴⁾ 난민위원회의 심사 또한 난민불인정 처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서만 그 구제여부를 다룰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입국불허됨에 따라 강제송환이 예정되었을 때, 불회부 결정, 입국거부, 강제송환 이 세 가지 절차 중 어떠한 처분에 근거하여 다룰 수 있는가이다.

법무부는, 불회부결정은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하여 행정법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¹¹⁵⁾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3.1.17. 선고 2012구합2014 판결에서는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서울행정법원 2013.5.10. 선고 2012구합41103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3.19. 선고 2013누17321) 및 인천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입국이 허가된 난민인정신청자가 불인정결정을 받게 되면 불인정결정과 강제퇴거명령 모두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자는 불회부결정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다.¹¹⁶⁾

114) 김종철·김재원,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공익과 인권, vol.12, 서울대학교, 2012, 168면 참고.

1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4)축조식 「난민법」 해설집, 서울:생각심포:휴먼아리랑, 2015, 32-33면.

116)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성원제, 앞의 글, 6-18면.

이러한 구조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과도 연결되는데,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¹¹⁷⁾ 절차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76조 및 제64조¹¹⁸⁾에 따른 송환이 결과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자체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출입국항에서 입국 허가된 난민신청자와 그렇지 않은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에 관한 구제에 있어 차등적 대우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등적 대우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닌데서 출발하는 것으로도 새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외국인이 법률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처분이 불필요하다는 구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물리적으로 도착한 이상 ‘입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¹¹⁹⁾

요컨대 입국 거부된 난민신청자의 경우, 입국 허가된 난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불인정결정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117) 「출입국관리법」 제46조.

118) 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삭제

119) 하정훈, 앞의 글, 41-42면.

4. 회부심사 관련

(1) 불회부 사유의 시행령으로의 위임 관련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난민법」 제6조에서는 회부심사 기간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의식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회부 사유에 관한 실제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절차에서 행정청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불회부사유는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제6조에서는 그 윤곽도 정하지 않은 채 단지 위임근거에 대하여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조항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난민법」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위임의 범위 내에 합치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¹²⁰⁾ 이와 같이 「난민법」 제6조는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그리고 불회부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성격상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불회부사유에의 해석 관련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사유로 해석하여 이에 대하여는 크게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유효한 불회부사유인지 불회부사유에 관한 규정체계의 헌법, 「난민법」, 난민협약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된다.¹²¹⁾

120) 최계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in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7, 70면.

「난민법」 시행령 제 5 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p>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u>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7. <u>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u>

불회부사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사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불회부사유로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이다. 이는 행정청에서 불회부결정을 내릴 때 가장 빈번하게 원용되는 사유인데 그만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는 난민인정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본 제도가 「난민법」에서 도입된 취지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²²⁾

121) 최계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69-70면.

122) 출입국항에서 난민의 요건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경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난민의 요건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그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높다. 하정훈, 앞의 글, 35면.

다시 말해, 일단 입국이 허용된 후에 진행되는 난민인정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난민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신청의 사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에서 불회부 사유 중 일부는 난민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예정하는 규정인 까닭에 불회부사유를 형식적 요건 위주로 취소화하여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난민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¹²³⁾

그러나, 이에 반해, 유엔난민기구는 제7호 이외의 사유들은 모두 단기간의 회부절차에서 심사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4호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대하여 ‘안전한 제3국’의 개념이 보호 필요성이 있는 비호신청자에게 비호절차로의 접근과 입국을 모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암시성 때문에 난민 협약과 충돌된다고 본다.¹²⁴⁾

<표> 유엔난민기구(UNHCR)의 불회부사유에 대한 해석¹²⁵⁾

	불회부사유	UNHCR의 의견
제1호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의 추방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협약의 해당 규정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임 해당 신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우선 난민인정심사를 통하여 난민정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
제2호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신청인들의 언어능력, 교육수준, 통역, 나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제약과 이들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예, 인신 매매 피해자, 젠더폭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123)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2016, 1면.

124)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의 의견, 2013, 8-16면. 법무부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에서 재인용. 30면.

125) 채현영, 앞의 글, 38-39면 정리.

	불회부사유	UNHCR의 의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국내에서의 거주지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구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지 등의 제한을 임시적으로 두거나 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이 사유는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로 인한 처벌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1조와 배치될 수 있음. 난민인정절차가 단계가 아닌 회부절차에서 불회부 사유로 이를 둔 것은 모든 거짓 서류를 이용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자를 절차를 남용하는 자로 암묵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함. 또한 많은 비호신청자들이 본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이용하고 있고, 과거 경험 등을 이유로 정부당국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입국시도시점에서부터 거짓 서류 이용 여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제4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안전한 출신국’ 개념을 국내 난민인정심사 절차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회부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특히 안전한 국가의 지정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정 신청인이 안전한 제3국을 거쳐서 입국했다더라도 모든 비호신청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위해 비호신청 절차로의 접근이 제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비호신청자에게 공정한 심사가 보장될 수 없는 국가로의 송환이 발생해서는 안됨.
제5호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신청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 혹은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함. 특히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회부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제6호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호에 대한 의견과 동일

	불회부사유	UNHCR의 의견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의 의미가 충분히 명시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해당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고자 함임. 특히 난민신청 차유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유를 함께 동반하는 입국사유를 밝힐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의 지위

(1) 난민신청자의 범위

「난민법」 제2조 정의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회부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장치를 비롯하여 출입국항에서의 처우 및 구금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한 실정이다.¹²⁶⁾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무부가 「난민법」 제정 당시 불회부결정을 내부결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배제한데서 비롯된 입법적 공백으로 보인다.¹²⁷⁾

이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는 현재의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난민신청자)의 정의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한 모든 비호신청자를 포함하는 용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¹²⁸⁾

126) 앞의 난민의 인권과 사법, 36면.

127) 앞의 축조식 「난민법」 해설집, 32-33면

128) 앞의 난민의 인권과 사법, 36면.

<표>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¹²⁹⁾

	계	인천공항 (회부)	제 주 (회부)	김 해 (회부)	동 해 (회부)
계	187(61)	168(57)	11(4)	7(0)	1(0)

(2) 처우 및 구금

현행 「난민법」은 불회부결정 이후의 절차나 처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¹³⁰⁾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불회부결정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경우 법적근거 없이 출국대기실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불법구금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Ⅲ. 국내 체류 중의 난민인정 관련

1. 난민의 인정요건

(1) 「난민법」상 난민의 개념

「난민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의 개념은 난민협약과 의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129) 2016년 난민관련 통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0&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최종방문일 2017년 10월 4일

130)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난민인정에 있어 지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협약과 의정서에서는 박해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인정은 사실상 정부와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유 등을 기준으로 박해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박해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넓게 새길 것인지는 법집행과 그 적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난민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박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2007년 서울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6누5467 판결은 난민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적인 정신을 강조하는 등 난민협약의 본질적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심사 절차

(1) 난민인정의 신청

1) 난민인정 신청

대한민국에 체재 및 체류 중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법 제5조 제1항) 난민신청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2)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① 동성의 면접관 요구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②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또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제3항)

그런데 본 조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우선, 난민면접 과정에서 녹음 또는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되 신청자가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녹음이나 녹화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것을 제안한다.¹³¹⁾ 다음으로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민불인정결정서만 통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배제하자는 것이다.¹³²⁾ 이에 대하여 정부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형사절차에

131) 이호택, “「난민법」 개정 쟁점정리”,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2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10면. 난민지원네트워크의 의견이며 홍일표 의원안에서 녹음 또는 녹화 신청권 고지를 제안한 바 있다.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수사의 유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한 증거법칙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입증책임 아래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 여부를 판단하는 난민심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¹³³⁾ 그러나 '난민심사의 성격이 형사절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난민심사관이 행하는 증거의 수집 및 그 적용 역시 적법하게 수집·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실무적 차원에서 “증거”라는 표현을 “자료”로 수정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난민지원네트워크의 주장이다.¹³⁴⁾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조항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에 관한 「난민법」 제9조인데, 동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행정가로서 부담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를 명시한 것인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관한 조항을 같이 명문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난민의 절차적 권리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③ 통번역의무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제14조) 이에 대하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에서는 현재 난민불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할 때 한글과 영어로 불인정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예산 및 인력 등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불인정통지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절차적 안내 등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랍어, 프랑스어 등 최소한의 주요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난민신청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132) 이호택, “「난민법」 개정 쟁점정리”, 위의 글, 11면.

133) 전문위원 임재주 검토의견, in 이호택 “「난민법」 개정 쟁점정리”, 위의 글, 11-12면.

134) 이호택, “「난민법」 개정 쟁점정리”, 위의 글, 12면.

④ 자료 등의 열람·복사

법 제16조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사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난민인정 심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다.(제8조 제1항) 면접 및 심사는 지역관할에 따라 거점 사무소로 지정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되는데¹³⁵⁾, 「난민법」이 제정되며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제8조 제4항¹³⁶⁾)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3조)

4. 난민의 인정결정 및 불인정결정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 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제18조 제1항)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제18조 제4항),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제18조 제6항)

135)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수 출입국사무소 및 화성, 청주 외국인보호소 등 10개가 있다.

136) 제 8 조(난민인정 심사)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p>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인정의 제한과 별도로 법 제22조에서는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또한 난민신청자가 a)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b)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c)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d)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e)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f)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및 제3항)

IV. 이의신청 관련

1. 이의신청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된다.(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21조 제2항)

「난민법」 제21조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

「난민법」 제21조

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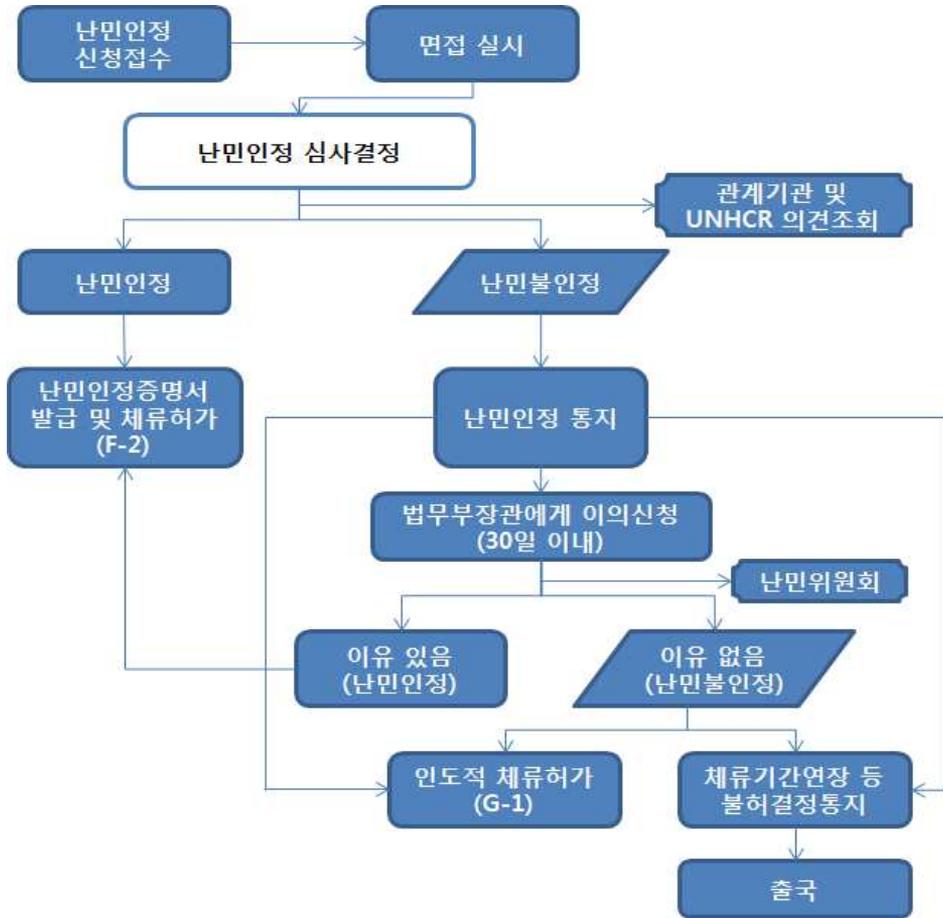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7항 및 8항)

한편,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또는 그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인도적체류자’로 보호하고 있다. (법 제2조 제3호¹³⁷⁾)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도 난민지위의 불인정이 통보되는 까닭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난민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37) 「난민법」 제2조 제3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그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심사 절차¹³⁸⁾



2. 난민위원회

(1) 난민위원회의 구성

최근 3~4년 사이 난민신청건수 및 관련 소송 또한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운영되는 난민 관련 행정부와 사법부의 노력과 부담 또한 배가되었다. 특

138) 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RefugeeStatus_pop.htm 최종방문일 2017. 11. 15.

히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고 있는 난민위원회는, 구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인정협의회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난민법」 제25조 내지 제28조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1기 난민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영되었고, 제2기 난민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된다.

난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¹³⁹⁾ 그리고 난민위원회는 1차 심사와는 별도의 난민조사관을 두어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검토한다.(제21조 제4항)

난민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난민법」 시행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방첩단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난민법」 제26조(위원의 임명)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139)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난민위원회의 업무부담

난민위원회의 개최 회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1인당 심사건수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더욱이 비상설기구여서 현재처럼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는 효율성 및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난민위원회의 15명 비상근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이 방대하여 난민신청 이유와 국적국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는 데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¹⁴⁰⁾

<표> 2016년 난민위원회 개최현황¹⁴¹⁾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소집시기	3월	5월	6월	9월	10월	12월
심사인원	777	563	459	501	896	1,151

(3) 난민심판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현행 「난민법」상의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난민위원회가 법무부 산하기구인 까닭에 실질적으로 심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법원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다수의 난민 인정신청자가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를 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의기구와 심의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

140) 한건수, “난민위원회의 운영과 개선방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3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1면.

141) 2016년 난민관련 통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0&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최종방문일 2017. 10. 4.

하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난민심판전문기관(난민심판원)의 설립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기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⁴²⁾ : a) 난민심사관 및 심판관, 통번역인력의 교육과 업무훈련 기능 포함여부, b) 난민위원회와 (가칭)난민심판원의 통폐합시 난민인정 업무 포함여부, c) 난민위원회의 기능확대가 아닌 (가칭)난민심판원으로 할 경우 1심 기능여부, d) 중앙난민이의신청과 출입국항이의신청 제도의 분리 운영 필요여부, e) 심판장 직권에 의한 진술기회 부여 및 흠결보정 기회제공, 새로운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 f) 서류작성시 외국어신청서와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 인정여부, g) 난민신청 면접과정 외에도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도 통역을 받은 권리 인정여부, h) 난민심사관의 난민조사에 관한 기능 강화여부, 난민조사관 제도여부, I) 난민심판정의 합의제 구성여부(3인 또는 5인, 간이심판은 1인), j) 난민심사관 및 심판관, 심판장의 자격 요건 제한사항, l) 난민지위불인정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외연적 고려사항 등이다.

(4) 난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난민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회의 기록, 심의사례, 위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⁴³⁾

V.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점

1. 1차 심사 관련

2016년 7,54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차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17명으로 1차심사에서 인정받는 확률은 매우 낮다. 난민인권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에 투입되는

142)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법무부, 2017, 184-191면.

143) 송영훈,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 사례,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법무부·유엔난민기구, 2016, 55면.

담당공무원은 총 32명이다. 이는 서울사무소 난민과 TF10명과 광주사무소 난민심사 TF 1명이 포함된 수치이다. 7천명에 육박하는 난민신청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2016년 기준 1차 심사결정기간은 약5개월인데¹⁴⁴⁾ 「난민법」 시행 이후 심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면서(1회 연장가능) 절차적 신속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보호’라는 난민인정절차의 근본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1차 심사에서의 통번역 제공을 강조한다.¹⁴⁵⁾ 의사소통 문제는 난민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단계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¹⁴⁶⁾

사무소	서울	인천 공항	부산	광주	대구	제주	화성 보호소	여수 보호소	계
인원	22*	3	1	2**	1	1	1	1	32

*서울 22명에는 TF 10명 포함

**광주 2명에는 TF 1명 포함

2. 심사절차 생략의 문제

「난민법」 제8조 제5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144)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nancen.org/1604?category=118980> 최종방문일 2017. 11. 15.

145) 채현영, 앞의 글, 41면.

146) 난민인권센터 통계, <http://nancen.org/1604?category=118980> 최종방문일 2017. 11. 15.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난민법」 제8조 제5항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그러나 제1호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박해를 받은 경험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짓말 때문에 사실조사 또는 면접을 생략하는 것은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⁷⁾ 이어 제2호 사유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의 여부는 면접과 사실조사를 통하여서만 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¹⁴⁸⁾ 마지막으로 제3호 사유에 대해서도 간이절차로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는데, 우선,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 등이 이유로 난민신청이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강제퇴거 대상자가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심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⁹⁾

이와 같은 간이절차에 관해서 본래 ‘간이절차는 난민신청자가 충분하고 명백한 난민요건을 갖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난민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의 간이절차는 오히려 난민신청과 인

147) 김종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2012, 31면.

148) 위의 글, 31면.

149) 위의 글, 31면.

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¹⁵⁰⁾ 더욱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면접 조사 과정을 생략하는 간이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¹⁵¹⁾

3. 재신청의 문제

난민불인정결정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이루어지는 재신청에 대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며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물론 난민사유 없이 반복되는 재신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상 옳다. 그러나, 이를테면 해당 국가의 상황 변경 등 재신청 사유에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였거나, 심사과정상의 오류의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난민법」에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신청자와 재신청자의 체류 자격 등에 차별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재신청 관련하여 입법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¹⁵²⁾ 요컨대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 비호국의 예처럼 1차 및 2차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VI. 소 결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정식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난민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입국 이전에도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150) 앞의 임현,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 법제처, 2014, 39면.

151) 임현, 위의 글, 41면.

152) 채현영, 앞의 글, 41-42면.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난민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경우 「난민법」 제정과정에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영역으로 제도와 운용의 정당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회부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에 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회부심사에 있어 핵심에 해당하는 불회부결정의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회부사유의 해석 관련, 일단 입국이 허용된 후에 진행되는 난민인정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난민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신청의 사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심사결과 입국이 거부되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출입국항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금된 상태에 놓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다섯째, 「난민법」 제2조의 정의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인의 지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부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장치를 비롯하여 출입국항에서의 처우 및 구금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제12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통역인이 통역을 담당한다. 이외에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난민심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통번역의무 등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난민법」 시행 이후 심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면서 절차적 신속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1차심사에서 단계에서 통번역이 제공되면 난민의 실질적 보호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법」 제8조 제5항에서는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두고 있는데 실제 난민행정에서 남용적 신청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이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난민불인정결정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모두 거쳐 이루어지는 재신청 제도 관련하여 재신청 사유에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거나, 심사과정상의 오류의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난민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업무부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최근에 난민신청건수 및 관련 소송 또한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위원 1인당 심사건수의 부담이 과중하여 심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난민위원회의 구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난민법」 시행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법무부 산하기구인 난민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가칭)난민심판원의 설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I. 처우에 관한 조항 개관

1. 처우 조항의 변화

「난민법」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는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정 이전의 「출입국관리법」은 2008년에 난민처우에 관한 3개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2010년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만 있었다.

이 조항들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에서 난민 등의 처우, 동법 제76조의9의 난민등의 지원, 동법 제76조의10의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규정 등이다.¹⁵³⁾

153) 제76조의8(난민 등의 처우) ①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서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

2.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제76조의9(난민 등의 지원) ①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난민지원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2.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3. 의료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76조의10(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현재의 「난민법」에도 조문의 위치만 이동한 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제76조의8 제1항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와 처우보장	제30조 제1항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제2항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인 고려에 따른 체류허가	제2조 제3항 인도적체류자에 관해서 정의조항으로 이동
제3항 법무부장관의 취업허가 대상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 신청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조항에서 취업활동허가 제40조 제2항 난민신청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지난 경우
제76조의9	
제1항 난민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지원시설	
제2항 난민지원시설의 업무 한국어 교육 및 직업상담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 이외의 필요한 사항	제41조 제1항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제45조 난민지원시설 사회적응교육, 주거시설, 의료지원
제3항 민간위탁	제45조 제2항 민간위탁
제4항 대통령령 위임	제46조 권한위임
제76조의10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적용의 배제	제39조

「난민법」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처우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¹⁵⁴⁾ 이러한 「난민법」상의 처우규정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우 당사자인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체류자가 느끼는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 할 수 있다.¹⁵⁵⁾ 다만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154) 입헌, 앞의 글, 법제, 42면.

155) 2012년 「난민법」 제정 이전인 2010년에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의 이름으로 작성된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 한국체류 난민의 현황 및 체류 실태, 그리

지니고 있다. 특히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중에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규범적 평가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외국 「난민법」의 처우 규정이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난민신청자의 2~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제운용의 모습을 알기는 쉽지 않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이라는 점에서 협약과의 비교 그리고 「출입국관리법」과 다르게 규정한 처우 규정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집행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난민협약상의 처우에 관한 규정들인 난민협약 제20조의 배급, 제23조 공적 구호, 제24조 제1항의 노동법과 사회보장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외국인 중 가장 유리한 대우의 원칙인 제19조 제1항, 자영업 및 자유업 등에서 외국인 가운데 유리한 대우의 원칙인 제18조와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달리 현재의 「난민법」이 제공하는 처우 규정의 외형적인 변화와 권리행사를 위한 제반 규정상황 그리고 일부 규범적인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난민협약상 난민처우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¹⁵⁶⁾

제18조 자영업

제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자기의 뜻대로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사업

고 취업 및 노동조건과 주거 및 생활환경, 건강 및 의료, 교육, 가족,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및 문화 활동, 삶의 만족도와 미래 기회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자세한 것은 위의 보고서 참조. 김연미 등,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2010.

156) 위의 조문들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서 인용함,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UNHCR, 2014. 48면

분야에서 종사할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9조 자유업

1. 각 계약국은 그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그 영역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난민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0조 배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있는 경우, 난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21조 주거

계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공공교육

1. 계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계약국은 난민에게, 특히 교육에의 접근성, 외국학교의 학업증명서, 학위수여증 및 학위의 인정, 수업료와 공납금의 면제 및 장학금의 수여와 관련하여 초등교육 외의 교육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3조 공적 구호

계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1. 계약국은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가 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초과 근무 시 조치, 유급휴가, 재택근무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노사의 단체교

섭에 기인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또는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경우.

-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규정),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i)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총치가 있을 수 있다.
- (ii)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령은 공공기금으로부터 전액 지급되는 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또한 일반 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수혜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당해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다른 체약국들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래 체결한 협정에 따른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 간의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고려한다.

난민협약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동일한 조건의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자영업과 자유업과 주거의 지원, 초등학교 외의 교육지원, 등에 있어서 난민의 법적 지위는 ‘유리한 대우’와 ‘동일한 사정하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일단 정주외국인과 동일한 사정이라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급과 초등교육과 공적구호, 노동관련 보수, 시간 등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의 권리는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경우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는 국민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난민협약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 처우 분류 규정 분석

「난민법」은 처우의 대상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인도적체류자’의 3가지 부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 처우,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결합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난민인정자’는 일종의 단기를 예정하는 거주비자인 F-2-4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 교육, 학력·자격인정,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등의 권리를 갖는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은 받지 못하였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¹⁵⁷⁾ 인도적체류자는 체류자격을 G-1-6로 받아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체류자와는 달리 생계비 등 지원, 취업허가,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을 받고 있다.

157)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보충적으로 인도적체류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 신청자라는 개념은 「난민법」에는 없다.

<표>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 처우 비교¹⁵⁸⁾

구 분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F-2-4	G-1-6	G-1-5
체류기간	3년 사유 소멸 시까지 연장	1년 사유 소멸 시까지 연장	6개월 사유 소멸 시까지 연장
취 업	허가없이 취업가능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 (1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 (3개월)
처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 교육의 보장 ▪ 사회적응 교육 ▪ 학력·자격인정 ▪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허가 - 신청 시 근무장소 없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능, 이후 근무장소 결정되면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등 지원 ▪ 취업허가 ▪ 주거시설 지원 ▪ 의료지원 ▪ 교육의 보장
여행 증명서	발급가능	발급불가	발급불가
가족결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동반(F-1) 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	원칙적으로 가족결합 불가 (단, 국내 체류중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는 가족결합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가족결합 불가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와 신청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달리 「난민법」에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은 난민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는 출입국관리행정이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난민법」상의 분류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문제점이 있다. 인도적체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대상이 아닌 경우에

158) 앞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1982호), 검토보고, 2016. 11. 7면의 표 인용.

난민인정의 보충적 효과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구분은 협약상의 난민인지 아닌지에 관한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그 구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난민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처우에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난민협약의 역사적 한계와 난민개념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본다면 처우에 있어서 동일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처우규정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난민법」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소요의 상당부분에 대한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에 관한 기사에 대응으로 난민보호율을 예를 들면서 난민보호에 충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⁵⁹⁾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같은 또는 유사한 지위로 본다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와 같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하도록 한다.

II. 난민인정자 처우 조항의 분석과 평가

1. 처우원칙과 사회보장

(1) 규 정

「난민법」은 난민지원에 관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난민법」 제30조 제1항) 「난민법」은 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이라는 점에서 협약상 처우에 관한 내용을 이행할 책임

159) 법무부 설명자료, 「난민신청 5년새 10배 늘었는데…인정률은 고작 0.9%」보도 관련, 법무부, 2015. 9. 8, 2면.

을 지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민지원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난민법」 제30조 제2항)

국가는 외국인기본정책에 난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 시행정책을 규정하면서 난민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난민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상호주의적용을 배제한다. 즉, 난민의 처우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난민법」 제31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2) 평가 및 분석

이 규정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상의 원칙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난민법」 제31조의 규정은 난민은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해서 외국인의 지위를 개별법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

별 법제에서 난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실제로 난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난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는 사회보장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규정도 「난민법」상에는 없는 실정이다.

「난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사회보장법제에서는 권리수급권자로서 등록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관련 권리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뇌병변이 있는 난민어린이가 장애인 등록을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난민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제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¹⁶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3호는 외국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F4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F5비자를 가진 한국영주권자, F6비자를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한정된다. 난민인정자는 F2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¹⁶¹⁾

F-5비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난민이 받는 F-2비자는 주로 외국인 자녀나 외국인투자자 등 영주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한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난민의 경우에는 박해의 공포가 끝나서 본국으로 귀환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머무른다

160) 보도설명자료, 6월 20일자 연합뉴스, ‘국내 거주 10세 난민 어린이 장애인등록 안돼 학업중단 위기’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2017. 6. 20, 1면.

161) 위의 보도설명자료, 같은 면.

는 점에서 F-2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난민이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단기도 될 수 있으며, 장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F-5비자를 부여하거나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난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난민협약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난민협약 제24조 1.) 난민협약에서의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고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난민협약 제24조 1. (b))

즉, 난민협약은 장애의 경우에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등 난민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장법제는 협약을 위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난민협약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난민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²⁾ 이러한 측면에서도 장애인 등록 등 사회보장 권리에 있어서 이러한 차별은 난민협약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입법적 대안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난민의 체류자격을 F-5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권리에 있어서 난민에게 F-5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62) ‘동일한 조건하에서’라는 용어는 난민협약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당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체재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UNHCR, 2014, 48면

2. 기초생활보장

(1) 규 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에 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¹⁶³⁾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의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2조)

(2) 분석 및 평가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난민법」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난민법」상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정보와 신청 등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난민인정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¹⁶⁴⁾

기초생활수급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민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공적인 신청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 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64) 김세진, 기획주제3 한국의 난민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200호, 2015. 6. 웹검색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371418> 최종방문일 2017. 9. 9.

3. 교육의 보장(동법 제33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1) 「난민법」 규정

「난민법」은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난민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난민인정자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 동조문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난민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분석 및 평가

난민인정 유아 중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¹⁶⁵⁾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난민인정 아동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난민 아동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신청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허가하도록 하는 전학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입학할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6조, 제75조).¹⁶⁶⁾

실제로는 난민보호시설이 있는 영종도에서 초등학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난민 어린이들이 다문화 대안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⁷⁾

난민협약은 초등교육인 경우에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165) 위의 웹진, 같은 면.

166) 위의 웹진, 같은 면.

167) 영종도 난민가정 어린이, 대안학교 간다. 한국일보 기사, 최종방문일 2015. 4. 28.

<http://www.hankookilbo.com/v/8217f51c181e441c89c8e3daf10d2278> 최종방문일 2017. 11. 15.

서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난민에게 입학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출입국관리소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와 난민인정자의 연계를 통한 안내와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⁸⁾

4.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훈련 교육(동법 제34조, 시행령 제14조)

(1) 「난민법」 규정

「난민법」 제3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에 관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난민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¹⁶⁹⁾

또한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2) 분석 및 평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서는 추천 받은 난민인정자의 수는 아직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않은 상태이다.

난민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한 직업소개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168)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난민인정자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가족에게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169) 이철우 외 7인, 「이민법」, 박영사, 2016, 351면.

수 있을 것이다.

5. 학력(동법 제35조, 시행령15조)과 자격인정(동법 제36조)

(1) 「난민법」 규정

「난민법」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7조는 중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그리고 동법 제98조는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분석 및 평가

난민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내지 예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력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난민인정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자격인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자격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주거지원

(1) 「난민법」 규정

「난민법」에는 난민인정자의 주거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분석 및 평가

난민 대부분 주거 형태는 ‘월세 등 임대주택’이며, 월세 및 임대차 보증금은 대개 친지나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쉼터 등에서 생활 한다고 한다.¹⁷⁰⁾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시민단체의 지원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자가 되거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지원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뿐, 정부가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하는 주거시설 및 주거비 지원은 전무하였다.¹⁷¹⁾

최근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¹⁷²⁾ 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난민인정자가 경제적 생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통역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7. 의료 보장, 산업재해 보험 및 국민연금 등 지원 조항

(1) 「난민법」 규정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법」에 의료보장, 산업재해 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사회보장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한 「난민법」 제3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장가입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70)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171) 위의 웹진, 같은 면.

172)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484> 최종방문일 2017. 11. 15.

그러나 위와 같은 4대보험 혜택은 기초생활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2) 분석 및 평가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 및 직장 가입이 가능하다.

난민인정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들처럼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서 상당한 목돈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¹⁷³⁾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민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직업을 구해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나 기타 경제적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예외가 필요하다.¹⁷⁴⁾ 건강보험법 원리상 납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의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¹⁷⁵⁾

173)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174) 위의 웹진, 같은 면.

1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 2 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천5백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며 부과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2. 등록장애인 가구
3. 한부모 가족 가구
4. 18세 이하 가구
5.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 가정 가구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Ⅲ. 난민신청자 처우조항의 분석 및 평가

1. 생계비 지원(동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1) 「난민법」 규정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동법 제40조 제1항).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리고 시행령은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2) 분석 및 평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은 6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의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을 모두 받는 것도 아니며, 난민인정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1차심사인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의신청과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면 짧게는 1년안에서 2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생계비 지원기간을 난민신청이 종료될 때까지로 연장해주거나 6개월 이전에 취업활동을 허가해 주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있다는 점에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를 기초 생계가 곤란한 초기 난민신

청자로 한정하고, 지급 기간은 「난민법」 위의 시행령에 따라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매달 난민신청자들로부터 생계비지원신청을 받아서 생계비지원대상을 선발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1인가구인 경우에 418,400원으로서 국민들이 받는 기초생활 보다 적은 금액이다.¹⁷⁶⁾

이러한 생계비 지원대상은 2014년에는 88명, 2015년에는 130명, 2016년에는 200명으로 그 대상자를 늘려왔지만, 2017년 9월에는 155명¹⁷⁷⁾과 10월에는 133명¹⁷⁸⁾으로 공지는 것에서 보듯이 대상자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¹⁷⁹⁾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이상
2014년	382,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2015년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2016년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적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

** 월 평균 지원 대상자 : ('14년) 88명 → ('15년) 130명 → ('16년) 200명

176) 2017년 생계급여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이상
생계급여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7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301&strWrtNo=10475&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30&strAllOrgYn=Y&strThisPage=1&strFilePath=imm/ 최종방문일 2017. 11. 15.

17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301&strWrtNo=10544&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30&strAllOrgYn=Y&strThisPage=1&strFilePath=imm/ 최종방문일 2017. 11. 15.

179) 앞의 법무부의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견수렴안, 297면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표 인용.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많고, 은행계좌도 개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계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⁸⁰⁾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신청지원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은행계좌 개설 등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 금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난민협약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난민인정과 차이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취업 허가(동법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1) 「난민법」 규정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동법 제40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허가가 필요한데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25조).

(2) 분석 및 평가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를 얻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과거 「출입국관리법」상에 1년이 경과한 이후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과 다르게 변화한 사항이다.

그런데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본래 취업활동허가는 취업활동의 전제조건인데, 고

180)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사실상 난민신청자가 고용계약서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¹⁸¹⁾

한편 난민신청자의 취업활동 허가와 생계비 지원 둘 다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¹⁸²⁾

즉, 난민인정절차가 길어질수록 난민신청자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생계비 지원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취업허가를 6개월 이전에 가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에 관한 규정은 사실 없다. 체류외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2에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인 G-1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난민신청자가 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용계약서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시행령 제19조)

(1) 「난민법」 규정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난민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하였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이며(시행령 제19조 제2항),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181) 김세진, 위의 웹진, 같은 면.

182) 위의 웹진 같은 면.

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 연장가능하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2) 분석 및 평가

법무부의 난민신청자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생계비 지원과 영종도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이다. 이 시설은 매년 난민신청자와 재정착난민 50여명 등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를 수용하고 있다.¹⁸³⁾

이 시설은 건립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큰¹⁸⁴⁾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다. 주민들을 의식하여 영종도 센터는 2인실 33개, 4인실(가족실) 4개 등 82명이 적정한 수용인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2014년 37명, 2015년 44명, 2016년 56명 등 매우 낮다.¹⁸⁵⁾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공업지구와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망도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⁸⁶⁾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수단의 확보 및 현재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연장가능한 체류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⁸⁷⁾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결정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신청 및 이의신청 그리고 소송에 이르면 실제로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가급적 이의신청 이전의 기간까지는 상당수의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183) 위의 웹진, 같은 면.

184) 위의 웹진, 같은 면.

185)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358면

186) 위의 보고서, 같은 면.

187) 위의 보고서, 같은 면.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시설의 확충과 함께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지역적 분산이 필요하다. 난민신청지역 또는 직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으로 수용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로 각 수용시설마다 수용인원이 확대가 필요하다.

난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도시와 동떨어진 센터의 위치는 사회통합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다.¹⁸⁸⁾

4. 의료지원(제42조, 령 제20조)

(1) 「난민법」 규정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의료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은 가능하지만 직장을 얻기 힘들고, 지역가입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별표9에 외국인은 F-2비자만 규정되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¹⁸⁹⁾

경제력이 부족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는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의료비 환급지원을 하는 제도와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에 의하여 입원과 수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¹⁹⁰⁾

188)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189) 앞의 이민법, 354면.

190)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2) 분석 및 평가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경제력이 허락된다면 지역가입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인 G-1비자도 건강보험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력이 부족한 난민을 위한 의료지원제도의 확충과 홍보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5. 처우 제한 규정

(1) 「난민법」 규정

난민신청자의 경우에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법」은 제21조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¹⁹¹⁾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제40조 제1항의 생계비 지원, 제41조 주거 지원, 제42조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에서 정하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 대상을 생계비지원, 주거시설지원, 의료 지원을 규정하고 교육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두어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91) 「난민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분석 및 평가

이의신청 자체는 「난민법」상에 규정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처우 규정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난민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게하여 생계비 지원 또는 기타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나온 조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인데 권리행사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하여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종적인 사법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이의신청 남용으로 보아 불이익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난민법」의 취지는 난민신청자에게도 일정한 생활지원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인도적체류자 처우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 「난민법」 규정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취업활동허가만 허용될 수 있다.(동법 제39조). 즉, 「난민법」상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보장은 없다.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거주비자인 F-2를 받는 반면에 인도적체류자들은 임시 체류형 비자인 G-1을 받고 있다.

2. 분석 및 평가

2009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현재의 인도적체류자인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¹⁹²⁾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허가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우규정이 축소되었다.

원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⁹³⁾

그런데 난민개념은 상대적이며, 난민협약의 난민개념은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인정자 이외의 보충적인 개념인 인도적체류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법적 지위가 같은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국제법상의 보충적 보호의 지위는 제네바 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유럽인권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각국의 난민에 준한 보호를 부여하는 지위를 정한 것인데, 우리 「난민법」상의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보충적 보호 지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¹⁹⁴⁾

192) 제47조(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의안번호 4927,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안원문, 2009. 5. 25, 26면.

19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9. 11, 25면.

194)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법적 지위가 다른 부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비자와 관련된 사항일뿐이다. 따라서 처우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적 지위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난민법」의 취지는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절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처우의 보장이 라는 점에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법무부는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을 난민인정률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율이 결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에서도 수 차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인정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평등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인정자 보다 인도적체류자의 인정이 더 많다는 점에서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난민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소요는 불가피한 것이다. 재정적 필요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다. 난민인정자나 인도적체류자가 갑자기 크게 늘지 않는 한 현재의 수준에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하여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면 건강보험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건강보험가입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행증명서 발급 및 가족결합권 등도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자와 동등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법」상 인도적체류자 처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V. 소 결

「난민법」상의 난민처우에 관한 조항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난민법」상 난민지원에 관한 조항을 확대하여 본격적인 난민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법적 지위와 처우를 정하는 것은 난민협약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다만 법률상 다양한 난민지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의 난민지원은 매우 소극적이고 적은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난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이외의 난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도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 규모에 비하면 난민지원의 예산이나 정책이 매우 적다는 평가가 있다.¹⁹⁵⁾

「난민법」상의 규정형식을 보더라도 재량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에서의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정기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 우리 난민정책은 출입국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적정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인정자는 국내 거주 형태를 보면 박해나 공포가 끝났을 때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단기체류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F-2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195) 2014년 UNHCR이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이 189개 국가 중에서 119위이다.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1인당 국내총생산 28위에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난민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세진, 앞의 웹진, 같은 면.

법무부 장관은 최근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난민보호율에 인도적 체류 지위자를 포함 산출한 통계로 답변을 하였는바, 난민보호율이라는 용어에 정확히 부합하는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적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해 또는 공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F-2 비자가 아닌 F-5 비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비자의 자격에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F-2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최소한 사회보장법제에서는 영주의 자격을 인정하여 장애인 등록등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적체류자는 난민협약의 역사적인 이유에서 빠지게 된 사실상의 난민이라고 본다면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난민신청자의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난민이라는 이유로 국민과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저생계비란 생활의 최저한도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인데, 난민신청자라는 이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판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생계비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난민신청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개정이 요청된다.

정책적 관점에서 다음의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난민처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난민인정 및 처우 관련 통계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법」상의 처우규정의 효과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난민현황 관련 통계자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즉,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중에서 생계비 및 의료비 내지 교육비를 지원 받는 현황에 대해서 사전공표된 정보는 없는 상태이다.

둘째, 법무부 난민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난민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 등 다른 외국인정책과 통합되어 있다. 이 보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 및 재정착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난민인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생계비 지원 또한 예산확충에 관해서 보다 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더라도 난민들이 이러한 사회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난민처우 관련 법무부의 예산은 주로 난민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비용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와 주거비 및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난민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맡겨져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난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난민시설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⁶⁾는 점에서 향후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196) 최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상 난민지원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74면.

제4장

입법평가 방법론의 비교 :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

제1절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제2절 프랑스의 난민법 제 개관

제3절 프랑스의 난민법 개정 : 입법영향분석의 과정

제4절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제5절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제4장

입법평가 방법론의 비교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

제1절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I. 비교연구의 목적

1. 기존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적 성격

2008년도 개정 헌법에 명문화된 프랑스의 입법평가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에 의한 평가방식이지만, 난민법의 경우 제정법률에 대한 사전영향평가가 아닌 이미 시행 중인 난민법(외국인법전 제7권)의 개정인 까닭에 본 영향분석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2015년도 난민법 개정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담고 있는데 첫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둘째,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하며 ; 셋째, 난민인정 절차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면서 ; 넷째, 남용적 성격의 신청 및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향평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네 가지 사항은 현재 우리 「난민법」에서도 개정이 요청되는 부분으로 프랑스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기에 앞서 실시한 입법영향분석은 우리 「난민법」의 향후 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인권관련 규정의 국내법 수용의 측면

한편, “비호 패키지(paquet d’asile)”로 불리는 난민에 관한 세 개의 유럽연합의 지침이 2013년 6월에 프랑스 국내법으로 수용되었고, 난민법 개정에 관한 영향평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이는 EU의 난민처우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지가 난민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관련 규정이 국내적으로 수용된 과정 및 영향 분석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입법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사전적 영향평가의 방법론적 접근

프랑스는 사전 영향평가의 단계별 지표를 세워놓고 주요 정부발안법률안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외국인법전의 비호권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망명권의 개혁에 관한 2015년 7월 29일자 법률」은 정부입법으로 영향분석이 선행되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사전적 영향평가방법론에 관하여 분석하고 사후평가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II.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 개요

프랑스에서 입법영향분석(étude d’impact)이라 함은 입법의 행정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재정적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입법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무부처에 의한 법률안 작성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부처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의 조정 단계에서 수정보완이 되므로 사전평가와 병행평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영향분석의 개념은 1976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하여 사전에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 후 시범실시를 거쳐 1998년에 총리 통첩(circulaire)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때는 1990년대 들어 OECD가 ‘보다 나은 법’을 위하여 영향평가를 강조함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잇따른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고¹⁹⁷⁾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을 통해 상위규범인 헌법에 사전영향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39조 제3문¹⁹⁸⁾에 따라 「헌법 제34-1조, 제39조, 제44조의 적용에 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¹⁹⁹⁾에서 영향분석의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영향분석의 대상은 정부제출법률안이나(제8조) 헌법개정안, 재정법률안, 사회보장조달법률안 등의 법률안은 제외된다.(제11조)

영향분석의 작성에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 국무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콩세이데따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단회의(Conférence des présidents)와 공공정책에 관한 평가와 조정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가 참여한다. 헌법 제39조 제4문에 따라 영향분석서가 조직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장단회의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의사일정에 등록될 수 없다. 또한 의장단회의와 정부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하원 또는 상원)의장 또는 국무총리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8일 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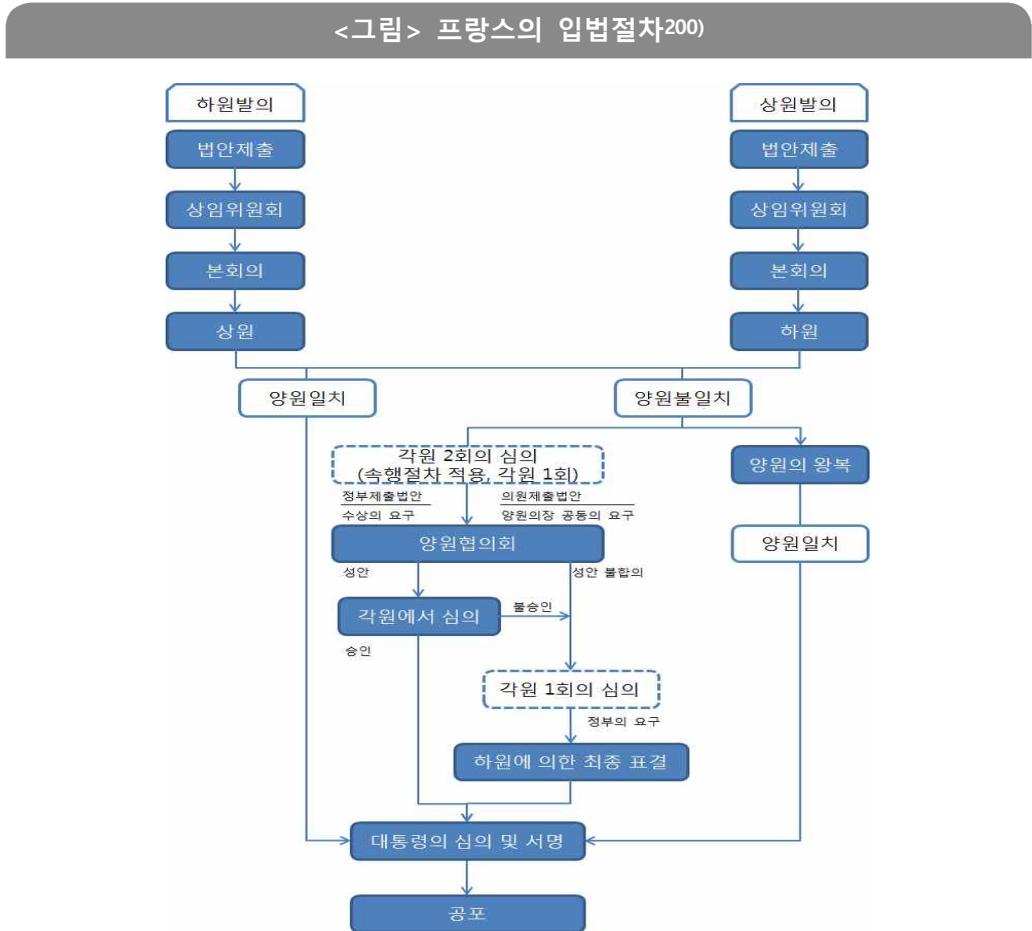
영향분석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문서에 해당된다.

197) 이에 관해서는 윤계형·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0-23면 참조.

198) 하원 및 상원의 정부발안법률안 제출은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La présentation des projets de loi déposés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ou le Sénat répond aux conditions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199) Loi organique n° 2009-403 du 15 avril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s articles 34-1, 39 et 44 de la Constitution.

2. 프랑스의 입법과정



헌법 제39조 1항²⁰¹⁾은 수상과 상하원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발안법률안(projet de loi) 및 의원발의법률안(proposition de loi) 모두 하원과 상원에서 각기 법률안 심사를 거치고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률을 공포한다. 헌법에서

200) Pascal Jan, “L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françaises”, Etudes d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N° 5216, 2005, pp.100-101.

201) L’initiative des lois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부제출법률안은 주무장관이 작성하며 이유서(exposé des motifs) 또는 제출보고서(rapport de présentation)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된 법률안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의 및 콩세이데따의 자문을 받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상원 또는 양원 중 한 곳에 제출된다.

3. 입법영향분석의 내용

2009년 4월 15일자 조직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영향분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단계에 거쳐 새로운 입법의 효과를 예측한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적시한다. 둘째,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담는다. 셋째, 새 법에 채택된 실현 수단 이외의 가능한 대안을 조사한다. 넷째, 영향분석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새 규정의 도입으로 예상가능한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는 규범적 분석 외에 비용편익분석도 포함한다. 다섯째, 영향분석 과정 중에 수행한 자문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여섯째, 시간적·장소적 적용 등 입법의 시행 관련사항을 적는다.²⁰³⁾

<표>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의 주요내용

1	진단, 입법의 필요성 Diagnostic, état du droit et nécessité de légiférer
2	목적 Objectifs poursuivis
3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 Options possibles et les motifs du recours à une nouvelle législation
4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 Incidences prévisibles du dispositif

203) 영향분석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u 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 sur les critères des études d'impact accompagnant les projets de loi par MM.Claude Goasguen et Jean Mallot, n°094, Assemblée Nationale, 2009 및 앞의 윤계형·한동훈, 51-59면 참고.

5	자문활동 Consultations menées
6	개혁의 실행 Mise en oeuvre de la réforme

제2절 프랑스의 난민법 제 개관

I. 난민법의 발전 및 특징

1. 헌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비호권은 1946년 헌법전문문의 제4문(le quatrième alinéa du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에서 최초로 인정되어, “자유를 옹호하는 행위로 인하여 박해받는 모든 자는 프랑스 공화국의 영토에서 비호권을 가진다”(Tout homme persécuté en raison de son action en faveur de la liberté a droit d'asile sur les territoires de la République). 현행 제5공화국 헌법전문에서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음에 따라 비호권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이에 더하여 1993년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헌법에 비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 제53-1조 제1문은 ‘공화국은 비호·인권보호·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해당국에 제출된 비호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문은 ‘단, 상기의 협정에 따라 비호요청이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공화국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공화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비호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이주 및 체류 관련 규범

28개 국가로 구성된 초국가적 기구인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동의한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는다면 유럽연합의 시민과 합법적인 입국·체류허가를 받은 제3국 국적자에게 보장되는 역내의 자유로운 이동일 것이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유럽연합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이주의 보장, 난민보호, 국경통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쉥겐(Schengen)조약과 더블린(Dublin)조약은 특히 유럽연합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한다.²⁰⁴⁾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대량 발생한 난민은 쉥겐조약을 통해 유럽의 각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난민문제는 유럽전체의 공동사안이 되었고, 쉥겐조약과 더블린조약은 개별 국가의 이해득실 앞에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른바 ‘비호국 쇼핑’을 제한하는 2013년의 더블린III 합의는 이러한 흐름과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리스본 조약에 근거한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명령, 지침, 결정, 권고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2000년대 이후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유럽의회에서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련의 명령(regulations)과 지침(directives)을 제정해왔다. 그리고 이들 지침의 내용은 프랑스 국내법화 조치에 의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204) 앞의 최윤철, 135면.

3. 난민법의 연혁

(1)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

프랑스는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근거하여 그 이듬해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특히 1998년의 이른바 Chevènement법²⁰⁵⁾에서는 협약난민 외에 보충적 보호를 추가하였다. 또한, 2003년의 개정에서는 기존에 공권력에 의한 박해에 한정되었던 난민의 개념을 사인에 의한 박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외에 안전한 국가(pays d'origine sûrs) 제도 및 보충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를 도입하였다.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2004년도의 법전화 작업(codification)에 따라 난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1945년 법률」과 「망명권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에 관한 법전」(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CESEDA)(이하 외국인법전)에서 정하고 있다. 비호권(droit d'asile)에 관한 제7권(livre VII)(이하 프랑스 난민법으로 칭함)은 비호인정절차,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 비호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CNDA)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비호인정절차의 간소화 및 비호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비호권 개혁에 관한 2015년 7월 29일자 법률」²⁰⁶⁾이 제정되어 외국인법전에 반영되었는데, 제4절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205) Loi relative à l'entrée et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au droit d'asile, JO du mai 1998.

206) Loi n°2015-925 du 29 juillet 2015 relative à la réforme du droit d'asile

4. 프랑스 난민법의 특징

(1) 비호권의 성격

프랑스는 일찍이 1946년 헌법전문에 비호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주로 1951년의 난민협약을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왔으나, 1998년에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및 비호법원(CNDA)의 설립²⁰⁷⁾으로 난민 인정에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²⁰⁸⁾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93년 8월 13일 결정²⁰⁹⁾에서 1951년의 난민협약과 유럽공동체법에 근거하여 비호권에 대하여 헌법적 효력(valeur constitutionnelle)을 부여하였고, 2000년대 들어 콩세이데따(Conseil d'Etat)에서도 1946년 헌법전문을 인용하며 비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2) 비호인정절차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호신청에 대한 등록, 입국허가 및 거주허가는 지방경찰청((préfecture)에서 담당한다. 비호인정신청자는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청(préfecture)에 비호신청서를 제출하면 1달 기간의 임시체류증을 발급받게 된다. 경찰청은 비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무부 산하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로 전달하며, OFPRA에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신속절차 또는 일반절차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난민수용에 대한 1차 결정은 내무부 산하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한다. 여기서 난민불인정 처분이 내려지면 비호신청자는 특별행정법원인 비호법원(CNDA)에 항소를 거쳐 콩세이데따에 상고할 수 있다. 비호법원의 전신은 난민항소위원

207) 외국인의 출입과 체류 및 비호권에 관한 1998년 5월 11일 법률(Loi n°98-349 du 11 mai 1998 relative à l'entrée et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au droit d'asile)

208) 전학선, “프랑스의 망명권 보장 법제”,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2009, 87면.

209) Décision n°93-225 DC du 13 août 1993.

회(Commission des recours des réfugiés, CRR)으로 2009년 현재의 비호법원으로 새로이 조직이 변경되면서 콩세이데따 산하로 소속이 되었다.

항소는 결정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달 이내에 그리고 상고는 2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호법원에서 신청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의 지위를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에게는 10년 기간의 장기체류증, 후자에게는 1년의 체류증이 발급된다. 비호법원이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임시체류증을 발급하고 1달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콩세이데따에 하는 상고는 비호법원의 결정에 법률상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난민인정이 거절된 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국외, 국경에서 비호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에서의 비호인정신청은 대사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입국비자를 받고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심사를 거친다. 공항, 항만 등 국경에서의 비호인정신청은 사무국(OFPRA)과 이민부의 협력 하에 진행되며 국경지대의 대기구역(zone d'attente)에 머무르며 결정을 기다린다. 결정은 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연장하더라도 총 구금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입국 후의 절차는 프랑스 국내에서의 비호인정신청절차와 동일하다.

II. 2015년도 개정의 배경

1. 난민신청의 급증과 구조적 문제²¹⁰⁾

2015년도 법개정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국내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근래 들어 난민신청의 급증했고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10)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2014, pp.6-7.

2007년부터 프랑스의 난민신청 건수는 급증하여²¹¹⁾ 2013년에는 무려 66,251건의 난민신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제도상 한계에 직면함은 물론 난민신청자의 수용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OFPRA와 CNDA의 인원충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난민신청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신청처리기간이 평균 16개월로 지연되었다.

난민신청자의 최초수용(premier accueil) 규정은 일련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다수의 관계자, 절차적 복잡성, 권한의 중복이 그것이다. 주거시설을 비롯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난민신청심사에 관한 법 규정은 관련(국내)단체는 물론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수 년 전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난민인정이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보호 또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2.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난민정책 수용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난민문제는 유럽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201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뿐 아니라 EU 회원국은 난민처우에 있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EU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였고, 이는 EU지침의 수용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난민의 지위 및 불복절차 관련하여 인정되어 온 사항을 외국인법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곧 국내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211) 2007년에 35,520건인 난민신청건수는 2009년에 47,686건, 2011년에 57,337건, 2012년에 61,468건 그리고 2013년에 66,251건에 달하였다. 위의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6p.

제3절 프랑스의 난민법 개정 : 입법영향분석의 과정

I. 난민법 개혁에 대한 합의

1. 정부 측 : 내무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난민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하기에 앞서 내무부 장관은 큰 규모의 협의체(concertation)을 구성하였다. 상원의원인 발레리 레타르(Valérie Létard)와 하원의원인 장루이 투렌(Jean-Louis Touraine)이 주재하는 이 협의체는 2013년 7월 15일에 착수하여 11월 28일 보고서²¹²⁾를 제출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유엔난민기구, OFPRA, CNDA, 행정부, 국회, NGO 등 난민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였다.

이는 난민절차, 수용·안내(orientation)·동반(보호)자, 난민신청자의 주거 그리고 국제적 보호 수혜자의 통합에 관한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특히 난민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의회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femmes et hommes)는 난민문제에 있어 남녀평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협의체에 전달하였는바²¹³⁾, 이들 사항의 대부분은 정부 제출법률안에 반영되었다.

두 의원의 이름을 본 따 ‘레타르-투렌 보고서’(rapport <Valérie Létard>)로 명명되는 이 보고서는 실태(état des lieux)를 기술하고 「난민법」 개정의 큰 줄기(쟁점)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후에 정부 주도의 난민법 제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7개의 쟁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12)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http://www.interieur.gouv.fr/Archives/Archives-des-actualites/2013/Reforme-de-l-asile> 최종방문일 2017. 11. 15.

213) http://www.haut-conseil-egalite.gouv.fr/IMG/pdf/hce_contribution_droit_d_asile_20131112.pdf

- 보다 빠른 절차개시를 위해 난민신청자에 절차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 ;
-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PPRA)의 난민신청검토를 신속히 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할 것 ;
- 비호법원(CNDA)에서의 절차의 현대화와 기능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소송의 현대화 등 구제수단을 발달시킬 것 ;
- 난민신청자의 주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 ;
- 호텔 등에서의 숙박을 축소하고 주거의 통합적 제공을 개발할 것 ;
- 보조금의 적정한 기준을 수립할 것 ;
- 보호인정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또는 난민인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모두에 있어 절차의 종료 단계를 개선할 것

2. 의회 측 : 공공정책의 평가·조정위원회의 난민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국회 산하 공공정책의 평가·조정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CEC))는 2014년 4월에 난민신청자 수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평가서를 발간하였다.²¹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위에서 언급한 내무부 차원에서 꾸린 협의체가 내놓은 평가와 상당히 일치한다. 즉 기간, 비용 등 절차 전반에 관하여 개선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고 앞서 언급한대로 이 중 일부는 정부제출법률안에 반영된 것이다.

II. 유럽공동체 지침의 수용

프랑스는 2015년 7월까지 수용에 있어 최소기준에 관한 지침(2013/33/EU)(이하, 수용에 관한 지침), 국제적 보호의 인정 및 배제에 관한 공동절차에 관한 지침(2013/32/UE)(이하, <절차>지침) 그리고 난민 또는 보충적보호자의 지위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제3국민 또는 무국적자의 요건에 관한 지침(2011/95/UE)(이하 <자격요건>지침)을 이행해야 하

214)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rap-info/i1879.asp> 최종방문일 2017.11.10.

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비호 패키지’라 불리는 이 세 개 지침의 상당부분을 외국인법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비호권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proj 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1. 제정이유²¹⁵⁾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본 법률안은 프랑스가 유럽의 비호문제 있어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비호제도에 있어 난제는 상원의원 발레리 레타르(Valérie Létard)와 하원의원장-루이 투렌(Jean-Louis Touraine)이 주재하는 국가차원의 협의체에서 2013년 가을 정밀하게 분석된 바 있다.

프랑스 비호제도는 난민협약, 보충적 보호,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등에 기반하나 근래에는 그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났다. 상기한 의회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난민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법적으로나 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면에서 제한되어 있고, 남용적 성격의 쟁송은 행정 및 재판의 지연과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공공정책 평가 및 조정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에서 발간한 비호신청자의 수용정책 평가(évaluation de la politique d'accueil des demandeurs d'asile)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고 있다.

비호신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는, 당장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동시에 남용적 신청과도 맞물려 있고 이는 적잖은 복잡성을 야기한다. 또한 비호신청의 증가 및 처리기간의 지연은 동시에 보호시설의 재정부담을 가져온다. 더욱이 모든 신청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는 기존의 비호신청자보호센터(Centre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 CADA) 외에 유럽법상의 긴급보호시설을 설립

215)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projets/pl2182.asp> 최종방문일 2017.11.10.

하였는데 이는 유럽인 신청자와 비유럽인 신청자간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십 수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의 두 EU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는 것은 비호신청자의 수용조건 및 절차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는 이를 비호권 개혁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며, 비호가 요청되는 자에 보호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근거 없는 비호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관련 절차에 있어서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은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물론 이 원칙은 사무국의 설립 때부터 준수되어 왔다. 그리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하여 유럽법의 절차방식을 사무국(OFPRA)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의 절차방식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수리불가(irrecevabilité) 절차, 비호신청자가 협조를 거부한 경우 심사의 종료 또는 실권절차, 그리고 신속절차(procedure accélérée)이다. 신속절차는 기존의 우선절차(procedure prioritaire)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난민과 무국적자 사무국(OFPRA)은 이를 언제든지 일반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안전한 (출신)국가의 개념은 2013년 <자격요건>에 관한 EU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비호권 개혁에 관한 제정안은 또한 그간 유럽인권재판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국경에서 이루어지거나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의 보호처분 중의 비호절차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수반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의견(avis)은 이민부(ministre en charge de l'immigration)의 결정에 반영된다. 비호신청자가 강제퇴거를 면할 목적으로 비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신속절차에 의한다.

다음으로, 법률안은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비호신청자에 대한 수용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호신청자보호센터(CADA)를 모델로 하여 비호신청자의 보호시설을 통합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신청자의 가족구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

프랑스 비호신청자의 법적지위를 통일하는 것도 이번 개혁의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절차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소송 포함) 프랑스에의 거주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한다. 그러나 비호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 ile-de-France 40%, Rhône-Alpes 12% -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해 비호신청한 곳과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서는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신청자에 대한 취약성(vulnérabilité) 심사 및 심사방식과 수용조건에의 적용 ; 사무국(OFPRA)의 면접에 변호사, 외국인 보호 단체 종사자 등 제3자의 동석. 이외에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 EU지침의 비호신청 처리에 관한 일부 기준을 도입한다. 이 기준은 오늘날 판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용되고 있는데,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통해 효용성(effectivité)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비호인정절차에 있어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인 소송절차 관련하여 개정안을 신설한다. 사무국(OFPRA)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비호법원(CNDA)에 항소하는 경우 집행 정지효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비호법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속절차는 단독재판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접근성, 가족결합, 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보호 인정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법률안은 총 7개의 장(chapitre)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비호인정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해당한다.

제2장(chapitre II)은 비호신청의 심사절차(procédure d'examen des demandes d'asile)에 관한 것으로 법률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세 개의 섹션(section)으로 이루어진다. 제1섹션은 일반규정, 제2섹션은 국경에서의 비호신청(examen des demandes d'asile à la frontière), 제3섹션은 보호처분 중의 비호신청(examen des demandes d'asile en rétention)에 대해 정한다.

제3장(chapitre III)은 비호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에 관한 것이다.

법률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 해당하는 제4장은 비호절차에의 접근 및 신청자의 수용(accès à la procédure d'asile et l'accueil des demandeurs)을 내용으로 한다.

제5장은 보호(contenu de la protection)에 관한 것으로 법률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 외에 해외령 관련 규정 등이 있으며 총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비호인정요건 및 비호신청심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내지 제10조 및 보호에 관한 제18조와 제19조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4절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I. 개 관

사전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입법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인 바, 「난민법」의 개혁은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단행되었다. 우선, 합당한 조건 하에서 비호권을 보장하고 박해받는 자를 수용하여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 이어,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신청자 간 공정한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및 명확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체류·거주시설의 적절한 배분, 비용절감, 난민신청자에 대한 방향제시 등을 통한 향상된 효율적 행정이 세 번째 원칙이다.²¹⁶⁾

216)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ibid, p.5.

이와 같이 2015년도의 난민법 개정은 신청처리기간의 단축 등 난민인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쟁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급증하는 난민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2015년 7월 29일자 법률은 정부발안법률로 사전영향분석서 작성이 선행되었으며, 본 영향분석서를 수반한 법률안은 2014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 제출되고 하원과 상원에서 수정된 후 2015년 7월 15일에 통과되었다.

아래에서는 프랑스 난민법 영향평가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난민보호 제도를 주요 항목별로 진단하고 요구되는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 프랑스에서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게 된 과정 및 방법론을 소개한다.

II. 비호인정요건 및 비호신청심사(Dispositions relatives aux conditions d'octroi de l'asile et à examen des demandes d'asile)

1. 진단, 현황, 입법의 필요성

(1) 보호의 확대(제L711-1~제L713-2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호권은 1946년 헌법전문 및 난민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역시 난민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는 2003년도의 개정을 통해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에 반영되었다. 이는 ‘난민 지위 자격을 얻고자 하는 제3국 거류민 또는 무국적자 또는 다른 이유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이들 지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2004/83/CE du 29 avril 2004²¹⁷⁾)의 수용에 따른 것이었다.

217) Directive 2004/83/CE du Conseil du 29 avril 2004 concernant les normes minimales relatives aux conditions que doivent remplir les ressortissants des pays tiers ou les apatrides pour pouvoir prétendre au statut de réfugié ou les personnes qui, pour d'autres raisons, ont besoin d'une protection internationale, et relatives au contenu de ces statuts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호대상에 대하여는 박해나 중대한 위협의 주체와 관계없이 보호가 인정되지만, 본국의 영토 일부에서 보호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 다시 말해 외국인법전 제713-3조에서 정하는 이른바, ‘자국보호’(droit asile)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비호인정신청이 배제될 수 있다.

(2)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기능(제L721-1~제L722-6)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에 근거하여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는 현재까지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에서 담당하고 있다. 난민협약의 준수에 따라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원칙은 사무국의 설립 당시 만장일치로 세워진 것이었으나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에 대한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비호수혜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또한 맡고 있다.

영조물법인의 지위를 갖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오랫동안 외무부의 감독을 받아왔으나 2007년에 이민·통합·난민에 관한 법률²¹⁸⁾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내무부 소관이다.

안전한 국가(pays d'origine sûrs, POS)의 목록 작성 또한 본 사무국의 역할에 속한다. 2005년도 프랑스가 채택한 최초의 안전한 국가 목록에는 12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11번의 수정을 거쳐 (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 2014년) 현재 17개의 국가가 안전한 국가에 해당한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비호신청자 중 안전한 국가 출신은 5~10%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7%, 2012년에는 14.4% 그리고 2013년은 7%로 증가하였다.

218) Loi n°2007-1631 du 2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à l'asile.

<표> 2007년~2013년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PPRA)의 비호신청심사 통계²¹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호신청건수 (total demande d'asile)	35,520	42,599	47,686	52,762	57,337	61,468	66,251
심사종료 (décisions rendues)	29,323	31,801	35,331	37,667	42,249	46,020	46,684
인정 (nombre d'accords)	3,401	5,153	5,048	5,096	4,630	4,348	5,978
인정률 (taux d'accord)	11.6%	16.2%	14.3%	13.5%	11%	9.4%	12.8%

<표> 2007년~2013년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의 최초신청건수 및 심사기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심사기간의 평균치 (délai médian)	-	108	132	137	175	202	226	
실제 평균기간 (délai moyen constaté)	105	100	118	145	174	186	204	
심사 중 (stock*)	1차신청**	8,248	10,900	14,672	18,800	22,474	24,260	29,895
	재심사	-	-	128	136	153	238	302
	총 계	-	-	14,800	18,936	22,627	24,498	30

* 재심사를 포함한 1차신청건수이며, 미성년자는 제외함.

** 무국적자 제외

219)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ibid., p.14.(출처:OPPRA)

(3) 비호인정신청에 대한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심사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의 비호신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1993년 8월 24일 법률과 2003년 12월 10일 법률에 의해 보완되었고, ‘난민지위의 부여와 배제 절차에 관한 최소규범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2005/85/CE²²⁰)에 따르고 있다.

비호신청자가 난민협약의 중지조항(*clause de cessation*)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안전한 국가 출신인 경우, 공공질서나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남용 신청에 해당하는 등 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경찰청장(*préfet*)이 임시체류를 불허한 때에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상기한 법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statue par <priorité>*)

우선적 절차를 활용할 시,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많은 경우 단축된 기간(일반적으로 15일) 안에 결정을 내리나 그 밖의 심사절차 및 절차적 권리 등에 있어서는 일반 비호신청의 경우와 동등하다. 2012년에 14,800건의 신청이 이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는 당해 총 신청건수의 3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3년에는 13,254건으로 비호신청의 25.6%가 우선적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93년 8월 13일자 결정 및 2003년 12월 4일자 결정에서 비호신청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달리할 것과,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비호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 유엔난민기구(*Haut Commissariat des Nations unies pour les réfugiés, HCR*) 등은 우선적 절차가 과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비호법원(*CNDA*)에 상소를 제기하여도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의 비호인정 기각결정에 대

220) Conseil du 1er décembre 2005 relative à des normes minimales concernant la procédure d'octroi et de retrait du statut de réfugié.

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한다.

비호신청자에 청문절차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실무에 있어 빈번하게 청문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94%에 달했다.

(4) 특수한 절차

1) 비호신청을 위한 프랑스 입국요청

비호신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프랑스에의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은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이민부에서 행한다. 이 경우 프랑스로의 입국신청을 한 외국인은 대기구역(zone d'attente)에서 머물러야 하며, 1992년 2월 25일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지 않음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민부는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2,227건의 신청이 프랑스 국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85.81%의 신청자에게 입국이 허가되었다. 2013년에는 1,346건의 신청에 대해 75.85%의 비율로 입국 허가가 내려졌다.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 집행정지부 효력을 갖는다. 집행정지부 효력은 유럽인권재판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의 2007년 4월 28일 결정(Gebremedhin c/France)에 이어 2007년 11월 20일자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2) 강제퇴거 대상자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에 의한 비호인정신청

외국인법전 제L551-3조는 “외국인보호소(centre de rétention)에 수감이 된 외국인은 비호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받는다. 이 때 비호인정신청은 보호처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비호인정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비호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처분 기간일지라도²²¹⁾ 비호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비호권의 보장 및 공공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강제퇴거 조치의 집행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비호인정신청에 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 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표> 보호처분 중의 강제퇴거 대상자의 비호인정신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1,864	1,894	1,568	1,096	970	963	1,078
최초신청	1,207	1,209	1,141	766	616	629	788
재심사	657	685	427	330	354	334	290

(5) 비호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제L731-1~제L741-5조)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불인정결정을 내리는 경우 비호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에 항소하게 된다. 전신은 난민항소위원회(Commission des recours des réfugiés)이며 난민에 관한 1952년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표> 2007년~2013년 비호법원에 제기된 항소건수²²²⁾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항소건수	22,665	21,638	25,044	27,445	31,983	36,362	34,752
OFPRA의 불인정결정	29,154	27,242	20,240	23,934	34,595	37,350	38,540

221) Décision n°2003-484 du 20 novembre 2003.

222)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ibid., pp.18-19(출처:CNDA)

2013년 38,540건의 불인정결정 중 34,752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30,231건은 합의부에서, 8,309건은 단독부에서 진행되었다.

비호법원에서의 인정률은 2013년 기준 14%, 2012년은 15.2%을 보인다.

<표> 2007년~2013년 비호법원의 평균 재판기간²²³⁾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측 평균재판기간	10개월 1일	10개월 3일	15개월 12일	14개월 28일	9개월 5일	8개월 7일	6개월 24일
실제 평균재판기간	-	13개월 17일	12개월 20일	12개월 27일	11개월 10일	9개월 29일	8개월 26일
재판 중인 소송건수	22,803	21,046	25,845	29,776	26,613	25,625	21,837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은 우선적 절차에서 비호법원에의 항소가 집행부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 요청되는 바이다.

집행부정지 원칙과 관련,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및 유엔난민기구(HCR)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2013년도의 통계기준으로 비호신청의 25.6%가 우선적 절차에 의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호법원에서 14%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적지 않은 경우, 집행부정지 원칙으로 말미암아 경찰청의 1차적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된다.

223)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ibid., p.19(출처:CNDA)

2. 입법의 목적

(1) 비호인정조건의 안정(법안 제1조~제4조)

1) 채택안

비호인정조건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EU 지침을 수용한다. 법안의 제2조는 외국인법전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박해의 행위와 동기에 대한 정의를 넣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배제와 박탈에 관한 조건도 명확히 한다.

법안 제3조에서는 EU지침 상의 ‘보충적 보호’에 대한 정의 및 보호의 제외와 중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한다.

법안 제4조는, 역시 EU지침에 근거하여, 본국(출신국)에서 제공되는 보호와 이에 따른 ‘자국비호’(asile interne)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2) 그 밖의 안

현행 난민법 규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침의 새로운 규정을 명백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전의 2004년도 지침에서 이미 존재했던 규정은 비록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및 비호법원(CNDA)에서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소송법상 위반될 소지가 크다.

(2)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질 향상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가 비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프랑스 국내는 물론 국제적, 유럽 차원에서 근본적인 요청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법안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채택안

법률안 제5조에서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이 비호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다. 물론 이 점은 사무국의 출범부터 보장된 것이었으나, 관련 부처의 감독 아래 있었기에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법적 명문화를 통해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고자 한다.

또한 제5조에서는 비호심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물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맡은 모든 공무원에게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비호인정) 결정의 서명자는 식별가능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업무수행의 범위에서, 관련 공무원은 모든 외부적 영향 - 예를 들면, 매춘알선업의 조직망도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착취를 이유로 비호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 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동조는 비호인정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사법기관의 협조를 규정함으로써,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이 비호신청인 또는 비호인정자의 제반여건을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법률안 제6조는 안전한 국가 목록 작성 - 신속절차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 에 관한 것으로 그대로 사무국의 이사회가 맡되, 방식에 있어 수정을 가한다.

우선, 안전한 국가의 정의에 관한 현재의 규정을 삭제하고 2013년 6월 26일의 EU 지침 (2013/32/UE) 상의 안전한 국가에 대한 정의로 대체한다. 목록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또한 사무국의 이사회는 목록의 현실성 및 적합성을 살핀다.

2) 그 밖의 대안

2013년도 <절차>지침은 안전한 국가의 국내적 목록 작성을 도입하였다. 일부 단체에서는 국내적 목록 작성을 법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일단 본 법률안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한다. 핵심은 목록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개별적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며, 이는 새 법률안에 반영되었다.

안전한 국가의 지정을 사무국(OFPRA)의 사무총장 또는 내무부장관에 위임하는 선택은 배제되었으며 현행대로 유지한다.

(3) 비호인정심사에 있어 절차적 권리의 보장 및 효율성 확보(법안 제7조)

2013년도의 <절차>지침은 이전의 비호인정신청의 심사절차에 관한 2005년 12월 1일 유럽공동체 지침(2005/85/CE)에 대하여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이 중에는 강행규정인 것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다.

법률안은 유럽규범의 준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호인정심사의 절차에 있어서는 권리와 효율성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 특히, 법률안은 일정한 경우의 비호신청에 있어 신속절차를 규정하는데, 이 절차는 현행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채택안

위와 같은 목적으로 네 가지의 조치가 관련된다. 첫 번째, 법률안은 기존의 우선적 절차(*procédure prioritaire*)를 신속절차(*procédure accélérée*)로 새로이 명명하며 내용을 전면 수정한다.

신속절차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재심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외에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결정에 따라 적용된다. 후자는 이번 개혁에 따라 새로이 삽입된 항목으로 EU 지침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신속절차 제도는 새로운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사무국(OFPRA)는, 적절한 비호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또는 경찰청에서 신속절차로 분류한 비호신청을 ‘일반절차’(*procédure normale*)로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수한 상황, 특히 취약한 조건(*vulnérabilité*)에 있는 자를 위해 새로이 규정을 마련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은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personnes vulnérables)가 비호인정신청을 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세 번째, 법률안은 심리의 방식에 관하여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의 EU 지침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지침을 준수하고 심사절차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박해의 공포, 중대한 침해에 대한 평가방식 및 비호신청자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한다.

네 번째는 면접에 관한 것으로, 면접을 면제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2013년 <절차>지침을 수용하고, 면접에 동석자의 참여방식을 정한다. 동석자의 참석이 의무일 때에는 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은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동석자는 변호인, 이주/비호 관련 단체 소속인 등 선택에 따른다. 그러나 면접에서 개인(비호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석자는 면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 면접과정은 녹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콩세이데타령(décret en Conseil d'Etat)으로 정한다.

2) 그 밖의 대안

2013년 <절차>지침의 임의규정 관련하여,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속절차를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있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신청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 요구되며, 명백한 남용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효율적 절차를 위한 새로운 수단(법률안 제7조)

법률안에서는 2013년 <절차>지침의 비호신청의 수리적격, 묵시적 철회 및 재심사 신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부 특수한 경우의 비호신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세 가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수리적격(irrecevabilité)에 관한 것으로 법률안은 비호신청인이 유럽연합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때에는 사무국(OFPRA)이 비호인정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 법

률안에서는 위의 사유로 비호인정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으며, 사무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이어, 두 번째는 신청의 철회(retrait)에 관한 것으로 법률안에서는 해당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주로 비호신청인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은 비호신청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은 그때부터 예외없이 비호인정심사를 받을 권리 및 체류권을 상실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안 제7조에서는 이는 위의 수리적적격과의 연관에서 재심사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을 반영한데 따른 것인데, 다만 기초자료를 결여하고 있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5) 인권보장에 관한 특수한 절차 및 이주정책의 필요성(법률안 제8조 및 제9조)

국경에서 비호인정신청이 이루어지거나 보호처분 중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비호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률안은 2013년 6월 26일 유럽지침(2013/32/UE 및 2013/33/UE)과 유럽인권재판소(CEDH)의 판례에 기초하여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비호인정심사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경에서의 외국인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의 강화가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한다.

1) 국경에서의 비호인정신청 관련 채택안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비호인정신청에 대하여 종전대로 이민부가 입국거부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다만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의견(avis)제출을 새로이 명문화함으로써 기존방식과 차별성을 둔다. 마찬가지로 비호인정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EU지침과 1992년 2월 25일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상세히 정한다.

국경에서의 비호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안은 소송에 대한 부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2) 보호처분 중인 외국인에 의한 비호인정신청 관련 채택안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강제퇴거대상으로 보호처분 중에 있는 외국인에 의한 비호인정신청은 비호신청에 대한 권리가 해당 외국인에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외국인법전 제L551-3조) 보호처분 중 언제든지 비호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강제퇴거를 면할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는 이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보호처분의 유지 및 신속절차의 적용은 강제퇴거 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비호인정신청을 할 때에만 적용되고, 다른 한편,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절차로 변경하여 비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강제퇴거를 면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법원은 비호법원(CNDA)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외국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보호처분 중의 비호인정신청을 의례 신속절차로 처리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절차와 수용에 관한 EU 지침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6) 비호법원(CNDA)

법률안은 비호법원이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이 내린 모든 결정(강제퇴거 대상자로 보호처분 중인 외국인에 의한 비호인정신청 제외) - 기각, 각하 모두 포함 - 에 대하여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소송기간의 단축 또한 비호권의 개혁에 있어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기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호법원에 항소 제기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 신속절차에서 처리되는 비호신청 포함하여 - 역으로 법원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판결을 내릴 때에만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유럽인권재판소나 <절차>에 관한 2013년의 EU 지침에서도 집행정지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을 채택한다 : 재판의 심리기간을 다양화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있어 비호법원은 5개월의 기간을 갖는다. 신속절차 또는 수리불가한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기간이 주어진다.

3. 입법의 영향

(1)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향

비호인정의 조건과 비호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다수의 규정은 여성의 보호를 증진한다.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 EU 지침의 내용을 수용한 법률안 제2조에서는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소속이 박해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가 취약한 자가 비호인정신청을 한 경우 그 심사절차를 수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은 폭력 상황에 노출된 여성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동성면접관에 의한 면접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영향

법률안 제8조 및 제9조는 장애인 관점에서 별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3) 법적영향

비호인정의 조건과 비호신청심사에 대한 법률안 제1조 내지 제10조는 다음의 EU 지침을 적극 수용한다 : 2011년 12월 13일자 EU 지침 2011/95/UE ; 2013년 6월 26일자 EU 지침 ; 2013년 6월 26일자 EU 지침.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인법전(CESEDA)의 비호권에 관한 제7권(livre VII)을 수정한다. 특히, 법률안 제8조는 위 법전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제2권(livre II)을, 그리고 제9조는 강제퇴거에 관한 제4권(livre IV)을 수정한다. 그 밖에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의 비호법원(CNDA) 및 보호처분 중의 비호인정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개입 관련규정 그리고 1991년 7월 10일 법률²²⁴⁾도 일부 수정된다.

(4) 사회적 영향

법률안 제1조 내지 제10조는 비호인정조건과 신청심사방식 등에 있어 비호신청자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5) 행정적 영향

비호인정의 조건과 비호신청심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신속절차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청의 업무를 경감하는데 일조하며,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과 경찰청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6) 법원의 기능에 대한 영향

보호처분 중의 비호신청에 있어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는 법률안 제9조는 행정소송 - 특히 지방행정법원의 단계에서 -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2013년 1,078건의 비호신청이 강제퇴거 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제출되었다. 2007년의 1,864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그런데, 비호신청자는 사무국(OFPRA)의

224) Loi du 10 juillet 1991 relative à l'aide juridique.

심사 단계에서부터 법상 처우가 인정된다. 또한 사무국이 심사 중에 신속절차에서 일반절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은 종료되는데, 사무국이 불허처분을 내릴 때에는 비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매년 보호처분 중에 제출되는 비호신청은 여러 지방행정법원에 분산되어 신청 건수에 비해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4. 법의 시행

(1) 시간적 적용

비호인정요건 및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공포 즉시 시행한다. 그 밖의 비호신청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콩세이데타령(décret en Conseil d'Etat) 정하되, EU지침(2013/33/UE, 2013/32/UE)의 국내법화 조치를 고려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2) 해외령 적용

법률안 제1조 내지 제10조는 해외령에 적용한다. 단, 더블린 조약(III225) 관련한 규정은 프랑스 본토에만 적용되므로 제외된다. 보호처분 중의 비호신청에 대한 쟁송규정 또한 일부 해외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자문활동

지방행정법원·항소법원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CSTA) 및 법률구조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ide juridique, CNAJ)의 자문을 받았고, 전자는 2014년 6월 10일에 그리고 후자는 2014년 6월

225) 2013년 공포되어 7월 19일 발효되었고, (요청 시) 무료 법률지원, 개별 인터뷰의 의무화, 아동의 우선적 이익의 고려, 이송 집행정지를 위한 항소 제기 가능성 및 집행정지명령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국가에의 체류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다.

27일에 비호인정요건 및 인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4) 기 타

법률안 제1조 내지 제10조는 적용방식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2013년 6월 26일자 EU지침(2013/33/UE, 2013/32/UE)의 국내법화 조치를 완성한다.

III. 보호에 관한 내용(Dispositions relatives au contenu de la protection) :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

1. 진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여기서 보호는 난민인정자 또는 보충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의 수혜자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1) 체류권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10년 기한의 장기체류증이 발급된다.(외국인법전 제 L314-11조) 인도적체류자로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법전 제L313-13조에 근거하여 1년 기한의 임시체류증이 발급되며 갱신 가능하다.

(2) 가족결합권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체류권

프랑스에서 가족결합권은 1978년 콩세이데따에 의해 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데 이어²²⁶⁾ 1993년 8월 13일 결정²²⁷⁾을 통해 헌법위원회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럽차원에서는 가족결합권에 관한 2003년도 9월 22일 위원회의 2003/86/CE 지침의 제5장에서 난민의 가족결합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226) CE Ass. 8 décembre 1978, Gisti, Cfdt et Cgt.

227) Décision n° 93-225 DC du 13 août 1993.

유럽차원에서 가족결합권은 ‘가족결합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공동체 지침’(2003/86/CE)으로 확립되었다. 특히 본 지침의 5장(chapitre V)은 난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결합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프랑스 외국인법전 제4권(livre IV)에 국제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 절차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사실, 외국인법전은 국제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의 체류권에 적용되는 예외적 요건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족구성원은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자의 가족이 특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근거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 국가의 상황이 열악한 경우 신원확인증명서의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출신국으로부터 도리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보호대상자가 가족의 출국을 돕기 위해 출신국에 방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국제적 보호 대상자인 외국인의 가족결합에 대한 특별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가족결합권에 관한 2003년 유럽공동체 지침 2003/86/CE)

가족결합에 관한 특별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국제적 보호 대상자인 외국인이 여러 해에 걸쳐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사실 잦다. 이는 기본권 박탈이라는 문제 외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조차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결합에 있어 난제는 사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Létard-Touraine 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이 기간을 단축한다해도 신원확인을 위한 제출자료가 없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단축된) 기간 안에 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5,289건의 사증발급신청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182건이 거부되었고, 이 중 약 1/3은 지방행정법원에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정보 및 법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법전 제L711-2조는 수용·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CAI)을 맺은 난민인정자는 취업과 주거에 있어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accompagnement personnalisé)를 받는다. 이는 「이민관리(maîtrise de l'immigration), 통합 및 보호에 관한 2007년 11월 20일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법전에 통합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관한 일반 규정과는 달리, 난민의 경우 수용·통합계약에 따라 체류증을 갱신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L711-2조)

(4) 입법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규범의 접근성과 명료함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법전의 제7권, 즉 「난민법」은 처우에 대하여 일정부분 할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호자의 가족결합권 및 여행증명서에 있어 그러하다. 이는 법의 명확성과 효율성에 관계된다.

특히 가족결합권의 명시적 인정은 외국인법전에 가족결합권의 시행요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호자의 체류증 관련하여, 2011년의 <자격요건> 지침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있어 변화를 준다 : 첫째, 국제적 보호대상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체류증을 발급한다. 현 외국인법전은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 난민인정자의 부모에 대해서만 체류증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 난민인정자(할례(excision)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 및 보충적 보호자의 부모에게 체류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충적 보호자에 대하여 최소 2년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외국인법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입법의 목적

법률안 제5장(chapitre V)은 보호인정자의 처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담고 있다 : 난민과 보충적 보호자의 체류권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법전 제7권(livre VII)에 가족결합, 취약성(vulnérabilité)의 고려,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5절(titre V)을 신설한다.

(1) 난민, 보충적 보호자 및 이들 가족의 체류권 강화(제18조)

법률안 제18조는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 EU지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법전 제L313-13조 및 제L314-11조를 수정한다 : 미성년 국제적 보호대상자(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자)의 부모에 체류증(장기체류증²²⁸), 임시체류증을 발급한다. 이와 같이 보호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자녀와 동등한 체류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결합 원칙을 강화한다. 이어, 보충적 보호자 및 그의 가족에게 2년의 기간 동안 임시체류를 연장한다.

(2) 가족결합권의 법적근거 마련(제19조)

법률안 제19조는 보호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법전 제7권 제5절에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제5절 제2장은 가족결합권과 관련된다. 즉, 가족결합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족결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법전 제L752-1조에서는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의 지위를 갖는 외국인은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의 인정을 받기 전에 혼인한 경우 배우자(conjoint majeur)와 결합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녀가 (만)19세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결합권을 갖는다.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자가 미성년일 때에는 직계존속(ascendants directs)과 결합할 수 있다.

228) carte de résident.

가족결합에 관한 일반규정(외국인법전 제4권)는 달리,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전체재기간, 소득, 주거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

한편, 프랑스 법상 가족생활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결합신청이 거부된다. 이외에 공공질서를 이유로 가족결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 제19조는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가족결합신청자에게 신분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신청자의 수용정책 평가²²⁹⁾에 관한 의회보고서(rapport d'information de l'Assemblée nationale)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난민, 보충적 보호) 인정자의 가족이 등본을 발급받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및 사증발급처리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 여행증명서 발급(제19조)

외국인법전 제7권 제5절에 국제적 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제3장(chapitre III)을 신설한다. 발급대상자는 난민, 무국적자, 보충적 보호자이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프랑스 국경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난민과 보충적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를 방문할 수 있으나 박해 또는 중대한 위협에 노출될 경우에는 예외이다.

여행증명서의 기한은 조세법전(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953조에서 정한다.

229) L'évaluation de la politique d'accueil des demandeurs d'asile a été lancée en mai 2013 par le ministre de l'Intérieur. Le rapport a été remis officiellement à ce dernier le 28 novembre 2013 par les parlementaires Valérie Létard, sénatrice du Nord et Jean-Louis Touraine, député du Rhône. Il s'est appuyé sur les travaux de la concertation nationale sur la réforme de l'asile composée des grands acteurs du secteur (Etat, élus locaux, associations et opérateurs) et devrait alimenter le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dont l'adoption est prévue au cours du 2nd trimestre 2015. <http://www.modernisation.gouv.fr/laction-publique-se-transforme/en-evaluant-ses-politiques-publiques/espace-dedie/rapport-evaluation-de-la-politique-daccueil-des-demandeurs-dasile> 최종방문일 2017. 11.10.

(4) 취약성의 고려(제19조)

다음은 정보 및 보호인정자의 권리에의 접근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법전 제7권 제5권 제1장(chapitre Ier) 관련 내용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 보호의 인정과 제L311-9조의 수용(accueil)에 관한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제L751-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외국인, 법정난민(réfugié statutaire) 또는 보충적 보호자는 취업과 주거 문제에 있어 맞춤형 서비스(accompagnement personnalisé)를 제공받는다. 제L751-2조에서는 보호인정자의 권리에 있어 미성년자 및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취약한 자(personnes vulnérables)에 대하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다.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관하여 제L752-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비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특히 가족문제의 경우, 해당 아동(enfant)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 본인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본국에 남아있는 아동 또는 부모에 위태로운 상황일 때에는 가족찾기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L752-3조에 따라 여성 할례(mutilation génitale féminine)의 위협을 이유로 보호가 인정되었을 경우, 난민과 무국적자 사무국(OFPRA)는 (할례가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certificat médical)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미성년자에 보호지위를 부여한 후 할례를 겪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데 있다. 사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이미 이 경우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왔으나 법적근거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생식)절단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무국(OFPRA)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다.

(5)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 지위의 철회(제18조)

법률안 제18조에 따라 외국인법전 제L311-8-1조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한다 : 거짓이 있거나 보호의 중지사유에 해당하여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또는 법원에서 보호를 취소·철회하거나 외국인이 스스로 보호를 철회하는 때에는, 비호자격으로 받

은 체류증(임시체류증, 장기체류증)을 반납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는데, 보호가 취소 또는 철회되더라도 체류증의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류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체류증이 반납된 경우, 행정청은 다른 자격으로 체류권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생활 등 기타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체류에 대한 권리와 보호의 취소·철회에 따른 체류증 반납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 입법의 영향

(1)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향

외국인법전 제L752-3조(법률안 제19조)에서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 진단서를 (비호신청자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 할례의 위험이 박해로 인정된 경우와 관련된다. 이는 아동의 우선적 이익 및 여자아동의 보호 필요성에 근거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2013년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약 3,000명이 여성 할례의 사유로 보호되고 있다. 이는 콩세이데따(Conseil d'Etat)의 2012년 12월 21일자 세 가지 결정(n°332607, 332491, 332492)에 따른 것으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할례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난민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출신국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 사회집단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은 외국인법전 제L712-1조 제b문(alinéa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보호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비호법원(CNDA)은, 콩세이데따 및 사무국(OFPRA)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4년 1월 20일자 판결(12006532, 12006533)에서 아동의 부모가 할례를 하는 집단으로부터 박해 또는 중대한 위협에 노출된 경우가 아닌 한, 비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결합권이 적용되므로 난민으로 인정된 미성년 자녀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2) 장애인에 대한 영향

법률안 제19조 내지 제23조는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3) 법적영향

외국인법전 제7권에 보호에 관한 제5절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결합권, 여행증명서 등을 담는다. 이는 가족결합권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2003/86/CE) 및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 EU지침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4) 사회적 영향

가족결합에 관한 규정으로 사증발급 거부 및 사증신청처리기간이 축소되어야 한다.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가 가족결합신청자에게 발급한 증명서가 신분확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는 규정의 신설로 비호인정자의 가족은 앞으로 보다 쉽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음에 따라 가족결합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공동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결합에 관한 재정요구조건을 면제한다. 이는 일부 생활이 어려운 보호인정자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5) 행정적 영향

1) 가족결합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관련 소송의 감소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감소하면 이는 동시에 관련 소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2) 보충적 보호의 자격으로 체류증 갱신을 위한 경찰청에의 출입감소

<자격요건>에 관한 2011년 EU지침은 보충적 보호자가 1차 체류증 갱신 시 최소 2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한다. 본 법률안에서도 이 기간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벨기에와 독일 또

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체류증 갱신으로 경찰청에 출입하는 건수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며, 비용 또한 40% 줄어들 것이다.

미성년자 보호인정자의 부모의 체류권 연장 관련하여, 자녀 수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한다.

4. 법의 시행

(1) 시간적 적용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조항인 제L752-3조는 적용방식 등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적 적용

프랑스 영토 전체에 적용된다.

(3) 자문(consultation)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사전자문을 요하지 않는다.

IV. 소 결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의 영향분석서는 비호인정요건과 비호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비호신청등록과 거주권, 비호신청자에 대한 거주권, 비호신청자에 대한 지원, 보호의 내용으로 나누어 영향분석 방법론에 따라 현재 상황의 진단 및 입법의 필요성을 개관하고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 채택된 수단 및 그 밖의 안을 설명한다. 입법의 영향으로는 양성평 등 관점에서의 영향, 장애인에 대한 영향, 법적영향, 사회적 영향, 행정적 영향 등을 예측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향분석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간이한 규범적 분석만 행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 난민법 개정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공동의 난민처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이유에도 기인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특징이기도 하다. 시간적·장소적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의 부칙에 해당하며, 영향분석을 함에 있어 자문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적는다.

2015년 개정 「난민법」의 주요쟁점을 아래 표와 같다.

<표> 2015년 난민법 개정의 주요쟁점²³⁰⁾

쟁 점	개정사항
비호인정요건과 비호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의 제외와 증지조항 신설 ◦ OFPRA의 독립성 명문화 ◦ 안전한 국가 정의 수정
비호신청등록과 거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확보 삭제
비호신청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시설의 법적근거 마련 ◦ 보조금의 단일화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고려
보호의 내용 :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의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결합권 ◦ OFPRA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권한 부여 ◦ 아동의 우선적 이익 등 취약성 고려 ◦ 여행증명서

230)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안 및 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작성함.

제5절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I.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외국인법전」의 개정

1.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의 입법과정

전술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수반한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은 2014년 7월에 하원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2월에 상원의회에 제출되었다. 프랑스는 법률안이 각원에서 2회의 심의를 거쳐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각 원에서 7명씩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동수협의회(Commission mixte paritaire)에 회부하는데(헌법 제45조 제2문²³¹⁾), 동 법률안의 경우 양원동수협의회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시 독회를 거쳐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헌법 제45조 제4문²³²⁾)

2.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법전」으로의 통합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난민에 관한 법전에 통합되었다. 동 법전은 총 9개의 권(livre)로 구성되며²³³⁾ 제7권(livre VII, droit d'asile)에서

231) <Lorsque, par suite d'un désaccord entre les deux Assemblées, un projet ou une proposition de loi n'a pu être adopté après deux lectures par chaque Assemblée ou, si le Gouvernement a décidé d'engager la procédure accélérée sans que les Conférences des présidents s'y soient conjointement opposées, après une seule lecture par chacune d'entre elles, le Premier ministre ou, pour une proposition de loi, les présidents des deux assemblées agissant conjointement, ont la faculté de provoquer la réunion d'une commission mixte paritaire chargée de proposer un texte sur les dispositions restant en discussion.>(art.45, al.2e)

232) <Si la commission mixte ne parvient pas à l'adoption d'un texte commun ou si ce texte n'est pas adop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le Gouvernement peut, après une nouvelle lecture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le Séna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statuer définitivement. En ce cas,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prendre soit le texte élaboré par la commission mixte, soit le dernier texte voté par elle, modifié le cas échéant par un ou plusieurs des amendements adoptés par le Sénat.>(art.45, al.4e)

233) 제1권 총칙, 제2권 출입국, 제3권 프랑스 체류, 제4권 가족재결합(2006년), 제5권 퇴거조치, 제6권 통제 및 처벌/벌칙, 제7권 망명권, 제8권 공통규정 등, 제9권 공동개발.

난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표> 프랑스와 한국의 「난민법」 구성의 비교

프랑스 「난민법」 (외국인법전 제7권)	대한민국 「난민법」
<p>제1절 비호권 부여조건 제1장 난민자격(711-1~711-6) 제2장 보충적 보호(712-1~712-4) 제3장 공통규정(713-1~713-6)</p> <p>제2절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PFRA) 제1장 임무(721-1~721-4) 제2장 조직(722-1~722-5) 제3장 비호신청에 대한 심사(723-1~723-17) 제4장 보호의 종료(724-1~724-3)</p> <p>제3절 비호법원(CNDA) 제1장 임무(731-1~731-4) 제2장 조직(732-1) 제3장 소의 심리(733-1~733-5)</p> <p>제4절 비호신청자의 수용조건과 절차 제1장 비호인정신청의 등록(741-1~741-4) 제2장 비호인정심사의 절차(742-1~742-6) 제3장 거주권(743-1~743-4) 제4장 비호인정신청자의 수용조건(744-1~744-11)</p> <p>제5절 보호의 내용 제1장 법에 관한 정보 및 접근성(751-1~751-2) 제2장 공통규정 및 그 밖의 규정(752-1~752-3) 제3장 여행(753-1~753-5)</p> <p>제6절 해외령 관련 규정</p>	<p>제1장 총칙 ◦ 난민,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정의 ◦ 강제송환의 금지</p> <p>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난민인정신청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난민인정심사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통역 ◦ 난민인정의 제한 ◦ 이의신청 ◦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p> <p>제3장 난민위원회 등 ◦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난민위원회의 운영 ◦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p> <p>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난민인정자의 처우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 난민신청자의 처우</p> <p>제5장 보칙 ◦ 난민지원시설</p> <p>제6장 벌칙</p>

II.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제도의 특징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정부 주도의 입법추진을 그 고유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 역임기간의 13대 국회(XIIIe législature, 2007.6~2012.6)의 정부입법이 83%였고²³⁴⁾, 올랑드 대통령 재임기간의 14대 국회(XIVe législature, 2012.6~2017.6)의 정부입법은 75%에 달했다.²³⁵⁾

프랑스는 사전영향분석제도를 헌법 제39조제3항에 명문화하면서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소관부처에서 정부제출법률안에 수반되는 영향분석서를 일차적으로 작성하면 국무조정실(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SGG)에서 그 분석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조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조정 또는 통제는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입법의 사전조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발안의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에 회부되기 전에 콩세이데따(Conseil d'Etat)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나 의회가 아닌 제3의 헌법기관이 개입하여 국내법 및 EU법과의 체계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비록 콩세이데따의 의견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발안법률안에 대한 통제기능은 콩세이데따에서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원의 의장단회의(Conférence des présidents)와 공공정책에 관한 평가와 조정위원회(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에서 영향평가서가 헌법의 제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0일간 판단한다.

234)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seance/statistiques-13leg.asp> 최종방문일 2017.11.10.

235)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session\)/2015-2016%20\(1er%20octobre%202015%20-%2030%20septembre%202016\)](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session)/2015-2016%20(1er%20octobre%202015%20-%2030%20septembre%202016)) 최종방문일 2017.11.10.

그런데 2009년 4월 15일자 조직법률²³⁶⁾ 제8조에서는 법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재정적 영향분석에 있어 수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³⁷⁾ 대다수의 영향분석서는 규범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국무조정실, 의회 그리고 콩세이데따 모두 조직법률 제8조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확장된 입법 이유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영향분석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하였고 또한 정부, 의회 등 실무그룹의 면밀한 분석과 노력에 기초하여 사전영향분석을 실시하지만, 규제비용검토 등 정량적 평가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분석에 치우쳐 있다.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서가 정부발안입법에 있어 강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정부와 의장단회의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원의장은 헌법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헌법 제39조제4문) 법률안에 부속된 영향분석서의 미비를 이유로 의사일정 등록으로부터 제외시킨 사안에서 헌법위원회의 판단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²³⁸⁾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08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중 하나가 의회기능의 강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현 사전영향분석제도는, 헌법개정과의 연관에서 살펴볼 때,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절차에 대한 개혁²³⁹⁾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운용적 측면 등을 보면 정부발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에서 의회의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 내지는 합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의 품질을 개선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무그룹의 규범적 영향분석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입법

236) Loi organique n° 2009-403 du 15 avril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s articles 34-1, 39 et 44 de la Constitution

237) 'l'évaluation d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sociales et environnementales, ainsi que des coûts et bénéfices financiers attendus des dispositions envisagées pour chaque catégorie d'administrations publiques et de personnes physiques et morales intéressées, en indiquant la méthode de calcul retenue'

238) Décision n°2014-12 FNR du 1er juillet 2014.

239) 정부발안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서 제출의무 외에 입법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의원의 법률수정안 제출권을 제한하였다.

과정의 한 형식에 불과할지라도 입법절차의 강화를 통하여 법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공공정책 평가 및 조정위원회에 의해 사전영향분석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법률안의 수정과정에서 법의 질이 향상되고, 국무조정실 단계에서도 분석서에 대한 평가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Ⅲ. 우리 난민법 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프랑스의 2015년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은 많은 부분 유럽지침의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유럽 및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동등한 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난민소송구조 등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인정자 등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난민인정절차 관련하여, 프랑스는 난민신청에 대해 일차적 심사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불인정처분을 내리면 특별행정법원인 비호법원(CNDA)에 항소하게 되고 이에 법률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콩세이 데따(Conseil d'Etat)의 최종판단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정예의 비상설위원회인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 시 법원에 소를 제기 하기 때문에 신청처리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OFPRA의 경우 그 설립 때부터 독립성이 견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OFPRA의 인력과 재정면에서의 우월적 규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가칭)난민심판원이 설립 시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국 담당 공무원과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생계비 지원의 개선은 2015년의 개혁 사항 중 하나였다. 프랑스는 난민신청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이른바 “난민수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dispositif national d'accueil)를 단행하였고 난민신청자보호센터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24,410명의 인원을 수용했는데, 즉 난민신청자의 33%가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신청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등을 통합운영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지와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 머물도록 제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난민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다수이다. 난민지원센터에는 100여 명의 난민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작년에 7천여 명에 달했던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적은 규모이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건립 당시 논란이 분분하여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프랑스는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에의 거주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우리 「난민법」 또한 난민인정신청자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주거시설의 지원은 6개월이 원칙인데, 난민위원회로의 이의신청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긴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난민신청자의 자격을 갖는 동안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의 문제이다. 프랑스의 난민인정자에게는 10년의 체류증이 발급된다. 우리의 경우 3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되며 물론 난민인정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이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체류의 안정성 및 체류증 갱신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난민인정자가 장애인인 경우 F2비자로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적어도 장애인 난민인정자에게 F5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 인도적체류자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가족결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의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보충적 보호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나 2015년의 개정으로 체류증 갱신은 2년마다 이루어지며, 난민인정자와 동일하게 여행증명서 및 가족결합권을 가진다. 또한 우리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족결합을 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2015년 개혁에서는 미성년자 난민의 부모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아동의 우선적 이익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1,46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는 782명의 난민인정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만 허가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향 난민신청의 경우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구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4일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되더라도 총 구금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법적근거가 부재한 우리 「난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IV. 소 결

프랑스는 1951년의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그 이듬해 난민법을 제정하고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등 오랫동안 비호문제에 있어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내전 및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프랑스에의 난민신청도 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였다. 2007년 35,520건이었던 난민신청은 2013년에는 무려 66,251건에 달했다. 인력충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처리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난민신청자의 보호시설, 인정절차에 관한 법 규정은 수 년 전부터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 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

어 왔다. 또한 프랑스는 EU회원국으로서 난민처우에 있어 EU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명 ‘비호 패키지’로 불리는 세 개의 EU규정 및 지침을 2015년 7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2014년 정부 주도로 난민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한다.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서 법률안 및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였고 의회(공공정책 평가 및 조정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을 거쳐 입안되었다. 그 결과 난민인정절차의 간소화, 난민신청자의 보호시설 확대, 심사기간의 단축, 가족결합 등 난민인정자와 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외국인법전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난민정책에 있어 전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난민인정률은 약 20%로 독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으며, 프랑스 국내에서 최근 몇 년에 걸쳐 수차례의 테러가 자행되자 쉥겐조약의 수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난민정책에 대한 태도는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통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재입국협정과 안전한 국가목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안전한 국가의 목록은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작성권한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 목록에 가장 많은 국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2005년도의 최초목록에 12개의 국가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확대하여 2015년에는 16개국으로 늘어났다. 비호신청자 가운데 안전한 국가 출신이 10% 내외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또한 난민협약의 중지조항(*clause de cessation*)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안전한 국가 출신인 경우, 공공질서나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남용신청에 해당하는 때에는 OFPRA에서 우선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비호신청의 25.6%가 이 방식에 의해 처리되었다. 우선절차에서 난민신청자격이 거부되면 해당 신청자는 비호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즉시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에 대하

여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등에서는 프랑스가 우선절차를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비판하였으나 헌법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2012년 우선절차가 유럽인권협약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집행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비호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퇴거를 면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2015년의 비호권 개혁에 반영된 것이다.

비록 우선절차의 경우 프랑스가 가입한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하여 2015년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안전한 국가, 재입국협정 등 프랑스로의 난민유입 및 난민인정 등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가 1946년 헌법에 비호권을 인정하는데 이어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비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비호권 및 비호인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일찍이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줄곧 1951년의 난민협약을 근거로 삼다가 프랑스 국내법을 인용한 것은 비교적 나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가 난민인정자에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사법부와 행정부의 소극적 해석 및 집행과 같은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블린조약으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EU회원국이 불균형적인 난민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법원도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난민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물론 법원에서의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저조하나 국제사회 수준에 부응하려면 국가정황정보나 변호인의 조력, 통역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요청 및 규범의 홍수 속에서 정부 입법에 대한 품질개선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사전영향분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입법 초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법의 명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측면에서도 절감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이다.

법률안의 작성주체와 영향분석서의 작성기관이 동일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전통제를 맡고 있는 국회의 역할에서 오는 문제로 보인다. 법안통과 목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법률안 소관부처가 입법의 효과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규범적 영향이 위주가 되는 현재의 프랑스 영향분석제도는 입안하는 과정과 절차를 개혁하고 그 안에서 정부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연유에서 헌법상의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 단계에서 통제기능을 강화하면 정부입법이 높은 구조에서 입법의 신속성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사전영향분석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입법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입법통계에서도 영향분석제도의 헌법적 수용 전후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5년의 프랑스 「난민법」 제정은 유럽연합의 규범을 외국인법전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난민과 보충적 보호자의 자격요건, 인정절차, 처우 등에 있어 유럽연합 지침상의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입법의 필요성, 목적 및 선택안이 사실상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영향평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영향분석서는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서 규범적 영향분석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의 난민정책은 개정된 법을 행정부와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향방을 달리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출입국항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두고 있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것인데, 다만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하나, 그 실정을 들여다보면 국내 난민유입에 있어 스크린 기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요컨대, ‘더 좋은 법’은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이상으로 그 운용에 더욱 비중이 실리듯이, 난민법 또한 법적개선은 최소한의 요건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집행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제5장

「난민법」 설문조사

제1절 개 관

제2절 일반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제3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결과 분석

제5절 「난민법」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제5장

「난민법」 설문조사

제1절 개 관

「난민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국민적 법률제정 수요는 크지 드러나지 않은 법률이었다. 즉, 국민의 상향식 법률수요가 있었지만 보다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요청과 법무부 그리고 국회의 선도적 정책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률제정 당시 입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즉, 법률제정 당시 사전적 또는 병행적 입법평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국내법 전환 그리고 법령의 집행여부가 국민인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과 「난민법」 그리고 난민정책에 관한 비호국 국민들의 인식과 동의는 「난민법」의 적정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정책, 특히 지원정책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데 호의적인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한정된 국가행정과 재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특정 법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난민법」과 같이 외국인 관련 법률에는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난민 및 난민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그리고 난민정책에 관해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을 조사해 보아 「난민법」 개정과 난민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일반인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난민법」이 집행되면서 시민사회 및 법무부 등에서 공감하였던 난민법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다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리와 대안의 방향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방법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난민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본문에서는 설문조사 항목 중 비교적 중요한 항목만 설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신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전체 결과와 내용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2절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

I.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난민 및 난민정책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향후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전국 만19세 ~ 69세 성인남녀
표본 크기	- 총 1,000명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

방법	
조사 참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Punching-Editing-Coding-Key ·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 분석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율 $\pm 3.10\%$
조사 기간	- 5일

3.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항목
난민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 난민관련 뉴스 접촉 경험 및 관심도 - 일상생활 및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 - 난민에 대한 감정 -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한국사회의 난민지원 충분성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성 - 「난민법」 인지여부 -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 「난민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국가위상 제고 여부 -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서 난민의 특성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 한국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 -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 난민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여부 - 난민보호 시설 인지여부 -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 -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4.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7.1%), 학력별로 ‘대졸’(70.0%), 월평균 소득별로 ‘101~301만원’(38.5%)에서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 수 (명)	비율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9)	50.9
	여성	(491)	49.1
연령	20대 이하	(194)	19.4
	30대	(205)	20.5
	40대	(240)	24.0
	50대	(225)	22.5
	60대 이상	(136)	13.6
지역	수도권	(501)	50.1
	충청권	(101)	10.1
	호남권	(97)	9.7
	대경권	(102)	10.2
	동남권	(160)	16.0
	강원/제주	(39)	3.9
직업	자영업	(88)	8.8
	블루칼라	(128)	12.8
	화이트칼라	(471)	47.1
	주부	(171)	17.1
	학생	(86)	8.6
	무직/기타	(56)	5.6

		응답자 수 (명)	비율 (%)
학력	고졸 이하	(204)	20.4
	대졸	(700)	70.0
	대학원 이상	(96)	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4.4
	101~300만원	(385)	38.5
	301-500만원	(238)	23.8
	501만원 이상	(133)	13.3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5
	없음	(965)	96.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53.7
	없음	(463)	46.3

II.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난민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난민 및 「난민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난민법」을 포함한 난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난민관련 전문가 (교수, 연구원,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표본 크기	- 총 28명 (총 41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응답률 68.3%)
조사 참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Punching-Editing-Coding-Key ·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 분석
조사 기간	- 7일

3.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항목
「난민법」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및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 -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 필요성 -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 -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한계 여부 -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 필요성 -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 출입국향 난민인정신청자의 제2조 난민신청자 포함여부 -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 부여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 기간 제한 필요성 및 적정 기간 -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 -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최대 3심 소송제기 허용에 대한 의견 - 출입국향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 출입국향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의 처우 관련 규정 필요성 및 수준

구 분	세부 항목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 - 난민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난민 수용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난민정책 시행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 및 성과가 적은 정책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난민 정책 -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
난민제도 남용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난민생계 지원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4.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교수직’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변호사/인권활동가’(31.0%), ‘공무원/연구직’(2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전문가 분야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응답자 수 (명)	비율 (%)
전 체		(28)	100.0
분 야	교수직	(13)	44.8
	공무원/연구직	(7)	24.1
	변호사/인권활동가	(8)	31.0

제3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I. 난민에 대한 인식

1.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도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1%(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남성(89.6%), 연령별로 50대(90.2%)에서 높게 나타났다.

난민의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5%(잘 알고 있음 + 알고 있음)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남성(41.5%), 연령별로 60대 이상(41.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 왔지만,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 인지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이라는 용어 인지도		난민의 상황 인지도		
		비인지	인 지	비인지	인 지	
전 체	(1,000)	14.9	85.1	63.5	36.5	
성별	남성	(509)	10.4	89.6	58.5	41.5
	여성	(491)	19.6	80.4	68.6	31.4
연령	20대 이하	(194)	17.0	83.0	69.6	30.4
	30대	(205)	17.6	82.4	64.9	35.1
	40대	(240)	18.3	81.7	62.1	37.9
	50대	(225)	9.8	90.2	61.8	38.2
	60대 이상	(136)	10.3	89.7	58.1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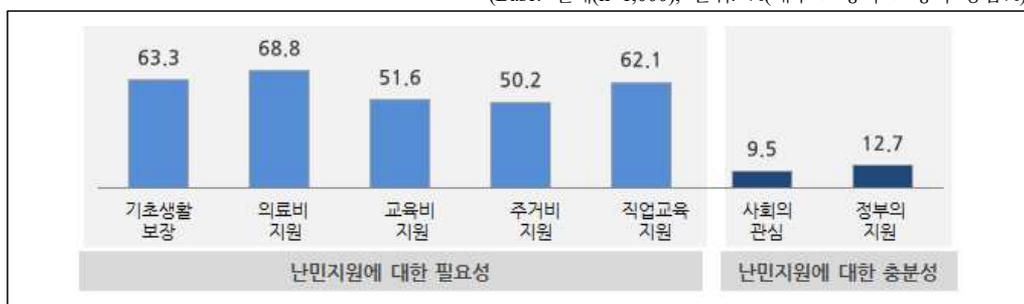
2. 난민 지원에 대한 의견

난민지원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의견은 의료비 지원(68.8%), 기초생활 보장(63.3%), 직업교육 지원(62.1%)에서 높게 나타났다.

난민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 ‘충분하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의견은 정부의 지원이 12.7%, 사회의 관심이 9.5%로 나타났다.

<난민 지원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우리 국민들은 난민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국민인식측면에서 난민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배경적 기초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추상적이거나 한국 정부와 사회의 난민지원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II.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1.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에 대해 ‘난민 처우 규정의 구체화’가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28.2%),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는 20대 이하(40.2%)에서 높게 나타났고,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는 40대(32.1%), 20대 이하(3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 국민들이 갖는 「난민법」 제정의 의의는 「난민법」이 갖는 법적인 내용의 충실화에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의 18%는 「난민법」 제정이 대한민국 건국 및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표>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 인지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	대한민국 건국 및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국내외적으 로 표방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로 서의 위상 확립
전 체	(1,000)	33.7	28.2	18.0	11.7	8.4
성별	남성 (509)	35.8	27.1	15.9	13.0	8.3
	여성 (491)	31.6	29.3	20.2	10.4	8.6
연령	20대 이하 (194)	40.2	32.0	11.9	9.3	6.7
	30대 (205)	34.6	30.2	16.6	9.8	8.8
	40대 (240)	34.2	32.1	13.3	11.3	9.2
	50대 (225)	29.3	20.0	27.6	15.1	8.0
	60대 이상 (136)	29.4	26.5	21.3	13.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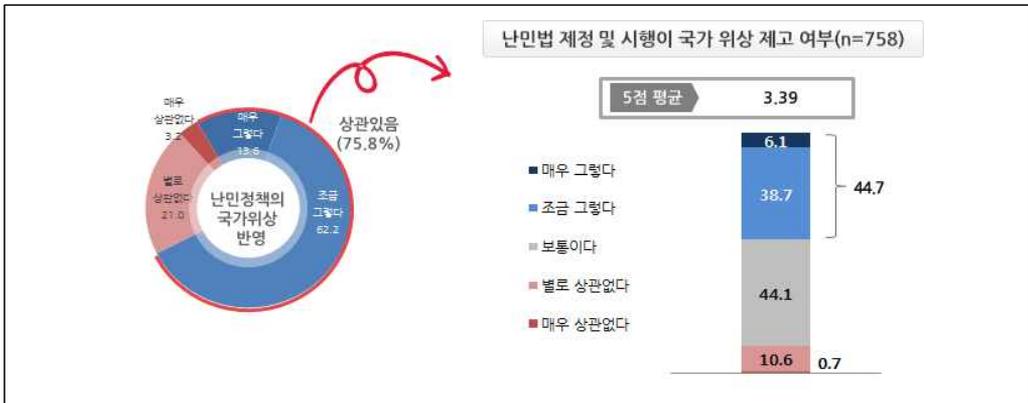
2. 난민정책의 국가위상 반영에 대한 의견

난민정책이 국가위상 반영에 상관있다는 의견이 75.8%로 나타났고, 「난민법」 제정 및 시행이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의견이 44.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국민들 중 상당수는 난민정책의 중요성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난민법」 제정과 시행만으로는 국가 위상이 제고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 나왔다는 것은 「난민법」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제정과 법집행 보다는 정책과 법을 통한 난민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난민 지원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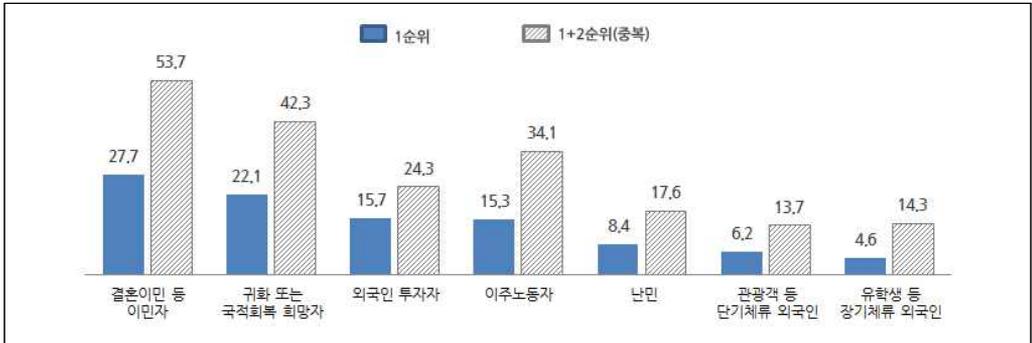
3.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외국인 정책 대상자의 우선순위로 ‘결혼 이민 등 이민자’가 2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희망자’(22.1%), ‘외국인 투자자’(15.7%) ‘이주 노동자’(15.3%)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Base: 전체(n=1,000), 단위: %)



외국인 정책 우선 대상자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결혼이민 등 이민자’는 성별로 여성(30.0%), 연령별로 40대(32.1%), 지역별로 동남권(3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0.1%)에서 높게 나타남.

난민에 대한 정책적 순위가 비교적 후순위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결혼이주민 등 다른 외국인 범주와는 달리 난민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즉각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1.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 난민의 특성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75.2%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82.1%), 60대 이상(80.9%)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수용가능한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51.2%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60.0%)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Base: 전체(n=1,000), 단위: %)

	사 례 수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 난민의 특성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수용가능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이민과 다르지 않음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임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전 체	(1,000)	17.3	82.7	5.0	19.8	75.2	14.1	34.7	51.2
성 별	남성 (509)	17.1	82.9	6.5	25.0	68.6	13.0	31.8	55.2
	여성 (491)	17.5	82.5	3.5	14.5	82.1	15.3	37.7	47.0
연 령	20대 이하 (194)	26.3	73.7	3.1	23.2	73.7	19.6	37.6	42.8
	30대 (205)	17.1	82.9	4.9	18.0	77.1	16.6	39.5	43.9
	40대 (240)	14.6	85.4	5.8	18.8	75.4	13.8	32.9	53.3
	50대 (225)	14.7	85.3	6.2	22.7	71.1	9.8	30.2	60.0
	60대 이상 (136)	14.0	86.0	4.4	14.7	80.9	10.3	33.8	55.9

한편,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로 ‘100명 이하’가 4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명~500명 이하’(36.3%), ‘500명~1000명 이하’(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인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동시에 수용가능한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에서 국민인식은 대체로 난민수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세대별 조사결과를 보면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난민수용에 대한 견해가 가장 많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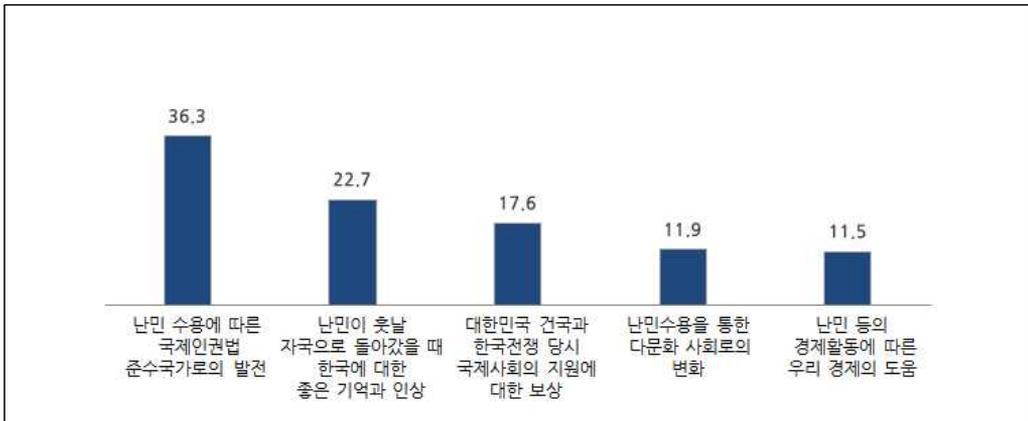
2. 난민의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영향

난민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3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5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이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22.7%),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보상’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긍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난민의 긍정적 영향으로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은 성별로 여성이 36.9%, 남성이 35.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4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0.6%),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4.8%),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46.6%)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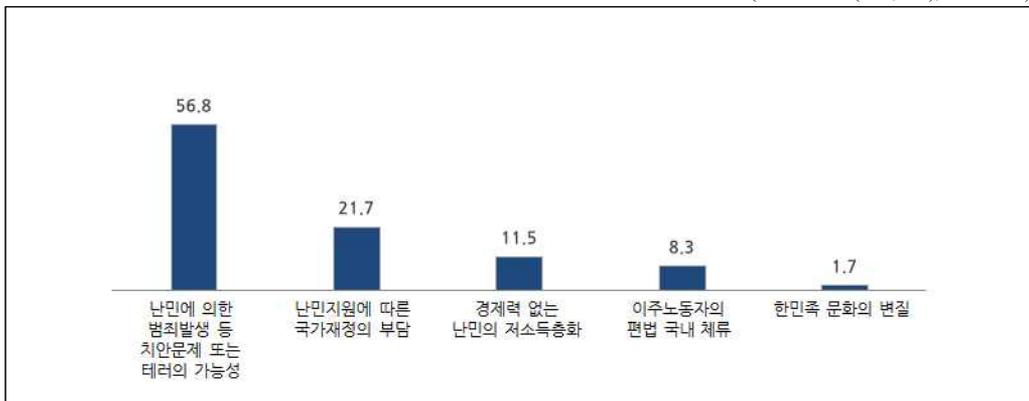
또한 난민수용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높았으며 (36.3%), 그 다음으로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이 가장 높았다. 우리 국민들은 난민수용의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국가위상 제고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높은 긍정적인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난민수용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및 테러 등의 우려(56.8%) 이외에는 국가재정부담, 난민의 저소득층화 순서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은 난민과 관련하여 치안 및 테러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 지원이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21.7%), ‘경제력 없는 난민의 저소득층화’(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의 부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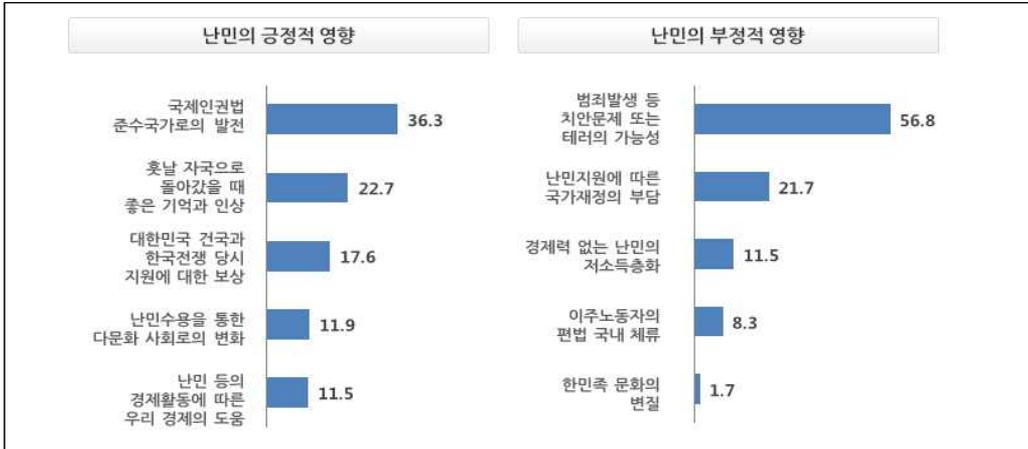


난민의 부정적 영향으로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은 성별로 남성이 57.4%, 여성이 56.2%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30대(60.5%), 지역별로 충청권(61.4%), 동남권(6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블루칼라(62.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난민의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



한편, 난민 보호 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48.2%로 ‘긍정적 영향’(1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55.1%)에서 난민보호시설이 주변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이다	긍정적 영향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평균
전체	(1,000)	48.2	6.3	41.9	39.8	12.0	11.1	0.9	2.58

		사례수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이다	긍정적 영향	어느 정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평균
성별	남성	(509)	44.8	7.3	37.5	40.1	15.1	13.6	1.6	2.65
	여성	(491)	51.7	5.3	46.4	39.5	8.8	8.6	0.2	2.52
연령	20대 이하	(194)	40.7	4.6	36.1	45.9	13.4	12.9	0.5	2.69
	30대	(205)	50.2	7.3	42.9	36.1	13.7	12.7	1.0	2.57
	40대	(240)	48.8	5.8	42.9	39.6	11.7	10.4	1.3	2.58
	50대	(225)	48.0	4.9	43.1	41.8	10.2	9.3	0.9	2.58
	60대 이상	(136)	55.1	10.3	44.9	33.8	11.0	10.3	0.7	2.46

난민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이유는 설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으나 난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와 주변지역에 대한 설득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난민신청자에 대해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의 통역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1%로 ‘불필요하다’(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90.7%), 60대 이상(9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 85.1%(매우 그렇다 36.7% + 그런 편이다 48.4%)이 ‘불필요함’(2.9% = 전혀 그렇지 않다 0.8%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 12.0%)

5점 평균은 4.18점으로 나타났다.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은 성별로 여성(88.8%), 연령별로 50대(90.7%), 60대 이상(90.4%), 지역별로 강원/제주(87.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91.0%)에서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6%로 ‘불필요하다’(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68.9%)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의 통역사 지원			변호사 비용 지원			
		불필요함	보통	필요함	불필요함	보통	필요함	
전체	(1,000)	2.9	12.0	85.1	7.7	29.7	62.6	
성별	남성	(509)	3.9	14.5	81.5	7.1	30.3	62.7
	여성	(491)	1.8	9.4	88.8	8.4	29.1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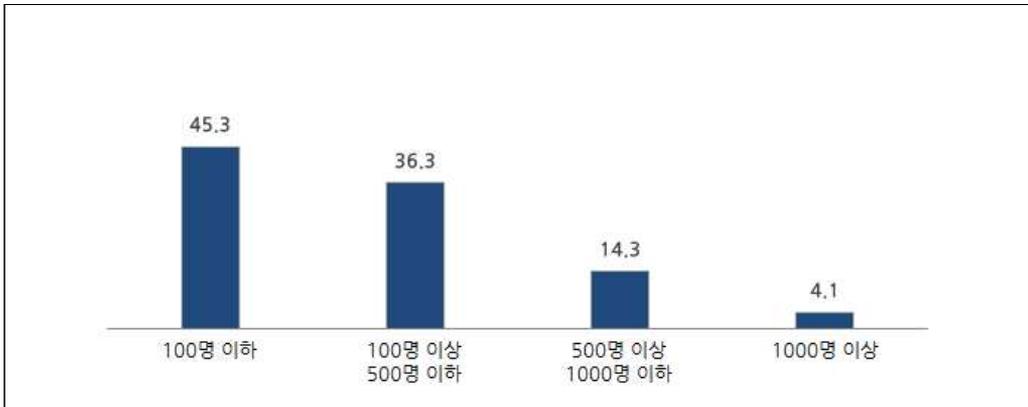
	사례수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의 통역사 지원			변호사 비용 지원			
		불필요함	보 통	필요함	불필요함	보 통	필요함	
연 령	20대 이하	(194)	6.7	18.6	74.7	11.3	37.1	51.5
	30대	(205)	3.4	14.6	82.0	6.8	30.7	62.4
	40대	(240)	2.9	9.2	87.9	7.1	28.8	64.2
	50대	(225)	0.4	8.9	90.7	6.7	24.4	68.9
	60대 이상	(136)	0.7	8.8	90.4	6.6	27.9	65.4

4. 난민 수용가능한 인원에 대한 국민인식

한 해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로 ‘100명 이하’라는 의견이 4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명~500명 이하’(36.3%), ‘500명~100명 이하’(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Base: 전체(n=1,000), 단위: %)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로 ‘100명 이하’는 성별로 여성(53.2%), 연령별로 60대 이상(51.5%), 지역별로 동남권(5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0.8%), 블루칼라(52.3%) 학력별로 고졸 이하(52.9%), 월평균 소득별로 100만원 이하(52.9%)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500명 이하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전 체		(1,000)	45.3	36.3	14.3	4.1
성별	남성	(509)	37.7	39.1	17.7	5.5
	여성	(491)	53.2	33.4	10.8	2.6
연령	20대 이하	(194)	38.1	42.3	17.0	2.6
	30대	(205)	47.3	38.0	9.8	4.9
	40대	(240)	42.5	35.8	17.5	4.2
	50대	(225)	48.9	31.6	15.6	4.0
	60대 이상	(136)	51.5	33.8	9.6	5.1
지역	수도권	(501)	42.1	38.9	13.8	5.2
	충청권	(101)	46.5	31.7	19.8	2.0
	호남권	(97)	50.5	35.1	13.4	1.0
	대경권	(102)	41.2	34.3	18.6	5.9
	동남권	(160)	53.8	30.0	12.5	3.8
	강원/제주	(39)	46.2	48.7	5.1	0.0
직업	자영업	(88)	31.8	43.2	23.9	1.1
	블루칼라	(128)	52.3	28.9	11.7	7.0
	화이트칼라	(471)	42.3	38.4	14.4	4.9
	주부	(171)	60.8	28.1	8.8	2.3
	학생	(86)	37.2	44.2	17.4	1.2
	무직/기타	(56)	41.1	37.5	16.1	5.4
학력	고졸 이하	(204)	52.9	35.3	8.8	2.9
	대졸	(700)	43.6	36.9	15.4	4.1
	대학원 이상	(96)	41.7	34.4	17.7	6.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2.9	32.4	12.3	2.5

		사례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500명 이하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101~ 300만원	(385)	46.8	36.6	13.0	3.6
	301- 500만원	(238)	39.1	40.8	15.5	4.6
	501만원 이상	(133)	38.3	34.6	19.5	7.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7.1	45.7	14.3	2.9
	없음	(965)	45.6	36.0	14.3	4.1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42.1	36.5	15.5	6.0
	없음	(463)	49.0	36.1	13.0	1.9

한국이 한 해 수용가능한 적정 난민의 수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100명 이하라는 의견이 4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0명에서부터 500명까지의 인원에 대해서도 36.3%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즉, 최근과 같은 정도의 난민수용을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난민수용인원을 늘리자는 입장도 36.3%라는 상당한 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수용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상당부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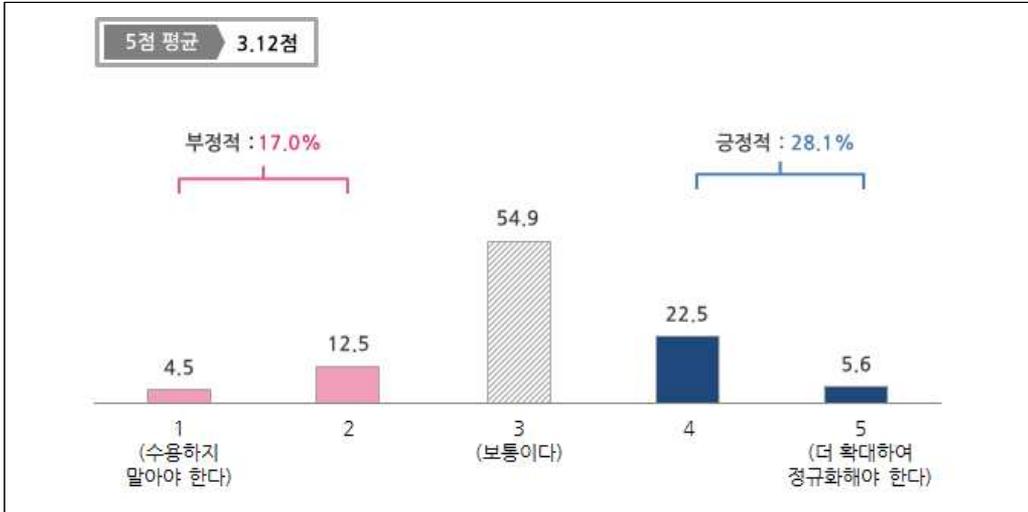
5. 난민 수용가능한 인원에 대한 국민인식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 ‘긍정적’이 28.1%(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5.6% + 그런 편이다 22.5%)이 ‘부정적’(17.0% =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4.5% + 그렇지 않은 편 1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 54.9%)

5점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 성별로 남성(30.8%), 지역별로 충청권(31.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3.5%),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0.6%),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33.8%),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40.6%)에서 높게 나타났다.

6.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에 대한 국민인식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57.1%(매우 그렇다 13.4% + 그런 편이다 43.7%)이 ‘동의하지 않음’(16.1% = 전혀 그렇지 않다 3.7%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 23.8%)

5점 평균은 3.51점으로 나타났다.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 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성별로 여성(62.5%), 연령별로 60대 이상(6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8.4%),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2.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8.6%)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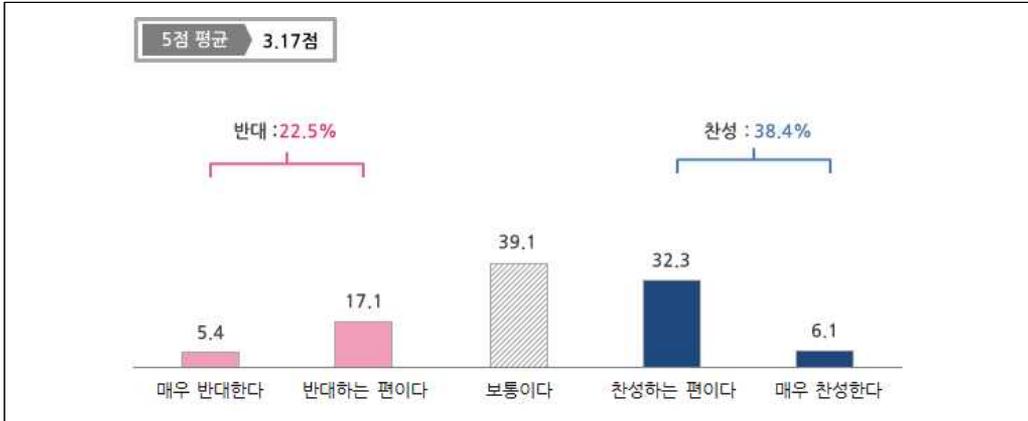
IV. 헌법개정과 망명권 관련 인식조사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38.4%(매우 찬성한다 6.1% + 찬성하는 편이다 32.3%)이 ‘반대’(22.5% = 매우 반대한다 5.4% + 반대하는 편이다 1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 39.1%)

5점 평균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은 성별로 남성(41.7%), 연령별로 60대 이상(41.2%), 지역별로 강원/제주(41.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2.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3.8%),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4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I. 「난민법」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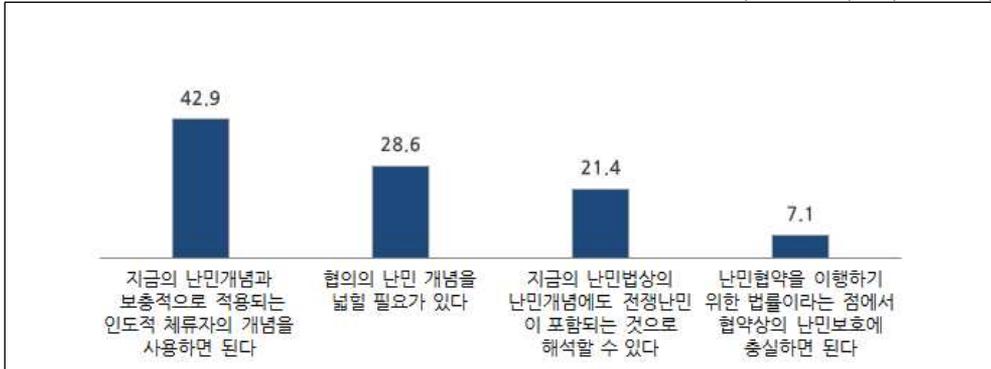
1. 「난민법」과 난민협약

전쟁난민을 포함시키기 위한 난민 개념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지금의 난민개념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인도적체류자의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42.9%), ‘협약의 난민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28.6%), ‘지금 「난민법」상의 난민개념에도 전쟁난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의 법률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난민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들이 다수였다.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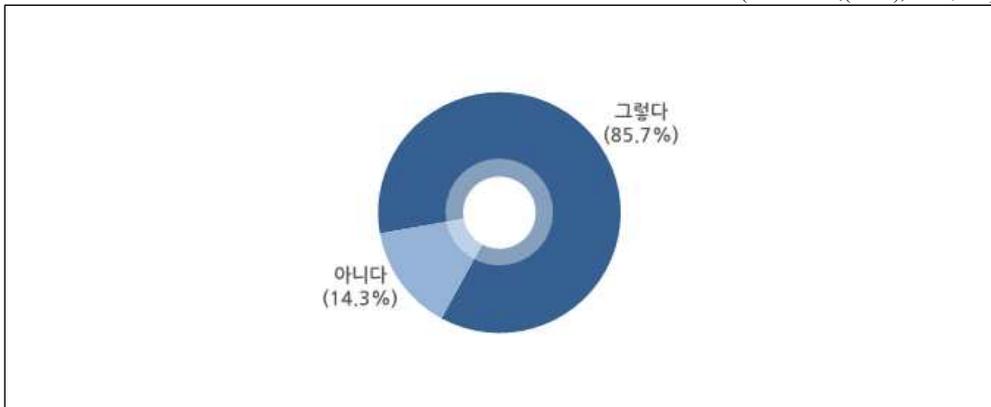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협약 내용이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가에 관한 설문에서 난민협약 내용을 각 국가별로 유연한 해석 적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85.7%로 ‘아니다’(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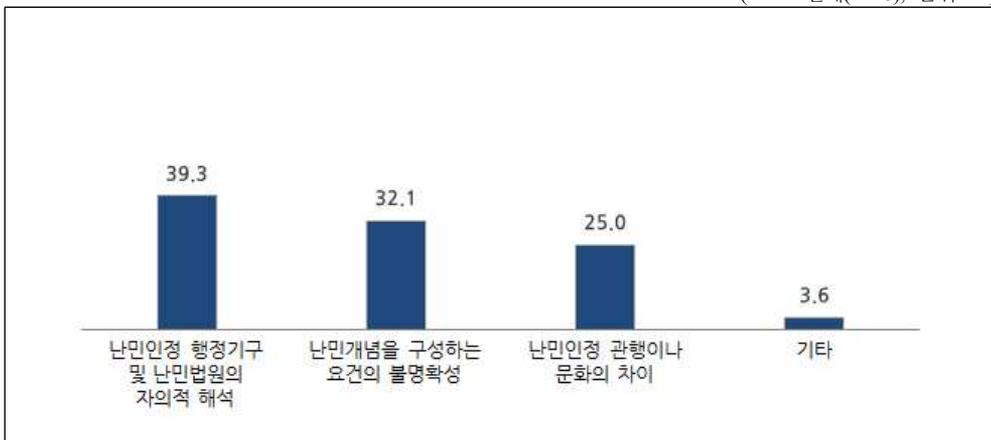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위의 설문과 관련해서 국가마다 동일인의 난민인정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난민인정 행정기구 및 비호법원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의 불명확성’(32.1%), ‘난민인정 관행이나 문화의 차이’(25.0%)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Base: 전체(n=28), 단위: %)



전문가들은 난민협약의 해석만으로는 명확한 난민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긍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일인이 각 국가마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요건에 대한 해석이 행정기구 및 요건의 불명확성 및 관행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난민협약과 「난민법」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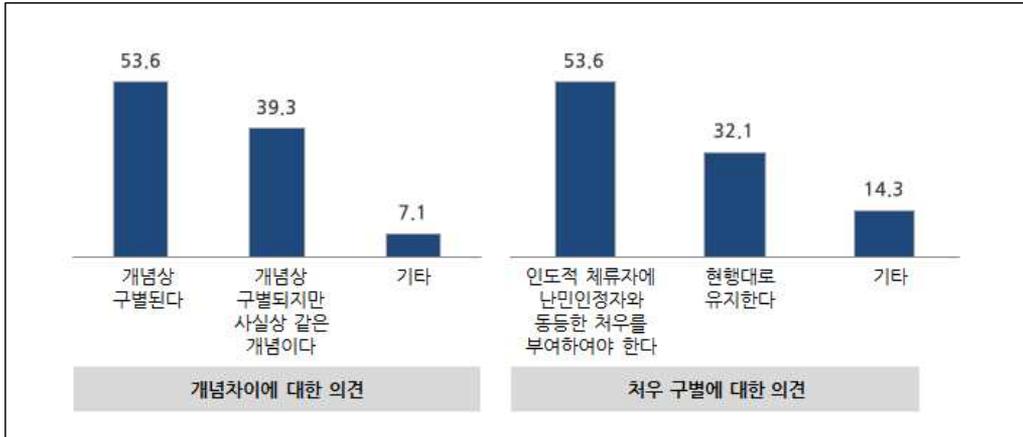
2.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구분에 대한 의견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차이에 대한 의견으로 ‘개념상 구별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도적체류자에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처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난민법」이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과반수가 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구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3.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내용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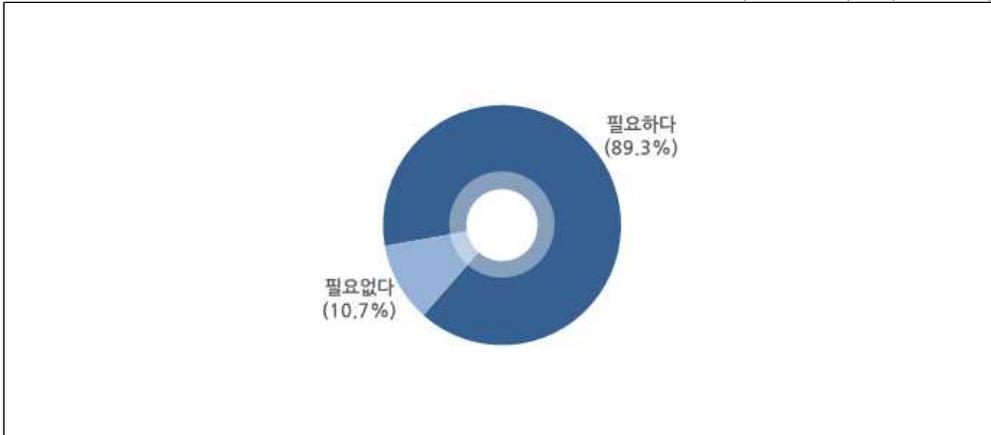
응답자의 92.9%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난민문제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5.7%의 응답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협약의 내용을 각 국가에서 유연한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을 적용하여 난민협약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89.3%로 나타났다.

난민협약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3%로 ‘필요없다’(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4. 「난민법」에서 난민의 처우 규정에 대한 의견**

「난민법」에서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92.9%로 나타났으며,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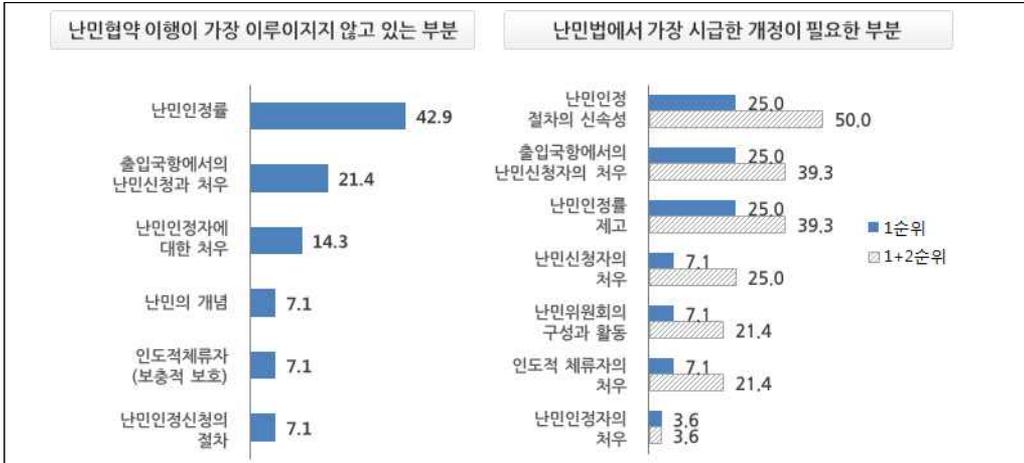
한편, 난민인정자를 위해 완화된 귀화요건을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났다.

5. 현행 「난민법」 개정사항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난민인정률’(42.9%),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21.4%),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난민법」 개정사항>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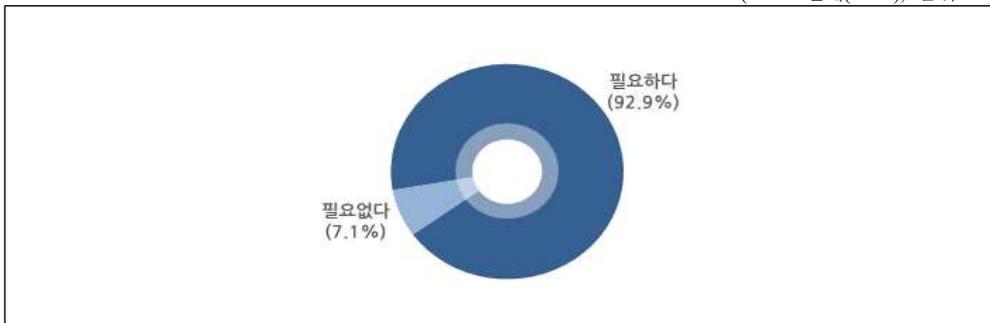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률 제고’가 각각 25.0%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1+2순위 응답으로는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났다.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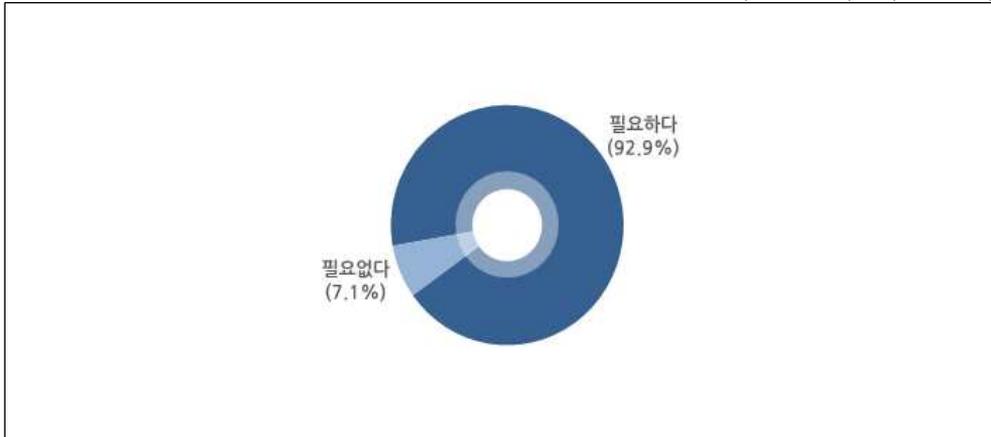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났다.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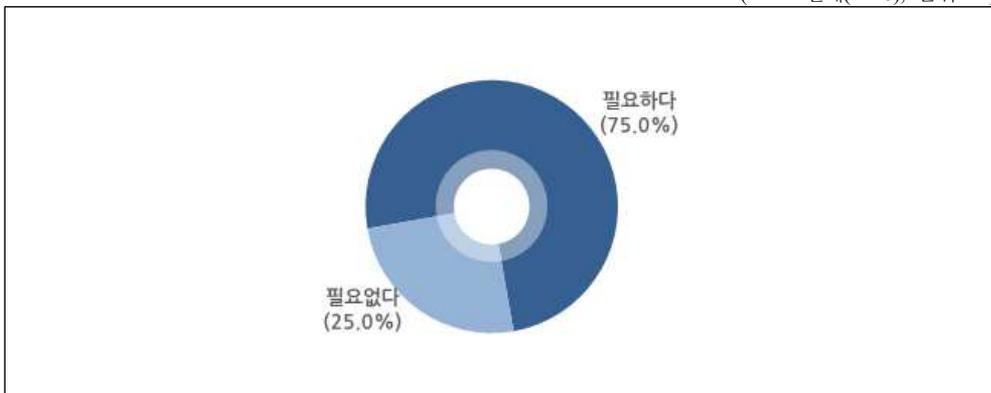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인정자를 위해 완화된 귀화요건을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0%로 ‘필요없다’(2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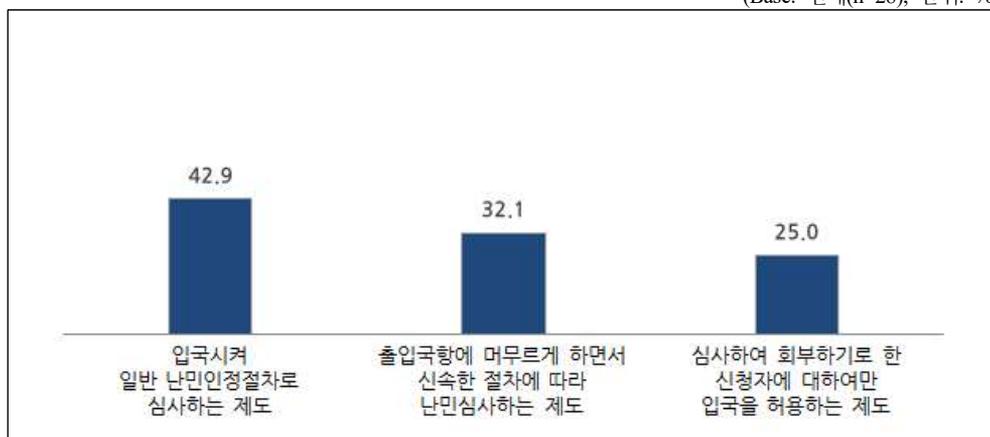
II.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의견

1.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규정

난민인정신청자 입국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는 제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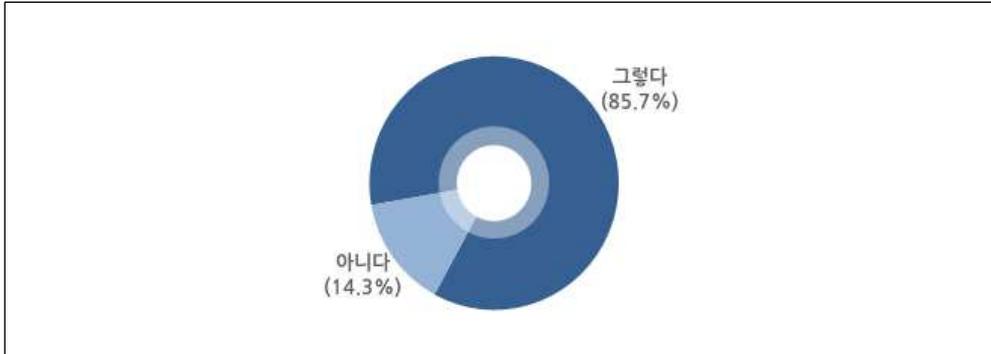


이처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도 제2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5.7%로 나타났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신청자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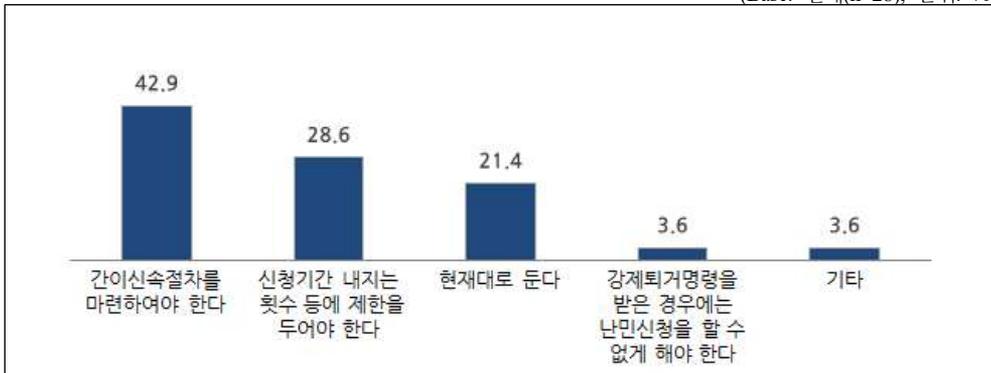


2.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의견

난민인정 반복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간이신속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42.9%), ‘신청기간 내지는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28.6%), ‘현재대로 둔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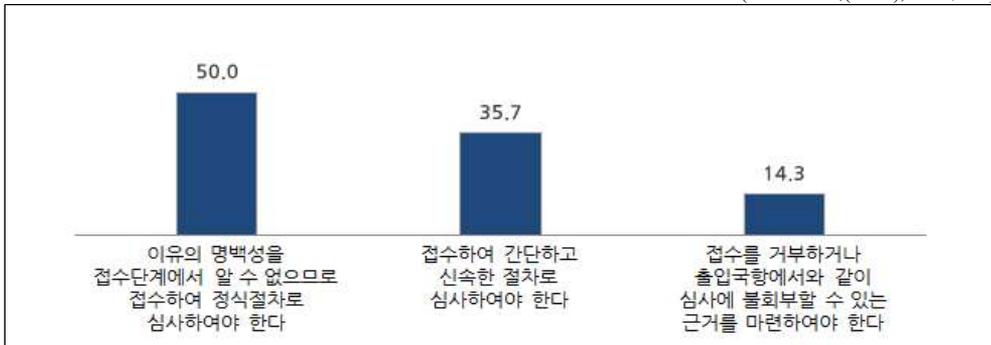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이유 명백성을 접수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50.0%), ‘접수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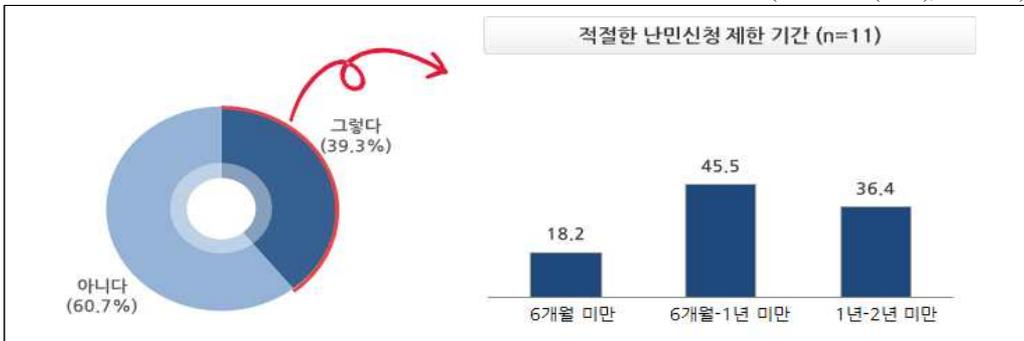


3. 난민신청 기간 제한에 대한 의견

응답자 중 39.3%가 난민신청 기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한 제한기간으로 ‘6개월~1년 미만’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난민법」 개정사항>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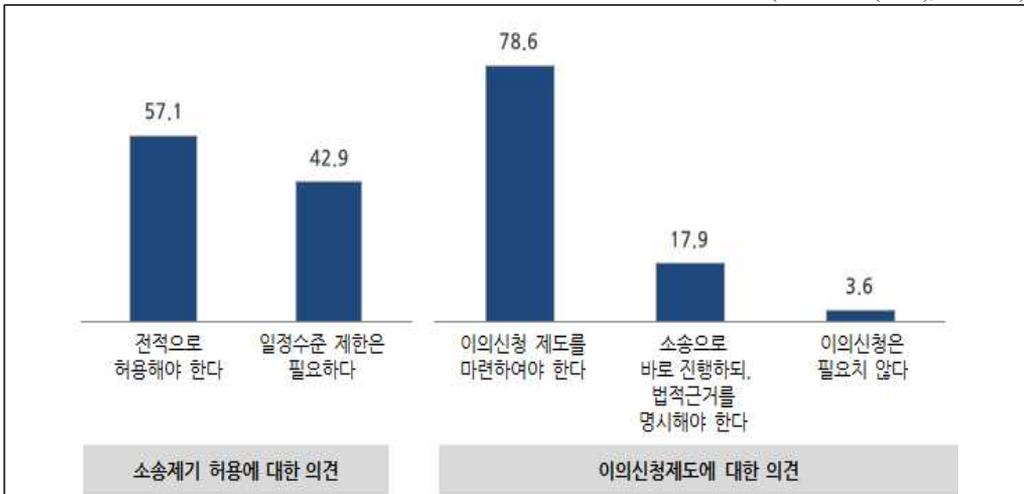


4. 난민신청 불복수단에 대한 의견

난민신청 불인정자가 법원에 최대 3심까지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나타났고, 출입국향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78.6%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난민법」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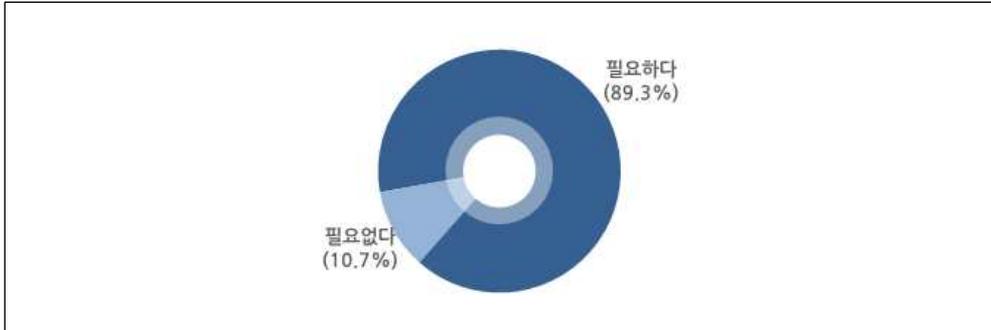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한편, 응답자의 89.3%가 출입국향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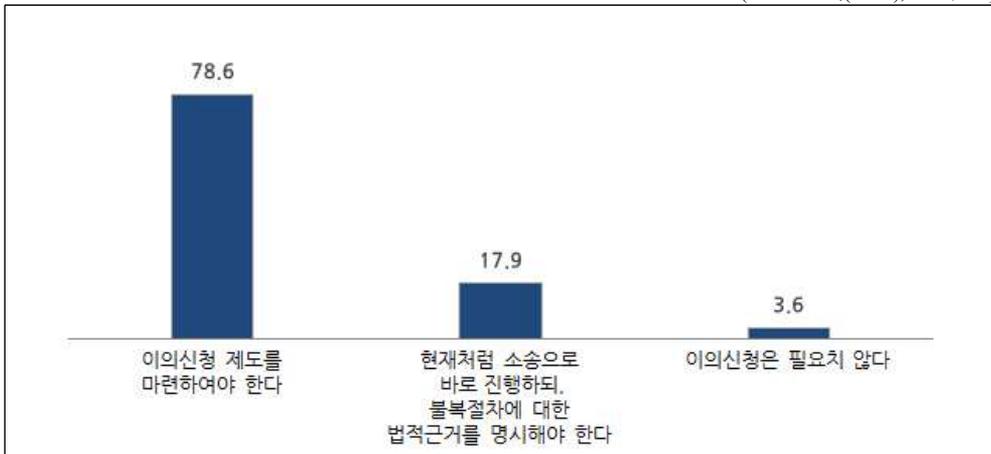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가 7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되, 불복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한다’(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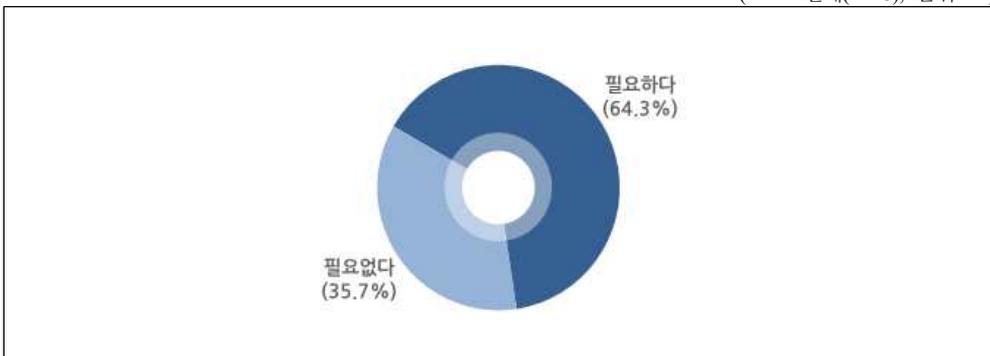


5. 난민신청 절차 중 권리에 관한 의견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필요없다’(3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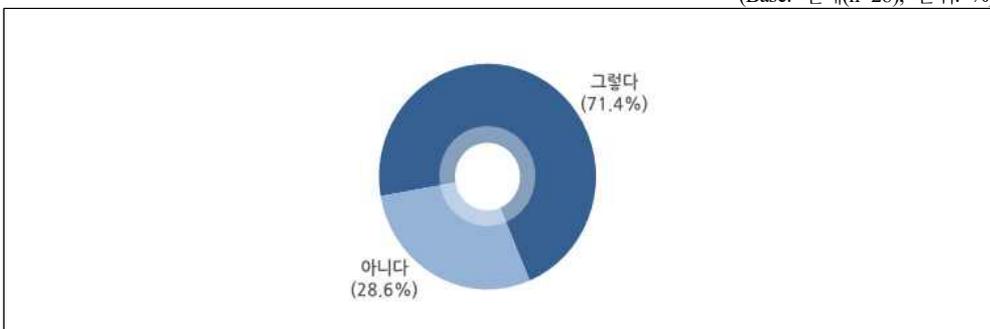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아니다’(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 부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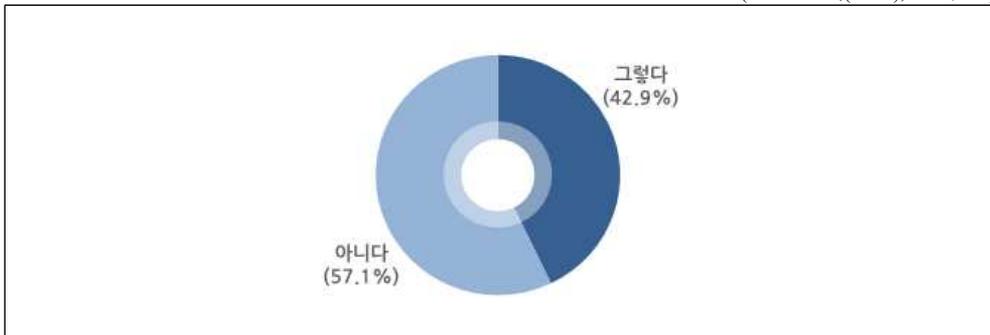


난민인정 심사에 있어서 법의 기본원칙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나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을 인정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절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가 있었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주체인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7.1%로 ‘합리적이다’(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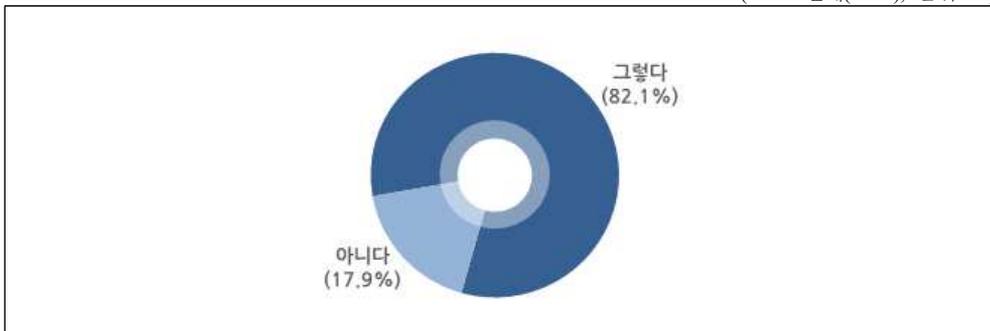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부 직원이 난민심사를 할 경우 선입견을 줄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2.1%로 ‘아니다’(1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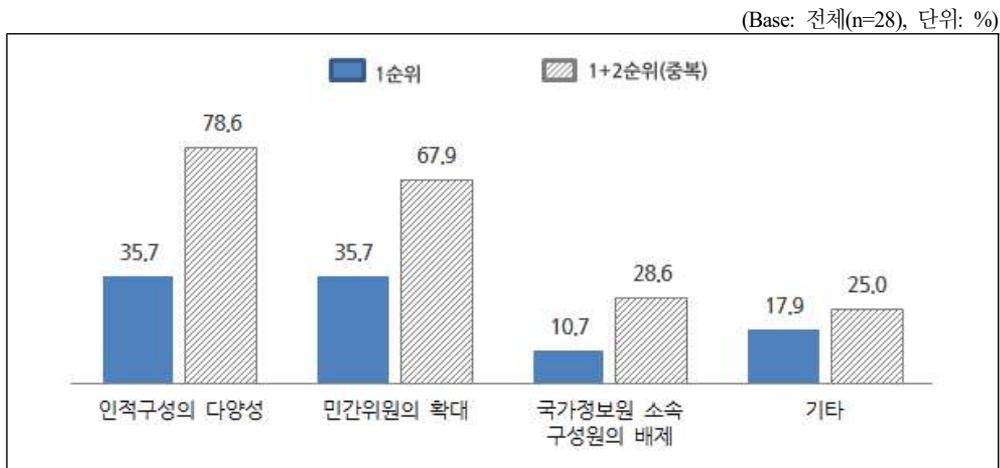


법무부 공무원의 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난민인정심사에 있어서 선입견을 갖을 수 있다는 견해에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난민행정의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Ⅲ.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난민위원회 구성 시 개선사항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인적구성의 다양성’ 및 ‘민간위원의 확대’(각각 35.7%)가 높게 나타났고, 1+2순위 응답으로는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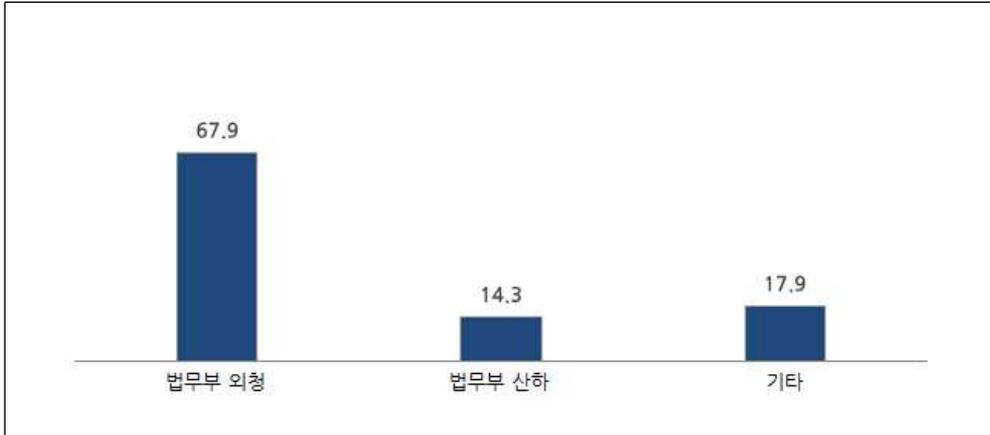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



응답자의 89.3%가 난민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설 시 소속으로는 ‘법무부 외청’이 67.9%로 높게 나타났다.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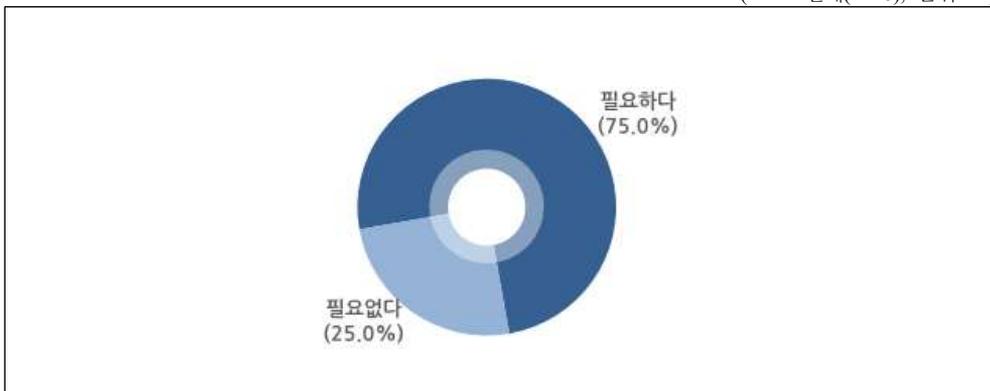


난민위원회가 법무부 외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인식이 높다는 점은 법무부에 일정한 독립성을 갖는 난민심사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난민위원회에게 1심재판을 맡도록 준사법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5.0%로 나타났다.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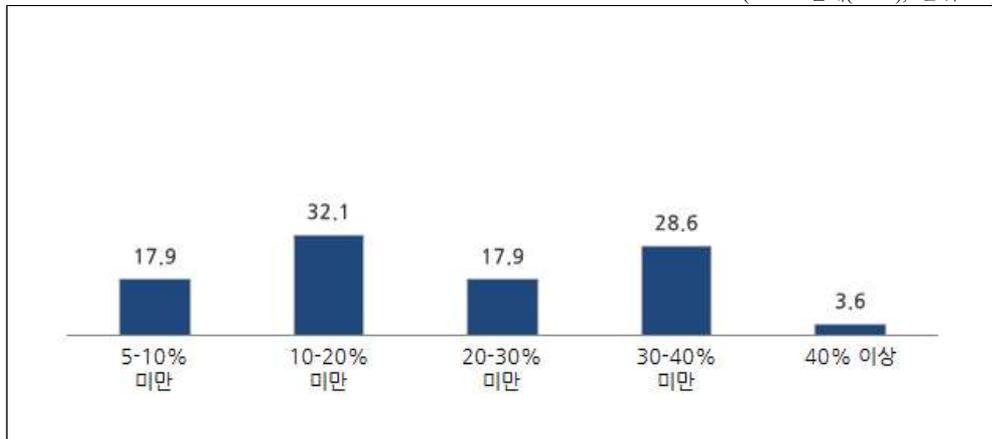


IV. 난민수용 관련 의견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인정률에 대해 ‘10~20% 미만’(32.1%), ‘30~40% 미만’(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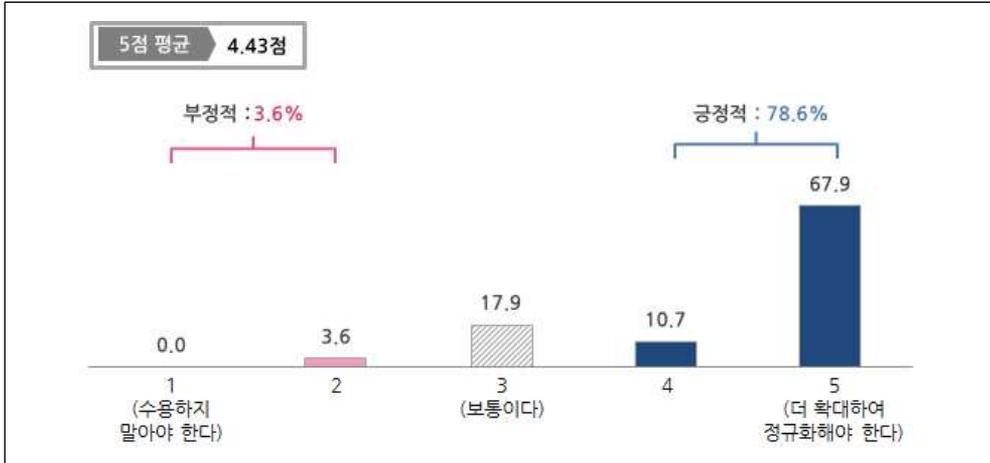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대체로 난민인정률 즉, 난민수용의 수가 현재보다 다소 높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확대해야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78.6%로 나타났고, 5점 평균 점수는 4.43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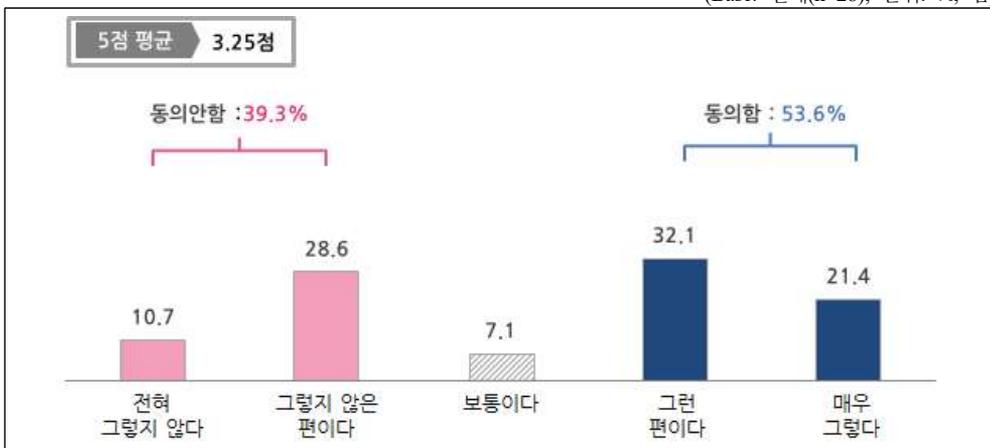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점)



난민인정 인원이 적은 이유로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3.6%로 ‘동의하지 않는다’(39.3%)보다 높게 나타났고, 5점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나타났다.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Base: 전체(n=28),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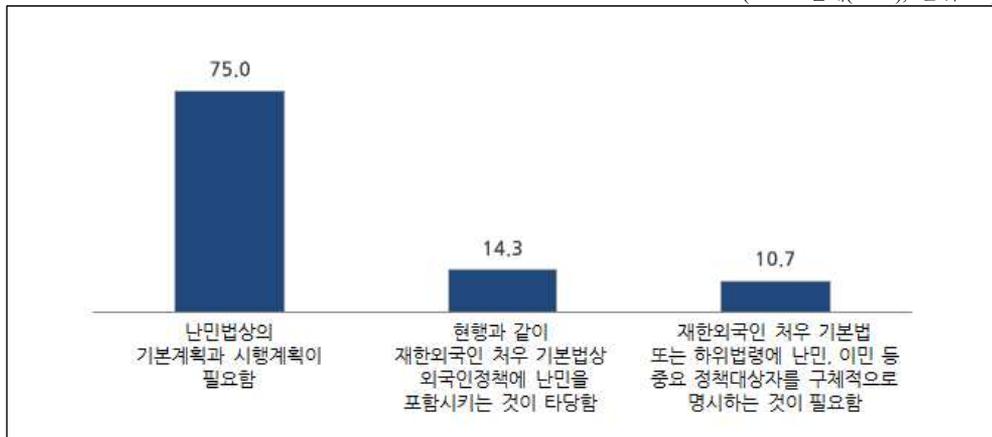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설문과 마찬가지로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V. 난민정책 시행 관련 의견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함'이 7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행과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외국인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14.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는 하위법령에 난민, 이민 등 중요정책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10.7%)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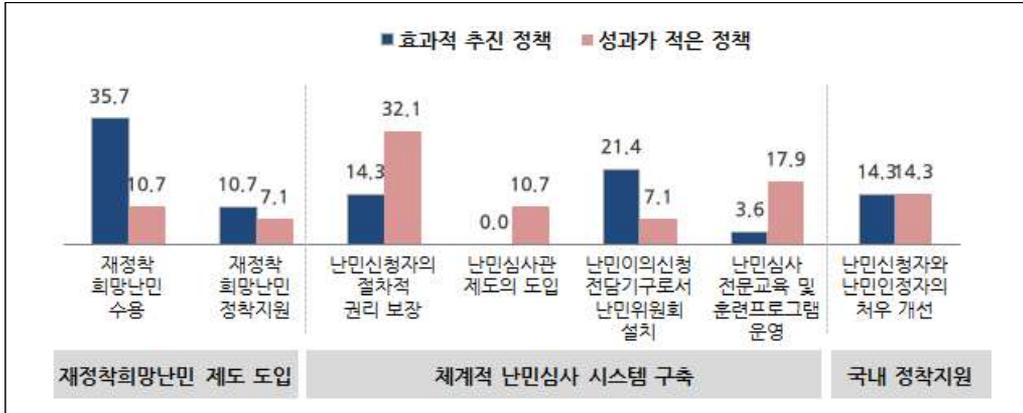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난민관련 세부 추진과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한 정책으로는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성과가 적었다고 생각한 정책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정책 추진 성과>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순위 응답으로는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각각 57.1%로 높게 나타났다.

「난민법」 제정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한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은 성과가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난민법」 개정과 정책에 방향성을 보여 준다.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정 책	내 용	
교수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협의의 난민정의의 확대 해석 필요 • 21세기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난민의 유형을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세분화 하는 준난민개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책의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난민심판원 설치) • 재정착난민에 대한 지원 확대 •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처우 개선 •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속 심사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인정 확대와 우리 국가로의 수용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충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난민인정심사와 관련한 정보력 제고 • 난민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증대 • 난민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난민심판원 설립을 통한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의 처우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송환금지 • 국제적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성 제고.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적극적 도입 (출입국향 난민처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등 개선) 	
	공무원/ 연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착에 대한 지원 확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관한 처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절차의 신속화 • 난민위원회를 확대 발전시켜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계속)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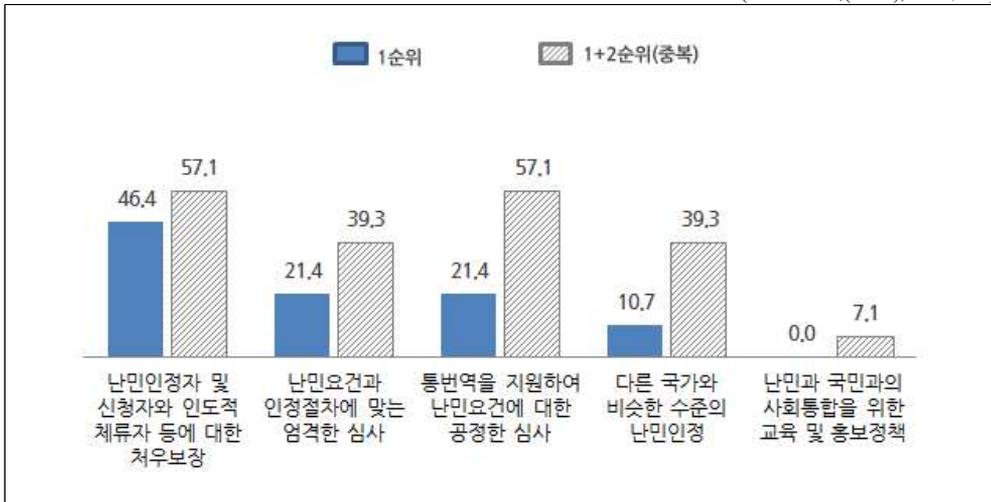
정 책	내 용
공무원/ 연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 특히 1차 심사에서의 공정성 강화 • 신청 접수단계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처우 문제는 기존 이민정책 내 다양한 통합정책(교육 및 정착지원)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난민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이민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센터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 또한 난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자체 난민조례 제정 등도 포함해야 함. 난민의 수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업무를 중앙과 지자체가 같이 관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환경 기반 마련 필요함
변호사/ 인권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담당 할 상설기구의 설치 • 심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위원회 상설 및 독립화 • 절차적 권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정확성 담보 및 절차적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뿐만 아니라 보충적 보호지위자 인정하여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해야함. 만일 보충적보호자 지위인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 일부라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개선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는 체류 보장과 취업뿐임. 난민과 비슷하게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의료보장, 교육, 가족결합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독립적인 난민심사관제 도입 • 준사법적 난민심판원 구성 • 재정착난민제도의 정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이의신청기관의 상설화 • 1차 난민심사의 절차 및 질적강화 •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및 정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및 정확성 •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신청 이후 즉시 근로가능) • 난민신청자의 권리 안내 • 난민 관련 지침의 공개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이 4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각각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의 응답으로는 ‘난민신청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각각 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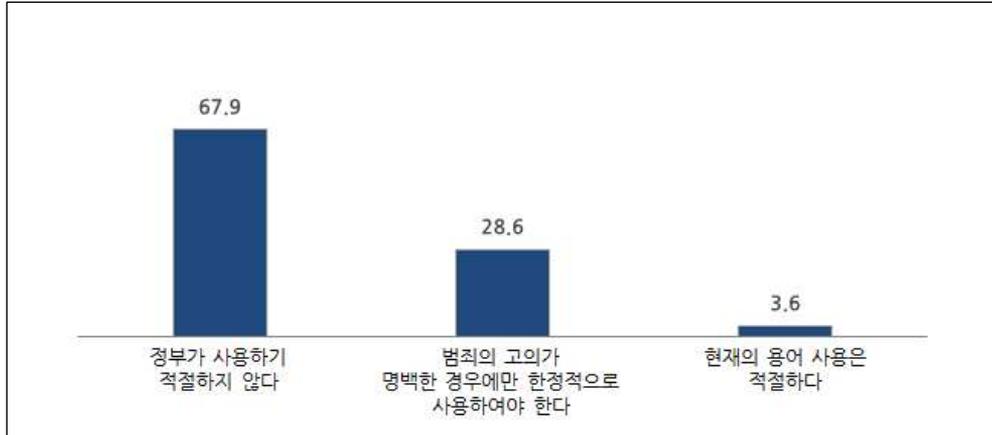


VI. 난민제도 남용관련 의견

난민신청 남용자에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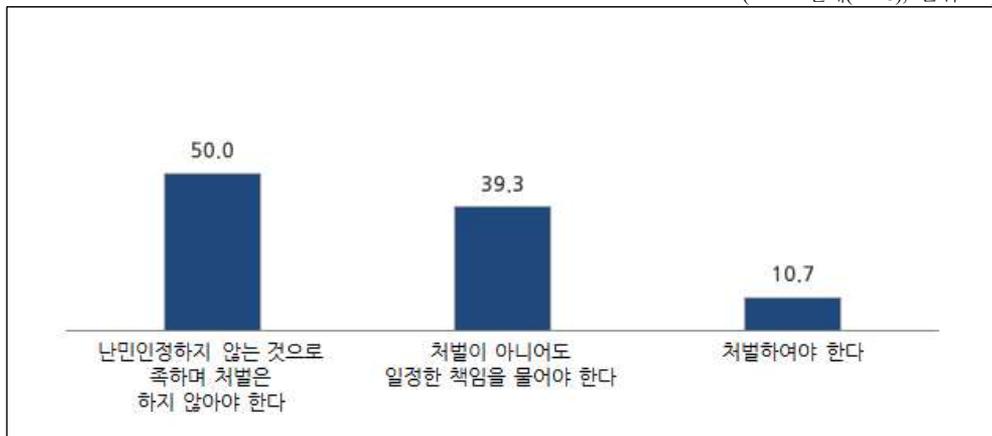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이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난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50.0%), ‘처벌이 아니어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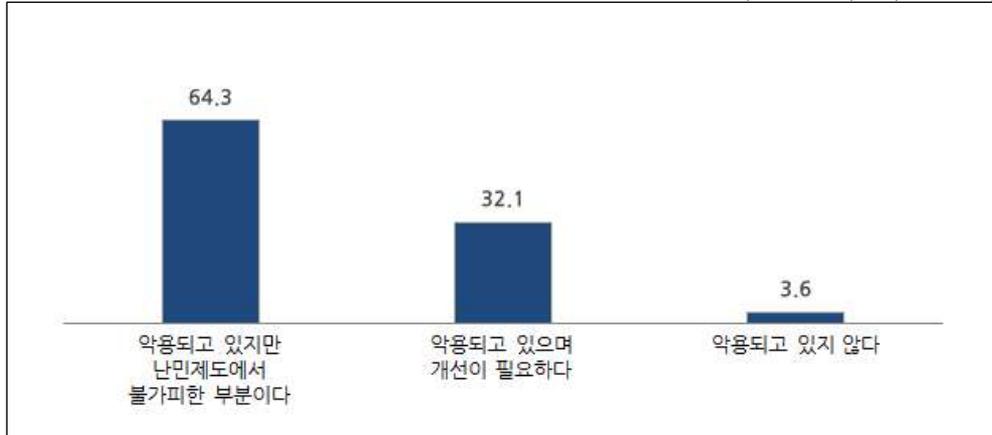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출입국향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난민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입국향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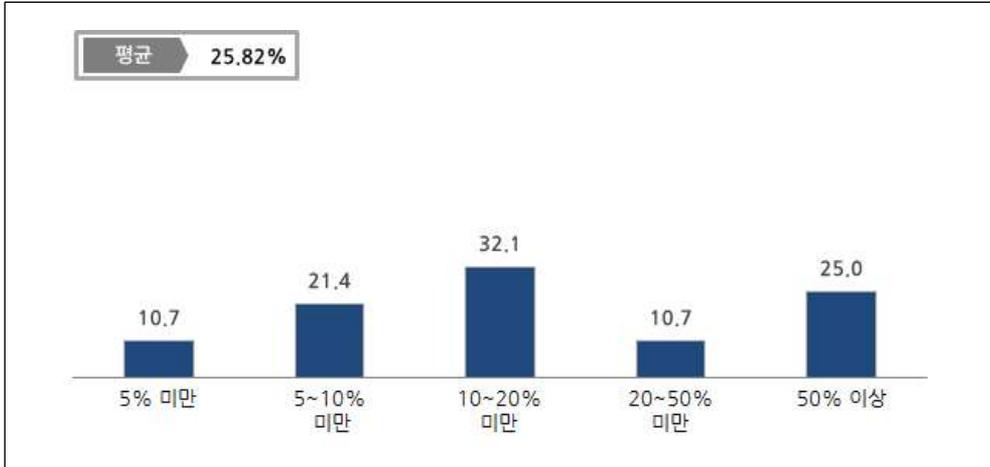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대체로 난민제도 남용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비난 또는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VII. 난민생계 지원에 대한 의견

난민신청자 대비 지원대상자 비율 평균은 25.82%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해 ‘생계급여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4.3%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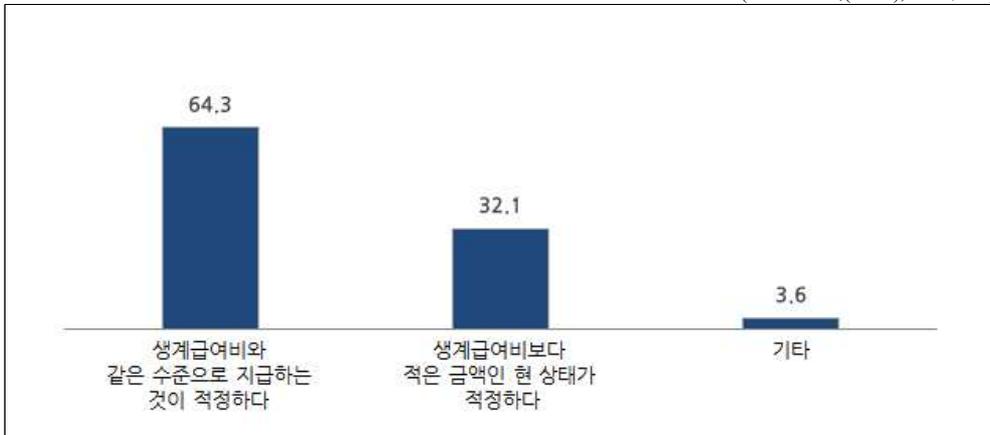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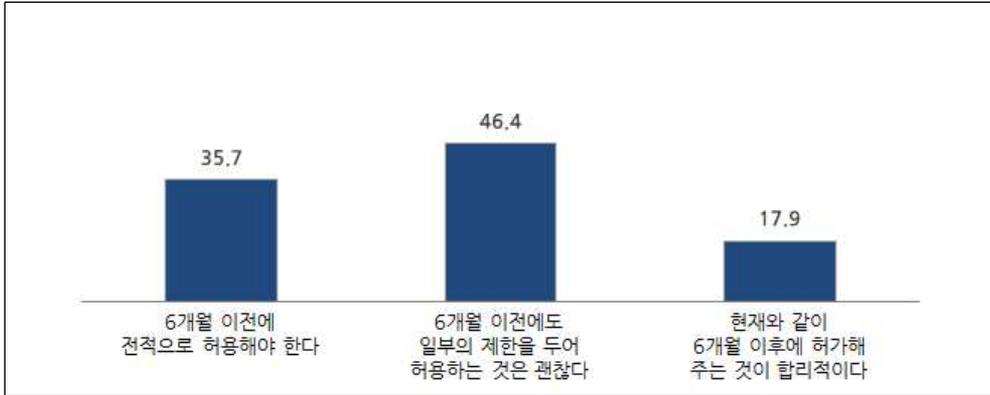
(Base: 전체(n=28), 단위: %)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전에도 일부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46.4%), ‘6개월 이전에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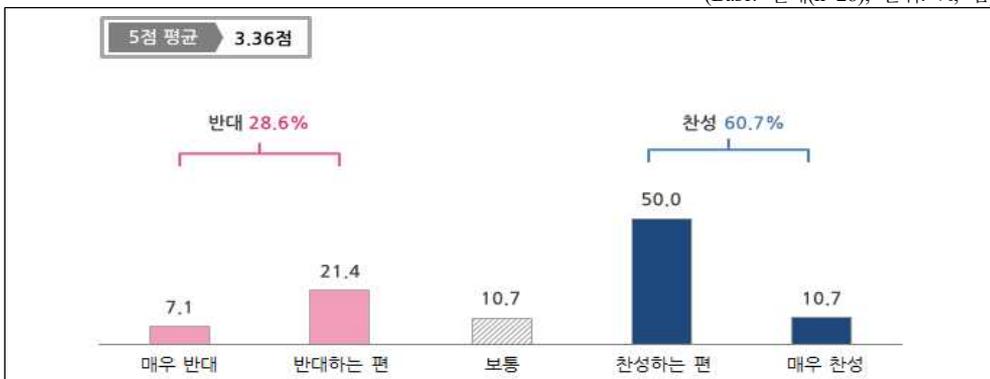
VIII.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난민 망명권의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7%(매우 찬성 10.7% + 찬성하는 편 50.0%)로 ‘반대’(28.6%=매우 반대 7.1% + 반대하는 편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5점 평균은 3.36점으로 나타났다.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점)



제5절 「난민법」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일반인 설문에서는 대체로 난민정책이 국가위상과 관계가 있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함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최근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난민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우리 국민들의 난민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에서는 비교적 난민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40%대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였다. 외국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난민은 5번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은 난민은 아직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난민지원에 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난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나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착난민의 수용이나 헌법에서 망명권 개정 관해서는 뚜렷한 과반수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우선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난민법」 개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같은 비율로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정률 제고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에서는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난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차별금지원칙,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규정, 난민인정자에 대한 귀화요건, 위법수집증거사용금지, 면접시 녹음 및 녹화거부권,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현재 「난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련해서는 일단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42.9%이었으며, 출입국항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자는 의견이 32.1% 그리고, 심사회부하기로 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25%로 의견이 나누어짐에 따라 하나의 대안으로 의견이 모여지지는 않았다.

다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도 「난민법」 제2조의 난민신청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크다는 점은 현재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인식이 공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인정심사의 보완사항으로 반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신속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다수인 42.9%를 보였으나, 신청회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28.6%)와 현재를 유지할 것의 의견(21.4%)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 문제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서 일단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명백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유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신청 기간 제한에 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간이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이 난민신청권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불복수단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의 과반수를 넘겼으며, 이의신청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와 출입국항에서도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에 이르렀다. 대체적으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통한 심사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난민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을 하였던 공무원이 난민심사를 할 경우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데에 82.1%가 동의하였으며, 난민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외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7.9%가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난민위원회 및 난민심사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난민이행률과 관련하여 적어도 20% 미만의 수준이거나 30~4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와 같은 10% 미만의 경우도 17.9%의 의견을 보인다. 현재의 난민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특히 재정착난민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78.6%에 달한다.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53.6%가 동의를 하였지만, 39.3%는 이를 부정적인 대답을 해서 현재의 난민행정에 관한 쟁점들이 예산과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가짜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난민 불인정자 증거잇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난민제도의 악용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의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을 묻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금액은 국민들의 생계급여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를 차지하였으며, 6개월 이전에 취업허가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82.1%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망명권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들과 달리 60.7%는 헌법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난민 등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6장 결론

제1절 사후평가의 결과

제2절 연구의 한계

제6장

결론

제1절 사후평가의 결과

난민법의 입법연혁과 입법체계성 분석을 통한 규범론적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법사회학적 조사 그리고 프랑스 난민법 개정의 사전영향평가 분석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 등 이상의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하여 2012년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난민법」에 대한 입법효과를 분석하였다.

난민법 제정당시는 물론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난민법에 대한 학문적인 측면이외에도 실무적 연구와 관심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7년 한해 동안에도 국회와 법무부 및 난민 관련 학술대회와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입법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의 학술자료 이외에도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서를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2015년 비호권 개혁에 관한 법률은 많은 부분 유럽지침의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유럽 및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동등한 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난민소송구조 등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인정자 등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은 난민지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국민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한국은 난민들이 생각하기에 비호국으로서 선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선호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민인식조사에서 난민정책 및 난민법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주로 난민시설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향후 난민시설의 확대와 분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등에 따른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난민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첫째, 난민인정률에 대한 평가이다.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난민인정자의 수는 2014년 94명, 2015년 105명, 2016년 98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보충적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는 2014년 539명, 2015년 194명, 2016년 246명으로 난민인정자보다 높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난민법」이 규범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난민법」 제정 이후 법제정 효과와는 별도로 난민인정자가 늘어난 이유는 근래 몇 년 동안 시리아 전쟁 등에 따른 국제적 대규모 난민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 관련 현황통계에서 더욱 눈여겨 볼 것은, 한국으로의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서 난민인정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인정률을 특정하여 난민을 수용할 수는 어렵겠지만, 「난민법」 제정의 이유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난민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일정한 수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둘째,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평가이다. 인도적체류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난민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지원 조항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체우조항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 인도적체류자에게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가족결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의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보충적 보호자의 경우에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우리와는 달리 보충적 보호자에게도 난민인정자와 동일하게 여행증명서 및 가족결합권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1,46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는 782명의 난민인정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만 허가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난민법」 제정이 난민의 기본적인 처우를 정하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과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도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난민법」 제39조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평가이다.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난민법」 제6조의 출입국항 난민신청 규정 관련하여, 공항난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우를 포함한 난민절차 세부사항을 보완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회부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의 경우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구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4일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되더라도 총 구금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법적근거가 부재한 우리 난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넷째, 난민위원회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비상설기구로 운용되는 난민위원회의 업무과다 및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상설기관인 독립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소속은 법무부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출입국관리행정과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무부 외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전문가 설문에서도 난민위원회의 상설화와 기관의 소속을 법무부 외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프랑스의 난민인정절차 관련하여, 프랑스는 난민신청에 대해 일차적 심사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에서 불인정처분을 내리면 특별행정법원인 비호법원(CNDA)에 항소하게 되고 이에 법률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콩세이데따(Conseil d'Etat)의 최종판단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정예의 비상설위원회인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 시 법원에 소를 제기 하기 때문에 신청처리기간이 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OFPRA의 경우 그 설립 때부터 독립성이 견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OFPRA의 인력과 재정면에서의 우월적 규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가칭)난민심판원이 설립 시 「난민법」 제25조를 개정하여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국 담당 공무원과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무부 공무원들은 난민심사의 선입견을 갖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문가들도 공감하였다.

따라서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난민위원회의 상설화와 외청으로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기관으로서 상설적으로 활동하여, 일관성 있는 난민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난민신청의 남용문제에 관한 평가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신청자의 불복제도를 3심까지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간이 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난민결정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배치되는 두 가지 의견 모두 다수가 지지하였다.

불복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보장과 신속한 절차를 위한 운용 모두 난민심사 행정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양자의 균형 있게 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반복신청 등에 대하여 횡수에 제한을 두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한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명백히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하지 말고 본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난민신청기간의 제한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많았다.

‘가짜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난민 서류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또한 출입국향난민의 남용문제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 견해가 과반수를 넘었다.

여섯째, 난민처우에 대한 평가이다. 난민신청자 현재의 생계비 기준 상향과 그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난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난민인정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난민신청자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는 생활수준의 최저기준이라는 점에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생계비 지원의 개선은 2015년의 개혁 사항 중 하나였다. 난민신청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이른바 “난민수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dispositif national d'accueil)를 단행하였고 난민신청자보호센터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24,410명의 인원을 수용했는데, 즉 난민신청자의 33%가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는 2007년 이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신청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등을 통합운영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파리(Paris)

주변의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지와 보호시설지를 동일한 지역에 한정하여 신청지외에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다수이다. 이 시설에는 100여 명의 난민 인정자 또는 난민신청자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작년에 7천여 명에 달했던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적은 규모이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건립 당시 논란이 분분하여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현재 신청자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프랑스는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에의 거주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우리 「난민법」 또한 난민인정신청자가 강제송환 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지만 주거시설의 지원은 6개월이 원칙인데, 담당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난민위원회로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소송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는 1년에서 2년에 걸리고 있다.

규범적으로는 6개월에 한정하기 보다는 적어도 이의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주거지원시설에 머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난민신청지 또는 난민신청자가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가령, 농업이나 어업 또는 도시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시설의 분산 및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난민법」 제44조에서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교육지원을 제외한 「난민법」 제40조 제1항의 생계비 지원, 제41조 주거지원, 제42조 의료지원, 제43조 교육의 보장에서 정하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난민의 절차적 권리라는 점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점에

서 이러한 제한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법」 제44조의 삭제가 필요하다.

주거지원 시설이 부족하다면 난민신청자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활동의 허가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의 「난민법」 제40조 제2항의 6개월 제한의 삭제나 예외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은 난민에게 일정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절차와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행정기관의 난민심사와 법원의 난민법 해석이 다소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난민행정의 경험과 난민법해석이 축적되면 보다 더 충실한 난민행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난민법의 적용과 집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이 사후입법평가 연구는 난민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난민과 난민법 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법무부 및 소속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등의 의견이 최소화 되어 진행되었다. 사후평가의 설문대상 및 자료 등은 법학계와 난민 관련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어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난민이 겪은 주관적인 경험은 우리 난민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가 됨은 분명할 것이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체험한 난민행정현장의 목소리 또한 법제개선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일차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최소화 한 이유는 현재 한국의 난민행정 상황에서 난민 당사자와 심사기관인 법무부 사이의 난민행정을 바라보는 인식과 집행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단체 및 학계의 의견 또한 한쪽으로 향할 가능

성이 있지만 두 집단에 비하면 공정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향후 난민 관련 연구는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 등이 참여하는 실증적인 연구와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난민법 집행 이후 난민심사 및 난민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 통계자료의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김대순, 『국제법』, 삼영사, 2013, 1768면.
- 김종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2012, 29-33면.
- 김세진, 기획주제3 한국의 난민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200호, 2015. 6. 웹검색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371418>
- 김종철 · 김재원,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공익과 인권, vol.12, 서울대학교, 2012, 135-187면.
- 박선희, “프랑스의 난민정책 :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 제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16, 27-63면.
- 성원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vol.454, 대한변호사협회, 2015, 6-18면.
- 송영훈,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 사례”,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법무부 · 유엔난민기구, 2016, 41-60면.
- 오태곤, “난민 인정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인문사회 21, 제7권 제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431-449면.
- 윤계형 · 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33면.
- 이슬, “난민 인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2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35-41면.

- 이재강,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97-341면.
- 이철우 외, 이민법, 박영사, 2016, 514면.
- 이호택, “난민법 개정 쟁점정리”,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2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4면.
- 임현,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 법제처, 2014, 39-47면.
- 전학선, “프랑스의 망명권 보장 법제”,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2009, 83-109면.
- 정인섭 · 황필규,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2011, 420면.
- 채현영, “대한민국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의 개선방향”, in 난민의 인권과 사법, 사법정책연구원 · 대한국제법학회, 2017, 31-45면.
- 최계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in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 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7, 69-72면.
- 최 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76면.
- 최윤철, “유럽연합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5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25-162면.
- 하용국,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 난민인권 토론회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자료집, 심기준의원실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7, 11-17면.

- 하정훈,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비교법적 검토”, in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31-67면.
- 한건수, “난민위원회의 운영과 개선방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3차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0면.
-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대한변호사협회·UNHCR, 2016, 93면.
-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2016.
-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 법무부·UNHCR, 2017, 213면.
- 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 합리적 난민인정절차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46면.
-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법무부·UNHCR, 2016, 260면.
-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법무부, 2017, 207면.
- 난민의 인권과 사법, 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2017, 120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4)축조식 난민법 해설집, 서울:생각심표:휴먼아리랑, 2015, 170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7.8.
- 법무부,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견수렴안, 법무부, 2017, 370면.
-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UNHCR의 의견, 2013.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4, 246면.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2016, 418면.

출입국 관련 외국인 기본권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대법원 헌법연구회, 2017, 78면.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07, 법제처, 163면.

II. 국외문헌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forme de l'asile, Etude d'impact, 22 juillet 2014.

III. 검색자료

법무부 2016년 난민관련 통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0&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 최종방문일 2017. 11. 15.

법무부 2016년 난민관련 통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20&strAnsNo=A&strNbodCd=noti0703&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strThisPage=2&strNbodCdGbn= 최종방문일 2017. 11. 15.

프랑스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modernisation.gouv.fr/laction-publique-se-transforme/en-evaluant-ses-politiques-publiques/espace-dedie/rapport-evaluation-de-la-politique-daccueil-des-demandeurs-dasile> 최종방문일 2017. 11. 10.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http://www.interieur.gouv.fr/Archives/Archives-des-actualites/2013/Reforme-de-l-asile> 최종방문일 2017. 11. 15.

프랑스 의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rap-info/i1879.asp> 최종방문일 2017. 11. 10.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seance/statistiques-13leg.asp> 최종방문일 2017. 11. 10.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session\)/2015-2016%20\(1er%20octobre%202015%20-%2030%20septembre%202016\)](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sous-la-xive-legislature/(session)/2015-2016%20(1er%20octobre%202015%20-%2030%20septembre%202016)) 최종방문일 2017. 11. 10.

유엔난민기구 한국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2.html> 최종방문일 2017. 9. 10.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604?category=118980> 최종방문일 2017. 11.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lInfoP.do?lsiSeq=122977&ancYd=20120210&ancNo=11298&efYd=2013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방문일 2017. 5. 1.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RefugeeStatusPorts_pop.htm 최종방문일 2017. 11. 15.

IV. 국회입법자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12.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1982호), 검토보고, 2016. 11.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9. 11.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재룡,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014. 11.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015. 2. 4.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제 14201호), 검토보고서, 2015. 7.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제 15648호), 검토보고, 2015. 12.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 15649호) 검토보고서, 2015. 12.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제 15663호) 검토보고, 2015. 12.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제 16483호) 검토보고, 2015. 12.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 17759호) 검토보고, 2015. 12.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검토보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 발의), 2016. 11.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제 385호), 2016. 11.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제 1982호), 검토보고서, 2016. 11.
- 의안번호 4927,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안원 문, 2009. 5. 25.
- 의안번호 120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 의안번호 1420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5. 3. 9.
- 의안번호 1523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22.
- 의안번호 156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18.
- 의안번호 156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5. 6. 18.
- 의안번호 156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2015. 6. 19.
- 의안번호 16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015. 8. 19.
- 의안번호 1775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5. 11. 16.
- 의안번호 30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 의안번호 38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 의안번호 198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8. 31.
- 의안번호 22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6. 9. 8.
- 제34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06. 1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 부록 1 난민법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서
- 부록 2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서

부 록 1

난민법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서

1.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

- 난민이라는 용어의 인지여부에 대해 ‘인지자’가 85.1%(잘 알고 있음 24.3% + 알고 있음 60.8%)로 ‘비인지자’(14.9% = 전혀 들어본 바 없음 0.1% +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14.8%) 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자는 성별로 남성(89.6%), 연령별로 50대(90.2%), 60대 이상(89.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90.6%),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91.4%),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89.6%)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비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인 지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전 체		(1,000)	14.9	0.1	14.8	85.1	60.8	24.3
성별	남성	(509)	10.4	0.2	10.2	89.6	61.5	28.1
	여성	(491)	19.6	0.0	19.6	80.4	60.1	20.4
연령	20대 이하	(194)	17.0	0.5	16.5	83.0	55.2	27.8
	30대	(205)	17.6	0.0	17.6	82.4	64.9	17.6
	40대	(240)	18.3	0.0	18.3	81.7	62.1	19.6
	50대	(225)	9.8	0.0	9.8	90.2	60.9	29.3
	60대 이상	(136)	10.3	0.0	10.3	89.7	60.3	29.4
지역	수도권	(501)	13.6	0.0	13.6	86.4	60.9	25.5
	충청권	(101)	14.9	0.0	14.9	85.1	61.4	23.8
	호남권	(97)	13.4	0.0	13.4	86.6	62.9	23.7
	대경권	(102)	22.5	0.0	22.5	77.5	52.9	24.5
	동남권	(160)	13.8	0.6	13.1	86.3	64.4	21.9
	강원/제주	(39)	20.5	0.0	20.5	79.5	59.0	20.5
직업	자영업	(88)	17.0	0.0	17.0	83.0	56.8	26.1
	블루칼라	(128)	15.6	0.0	15.6	84.4	67.2	17.2
	화이트칼라	(471)	12.1	0.0	12.1	87.9	62.0	25.9
	주부	(171)	17.5	0.0	17.5	82.5	60.8	21.6
	학생	(86)	18.6	1.2	17.4	81.4	52.3	29.1
	무직/기타	(56)	19.6	0.0	19.6	80.4	55.4	25.0
학력	고졸 이하	(204)	22.1	0.0	22.1	77.9	58.8	19.1
	대졸	(700)	13.6	0.1	13.4	86.4	61.3	25.1
	대학원 이상	(96)	9.4	0.0	9.4	90.6	61.5	29.2

		사례수	비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인 지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8.4	0.4	18.0	81.6	58.6	23.0
	101~ 300만원	(385)	18.7	0.0	18.7	81.3	64.7	16.6
	301- 500만원	(238)	9.2	0.0	9.2	90.8	59.2	31.5
	501만원 이상	(133)	7.5	0.0	7.5	92.5	56.4	36.1
일상생활 난민접촉 경험	있음	(35)	8.6	0.0	8.6	91.4	45.7	45.7
	없음	(965)	15.1	0.1	15.0	84.9	61.3	23.5
방송난민 접촉경험	있음	(537)	10.4	0.0	10.4	89.6	60.9	28.7
	없음	(463)	20.1	0.2	19.9	79.9	60.7	19.2

2.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 난민의 상황의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자’가 63.5%(전혀 들어본 바 없음 3.1% +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60.4%)로 ‘인지자’(36.5% = 잘 알고 있음 4.9% + 알고 있음 31.6%) 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자는 성별로 남성(41.5%), 연령별로 60대 이상(41.9%), 지역별로 동남권(40.6%)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9.0%),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 (43.6%),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4.3%),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 (46.7%)에서 높게 나타남.

<표1-2>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비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인 지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전 체		(1,000)	63.5	3.1	60.4	36.5	31.6	4.9
성별	남성	(509)	58.5	3.3	55.2	41.5	35.6	5.9
	여성	(491)	68.6	2.9	65.8	31.4	27.5	3.9
연령	20대 이하	(194)	69.6	6.2	63.4	30.4	24.7	5.7
	30대	(205)	64.9	3.9	61.0	35.1	31.7	3.4
	40대	(240)	62.1	2.5	59.6	37.9	34.2	3.8
	50대	(225)	61.8	2.2	59.6	38.2	33.8	4.4
	60대 이상	(136)	58.1	0.0	58.1	41.9	33.1	8.8
지역	수도권	(501)	62.7	2.8	59.9	37.3	32.3	5.0
	충청권	(101)	67.3	4.0	63.4	32.7	26.7	5.9
	호남권	(97)	71.1	5.2	66.0	28.9	24.7	4.1
	대경권	(102)	61.8	1.0	60.8	38.2	32.4	5.9
	동남권	(160)	59.4	2.5	56.9	40.6	36.9	3.8
	강원/제주	(39)	66.7	7.7	59.0	33.3	28.2	5.1
직업	자영업	(88)	63.6	3.4	60.2	36.4	34.1	2.3
	블루칼라	(128)	62.5	1.6	60.9	37.5	35.2	2.3
	화이트칼라	(471)	61.8	2.8	59.0	38.2	33.8	4.5
	주부	(171)	66.1	3.5	62.6	33.9	26.9	7.0
	학생	(86)	68.6	5.8	62.8	31.4	23.3	8.1
	무직/기타	(56)	64.3	3.6	60.7	35.7	28.6	7.1
학력	고졸 이하	(204)	72.5	3.9	68.6	27.5	25.0	2.5
	대졸	(700)	62.6	3.1	59.4	37.4	32.0	5.4
	대학원 이상	(96)	51.0	1.0	50.0	49.0	42.7	6.3

		사례수	비인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인 지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67.6	3.3	64.3	32.4	26.2	6.1
	101~ 300만원	(385)	66.2	4.4	61.8	33.8	31.2	2.6
	301- 500만원	(238)	58.8	2.5	56.3	41.2	35.7	5.5
	501만원 이상	(133)	56.4	0.0	56.4	43.6	35.3	8.3
일상생활 난민접촉 경험	있음	(35)	25.7	0.0	25.7	74.3	57.1	17.1
	없음	(965)	64.9	3.2	61.7	35.1	30.7	4.5
방송난민 접촉경험	있음	(537)	53.3	1.1	52.1	46.7	39.5	7.3
	없음	(463)	75.4	5.4	70.0	24.6	22.5	2.2

3. 난민 관련 뉴스 접촉 경험 및 관심 정도

- 난민 관련 뉴스 접촉 경험에 대해 ‘경험 있음’이 92.2%로 ‘경험 없음’(7.8%) 보다 높게 나타남.
- 난민 관련 뉴스에 관심 정도로 ‘관심 있음’이 44.6%(매우 많다 5.4% + 조금 있는 편이다 39.2%)로 ‘관심 없음’(12.5% = 전혀 없다 0.3% + 없는 편이다 12.1%)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43.0%)
- 5점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남.

난민 관련 뉴스 접촉 경험 및 관심 정도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관련 뉴스 접촉 경험에 대해 ‘있음’은 성별로 남성(95.3%), 연령별로 50대(95.6%)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96.2%),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97.1%),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96.3%)에서 높게 나타남.

<표1-3> 난민 관련 뉴스 접촉 경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 체		(1,000)	92.2	7.8
성별	남성	(509)	95.3	4.7
	여성	(491)	89.0	11.0
연령	20대 이하	(194)	85.1	14.9
	30대	(205)	93.7	6.3
	40대	(240)	93.3	6.7
	50대	(225)	95.6	4.4
	60대 이상	(136)	92.6	7.4

		사례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지역	수도권	(501)	93.4	6.6
	충청권	(101)	94.1	5.9
	호남권	(97)	89.7	10.3
	대경권	(102)	92.2	7.8
	동남권	(160)	90.0	10.0
	강원/제주	(39)	87.2	12.8
직업	자영업	(88)	92.0	8.0
	블루칼라	(128)	91.4	8.6
	화이트칼라	(471)	94.3	5.7
	주부	(171)	90.6	9.4
	학생	(86)	88.4	11.6
	무직/기타	(56)	87.5	12.5
학력	고졸 이하	(204)	87.3	12.7
	대졸	(700)	93.3	6.7
	대학원 이상	(96)	94.8	5.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88.1	11.9
	101~300만원	(385)	91.7	8.3
	301-500만원	(238)	95.0	5.0
	501만원 이상	(133)	96.2	3.8
일상생활 난민접촉 경험	있음	(35)	97.1	2.9
	없음	(965)	92.0	8.0
방송 난민접촉 경험	있음	(537)	96.3	3.7
	없음	(463)	87.5	12.5

- 난민관련 뉴스 관심 정도에 대해 ‘관심 있음’은 성별로 남성(48.5%), 연령별로 60대 이상(58.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9.3%),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57.1%), 월 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53.1%),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9.4%)에서 높게 나타남.

<표1-4> 난민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정도

(Base: 난민관련 뉴스 접촉 경험자(n=922), 단위: %, 점)

		사례수	관심 없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 있음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5점 평균
전 체		(922)	12.5	0.3	12.1	43.0	44.6	39.2	5.4	3.37
성별	남성	(485)	13.0	0.6	12.4	38.6	48.5	42.7	5.8	3.41
	여성	(437)	11.9	0.0	11.9	47.8	40.3	35.2	5.0	3.33
연령	20대 이하	(165)	19.4	0.0	19.4	39.4	41.2	37.0	4.2	3.26
	30대	(192)	16.7	0.5	16.1	46.4	37.0	34.4	2.6	3.22
	40대	(224)	11.6	0.0	11.6	44.6	43.8	40.2	3.6	3.36
	50대	(215)	9.8	0.9	8.8	43.7	46.5	39.1	7.4	3.43
	60대 이상	(126)	3.2	0.0	3.2	38.1	58.7	47.6	11.1	3.67
지역	수도권	(468)	11.8	0.0	11.8	40.4	47.9	41.2	6.6	3.43
	충청권	(95)	16.8	1.1	15.8	45.3	37.9	35.8	2.1	3.22
	호남권	(87)	12.6	0.0	12.6	40.2	47.1	41.4	5.7	3.40
	대경권	(94)	12.8	1.1	11.7	48.9	38.3	37.2	1.1	3.26
	동남권	(144)	11.8	0.7	11.1	45.1	43.1	36.8	6.3	3.37
	강원/제주	(34)	11.8	0.0	11.8	52.9	35.3	29.4	5.9	3.29
직업	자영업	(81)	16.0	0.0	16.0	45.7	38.3	32.1	6.2	3.28
	블루칼라	(117)	16.2	0.9	15.4	41.0	42.7	38.5	4.3	3.30
	화이트칼라	(444)	10.8	0.2	10.6	39.9	49.3	44.4	5.0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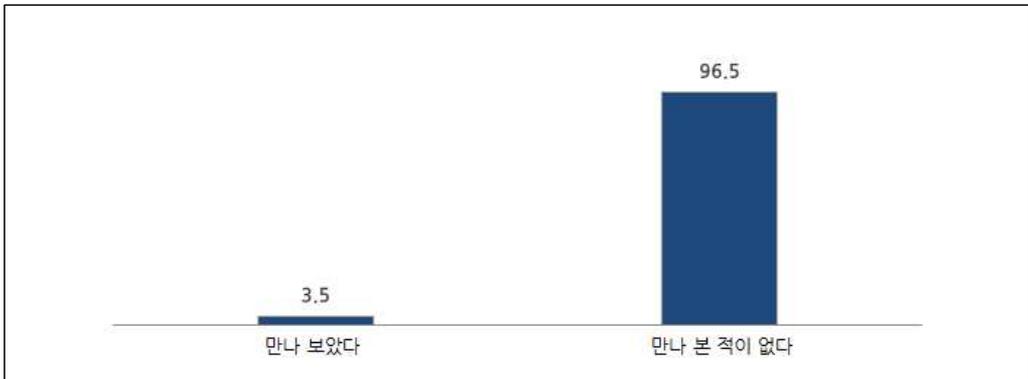
		사례수	관심 없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 있음	조금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5점 평균
	주부	(155)	9.0	0.0	9.0	56.1	34.8	29.7	5.2	3.31
	학생	(76)	19.7	0.0	19.7	35.5	44.7	39.5	5.3	3.30
	무직/기타	(49)	12.2	2.0	10.2	40.8	46.9	34.7	12.2	3.45
학력	고졸 이하	(178)	12.4	1.1	11.2	46.6	41.0	36.5	4.5	3.32
	대졸	(653)	13.0	0.2	12.9	43.2	43.8	38.9	4.9	3.36
	대학원 이상	(91)	8.8	0.0	8.8	34.1	57.1	46.2	11.0	3.59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15)	12.6	0.5	12.1	50.2	37.2	31.6	5.6	3.30
	101~ 300만원	(353)	15.0	0.6	14.4	45.6	39.4	35.4	4.0	3.28
	301- 500만원	(226)	10.2	0.0	10.2	35.0	54.9	48.2	6.6	3.51
	501만원 이상	(128)	9.4	0.0	9.4	37.5	53.1	46.1	7.0	3.51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4)	0.0	0.0	0.0	20.6	79.4	70.6	8.8	3.88
	없음	(888)	13.0	0.3	12.6	43.8	43.2	38.0	5.3	3.3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17)	7.4	0.2	7.2	37.1	55.5	48.0	7.5	3.56
	없음	(405)	19.0	0.5	18.5	50.4	30.6	27.9	2.7	3.14

4.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

-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에 대해 ‘만나본 적 없다’가 96.5%로 ‘만나 보았다’(3.5%) 보다 높게 나타남.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

(Base: 전체(n=1,000), 단위: %)



-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에 대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가 높게 나타남.

<표1-5>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만나 보았다	만나본 적이 없다
전 체		(1,000)	3.5	96.5
성별	남성	(509)	4.7	95.3
	여성	(491)	2.2	97.8
연령	20대 이하	(194)	5.7	94.3
	30대	(205)	4.9	95.1
	40대	(240)	2.5	97.5
	50대	(225)	1.8	98.2
	60대 이상	(136)	2.9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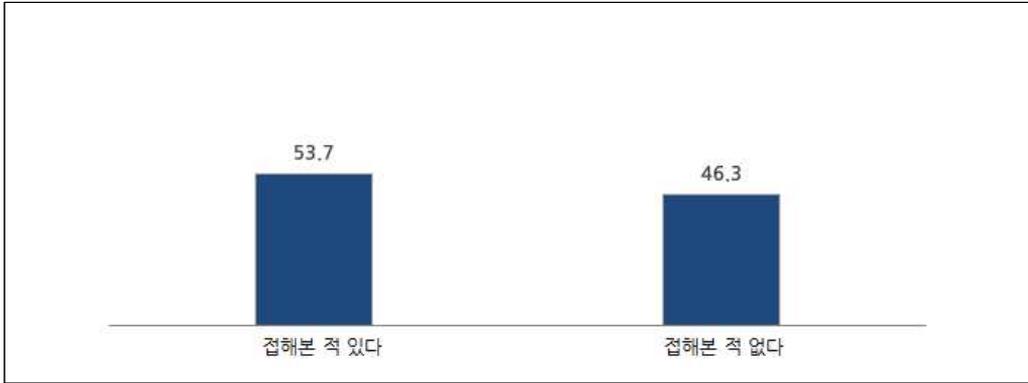
		사례수	만나 보았다	만나본 적이 없다
지역	수도권	(501)	4.0	96.0
	충청권	(101)	5.9	94.1
	호남권	(97)	2.1	97.9
	대경권	(102)	2.0	98.0
	동남권	(160)	3.1	96.9
	강원/제주	(39)	0.0	100.0
직업	자영업	(88)	2.3	97.7
	블루칼라	(128)	3.9	96.1
	화이트칼라	(471)	4.0	96.0
	주부	(171)	1.8	98.2
	학생	(86)	4.7	95.3
	무직/기타	(56)	3.6	96.4
학력	고졸 이하	(204)	1.5	98.5
	대졸	(700)	3.4	96.6
	대학원 이상	(96)	8.3	91.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5	97.5
	101~300만원	(385)	3.6	96.4
	301-500만원	(238)	3.4	96.6
	501만원 이상	(133)	5.3	94.7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5.2	94.8
	없음	(463)	1.5	98.5

5.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

-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접해본적 있다’가 53.7%로 ‘접해본적 없다’(46.3%)보다 높게 나타남.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

(Base: 전체(n=1,000), 단위: %)



-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에 대해 ‘접해본 적 있다’는 성별로 여성이 54.8%, 남성이 52.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60대 이상(57.4%)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0.4%),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 (64.7%),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80.0%)에서 높게 나타남.

<표 1-6>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접해본 적 있다	접해본 적 없다
전 체		(1,000)	53.7	46.3
성별	남성	(509)	52.7	47.3
	여성	(491)	54.8	45.2
연령	20대 이하	(194)	54.1	45.9
	30대	(205)	53.2	46.8
	40대	(240)	50.4	49.6
	50대	(225)	55.1	44.9
	60대 이상	(136)	57.4	42.6

		사례수	접해본 적 있다	접해본 적 없다
지역	수도권	(501)	55.9	44.1
	충청권	(101)	48.5	51.5
	호남권	(97)	57.7	42.3
	대경권	(102)	51.0	49.0
	동남권	(160)	53.1	46.9
	강원/제주	(39)	38.5	61.5
직업	자영업	(88)	53.4	46.6
	블루칼라	(128)	50.0	50.0
	화이트칼라	(471)	53.9	46.1
	주부	(171)	56.1	43.9
	학생	(86)	57.0	43.0
	무직/기타	(56)	48.2	51.8
학력	고졸 이하	(204)	48.0	52.0
	대졸	(700)	54.4	45.6
	대학원 이상	(96)	60.4	3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5.3	44.7
	101~300만원	(385)	49.1	50.9
	301-500만원	(238)	53.4	46.6
	501만원 이상	(133)	64.7	35.3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80.0	20.0
	없음	(965)	52.7	47.3

6. 난민에 대한 감정

- 난민에 대한 감정으로 ‘거리감 있음’이 39.3%(매우 거리감 든다 2.9% + 조금은 거리감이 드는 편이다 36.4%)이 ‘거리감 없음’ 21.8%(전혀 거리감이 들지 않는다 2.8% + 거리감이 없는 편이다 19.0%)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38.9%)
- 5점 평균은 2.82점으로 나타남.

난민에 대한 감정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에 대한 감정으로 ‘거리감 있음’은 성별로 남성이 39.7%, 여성이 38.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30대(48.8%), 20대 이하(44.8%), 지역별로 호남권(45.4%)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학생(50.0%),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4.8%),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1.4%)에서 높게 나타남.

<표1-7> 난민에 대한 감정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거리감 있음	매우 거리감 든다	조금은 거리 감이 드는 편이다	보통 이다	거리감 없음	거리 감이 없는 편이다	전혀 거리 감이 들지 않는다	5점 평균
전 체		(1,000)	39.3	2.9	36.4	38.9	21.8	19.0	2.8	2.82
성별	남성	(509)	39.7	3.7	36.0	37.7	22.6	19.1	3.5	2.83
	여성	(491)	38.9	2.0	36.9	40.1	21.0	18.9	2.0	2.82
연령	20대 이하	(194)	44.8	5.7	39.2	37.6	17.5	15.5	2.1	2.69
	30대	(205)	48.8	3.9	44.9	36.1	15.1	14.1	1.0	2.63
	40대	(240)	37.5	1.7	35.8	41.3	21.3	18.8	2.5	2.85
	50대	(225)	32.0	1.8	30.2	38.7	29.3	24.9	4.4	3.00
	60대 이상	(136)	32.4	1.5	30.9	41.2	26.5	22.1	4.4	2.97
지역	수도권	(501)	40.1	2.2	37.9	38.1	21.8	19.0	2.8	2.82
	충청권	(101)	36.6	3.0	33.7	40.6	22.8	20.8	2.0	2.85
	호남권	(97)	45.4	2.1	43.3	36.1	18.6	15.5	3.1	2.74
	대경권	(102)	34.3	2.9	31.4	43.1	22.5	21.6	1.0	2.86
	동남권	(160)	36.9	4.4	32.5	38.1	25.0	20.0	5.0	2.89
	강원/제주	(39)	43.6	7.7	35.9	43.6	12.8	12.8	0.0	2.62
직업	자영업	(88)	30.7	0.0	30.7	42.0	27.3	21.6	5.7	3.02
	블루칼라	(128)	43.8	8.6	35.2	39.1	17.2	13.3	3.9	2.69
	화이트 칼라	(471)	38.6	2.5	36.1	37.8	23.6	20.8	2.8	2.85
	주부	(171)	37.4	0.0	37.4	40.9	21.6	19.3	2.3	2.87
	학생	(86)	50.0	5.8	44.2	31.4	18.6	18.6	0.0	2.63
	무직/기타	(56)	37.5	1.8	35.7	48.2	14.3	12.5	1.8	2.77
학력	고졸 이하	(204)	38.2	2.5	35.8	43.1	18.6	16.2	2.5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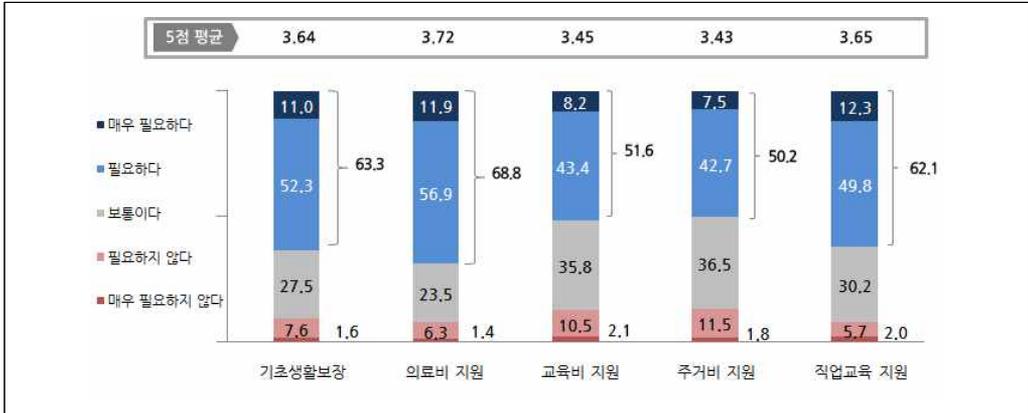
		사례수	거리감 있음	매우 거리감 든다	조금은 거리 감이 드는 편이다	보통 이다	거리감 없음	거리 감이 없는 편이다	전혀 거리 감이 들지 않는다	5점 평균
	대졸	(700)	38.9	2.6	36.3	38.4	22.7	19.6	3.1	2.84
	대학원 이상	(96)	44.8	6.3	38.5	33.3	21.9	20.8	1.0	2.7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8.9	1.6	37.3	38.9	22.1	20.5	1.6	2.83
	101~ 300만원	(385)	38.2	3.6	34.5	40.0	21.8	19.0	2.9	2.83
	301- 500만원	(238)	38.2	1.3	37.0	39.1	22.7	18.9	3.8	2.87
	501만원 이상	(133)	45.1	6.0	39.1	35.3	19.5	16.5	3.0	2.71
일상생활 난민접촉 경험	있음	(35)	51.4	2.9	48.6	20.0	28.6	20.0	8.6	2.83
	없음	(965)	38.9	2.9	36.0	39.6	21.6	19.0	2.6	2.82
방송난민 접촉경험	있음	(537)	38.2	2.4	35.8	35.6	26.3	22.2	4.1	2.90
	없음	(463)	40.6	3.5	37.1	42.8	16.6	15.3	1.3	2.74

7.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정부 난민지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8%(매우 필요하다 11.9% + 필요하다 5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63.3%), ‘직업 교육 지원’(6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성별로 여성(65.0%), 연령별로 60대 이상(75.0%), 지역별로 대경권(68.6%)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블루칼라(66.4%),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5.6%),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1.4%),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6.5%)에서 높게 나타남.

<표1-8>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기초생활보장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전 체		(1,000)	9.2	1.6	7.6	27.5	63.3	52.3	11.0	3.64
성별	남성	(509)	11.8	2.4	9.4	26.5	61.7	49.5	12.2	3.60
	여성	(491)	6.5	0.8	5.7	28.5	65.0	55.2	9.8	3.67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12.4	1.5	10.8	27.3	60.3	49.5	10.8	3.57
	30대	(205)	11.2	2.4	8.8	33.7	55.1	48.3	6.8	3.48
	40대	(240)	8.3	1.3	7.1	30.0	61.7	48.8	12.9	3.65
	50대	(225)	6.2	1.8	4.4	25.8	68.0	58.2	9.8	3.70
	60대 이상	(136)	8.1	0.7	7.4	16.9	75.0	58.8	16.2	3.82
지역	수도권	(501)	9.8	1.2	8.6	25.3	64.9	51.7	13.2	3.67
	충청권	(101)	6.9	1.0	5.9	33.7	59.4	49.5	9.9	3.61
	호남권	(97)	6.2	3.1	3.1	37.1	56.7	49.5	7.2	3.55
	대경권	(102)	9.8	2.0	7.8	21.6	68.6	63.7	4.9	3.62
	동남권	(160)	10.6	1.3	9.4	27.5	61.9	50.0	11.9	3.62
	강원/제주	(39)	7.7	5.1	2.6	30.8	61.5	53.8	7.7	3.56
직업	자영업	(88)	8.0	2.3	5.7	28.4	63.6	56.8	6.8	3.60
	블루칼라	(128)	10.2	3.9	6.3	23.4	66.4	56.3	10.2	3.63
	화이트칼라	(471)	8.7	1.3	7.4	28.9	62.4	49.0	13.4	3.66
	주부	(171)	7.0	0.0	7.0	30.4	62.6	56.1	6.4	3.62
	학생	(86)	14.0	2.3	11.6	19.8	66.3	57.0	9.3	3.59
	무직/기타	(56)	12.5	1.8	10.7	26.8	60.7	44.6	16.1	3.63
학력	고졸 이하	(204)	9.3	2.0	7.4	28.9	61.8	52.0	9.8	3.60
	대졸	(700)	9.3	1.3	8.0	27.3	63.4	52.9	10.6	3.63
	대학원 이상	(96)	8.3	3.1	5.2	26.0	65.6	49.0	16.7	3.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7.4	0.4	7.0	29.9	62.7	53.7	9.0	3.64
	101~300만원	(385)	9.4	2.6	6.8	28.6	62.1	52.2	9.9	3.60
	301~500만원	(238)	9.2	0.8	8.4	23.9	66.8	53.8	13.0	3.70
	501만원 이상	(133)	12.0	2.3	9.8	26.3	61.7	47.4	14.3	3.62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2.9	0.0	2.9	25.7	71.4	51.4	20.0	3.89
	없음	(965)	9.4	1.7	7.8	27.6	63.0	52.3	10.7	3.63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7.8	0.7	7.1	25.7	66.5	53.3	13.2	3.71
	없음	(463)	10.8	2.6	8.2	29.6	59.6	51.2	8.4	3.55

-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성별로 남성이 69.0%, 여성이 68.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81.6%), 지역별로 대경권(74.5%)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76.1%),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7.1%),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3.6%)에서 높게 나타남.

<표1-9>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의료비 지원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전체		(1,000)	7.7	1.4	6.3	23.5	68.8	56.9	11.9	3.72
성별	남성	(509)	9.0	2.0	7.1	22.0	69.0	55.6	13.4	3.71
	여성	(491)	6.3	0.8	5.5	25.1	68.6	58.2	10.4	3.72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12.4	2.1	10.3	27.8	59.8	48.5	11.3	3.57
	30대	(205)	7.3	1.5	5.9	31.7	61.0	52.7	8.3	3.60
	40대	(240)	7.9	1.7	6.3	22.1	70.0	55.4	14.6	3.75
	50대	(225)	5.3	1.3	4.0	20.0	74.7	64.9	9.8	3.78
	60대 이상	(136)	5.1	0.0	5.1	13.2	81.6	64.7	16.9	3.93
지역	수도권	(501)	7.8	0.8	7.0	22.6	69.7	56.5	13.2	3.74
	충청권	(101)	5.9	1.0	5.0	24.8	69.3	60.4	8.9	3.71
	호남권	(97)	7.2	3.1	4.1	22.7	70.1	58.8	11.3	3.71
	대경권	(102)	6.9	1.0	5.9	18.6	74.5	67.6	6.9	3.74
	동남권	(160)	8.8	1.9	6.9	28.8	62.5	49.4	13.1	3.65
	강원/제주	(39)	10.3	5.1	5.1	25.6	64.1	51.3	12.8	3.62
직업	자영업	(88)	4.5	0.0	4.5	19.3	76.1	63.6	12.5	3.84
	블루칼라	(128)	9.4	4.7	4.7	22.7	68.0	56.3	11.7	3.66
	화이트칼라	(471)	7.0	1.3	5.7	25.5	67.5	53.3	14.2	3.73
	주부	(171)	5.3	0.0	5.3	23.4	71.3	66.1	5.3	3.71
	학생	(86)	16.3	2.3	14.0	19.8	64.0	52.3	11.6	3.57
	무직/기타	(56)	8.9	0.0	8.9	21.4	69.6	57.1	12.5	3.73
학력	고졸 이하	(204)	7.4	2.0	5.4	23.0	69.6	59.8	9.8	3.70
	대졸	(700)	8.1	1.1	7.0	23.9	68.0	56.4	11.6	3.70
	대학원 이상	(96)	5.2	2.1	3.1	21.9	72.9	54.2	18.8	3.8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6.1	0.0	6.1	25.0	68.9	60.7	8.2	3.71
	101~300만원	(385)	6.8	2.6	4.2	26.5	66.8	55.3	11.4	3.69
	301-500만원	(238)	9.7	0.4	9.2	18.5	71.8	56.7	15.1	3.77
	501만원 이상	(133)	9.8	2.3	7.5	21.1	69.2	54.9	14.3	3.71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5.7	0.0	5.7	17.1	77.1	68.6	8.6	3.80
	없음	(965)	7.8	1.5	6.3	23.7	68.5	56.5	12.0	3.71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7.3	0.9	6.3	19.2	73.6	59.0	14.5	3.80
	없음	(463)	8.2	1.9	6.3	28.5	63.3	54.4	8.9	3.62

-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성별로 여성이 51.7%, 남성이 51.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62.5%), 지역별로 강원/제주(51.3%)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55.2%),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58.6%),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6.1%)에서 높게 나타남.

<표1-10>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교육비 지원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전 체		(1,000)	12.6	2.1	10.5	35.8	51.6	43.4	8.2	3.45
성별	남성	(509)	14.7	3.1	11.6	33.8	51.5	42.6	8.8	3.42
	여성	(491)	10.4	1.0	9.4	37.9	51.7	44.2	7.5	3.48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20.1	2.6	17.5	36.6	43.3	34.0	9.3	3.30
	30대	(205)	14.1	2.9	11.2	44.4	41.5	37.1	4.4	3.29
	40대	(240)	12.1	2.5	9.6	33.8	54.2	45.0	9.2	3.49
	50대	(225)	7.6	1.3	6.2	33.8	58.7	51.1	7.6	3.57
	60대 이상	(136)	8.8	0.7	8.1	28.7	62.5	50.7	11.8	3.65
지역	수도권	(501)	13.6	1.6	12.0	32.5	53.9	45.1	8.8	3.48
	충청권	(101)	9.9	2.0	7.9	40.6	49.5	42.6	6.9	3.45
	호남권	(97)	7.2	4.1	3.1	44.3	48.5	39.2	9.3	3.46
	대경권	(102)	10.8	2.0	8.8	39.2	50.0	45.1	4.9	3.42
	동남권	(160)	16.3	1.9	14.4	35.0	48.8	38.8	10.0	3.41
	강원/제주	(39)	10.3	5.1	5.1	38.5	51.3	48.7	2.6	3.38
직업	자영업	(88)	9.1	1.1	8.0	35.2	55.7	45.5	10.2	3.56
	블루칼라	(128)	14.8	5.5	9.4	31.3	53.9	46.9	7.0	3.41
	화이트칼라	(471)	11.9	1.7	10.2	36.5	51.6	42.7	8.9	3.47
	주부	(171)	9.4	0.6	8.8	37.4	53.2	48.0	5.3	3.49
	학생	(86)	19.8	3.5	16.3	31.4	48.8	40.7	8.1	3.34
	무직/기타	(56)	17.9	1.8	16.1	42.9	39.3	28.6	10.7	3.30
학력	고졸 이하	(204)	12.7	2.0	10.8	36.8	50.5	41.2	9.3	3.45
	대졸	(700)	13.1	2.0	11.1	35.4	51.4	43.4	8.0	3.44
	대학원 이상	(96)	8.3	3.1	5.2	36.5	55.2	47.9	7.3	3.5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0.2	0.8	9.4	38.1	51.6	44.7	7.0	3.48
	101~300만원	(385)	14.8	3.1	11.7	37.1	48.1	40.8	7.3	3.37
	301-500만원	(238)	10.9	1.3	9.7	35.7	53.4	41.6	11.8	3.53
	501만원 이상	(133)	13.5	3.0	10.5	27.8	58.6	51.9	6.8	3.49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4.3	0.0	14.3	34.3	51.4	34.3	17.1	3.54
	없음	(965)	12.5	2.2	10.4	35.9	51.6	43.7	7.9	3.4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0.1	1.5	8.6	33.9	56.1	46.2	9.9	3.54
	없음	(463)	15.6	2.8	12.7	38.0	46.4	40.2	6.3	3.34

-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성별로 여성이 50.3%, 남성이 50.1%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70.6%), 지역별로 대경권(57.8%)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58.0%),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7.1%),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6.1%)에서 높게 나타남.

<표1-11>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주거비 지원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전 체		(1,000)	13.3	1.8	11.5	36.5	50.2	42.7	7.5	3.43
성별	남성	(509)	14.5	2.4	12.2	35.4	50.1	42.6	7.5	3.41
	여성	(491)	12.0	1.2	10.8	37.7	50.3	42.8	7.5	3.45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21.1	2.6	18.6	37.1	41.8	35.6	6.2	3.24
	30대	(205)	16.1	2.4	13.7	44.4	39.5	35.1	4.4	3.25
	40대	(240)	11.3	2.1	9.2	41.7	47.1	38.8	8.3	3.42
	50대	(225)	8.4	1.3	7.1	33.3	58.2	50.2	8.0	3.56
	60대 이상	(136)	9.6	0.0	9.6	19.9	70.6	58.8	11.8	3.73
지역	수도권	(501)	13.8	1.2	12.6	36.5	49.7	41.1	8.6	3.43
	충청권	(101)	9.9	1.0	8.9	43.6	46.5	39.6	6.9	3.43
	호남권	(97)	7.2	3.1	4.1	47.4	45.4	39.2	6.2	3.41
	대경권	(102)	15.7	2.0	13.7	26.5	57.8	54.9	2.9	3.43
	동남권	(160)	16.9	2.5	14.4	31.3	51.9	42.5	9.4	3.42
	강원/제주	(39)	10.3	5.1	5.1	38.5	51.3	48.7	2.6	3.38
직업	자영업	(88)	13.6	1.1	12.5	28.4	58.0	48.9	9.1	3.52
	블루칼라	(128)	14.8	4.7	10.2	32.8	52.3	44.5	7.8	3.41
	화이트칼라	(471)	12.1	1.7	10.4	39.7	48.2	39.9	8.3	3.43
	주부	(171)	10.5	0.6	9.9	38.0	51.5	47.4	4.1	3.44
	학생	(86)	19.8	2.3	17.4	29.1	51.2	46.5	4.7	3.34
	무직/기타	(56)	17.9	0.0	17.9	37.5	44.6	32.1	12.5	3.39
학력	고졸 이하	(204)	11.8	2.0	9.8	37.3	51.0	42.6	8.3	3.46
	대졸	(700)	13.7	1.7	12.0	36.3	50.0	43.3	6.7	3.41
	대학원 이상	(96)	13.5	2.1	11.5	36.5	50.0	38.5	11.5	3.4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3.5	0.4	13.1	35.2	51.2	45.1	6.1	3.43
	101~300만원	(385)	13.2	3.1	10.1	40.3	46.5	40.5	6.0	3.36
	301-500만원	(238)	13.4	0.4	13.0	33.2	53.4	43.3	10.1	3.50
	501만원 이상	(133)	12.8	3.0	9.8	33.8	53.4	43.6	9.8	3.47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8.6	0.0	8.6	34.3	57.1	51.4	5.7	3.54
	없음	(965)	13.5	1.9	11.6	36.6	49.9	42.4	7.6	3.42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1.9	1.3	10.6	34.3	53.8	45.1	8.8	3.49
	없음	(463)	14.9	2.4	12.5	39.1	46.0	40.0	6.0	3.35

-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성별로 여성이 62.7%, 남성이 61.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78.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6.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8.8%),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5.0%)에서 높게 나타남.

<표1-12>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직업교육 지원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전 체		(1,000)	7.7	2.0	5.7	30.2	62.1	49.8	12.3	3.65
성별	남성	(509)	9.4	3.1	6.3	29.1	61.5	48.7	12.8	3.62
	여성	(491)	5.9	0.8	5.1	31.4	62.7	50.9	11.8	3.68
연령	20대 이하	(194)	12.4	4.6	7.7	33.0	54.6	41.8	12.9	3.51
	30대	(205)	10.7	2.4	8.3	39.5	49.8	41.0	8.8	3.45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40대	(240)	7.1	1.3	5.8	31.7	61.3	49.6	11.7	3.65
	50대	(225)	4.4	1.3	3.1	24.9	70.7	58.7	12.0	3.77
	60대 이상	(136)	2.9	0.0	2.9	18.4	78.7	60.3	18.4	3.94
지역	수도권	(501)	7.8	1.2	6.6	27.3	64.9	52.3	12.6	3.68
	충청권	(101)	5.9	3.0	3.0	33.7	60.4	49.5	10.9	3.62
	호남권	(97)	3.1	3.1	0.0	38.1	58.8	46.4	12.4	3.65
	대경권	(102)	6.9	2.0	4.9	38.2	54.9	45.1	9.8	3.56
	동남권	(160)	10.0	2.5	7.5	28.1	61.9	46.3	15.6	3.65
	강원/제주	(39)	15.4	5.1	10.3	25.6	59.0	53.8	5.1	3.44
직업	자영업	(88)	9.1	1.1	8.0	29.5	61.4	47.7	13.6	3.65
	블루칼라	(128)	10.2	4.7	5.5	26.6	63.3	55.5	7.8	3.56
	화이트칼라	(471)	5.7	1.5	4.2	32.1	62.2	49.3	13.0	3.68
	주부	(171)	5.3	0.0	5.3	28.1	66.7	56.1	10.5	3.72
	학생	(86)	15.1	5.8	9.3	26.7	58.1	41.9	16.3	3.53
	무직/기타	(56)	12.5	1.8	10.7	35.7	51.8	37.5	14.3	3.52
학력	고졸 이하	(204)	6.9	2.0	4.9	29.4	63.7	52.5	11.3	3.66
	대졸	(700)	8.1	1.9	6.3	31.1	60.7	48.4	12.3	3.63
	대학원 이상	(96)	6.3	3.1	3.1	25.0	68.8	54.2	14.6	3.7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8.6	1.6	7.0	30.7	60.7	48.0	12.7	3.63
	101~300만원	(385)	7.5	2.9	4.7	33.0	59.5	48.8	10.6	3.60
	301-500만원	(238)	6.3	0.4	5.9	26.9	66.8	52.9	13.9	3.74
	501만원 이상	(133)	9.0	3.0	6.0	27.1	63.9	50.4	13.5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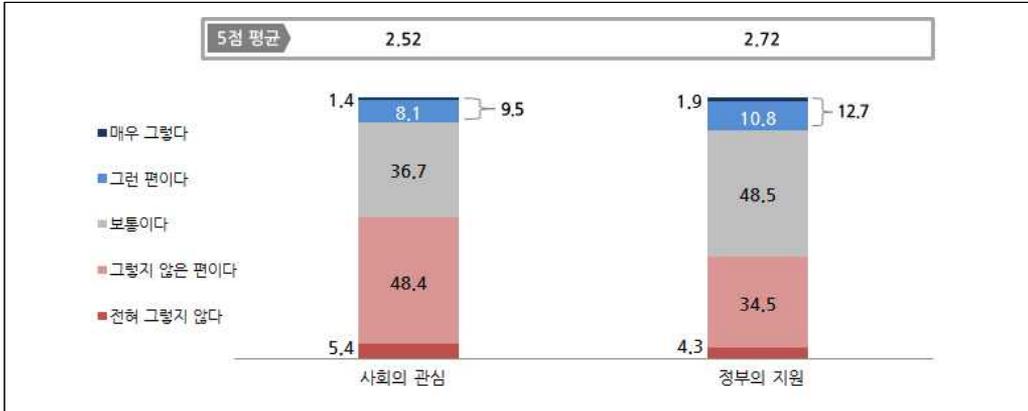
		사례수	불필요함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함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1.4	0.0	11.4	22.9	65.7	57.1	8.6	3.63
	없음	(965)	7.6	2.1	5.5	30.5	62.0	49.5	12.4	3.6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6.9	1.3	5.6	28.1	65.0	50.7	14.3	3.71
	없음	(463)	8.6	2.8	5.8	32.6	58.7	48.8	9.9	3.57

8.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 한국사회의 난민지원 충분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12.7%(매우 그렇다 1.9% + 그런 편이다 10.8%), ‘사회의 관심’이 ‘충분하다’는 9.5%(매우 그렇다 1.4% + 그런 편이다 8.5%)로 나타남.
- 한편,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한국 사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사회의 관심 53.8%, 정부의 지원 38.8%)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불충분하다’는 성별로 여성이 55.4%, 남성이 52.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58.8%), 지역별로 수도권(60.1%)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57.1%),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2.9%)에서 높게 나타남.

<표1-13>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 사회의 관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000)	53.8	5.4	48.4	36.7	9.5	8.1	1.4	2.52
성별	남성	(509)	52.3	5.3	47.0	37.7	10.0	7.9	2.2	2.55
	여성	(491)	55.4	5.5	49.9	35.6	9.0	8.4	0.6	2.49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55.2	5.2	50.0	36.1	8.8	7.2	1.5	2.50
	30대	(205)	47.8	3.9	43.9	42.0	10.2	9.3	1.0	2.60
	40대	(240)	58.8	7.9	50.8	34.2	7.1	5.8	1.3	2.42
	50대	(225)	54.7	3.6	51.1	33.3	12.0	10.2	1.8	2.56
	60대 이상	(136)	50.7	6.6	44.1	39.7	9.6	8.1	1.5	2.54
지역	수도권	(501)	60.1	7.0	53.1	32.1	7.8	6.4	1.4	2.42
	충청권	(101)	48.5	1.0	47.5	41.6	9.9	8.9	1.0	2.61
	호남권	(97)	46.4	7.2	39.2	43.3	10.3	9.3	1.0	2.58
	대경권	(102)	51.0	3.9	47.1	35.3	13.7	12.7	1.0	2.60
	동남권	(160)	48.8	4.4	44.4	40.6	10.6	8.8	1.9	2.59
	강원/제주	(39)	33.3	0.0	33.3	53.8	12.8	10.3	2.6	2.82
직업	자영업	(88)	46.6	6.8	39.8	40.9	12.5	11.4	1.1	2.60
	블루칼라	(128)	50.8	7.0	43.8	38.3	10.9	9.4	1.6	2.55
	화이트칼라	(471)	56.9	4.2	52.7	33.3	9.8	8.1	1.7	2.50
	주부	(171)	55.6	5.3	50.3	36.8	7.6	7.0	0.6	2.47
	학생	(86)	52.3	4.7	47.7	39.5	8.1	7.0	1.2	2.52
	무직/기타	(56)	42.9	10.7	32.1	50.0	7.1	5.4	1.8	2.55
학력	고졸 이하	(204)	44.1	3.9	40.2	45.6	10.3	8.8	1.5	2.64
	대졸	(700)	55.6	5.4	50.1	35.1	9.3	8.0	1.3	2.50
	대학원 이상	(96)	61.5	8.3	53.1	29.2	9.4	7.3	2.1	2.4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0.8	5.3	45.5	41.0	8.2	7.0	1.2	2.53
	101~300만원	(385)	54.5	4.4	50.1	36.1	9.4	8.1	1.3	2.52
	301-500만원	(238)	53.8	6.3	47.5	37.8	8.4	6.7	1.7	2.50
	501만원 이상	(133)	57.1	6.8	50.4	28.6	14.3	12.8	1.5	2.52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62.9	2.9	60.0	25.7	11.4	8.6	2.9	2.49
	없음	(965)	53.5	5.5	48.0	37.1	9.4	8.1	1.3	2.52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55.9	6.3	49.5	33.5	10.6	8.9	1.7	2.50
	없음	(463)	51.4	4.3	47.1	40.4	8.2	7.1	1.1	2.54

-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성별로 남성이 38.9%, 여성이 38.7%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48.3%), 지역별로 수도권(43.9%)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3.5%),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43.6%)에서 높게 나타남.

<표1-14>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 정부의 지원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 체		(1,000)	38.8	4.3	34.5	48.5	12.7	10.8	1.9	2.72
성별	남성	(509)	38.9	4.1	34.8	47.3	13.8	11.2	2.6	2.73
	여성	(491)	38.7	4.5	34.2	49.7	11.6	10.4	1.2	2.70
연령	20대 이하	(194)	36.1	3.6	32.5	51.5	12.4	10.3	2.1	2.75
	30대	(205)	33.2	3.9	29.3	52.7	14.1	13.2	1.0	2.78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40대	(240)	48.3	6.7	41.7	40.4	11.3	9.2	2.1	2.58
	50대	(225)	40.4	1.8	38.7	45.3	14.2	12.0	2.2	2.74
	60대 이상	(136)	31.6	5.9	25.7	57.4	11.0	8.8	2.2	2.76
지역	수도권	(501)	43.9	5.4	38.5	45.5	10.6	8.8	1.8	2.63
	충청권	(101)	31.7	3.0	28.7	54.5	13.9	11.9	2.0	2.81
	호남권	(97)	37.1	4.1	33.0	49.5	13.4	12.4	1.0	2.73
	대경권	(102)	38.2	2.0	36.3	45.1	16.7	14.7	2.0	2.78
	동남권	(160)	32.5	4.4	28.1	51.3	16.3	13.8	2.5	2.82
	강원/제주	(39)	23.1	0.0	23.1	66.7	10.3	7.7	2.6	2.90
직업	자영업	(88)	36.4	5.7	30.7	51.1	12.5	10.2	2.3	2.73
	블루칼라	(128)	36.7	4.7	32.0	51.6	11.7	10.2	1.6	2.72
	화이트칼라	(471)	43.5	3.8	39.7	43.1	13.4	11.3	2.1	2.68
	주부	(171)	38.6	2.9	35.7	50.3	11.1	10.5	0.6	2.70
	학생	(86)	30.2	4.7	25.6	57.0	12.8	10.5	2.3	2.80
	무직/기타	(56)	21.4	8.9	12.5	64.3	14.3	10.7	3.6	2.88
학력	고졸 이하	(204)	33.3	2.5	30.9	54.9	11.8	10.3	1.5	2.77
	대졸	(700)	40.0	4.7	35.3	47.3	12.7	10.9	1.9	2.70
	대학원 이상	(96)	41.7	5.2	36.5	43.8	14.6	11.5	3.1	2.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2.4	4.1	28.3	53.3	14.3	12.7	1.6	2.80
	101~300만원	(385)	39.2	3.6	35.6	50.4	10.4	9.1	1.3	2.69
	301-500만원	(238)	42.0	4.2	37.8	46.2	11.8	9.7	2.1	2.68
	501만원 이상	(133)	43.6	6.8	36.8	38.3	18.0	14.3	3.8	2.71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4.3	2.9	31.4	48.6	17.1	14.3	2.9	2.83
	없음	(965)	39.0	4.4	34.6	48.5	12.5	10.7	1.9	2.71

		사례수	불충분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충분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40.0	5.6	34.5	44.7	15.3	12.7	2.6	2.72
	없음	(463)	37.4	2.8	34.6	52.9	9.7	8.6	1.1	2.71

9.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도

-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도에 대해 ‘중요함’이 70.7%(매우 중요하다 17.9% + 다소 중요하다 52.8%)이 ‘중요하지 않음’(3.5% = 전혀 중요하지 않다 0.6% + 별로 중요하지 않다 2.9%) 보다 높게 나타남.
- 5점 평균은 3.85점으로 나타남.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도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성별로 남성이 71.7%, 여성이 69.7%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78.7%), 60대 이상(76.5%), 지역별로 강원/제주(79.5%)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80.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81.3%),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77.4%),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80.0%)에서 높게 나타남.

<표1-15>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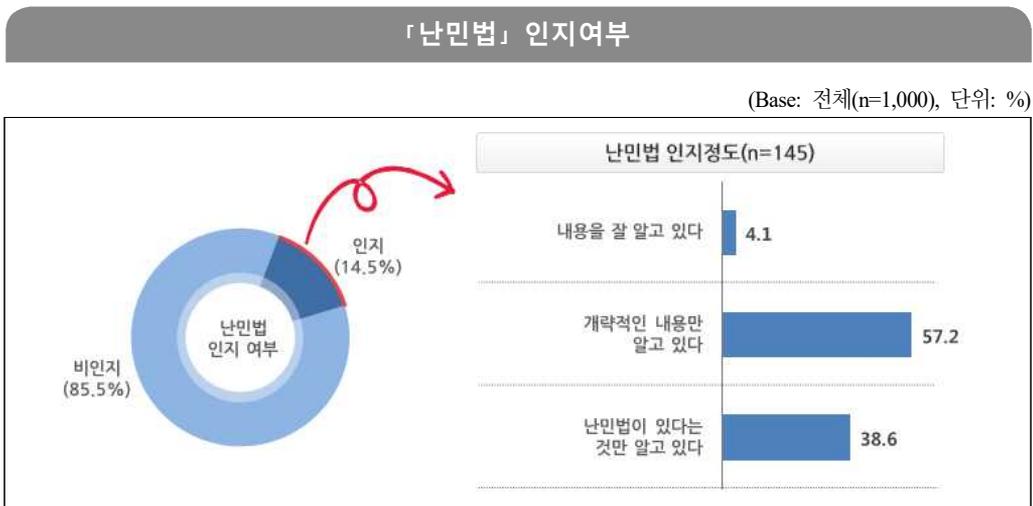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중간 이다	중요함	다소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평 균
전 체		(1,000)	3.5	0.6	2.9	25.8	70.7	52.8	17.9	3.85
성별	남성	(509)	4.9	1.0	3.9	23.4	71.7	53.8	17.9	3.84
	여성	(491)	2.0	0.2	1.8	28.3	69.7	51.7	17.9	3.85
연령	20대 이하	(194)	5.7	1.0	4.6	30.4	63.9	54.1	9.8	3.67
	30대	(205)	5.4	0.5	4.9	32.7	62.0	46.8	15.1	3.71
	40대	(240)	3.3	0.8	2.5	23.8	72.9	52.5	20.4	3.89
	50대	(225)	1.8	0.4	1.3	19.6	78.7	57.8	20.9	3.97
	60대 이상	(136)	0.7	0.0	0.7	22.8	76.5	52.2	24.3	4.00
지역	수도권	(501)	3.6	0.2	3.4	24.2	72.3	54.3	18.0	3.86
	충청권	(101)	5.0	1.0	4.0	26.7	68.3	49.5	18.8	3.81
	호남권	(97)	3.1	2.1	1.0	25.8	71.1	47.4	23.7	3.90
	대경권	(102)	4.9	0.0	4.9	21.6	73.5	58.8	14.7	3.83
	동남권	(160)	1.9	0.6	1.3	35.0	63.1	45.0	18.1	3.79
	강원/제주	(39)	2.6	2.6	0.0	17.9	79.5	71.8	7.7	3.82

		사례수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중간 이다	중요함	다소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평 균
직업	자영업	(88)	2.3	0.0	2.3	17.0	80.7	60.2	20.5	3.99
	블루칼라	(128)	6.3	2.3	3.9	25.0	68.8	52.3	16.4	3.77
	화이트칼라	(471)	3.0	0.4	2.5	26.1	70.9	52.2	18.7	3.86
	주부	(171)	1.8	0.0	1.8	30.4	67.8	50.9	17.0	3.83
	학생	(86)	5.8	1.2	4.7	24.4	69.8	58.1	11.6	3.74
	무직/기타	(56)	5.4	0.0	5.4	26.8	67.9	44.6	23.2	3.86
학력	고졸 이하	(204)	3.4	0.5	2.9	33.3	63.2	48.5	14.7	3.74
	대졸	(700)	3.4	0.4	3.0	25.1	71.4	53.1	18.3	3.86
	대학원 이상	(96)	4.2	2.1	2.1	14.6	81.3	59.4	21.9	3.9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5	0.0	2.5	29.5	68.0	52.0	16.0	3.82
	101~ 300만원	(385)	3.9	0.8	3.1	27.8	68.3	53.5	14.8	3.78
	301- 500만원	(238)	2.9	0.0	2.9	23.5	73.5	49.2	24.4	3.95
	501만원 이상	(133)	5.3	2.3	3.0	17.3	77.4	58.6	18.8	3.89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5.7	0.0	5.7	14.3	80.0	51.4	28.6	4.03
	없음	(965)	3.4	0.6	2.8	26.2	70.4	52.8	17.5	3.84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3.7	0.7	3.0	21.8	74.5	52.5	22.0	3.92
	없음	(463)	3.2	0.4	2.8	30.5	66.3	53.1	13.2	3.76

10. 「난민법」 인지여부

- 「난민법」을 「출입국관리법」과 별도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가 85.5%로 ‘안다’(14.5%) 보다 높게 나타남.
- 「난민법」 인지자 중 「난민법」 대해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가 5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38.6%), ‘내용을 잘 알고 있다’(4.1%) 순으로 나타남.



- 「난민법」 인지여부에 대해 ‘비인자자’ 성별로 여성(89.2%)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고졸 이하(90.2%), 방송 난민 접촉 경험별로 없음(94.2%)에서 높게 나타남.

<표1-16> 「난민법」 인지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안 다	모른다
전 체		(1,000)	14.5	85.5
성별	남성	(509)	18.1	81.9
	여성	(491)	10.8	89.2
연령	20대 이하	(194)	13.4	86.6
	30대	(205)	14.1	85.9
	40대	(240)	15.0	85.0
	50대	(225)	15.1	84.9
	60대 이상	(136)	14.7	85.3
지역	수도권	(501)	15.0	85.0
	충청권	(101)	15.8	84.2
	호남권	(97)	12.4	87.6
	대경권	(102)	17.6	82.4
	동남권	(160)	11.9	88.1
	강원/제주	(39)	12.8	87.2
직업	자영업	(88)	11.4	88.6
	블루칼라	(128)	14.8	85.2
	화이트칼라	(471)	16.1	83.9
	주부	(171)	10.5	89.5
	학생	(86)	15.1	84.9
	무직/기타	(56)	16.1	83.9
학력	고졸 이하	(204)	9.8	90.2
	대졸	(700)	14.7	85.3
	대학원 이상	(96)	22.9	7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3.5	86.5
	101~300만원	(385)	11.4	88.6
	301~500만원	(238)	16.0	84.0
	501만원 이상	(133)	22.6	77.4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45.7	54.3
	없음	(965)	13.4	86.6

		사례수	안 다	모른다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22.0	78.0
	없음	(463)	5.8	94.2

- 「난민법」 인지자 중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성별로 남성(59.8%), 연령별로 30대(62.1%), 지역별로 충청권(68.8%)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2.4%),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72.7%), 월 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63.3%),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87.5%)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7> 「난민법」 인지정도

(Base: 「난민법」 인지자(n=145), 단위: %)

		사례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난민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전 체		(145)	4.1	57.2	38.6
성별	남성	(92)	6.5	59.8	33.7
	여성	(53)	0.0	52.8	47.2
연령	20대 이하	(26)	11.5	46.2	42.3
	30대	(29)	3.4	62.1	34.5
	40대	(36)	2.8	58.3	38.9
	50대	(34)	0.0	58.8	41.2
	60대 이상	(20)	5.0	60.0	35.0
지역	수도권	(75)	4.0	62.7	33.3
	충청권	(16)	6.3	68.8	25.0
	호남권	(12)	8.3	33.3	58.3
	대경권	(18)	5.6	55.6	38.9
	동남권	(19)	0.0	47.4	52.6
	강원/제주	(5)	0.0	40.0	60.0
직업	자영업	(10)	0.0	40.0	60.0
	블루칼라	(19)	5.3	57.9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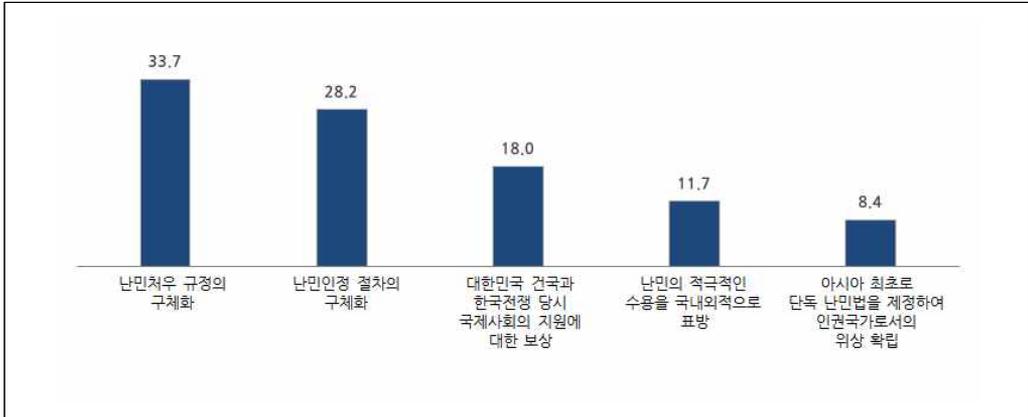
		사례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난민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화이트칼라	(76)	2.6	72.4	25.0
	주부	(18)	0.0	33.3	66.7
	학생	(13)	15.4	30.8	53.8
	무직/기타	(9)	11.1	33.3	55.6
학력	고졸 이하	(20)	5.0	50.0	45.0
	대졸	(103)	4.9	55.3	39.8
	대학원 이상	(22)	0.0	72.7	27.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33)	6.1	42.4	51.5
	101~300만원	(44)	4.5	54.5	40.9
	301-500만원	(38)	5.3	68.4	26.3
	501만원 이상	(30)	0.0	63.3	36.7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16)	12.5	87.5	0.0
	없음	(129)	3.1	53.5	43.4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118)	4.2	60.2	35.6
	없음	(27)	3.7	44.4	51.9

11.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에 대해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가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28.2%),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로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는 성별로 남성(35.8%), 연령별로 20대 이하(40.2%), 지역별로 대경권(41.2%)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38.6%), 학생(38.4%),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별로 있음(42.9%)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8>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국내외적으로 표방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전 체	(1,000)	33.7	28.2	18.0	11.7	8.4	
성별	남성	(509)	35.8	27.1	15.9	13.0	8.3
	여성	(491)	31.6	29.3	20.2	10.4	8.6

		사례수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국내외적으 로 표방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로 서의 위상 확립
연령	20대 이하	(194)	40.2	32.0	11.9	9.3	6.7
	30대	(205)	34.6	30.2	16.6	9.8	8.8
	40대	(240)	34.2	32.1	13.3	11.3	9.2
	50대	(225)	29.3	20.0	27.6	15.1	8.0
	60대 이상	(136)	29.4	26.5	21.3	13.2	9.6
지역	수도권	(501)	37.3	26.9	17.0	10.6	8.2
	충청권	(101)	25.7	31.7	18.8	13.9	9.9
	호남권	(97)	23.7	29.9	21.6	12.4	12.4
	대경권	(102)	41.2	22.5	20.6	8.8	6.9
	동남권	(160)	28.8	34.4	13.8	16.3	6.9
	강원/제주	(39)	33.3	20.5	30.8	7.7	7.7
직업	자영업	(88)	38.6	25.0	21.6	11.4	3.4
	블루칼라	(128)	34.4	25.8	19.5	10.2	10.2
	화이트칼라	(471)	34.2	28.9	15.5	13.0	8.5
	주부	(171)	25.1	29.8	25.1	10.5	9.4
	학생	(86)	38.4	36.0	11.6	10.5	3.5
	무직/기타	(56)	39.3	16.1	17.9	10.7	16.1
학력	고졸 이하	(204)	32.8	27.5	18.6	9.8	11.3
	대졸	(700)	35.9	28.0	17.6	12.0	6.6
	대학원 이상	(96)	19.8	31.3	19.8	13.5	15.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1.1	31.1	19.3	10.7	7.8
	101~ 300만원	(385)	34.3	28.3	18.4	10.4	8.6
	301-500만원	(238)	35.3	26.9	17.6	13.4	6.7
	501만원 이상	(133)	33.8	24.8	15.0	14.3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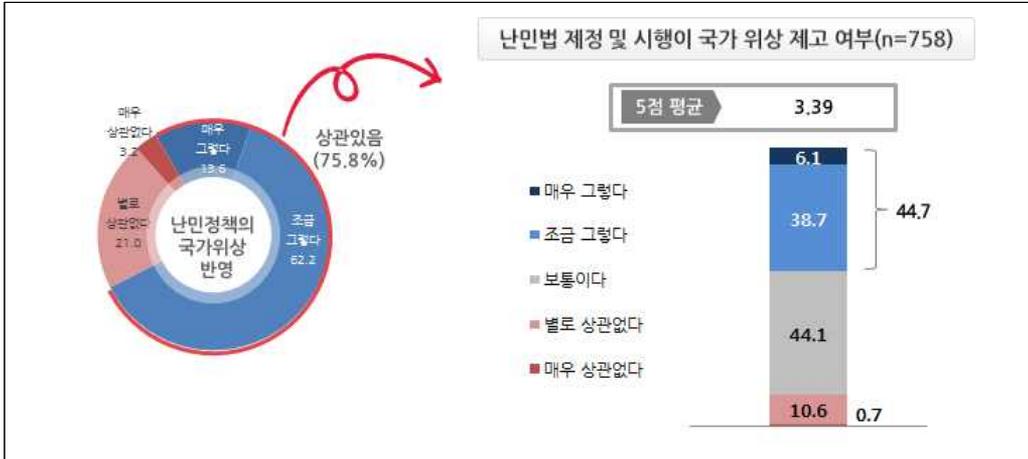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처우 규정의 구체화	난민인정 절차의 구체화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의 적극적인 수용을 국내외적으 로 표방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로 서의 위상 확립
일상생활	있음	(35)	42.9	14.3	17.1	14.3	11.4
난민 접촉 경험	없음	(965)	33.4	28.7	18.0	11.6	8.3
방송	있음	(537)	31.5	29.4	19.6	11.9	7.6
난민 접촉 경험	없음	(463)	36.3	26.8	16.2	11.4	9.3

12. 난민정책의 국가위상 반영에 대한 의견

- 난민 정책이 국가 위상 반영에 ‘상관 있음’이 75.8%(매우 그렇다 13.6% + 조금 그렇다 62.2%)이 ‘상관 없음’(24.2% = 매우 상관없다 3.2% + 별로 상관없다 21.0%) 보다 높게 나타남.
- 난민 정책이 국가 위상 반영에 상관있다는 응답자 중 「난민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위상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 ‘상관 있음’이 44.7%(매우 그렇다 6.1% + 조금 그렇다 38.7%)이 ‘상관 없음’(11.2% = 매우 상관없다 0.7% + 별로 상관없다 10.6%)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44.1%)
- 5점 평균은 3.39점으로 나타남.

난민정책의 국가위상 반영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정책이 국가위상 반영에 ‘상관있다’는 성별로 남성이 76.6%, 여성이 74.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85.3%), 지역별로 대경권(82.4%)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80.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81.3%), 월평균 소득별로 301~500만원(82.4%), 501만원 이상(82.0),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85.7%)에서 높게 나타남.

<표1-19> 난민정책의 국가위상 반영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상관 없음	매우 상관없다	별로 상관없다	상관 있음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00)	24.2	3.2	21.0	75.8	62.2	13.6
성별	남성	(509)	23.4	4.3	19.1	76.6	61.3	15.3
	여성	(491)	25.1	2.0	23.0	74.9	63.1	11.8
연령	20대 이하	(194)	37.6	6.2	31.4	62.4	57.2	5.2
	30대	(205)	23.9	3.9	20.0	76.1	66.8	9.3

		사례수	상관 없음	매우 상관없다	별로 상관없다	상관 있음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대	(240)	23.8	2.9	20.8	76.3	61.3	15.0
	50대	(225)	14.7	1.8	12.9	85.3	67.6	17.8
	60대 이상	(136)	22.1	0.7	21.3	77.9	55.1	22.8
지역	수도권	(501)	24.4	3.2	21.2	75.6	62.3	13.4
	충청권	(101)	20.8	3.0	17.8	79.2	68.3	10.9
	호남권	(97)	26.8	3.1	23.7	73.2	55.7	17.5
	대경권	(102)	17.6	2.0	15.7	82.4	70.6	11.8
	동남권	(160)	27.5	3.1	24.4	72.5	57.5	15.0
	강원/제주	(39)	28.2	7.7	20.5	71.8	59.0	12.8
직업	자영업	(88)	19.3	1.1	18.2	80.7	67.0	13.6
	블루칼라	(128)	23.4	2.3	21.1	76.6	64.1	12.5
	화이트칼라	(471)	22.1	3.4	18.7	77.9	60.5	17.4
	주부	(171)	24.0	1.2	22.8	76.0	67.3	8.8
	학생	(86)	39.5	8.1	31.4	60.5	59.3	1.2
	무직/기타	(56)	28.6	5.4	23.2	71.4	53.6	17.9
학력	고졸 이하	(204)	29.4	2.9	26.5	70.6	58.8	11.8
	대졸	(700)	23.4	3.3	20.1	76.6	62.9	13.7
	대학원 이상	(96)	18.8	3.1	15.6	81.3	64.6	16.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1.1	3.3	27.9	68.9	61.1	7.8
	101~ 300만원	(385)	26.0	2.9	23.1	74.0	61.8	12.2
	301- 500만원	(238)	17.6	2.5	15.1	82.4	64.3	18.1
	501만원 이상	(133)	18.0	5.3	12.8	82.0	61.7	20.3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4.3	5.7	8.6	85.7	60.0	25.7
	없음	(965)	24.6	3.1	21.5	75.4	62.3	13.2

		사례수	상관 없음	매우 상관없다	별로 상관없다	상관 있음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21.4	2.6	18.8	78.6	61.5	17.1
	없음	(463)	27.4	3.9	23.5	72.6	63.1	9.5

- 「난민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위상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 ‘상관있다’는 성별로 남성이 45.6%, 여성이 43.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54.2%), 60대 이상(52.8%), 지역별로 호남권(57.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301~500만원(50.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0.0%)에서 높게 나타남.

<표1-20> 「난민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위상 제고 여부

(Base: 전체(n=758), 단위: %, 점)

		사례수	상관 없음	매우 상관 없다	별로 상관 없다	보통 이다	상관 있음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 균
전 체		(758)	11.2	0.7	10.6	44.1	44.7	38.7	6.1	3.39
성별	남성	(390)	11.3	0.5	10.8	43.1	45.6	38.2	7.4	3.41
	여성	(368)	11.1	0.8	10.3	45.1	43.8	39.1	4.6	3.36
연령	20대 이하	(121)	21.5	2.5	19.0	45.5	33.1	30.6	2.5	3.12
	30대	(156)	12.8	0.0	12.8	51.9	35.3	34.0	1.3	3.24
	40대	(183)	10.4	0.5	9.8	43.7	45.9	39.9	6.0	3.41
	50대	(192)	4.7	0.0	4.7	41.1	54.2	45.8	8.3	3.58
	60대 이상	(106)	10.4	0.9	9.4	36.8	52.8	39.6	13.2	3.55
지역	수도권	(379)	13.2	0.8	12.4	46.2	40.6	36.9	3.7	3.30
	충청권	(80)	13.8	0.0	13.8	40.0	46.3	41.3	5.0	3.38
	호남권	(71)	9.9	0.0	9.9	32.4	57.7	43.7	14.1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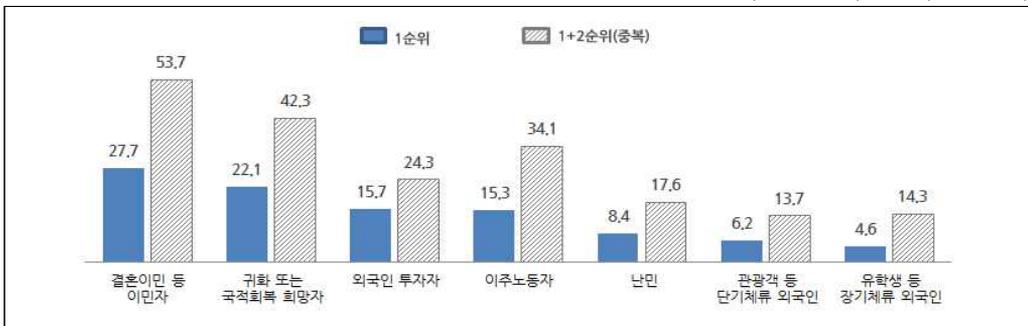
		사례수	상관 없음	매우 상관 없다	별로 상관 없다	보통 이다	상관 있음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 균
	대경권	(84)	9.5	0.0	9.5	40.5	50.0	44.0	6.0	3.46
	동남권	(116)	7.8	1.7	6.0	45.7	46.6	37.9	8.6	3.46
	강원/제주	(28)	0.0	0.0	0.0	60.7	39.3	28.6	10.7	3.50
직업	자영업	(71)	12.7	0.0	12.7	39.4	47.9	40.8	7.0	3.42
	블루칼라	(98)	8.2	0.0	8.2	44.9	46.9	39.8	7.1	3.46
	화이트칼라	(367)	10.1	0.8	9.3	45.5	44.4	37.1	7.4	3.41
	주부	(130)	10.0	0.0	10.0	44.6	45.4	43.1	2.3	3.38
	학생	(52)	26.9	1.9	25.0	36.5	36.5	34.6	1.9	3.10
	무직/기타	(40)	10.0	2.5	7.5	45.0	45.0	37.5	7.5	3.40
	고졸 이하	(144)	8.3	1.4	6.9	43.8	47.9	41.0	6.9	3.45
학력	대졸	(536)	11.8	0.4	11.4	44.6	43.7	37.5	6.2	3.38
	대학원 이상	(78)	12.8	1.3	11.5	41.0	46.2	42.3	3.8	3.3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68)	13.7	0.6	13.1	42.3	44.0	39.9	4.2	3.34
	101~ 300만원	(285)	12.3	1.1	11.2	46.7	41.1	36.5	4.6	3.32
	301- 500만원	(196)	9.7	0.0	9.7	39.8	50.5	40.3	10.2	3.51
	501만원 이상	(109)	7.3	0.9	6.4	47.7	45.0	39.4	5.5	3.42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0)	10.0	0.0	10.0	40.0	50.0	40.0	10.0	3.50
	없음	(728)	11.3	0.7	10.6	44.2	44.5	38.6	5.9	3.38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422)	10.7	0.7	10.0	42.2	47.2	40.0	7.1	3.43
	없음	(336)	11.9	0.6	11.3	46.4	41.7	36.9	4.8	3.34

13.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 외국인 정책 대상자의 우선순위로 ‘결혼 이민 등 이민자’가 2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희망자’(22.1%), ‘외국인 투자자’(15.7%) ‘이주 노동자’(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

(Base: 전체(n=1,000), 단위: %)



- 외국인 정책 우선 대상자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결혼이민 등 이민자’는 성별로 여성(30.0%), 연령별로 40대(32.1%), 지역별로 동남권(30.6%)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0.1%)에서 높게 나타남.

<표1-21>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순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회복 희망자	외국인 투자자	이주 노동자	난민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 장기체류 외국인
전체		(1,000)	27.7	22.1	15.7	15.3	8.4	6.2	4.6
성별	남성	(509)	25.1	23.2	17.9	13.2	7.9	7.9	4.9
	여성	(491)	30.3	21.0	13.4	17.5	9.0	4.5	4.3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외국인 투자자	이주 노동자	난 민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연령	20대 이하	(194)	24.7	25.3	10.8	8.8	14.4	10.3	5.7
	30대	(205)	28.8	20.5	12.2	21.0	6.3	5.9	5.4
	40대	(240)	32.1	20.4	15.0	17.1	7.1	4.6	3.8
	50대	(225)	28.0	21.8	21.3	15.1	4.9	4.4	4.4
	60대 이상	(136)	22.1	23.5	19.9	13.2	11.0	6.6	3.7
지역	수도권	(501)	26.7	20.4	16.8	17.0	8.2	6.2	4.8
	충청권	(101)	26.7	25.7	17.8	12.9	6.9	7.9	2.0
	호남권	(97)	29.9	22.7	14.4	7.2	11.3	9.3	5.2
	대경권	(102)	26.5	26.5	13.7	12.7	10.8	5.9	3.9
	동남권	(160)	30.6	22.5	15.0	15.6	6.3	4.4	5.6
	강원/제주	(39)	28.2	20.5	7.7	25.6	10.3	2.6	5.1
직업	자영업	(88)	19.3	22.7	22.7	17.0	3.4	8.0	6.8
	블루칼라	(128)	28.1	16.4	18.8	14.1	11.7	7.0	3.9
	화이트칼라	(471)	30.1	21.7	14.2	16.6	7.9	5.5	4.0
	주부	(171)	27.5	23.4	17.5	16.4	7.6	4.1	3.5
	학생	(86)	23.3	18.6	8.1	12.8	12.8	15.1	9.3
	무직/기타	(56)	26.8	39.3	16.1	5.4	8.9	0.0	3.6
학력	고졸 이하	(204)	25.5	18.1	17.2	14.2	11.8	8.8	4.4
	대졸	(700)	28.3	23.4	15.9	14.7	7.6	5.9	4.3
	대학원 이상	(96)	28.1	20.8	11.5	21.9	7.3	3.1	7.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7.5	23.4	15.6	12.3	10.7	4.9	5.7
	101~ 300만원	(385)	27.5	22.3	15.8	16.6	7.5	6.2	3.9
	301- 500만원	(238)	29.8	22.7	13.0	13.9	8.8	7.1	4.6
	501만원 이상	(133)	24.8	18.0	20.3	19.5	6.0	6.8	4.5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외국인 투자자	이주 노동자	난 민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4.3	22.9	20.0	22.9	5.7	14.3	0.0
	없음	(965)	28.2	22.1	15.5	15.0	8.5	5.9	4.8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27.0	20.3	17.5	15.3	9.7	5.0	5.2
	없음	(463)	28.5	24.2	13.6	15.3	6.9	7.6	3.9

- 외국인 정책 우선 대상자에 대해 1+2순위 응답으로 ‘결혼이민 등 이민자’는 성별로 여성(56.8%), 연령별로 40대(57.9%), 지역별로 충청권(62.4%)에서 높게 나타남.

<표1-22>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2순위 (중복응답)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이주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	난 민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전 체		(1,000)	53.7	42.3	34.1	24.3	17.6	14.3	13.7
성별	남성	(509)	50.7	42.8	30.5	27.3	15.3	15.9	17.5
	여성	(491)	56.8	41.8	37.9	21.2	20.0	12.6	9.8
연령	20대 이하	(194)	51.0	41.8	28.9	21.1	21.6	19.6	16.0
	30대	(205)	50.2	42.0	39.0	22.0	19.0	14.1	13.7
	40대	(240)	57.9	39.6	39.6	22.1	17.9	12.1	10.8
	50대	(225)	55.6	44.4	31.6	28.4	12.4	15.1	12.4
	60대 이상	(136)	52.2	44.9	28.7	29.4	17.6	9.6	17.6
지역	수도권	(501)	52.3	43.1	34.3	25.1	17.4	14.2	13.6
	충청권	(101)	62.4	40.6	36.6	23.8	14.9	10.9	10.9
	호남권	(97)	53.6	45.4	25.8	24.7	18.6	14.4	17.5
	대경권	(102)	49.0	43.1	30.4	23.5	21.6	14.7	17.6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이주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	난민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동남권	(160)	55.0	36.9	38.1	24.4	16.9	16.3	12.5
	강원/제주	(39)	56.4	48.7	38.5	15.4	17.9	15.4	7.7
직업	자영업	(88)	54.5	37.5	33.0	34.1	11.4	11.4	18.2
	블루칼라	(128)	50.0	36.7	32.8	28.1	19.5	18.0	14.8
	화이트칼라	(471)	53.9	42.3	36.3	22.7	18.3	13.8	12.7
	주부	(171)	55.6	49.1	32.7	24.0	16.4	11.7	10.5
	학생	(86)	51.2	38.4	29.1	18.6	20.9	20.9	20.9
	무직/기타	(56)	57.1	48.2	32.1	23.2	16.1	12.5	10.7
	고졸 이하	(204)	51.0	40.7	30.9	27.0	21.6	13.7	15.2
학력	대졸	(700)	54.6	42.6	34.1	23.7	17.0	14.1	13.9
	대학원 이상	(96)	53.1	43.8	40.6	22.9	13.5	16.7	9.4
	100만원 이하	(244)	55.3	47.1	31.6	25.0	17.6	11.9	11.5
월평균 소득	101~ 300만원	(385)	54.0	40.0	35.6	23.4	18.7	14.8	13.5
	301- 500만원	(238)	52.1	44.5	34.5	22.3	16.4	15.1	15.1
	501만원 이상	(133)	52.6	36.1	33.8	29.3	16.5	15.8	15.8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40.0	28.6	42.9	37.1	11.4	17.1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없음	(965)	54.2	42.8	33.8	23.8	17.8	14.2	13.4
	있음	(537)	53.6	42.3	33.3	25.9	18.8	13.2	12.8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없음	(463)	53.8	42.3	35.0	22.5	16.2	15.6	14.7

- 외국인 정책 우선 대상자에 대해 1+2+3순위 응답으로 ‘결혼이민 등 이민자’는 성별로 여성 (71.9%), 연령별로 50대(73.3%), 지역별로 강원/제주(79.5%), 충청권(79.2%)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75.4%)에서 높게 나타남.

<표1-23>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2+3순위 (중복응답)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이주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난민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전체		(1,000)	69.2	60.3	54.5	33.8	32.3	31.0	18.9
성별	남성	(509)	66.6	60.9	50.7	38.9	33.4	26.9	22.6
	여성	(491)	71.9	59.7	58.5	28.5	31.2	35.2	15.1
연령	20대 이하	(194)	64.9	55.2	51.5	29.9	42.3	34.5	21.6
	30대	(205)	67.8	57.6	56.6	32.2	35.1	32.2	18.5
	40대	(240)	71.3	62.1	56.7	31.3	30.0	33.3	15.4
	50대	(225)	73.3	63.1	53.8	36.9	28.9	24.4	19.6
	60대 이상	(136)	66.9	64.0	52.9	41.2	23.5	30.9	20.6
지역	수도권	(501)	66.7	61.1	56.9	35.9	30.7	29.3	19.4
	충청권	(101)	79.2	57.4	58.4	32.7	28.7	29.7	13.9
	호남권	(97)	66.0	61.9	48.5	33.0	36.1	30.9	23.7
	대경권	(102)	64.7	60.8	48.0	33.3	34.3	38.2	20.6
	동남권	(160)	73.1	58.8	53.1	31.9	33.1	32.5	17.5
	강원/제주	(39)	79.5	59.0	51.3	20.5	43.6	30.8	15.4
직업	자영업	(88)	64.8	61.4	51.1	44.3	33.0	25.0	20.5
	블루칼라	(128)	65.6	53.9	50.0	39.1	33.6	34.4	23.4
	화이트칼라	(471)	69.6	61.8	58.4	29.9	30.6	31.8	17.8
	주부	(171)	75.4	66.1	52.0	35.1	27.5	28.7	15.2
	학생	(86)	66.3	46.5	50.0	32.6	47.7	33.7	23.3
	무직/기타	(56)	66.1	64.3	51.8	35.7	33.9	28.6	19.6

		사례수	결혼 이민 등 이민자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희망자	이주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등 장기 체류 외국인	난민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
학력	고졸 이하	(204)	66.7	57.8	51.5	37.7	31.4	33.8	21.1
	대졸	(700)	70.0	61.0	54.0	32.9	32.3	30.9	19.0
	대학원 이상	(96)	68.8	60.4	64.6	32.3	34.4	26.0	13.5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72.1	64.8	52.5	34.4	30.3	29.5	16.4
	101~300만원	(385)	69.1	57.9	55.8	30.9	34.0	33.5	18.7
	301~500만원	(238)	66.8	61.3	54.6	34.5	30.7	31.5	20.6
	501만원 이상	(133)	68.4	57.1	54.1	39.8	33.8	25.6	21.1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57.1	60.0	51.4	40.0	34.3	28.6	28.6
	없음	(965)	69.6	60.3	54.6	33.6	32.2	31.1	18.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69.8	61.8	52.1	35.6	30.7	32.4	17.5
	없음	(463)	68.5	58.5	57.2	31.7	34.1	29.4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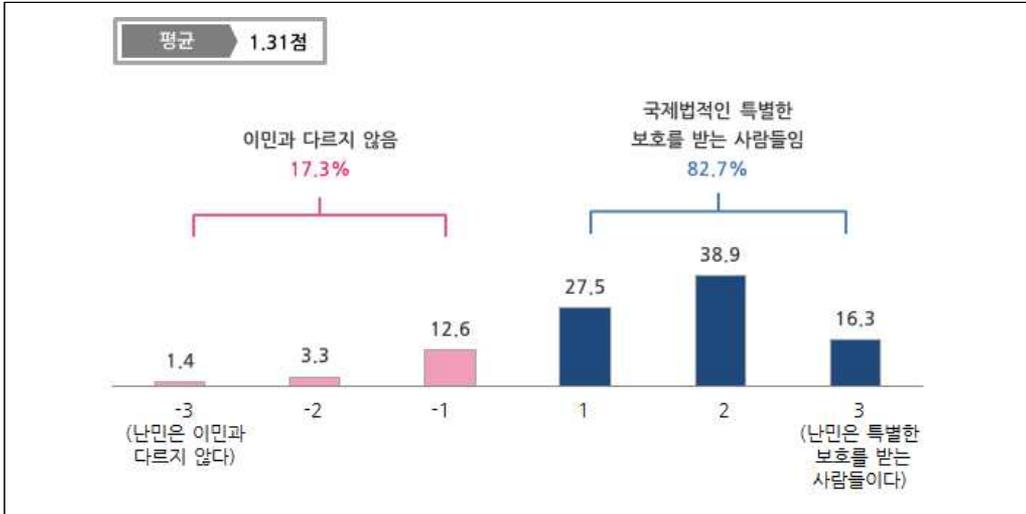
14.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서 난민의 특성

-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 난민의 특성에 대한 의견으로 1.31점으로 나타나 ‘국제법적인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임’이라는 의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국제법적인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임 82.7%, 이민과 다르지 않음 17.3%)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서 난민의 특성

(Base: 전체(n=1,000), 단위: %)



-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 난민의 특성에 대한 의견으로 ‘난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의견은 성별로 남성이 82.9%, 여성이 82.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60대 이상(86.0%)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87.5%),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88.0%)에서 높게 나타남.

<표1-24>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서 난민의 특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이민과 다르지 않다)	-3	-2	-1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다)	1	2	3	평 균
전 체		(1,000)	17.3	1.4	3.3	12.6	82.7	27.5	38.9	16.3	1.31
성별	남성	(509)	17.1	1.8	4.3	11.0	82.9	27.7	38.7	16.5	1.30
	여성	(491)	17.5	1.0	2.2	14.3	82.5	27.3	39.1	16.1	1.32
연령	20대 이하	(194)	26.3	2.6	6.2	17.5	73.7	28.4	35.6	9.8	0.91
	30대	(205)	17.1	1.0	3.9	12.2	82.9	31.7	35.1	16.1	1.27
	40대	(240)	14.6	1.3	1.7	11.7	85.4	27.1	42.5	15.8	1.41
	50대	(225)	14.7	1.3	2.2	11.1	85.3	27.1	39.6	18.7	1.43
	60대 이상	(136)	14.0	0.7	2.9	10.3	86.0	21.3	41.9	22.8	1.55
지역	수도권	(501)	15.2	2.0	3.2	10.0	84.8	26.9	42.5	15.4	1.36
	충청권	(101)	19.8	0.0	4.0	15.8	80.2	22.8	40.6	16.8	1.31
	호남권	(97)	21.6	2.1	3.1	16.5	78.4	22.7	38.1	17.5	1.23
	대경권	(102)	19.6	0.0	1.0	18.6	80.4	33.3	31.4	15.7	1.23
	동남권	(160)	17.5	0.6	4.4	12.5	82.5	31.3	31.9	19.4	1.30
	강원/제주	(39)	20.5	2.6	5.1	12.8	79.5	28.2	38.5	12.8	1.13
직업	자영업	(88)	12.5	0.0	2.3	10.2	87.5	29.5	37.5	20.5	1.51
	블루칼라	(128)	20.3	3.1	3.1	14.1	79.7	27.3	36.7	15.6	1.18
	화이트칼라	(471)	15.9	0.8	2.1	13.0	84.1	26.5	42.3	15.3	1.37
	주부	(171)	15.8	0.6	3.5	11.7	84.2	26.9	36.8	20.5	1.42
	학생	(86)	26.7	4.7	7.0	15.1	73.3	31.4	37.2	4.7	0.77
	무직/기타	(56)	19.6	1.8	8.9	8.9	80.4	28.6	26.8	25.0	1.25
학력	고졸 이하	(204)	21.1	2.0	2.9	16.2	78.9	24.0	36.8	18.1	1.24
	대졸	(700)	16.1	1.1	3.4	11.6	83.9	29.1	38.7	16.0	1.33
	대학원 이상	(96)	17.7	2.1	3.1	12.5	82.3	22.9	44.8	14.6	1.3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9.3	1.2	4.9	13.1	80.7	28.3	35.7	16.8	1.23
	101~ 300만원	(385)	17.9	1.3	2.6	14.0	82.1	30.1	36.4	15.6	1.26
	301-500만원	(238)	17.2	1.7	3.4	12.2	82.8	21.8	45.4	15.5	1.35

		사례수	(이민과 다르지 않다)	-3	-2	-1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1	2	3	평 균
	501만원 이상	(133)	12.0	1.5	2.3	8.3	88.0	28.6	40.6	18.8	1.49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4.3	0.0	0.0	14.3	85.7	22.9	34.3	28.6	1.63
	없음	(965)	17.4	1.5	3.4	12.5	82.6	27.7	39.1	15.9	1.30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4.3	0.7	3.0	10.6	85.7	24.8	40.6	20.3	1.48
	없음	(463)	20.7	2.2	3.7	14.9	79.3	30.7	36.9	11.7	1.11

15.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 난민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75.2%(매우 그렇다 25.4% + 그런 편이다 49.8%)이 ‘동의하지 않음’(5.0% = 전혀 그렇지 않다 0.7% +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19.8%)
- 5점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남.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 인정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성별로 여성(82.1%), 연령별로 60대 이상(80.9%)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84.2%), 월평균 소득별로 100만원 이하 (81.1%)에서 높게 나타남.

<표1-25>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000)	5.0	0.7	4.3	19.8	75.2	49.8	25.4	3.95
성별	남성 (509)	6.5	1.2	5.3	25.0	68.6	47.0	21.6	3.83
	여성 (491)	3.5	0.2	3.3	14.5	82.1	52.7	29.3	4.08
연령	20대 이하 (194)	3.1	0.0	3.1	23.2	73.7	49.0	24.7	3.95
	30대 (205)	4.9	1.0	3.9	18.0	77.1	48.3	28.8	4.00
	40대 (240)	5.8	0.8	5.0	18.8	75.4	53.8	21.7	3.90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50대	(225)	6.2	0.4	5.8	22.7	71.1	47.6	23.6	3.88
	60대 이상	(136)	4.4	1.5	2.9	14.7	80.9	50.0	30.9	4.06
지역	수도권	(501)	6.2	1.0	5.2	18.0	75.8	51.3	24.6	3.93
	충청권	(101)	3.0	0.0	3.0	21.8	75.2	53.5	21.8	3.94
	호남권	(97)	6.2	1.0	5.2	21.6	72.2	43.3	28.9	3.94
	대경권	(102)	2.0	0.0	2.0	27.5	70.6	49.0	21.6	3.90
	동남권	(160)	4.4	0.6	3.8	18.1	77.5	47.5	30.0	4.03
	강원/제주	(39)	2.6	0.0	2.6	20.5	76.9	48.7	28.2	4.03
직업	자영업	(88)	6.8	1.1	5.7	13.6	79.5	50.0	29.5	4.01
	블루칼라	(128)	3.9	0.8	3.1	21.9	74.2	47.7	26.6	3.96
	화이트칼라	(471)	6.4	0.4	5.9	21.9	71.8	49.3	22.5	3.87
	주부	(171)	2.3	0.6	1.8	13.5	84.2	54.4	29.8	4.11
	학생	(86)	1.2	0.0	1.2	22.1	76.7	47.7	29.1	4.05
	무직/기타	(56)	7.1	3.6	3.6	23.2	69.6	48.2	21.4	3.80
학력	고졸 이하	(204)	3.9	0.5	3.4	20.1	76.0	50.0	26.0	3.98
	대졸	(700)	4.4	0.7	3.7	19.4	76.1	50.6	25.6	3.97
	대학원 이상	(96)	11.5	1.0	10.4	21.9	66.7	43.8	22.9	3.7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0	0.4	1.6	16.8	81.1	54.9	26.2	4.05
	101~ 300만원	(385)	5.7	0.8	4.9	21.8	72.5	45.7	26.8	3.93
	301- 500만원	(238)	5.5	1.3	4.2	21.0	73.5	50.4	23.1	3.90
	501만원 이상	(133)	7.5	0.0	7.5	17.3	75.2	51.1	24.1	3.92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5.7	0.0	5.7	22.9	71.4	40.0	31.4	3.97
	없음	(965)	5.0	0.7	4.2	19.7	75.3	50.2	25.2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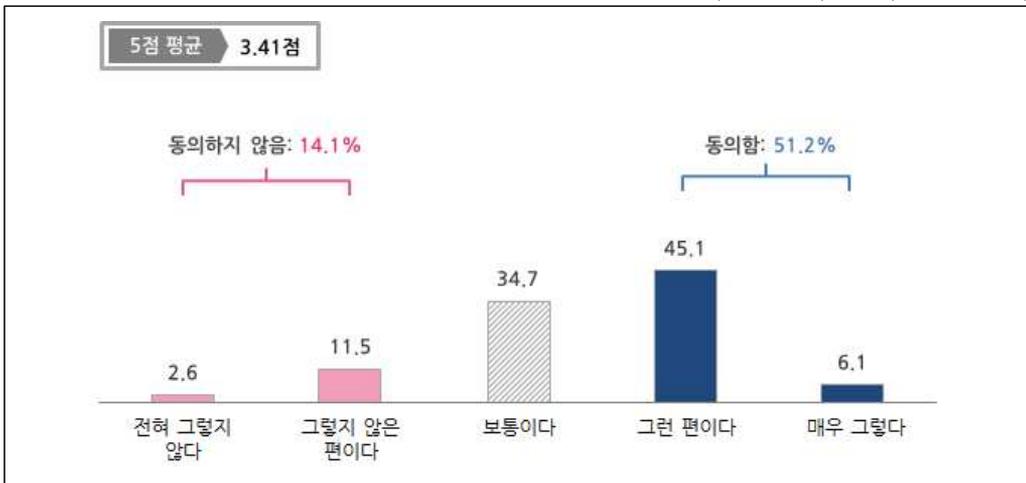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6.5	0.9	5.6	19.7	73.7	47.5	26.3	3.93
	없음	(463)	3.2	0.4	2.8	19.9	76.9	52.5	24.4	3.98

16. 한국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난민 인정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국이 수용가능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51.2%(매우 그렇다 6.1% + 그런 편이다 45.1%)이 ‘동의하지 않음’(14.1% = 전혀 그렇지 않다 2.6%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5%)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34.7%)
- 5점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남.

한국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 인정 요건이 충족한다면 한국이 수용가능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은 성별로 남성(55.2%), 연령별로 50대(60.0%)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63.6%),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3.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5.7%),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5.9%)에서 높게 나타남.

<표1-26> 한국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000)	14.1	2.6	11.5	34.7	51.2	45.1	6.1	3.41
성별	남성	(509)	13.0	2.9	10.0	31.8	55.2	46.4	8.8	3.48
	여성	(491)	15.3	2.2	13.0	37.7	47.0	43.8	3.3	3.33
연령	20대 이하	(194)	19.6	4.1	15.5	37.6	42.8	37.6	5.2	3.24
	30대	(205)	16.6	3.9	12.7	39.5	43.9	40.0	3.9	3.27
	40대	(240)	13.8	2.1	11.7	32.9	53.3	49.2	4.2	3.42
	50대	(225)	9.8	1.3	8.4	30.2	60.0	52.0	8.0	3.57
	60대 이상	(136)	10.3	1.5	8.8	33.8	55.9	44.9	11.0	3.55
지역	수도권	(501)	12.8	2.0	10.8	33.7	53.5	46.9	6.6	3.45
	충청권	(101)	10.9	3.0	7.9	35.6	53.5	50.5	3.0	3.43
	호남권	(97)	14.4	3.1	11.3	30.9	54.6	48.5	6.2	3.43
	대경권	(102)	15.7	3.9	11.8	39.2	45.1	38.2	6.9	3.32
	동남권	(160)	20.0	3.1	16.9	33.8	46.3	39.4	6.9	3.30
	강원/제주	(39)	10.3	2.6	7.7	46.2	43.6	41.0	2.6	3.33
직업	자영업	(88)	6.8	0.0	6.8	29.5	63.6	52.3	11.4	3.68
	블루칼라	(128)	18.0	6.3	11.7	35.9	46.1	41.4	4.7	3.27
	화이트칼라	(471)	12.7	1.9	10.8	34.2	53.1	47.3	5.7	3.44
	주부	(171)	14.6	1.8	12.9	39.8	45.6	42.7	2.9	3.32
	학생	(86)	17.4	4.7	12.8	33.7	48.8	40.7	8.1	3.35
	무직/기타	(56)	21.4	3.6	17.9	30.4	48.2	37.5	10.7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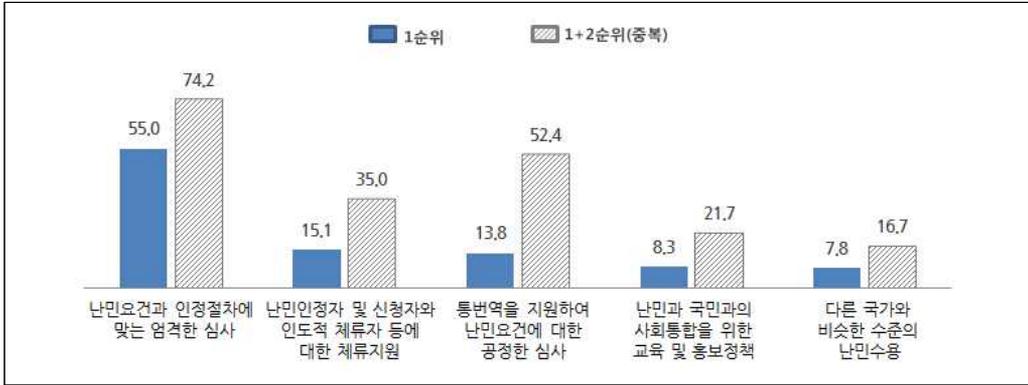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학력	고졸 이하	(204)	14.7	2.9	11.8	38.2	47.1	41.7	5.4	3.35
	대졸	(700)	14.3	2.3	12.0	35.0	50.7	44.6	6.1	3.40
	대학원 이상	(96)	11.5	4.2	7.3	25.0	63.5	56.3	7.3	3.55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5.6	3.3	12.3	37.3	47.1	43.0	4.1	3.32
	101- 300만원	(385)	15.1	3.4	11.7	36.1	48.8	44.4	4.4	3.35
	301- 500만원	(238)	12.6	0.8	11.8	31.9	55.5	46.2	9.2	3.51
	501만원 이상	(133)	11.3	2.3	9.0	30.8	57.9	48.9	9.0	3.53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7.1	0.0	17.1	17.1	65.7	54.3	11.4	3.60
	없음	(965)	14.0	2.7	11.3	35.3	50.7	44.8	5.9	3.40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4.5	2.8	11.7	29.6	55.9	48.2	7.6	3.46
	없음	(463)	13.6	2.4	11.2	40.6	45.8	41.5	4.3	3.34

17.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시 우선순위에 대해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가 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 지원’(15.1%),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는 성별로 여성(57.4%), 지역별로 호남권(64.9%), 강원/제주(64.1%)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4.9%), 월평균 소득별로 100만원 이하(61.9%)에서 높게 나타남.

<표1-27>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순위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전 체		(1,000)	55.0	15.1	13.8	8.3	7.8
성별	남성	(509)	52.7	16.7	12.8	8.4	9.4
	여성	(491)	57.4	13.4	14.9	8.1	6.1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 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 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연령	20대 이하	(194)	56.2	10.3	16.5	11.9	5.2
	30대	(205)	53.2	13.2	16.6	5.9	11.2
	40대	(240)	53.8	15.0	15.0	9.2	7.1
	50대	(225)	55.1	21.8	8.4	7.6	7.1
	60대 이상	(136)	58.1	14.0	12.5	6.6	8.8
지역	수도권	(501)	53.3	16.6	14.6	7.8	7.8
	충청권	(101)	50.5	14.9	17.8	12.9	4.0
	호남권	(97)	64.9	12.4	11.3	7.2	4.1
	대경권	(102)	52.9	16.7	7.8	7.8	14.7
	동남권	(160)	56.3	13.8	12.5	8.8	8.8
	강원/제주	(39)	64.1	5.1	20.5	5.1	5.1
직업	자영업	(88)	63.6	11.4	8.0	5.7	11.4
	블루칼라	(128)	54.7	14.1	12.5	9.4	9.4
	화이트칼라	(471)	49.0	18.3	15.5	9.1	8.1
	주부	(171)	64.9	13.5	11.1	5.8	4.7
	학생	(86)	65.1	7.0	16.3	5.8	5.8
	무직/기타	(56)	46.4	14.3	16.1	14.3	8.9
학력	고졸 이하	(204)	53.4	12.7	15.7	6.9	11.3
	대졸	(700)	56.1	15.3	13.0	8.3	7.3
	대학원 이상	(96)	50.0	18.8	15.6	11.5	4.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61.9	11.9	14.8	6.1	5.3
	101~300만원	(385)	51.2	14.3	15.6	9.9	9.1
	301-500만원	(238)	55.5	15.5	12.6	8.0	8.4
	501만원 이상	(133)	52.6	22.6	9.0	8.3	7.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42.9	8.6	20.0	20.0	8.6
	없음	(965)	55.4	15.3	13.6	7.9	7.8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53.3	16.9	14.0	8.0	7.8
	없음	(463)	57.0	13.0	13.6	8.6	7.8

-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1+2순위 응답으로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는 성별로 여성(76.0%), 지역별로 강원/제주(84.6%), 호남권(79.4%)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자영업(80.7%), 학생(79.1%)에서 높게 나타남.

<표1-28>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2순위 (중복응답)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전 체		(1,000)	74.2	52.4	35.0	21.7	16.7
성별	남성	(509)	72.5	48.7	37.7	21.8	19.3
	여성	(491)	76.0	56.2	32.2	21.6	14.1
연령	20대 이하	(194)	75.8	63.9	27.8	20.6	11.9
	30대	(205)	73.7	54.6	31.7	21.0	19.0
	40대	(240)	72.9	48.8	34.2	27.5	16.7
	50대	(225)	73.8	48.4	41.8	19.1	16.9
	60대 이상	(136)	75.7	45.6	40.4	18.4	19.9

		사례수	난민 요건과 인정절차 에 맞는 엄격한 심사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 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 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지역	수도권	(501)	73.1	54.3	35.3	21.2	16.2
	충청권	(101)	71.3	55.4	37.6	22.8	12.9
	호남권	(97)	79.4	43.3	34.0	24.7	18.6
	대경권	(102)	73.5	44.1	40.2	19.6	22.5
	동남권	(160)	74.4	53.1	33.8	23.8	15.0
	강원/제주	(39)	84.6	61.5	17.9	15.4	20.5
직업	자영업	(88)	80.7	38.6	37.5	23.9	19.3
	블루칼라	(128)	76.6	52.3	33.6	19.5	18.0
	화이트칼라	(471)	70.7	51.8	36.3	24.0	17.2
	주부	(171)	77.8	53.2	34.5	18.1	16.4
	학생	(86)	79.1	69.8	24.4	15.1	11.6
	무직/기타	(56)	69.6	50.0	41.1	25.0	14.3
학력	고졸 이하	(204)	74.0	50.0	31.4	22.1	22.5
	대졸	(700)	75.3	53.4	34.7	21.4	15.1
	대학원 이상	(96)	66.7	50.0	44.8	22.9	15.6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75.8	61.9	29.5	18.9	13.9
	101~300만원	(385)	73.8	51.9	34.0	22.6	17.7
	301~500만원	(238)	75.2	49.2	36.6	23.1	16.0
	501만원 이상	(133)	70.7	42.1	45.1	21.8	20.3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60.0	68.6	34.3	25.7	11.4
	없음	(965)	74.7	51.8	35.0	21.6	16.9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71.3	53.1	36.9	21.6	17.1
	없음	(463)	77.5	51.6	32.8	21.8	16.2

-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1+2+3순위 응답으로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는 성별로 여성이 86.6%, 남성이 84.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30대 (88.8%), 지역별로 강원/제주(92.3%)에서 높게 나타남.

<표1-29>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2+3순위 (중복응답)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전 체		(1,000)	85.5	72.8	61.9	46.0	33.8
성별	남성	(509)	84.5	70.1	63.1	46.6	35.8
	여성	(491)	86.6	75.6	60.7	45.4	31.8
연령	20대 이하	(194)	84.0	80.9	57.7	44.8	32.5
	30대	(205)	88.8	73.2	57.1	45.9	35.1
	40대	(240)	84.6	72.5	62.1	52.1	28.8
	50대	(225)	85.8	68.4	67.6	43.1	35.1
	60대 이상	(136)	83.8	68.4	65.4	41.9	40.4
지역	수도권	(501)	84.0	74.1	62.5	46.1	33.3
	충청권	(101)	86.1	76.2	63.4	46.5	27.7
	호남권	(97)	89.7	63.9	61.9	47.4	37.1
	대경권	(102)	83.3	68.6	62.7	45.1	40.2
	동남권	(160)	86.9	71.3	61.9	48.1	31.9
	강원/제주	(39)	92.3	87.2	48.7	33.3	38.5
직업	자영업	(88)	87.5	63.6	64.8	47.7	36.4
	블루칼라	(128)	88.3	71.9	55.5	50.8	33.6
	화이트칼라	(471)	84.1	73.2	63.7	45.6	33.3
	주부	(171)	87.1	75.4	58.5	44.4	34.5
	학생	(86)	83.7	81.4	59.3	45.3	30.2
	무직/기타	(56)	85.7	64.3	71.4	41.1	37.5

		사례수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학력	고졸 이하	(204)	83.8	71.6	60.3	45.1	39.2
	대졸	(700)	86.9	73.1	61.7	46.3	32.0
	대학원 이상	(96)	79.2	72.9	66.7	45.8	35.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86.9	78.3	58.2	44.3	32.4
	101~300만원	(385)	84.4	74.0	59.2	47.5	34.8
	301~500만원	(238)	87.4	67.6	65.1	46.6	33.2
	501만원 이상	(133)	82.7	68.4	70.7	43.6	34.6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74.3	82.9	45.7	54.3	42.9
	없음	(965)	85.9	72.4	62.5	45.7	33.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86.8	74.3	59.4	45.8	33.7
	없음	(463)	86.8	74.3	59.4	45.8	33.7

18.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 및 그 이유

-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에 대해 ‘선호하지 않음’이 41.8%(매우 그렇지 않다 8.0% + 다소 그렇지 않다 33.8%)이 ‘선호함’(14.9% = 매우 그렇다 1.4% + 다소 그렇다 13.5%)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43.3%)
- 5점 평균은 2.67점으로 나타남.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에 대해 ‘선호하지 않음’은 성별로 남성(43.8%), 연령별로 40대(45.4%), 50대(44.9%), 60대 이상(44.1%), 지역별로 호남권(50.5%)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4.6%),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7.9%), 월 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46.6%)에서 높게 나타남.

<표1-30>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선호하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선호함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000)	41.8	8.0	33.8	43.3	14.9	13.5	1.4	2.67
성별	남성	(509)	43.8	9.4	34.4	41.1	15.1	13.2	2.0	2.64
	여성	(491)	39.7	6.5	33.2	45.6	14.7	13.8	0.8	2.69
연령	20대 이하	(194)	38.1	5.7	32.5	42.8	19.1	15.5	3.6	2.79
	30대	(205)	36.1	9.3	26.8	48.8	15.1	13.2	2.0	2.72

		사례수	선호 하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선호함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40대	(240)	45.4	10.4	35.0	41.3	13.3	12.9	0.4	2.58
	50대	(225)	44.9	6.7	38.2	42.2	12.9	12.0	0.9	2.62
	60대 이상	(136)	44.1	7.4	36.8	41.2	14.7	14.7	0.0	2.63
지역	수도권	(501)	41.9	9.8	32.1	41.7	16.4	14.6	1.8	2.66
	충청권	(101)	36.6	3.0	33.7	49.5	13.9	12.9	1.0	2.75
	호남권	(97)	50.5	12.4	38.1	36.1	13.4	12.4	1.0	2.52
	대경권	(102)	41.2	4.9	36.3	44.1	14.7	13.7	1.0	2.70
	동남권	(160)	39.4	5.6	33.8	48.1	12.5	11.3	1.3	2.69
	강원/제주	(39)	43.6	5.1	38.5	43.6	12.8	12.8	0.0	2.64
직업	자영업	(88)	39.8	10.2	29.5	44.3	15.9	13.6	2.3	2.68
	블루칼라	(128)	35.9	7.0	28.9	50.0	14.1	14.1	0.0	2.71
	화이트칼라	(471)	44.6	8.3	36.3	41.4	14.0	12.7	1.3	2.62
	주부	(171)	40.4	7.0	33.3	45.0	14.6	14.6	0.0	2.67
	학생	(86)	38.4	5.8	32.6	40.7	20.9	16.3	4.7	2.81
	무직/기타	(56)	44.6	10.7	33.9	41.1	14.3	10.7	3.6	2.63
학력	고졸 이하	(204)	35.3	5.4	29.9	49.0	15.7	14.7	1.0	2.76
	대졸	(700)	42.9	8.4	34.4	42.9	14.3	12.7	1.6	2.65
	대학원 이상	(96)	47.9	10.4	37.5	34.4	17.7	16.7	1.0	2.6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7.7	5.7	32.0	43.0	19.3	17.2	2.0	2.78
	101~ 300만원	(385)	40.3	9.1	31.2	47.5	12.2	11.2	1.0	2.64
	301- 500만원	(238)	45.8	8.0	37.8	40.8	13.4	12.6	0.8	2.61
	501만원 이상	(133)	46.6	9.0	37.6	36.1	17.3	15.0	2.3	2.64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25.7	2.9	22.9	48.6	25.7	22.9	2.9	3.00
	없음	(965)	42.4	8.2	34.2	43.1	14.5	13.2	1.3	2.65

		사례수	선호 하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선호함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40.6	9.3	31.3	41.9	17.5	16.0	1.5	2.69
	없음	(463)	43.2	6.5	36.7	44.9	11.9	10.6	1.3	2.63

- 난민 정착국으로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성 관련 의견이 26.2%로 가장 높고, 생활 환경(23.5%), 인권 및 난민에 대한 인식(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31> 선호하는 이유

(Base: 전체(n=149), 단위: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전체						149	100.0
안전성		안전하다/치안이 잘되어 있다	34	22.8	경제적 환경		경제적 위상이 높은 나라이다/경제적으로 안정됐다	8	5.4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다 (종교적, 정치적 탄압 등으로부터)	3	2.0			발전된 나라이다	6	4.0
		사회가 안정되었다	1	0.7			돈을 벌기 쉽다	3	2.0
		사회적 갈등이 적다	1	0.7			정보통신기술(인터넷) 발달 로 인한 진보 수준이 높다	1	0.7
생활 환경		지원을 많이 해준다	19	12.8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본국보다 잘살 수 있다	1	0.7
		살기 좋은 나라이다	8	5.4			국제적인 이미지도 좋은 편이다/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다	6	4.0
		의료 혜택이 좋다	3	2.0			민주주의 국가이다	3	2.0
		난민이 생활하기 편리하다	2	1.3			국민성이 온정적이다	3	2.0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난민에 대한 처우가 좋다	1	0.7		한국은 열린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기회가 많다	2	1.3
	난민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1	0.7		한국이 인지도가 높아졌다	1	0.7
	교육 환경이 좋다	1	0.7		평화롭다	1	0.7
인권 및 난민에 대한 인식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많다	4	2.7	기타	입국이 쉽다/다른 나라에 비해 쉽다/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8	5.4
	「난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4	2.7		불법체류자에게도 관대하다	2	1.3
	인권 보장이 잘 되어 있다	3	2.0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한국을 선호한다	2	1.3
	언론에서 난민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한다	3	2.0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다	1	0.7
	난민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	2	1.3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1	0.7
	난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2	1.3	모름	31	20.8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2	1.3				
	차별이 없다/차별이 적다	1	0.7				

- 난민 정착국으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관련 의견이 33.7%로 가장 높고, 인권 및 난민에 대한 인식(15.8%), 난민 정착의 어려움(13.9%), 안전 문제(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32> 선호하지 않는 이유

(Base: 전체(n=418), 단위: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전 체						418	100.0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배타적인 국민성/국민 정서상 타국민에 대한 인식 및 배려가 부족하다	86	20.6	생활 환경	정부의 지원이 적다	13	3.1
	단일민족이라는 사고가 있다	15	3.6		난민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난민정책이 잘되어 있지 않다	12	2.9
	인지도가 낮은 나라다	12	2.9		난민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12	2.9
	자국민에게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6	1.4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5	1.2
	국토가 좁다	6	1.4		난민에 대한 복지가 좋지 않다	3	0.7
	보수적인 나라이다	5	1.2		난민에 대한 혜택이 적다	2	0.5
	국민 의식 수준이 성숙되지 않았다	5	1.2		난민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다	1	0.2
	선진국이 아니다	2	0.5	경제적 문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경제적으로 부담이다	12	2.9
	유교적 사상이 있다	2	0.5		(경쟁력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	10	2.4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2	0.5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	3	0.7
인권 및 난민에 대한 인식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난민에 대해 잘 모른다	32	7.7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2	0.5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31	7.4	기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1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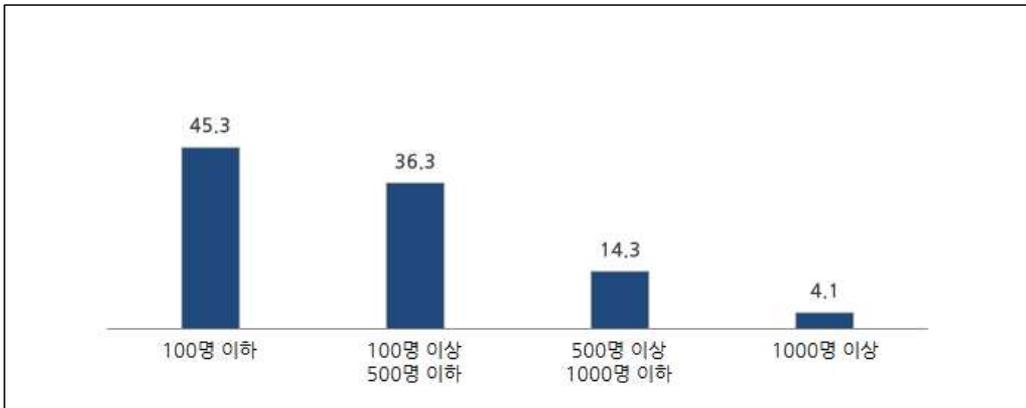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내 용	응답 자수 (명)	비율 (%)
	「난민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	1	0.2		주변 국에 난민 발생이 없다	12	2.9
	한국의 「난민법」은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다	1	0.2		난민이 많이 오지 않는다	10	2.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	1	0.2		주위에 난민이 없다/ 난민이 한국에 정착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8	1.9
난민 정착의 어려움	난민 인정이 어렵다/ 절차가 까다롭다	32	7.7		난민들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선호한다	7	1.7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12	2.9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4	1.0
	난민 정착 과정이 험난하다	6	1.4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	2	0.5
	난민에게 열려 있지 않다	2	0.5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1	0.2
	난민 수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1	0.2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많다	1	0.2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5	1.2		난민들에게는 기온이 낮다	1	0.2
안전 문제	분단국가 이미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50	12.0		아시아권이다	1	0.2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4	1.0		한국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1	0.2
	국내 정세가 좋지 않다	1	0.2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1	0.2
	무응답	53	12.7				

19.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 한 해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로 ‘100명 이하’라는 의견이 4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명~500명 이하’(36.3%), ‘500명~100명 이하’(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Base: 전체(n=1,000), 단위: %)



-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로 ‘100명 이하’는 성별로 여성(53.2%), 연령별로 60대 이상(51.5%), 지역별로 동남권(53.8%)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0.8%), 블루칼라(52.3%) 학력별로 고졸 이하(52.9%), 월평균 소득별로 100만원 이하(52.9%)에서 높게 나타남.

<표1-33>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500명 이하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전 체		(1,000)	45.3	36.3	14.3	4.1
성별	남성	(509)	37.7	39.1	17.7	5.5
	여성	(491)	53.2	33.4	10.8	2.6
연령	20대 이하	(194)	38.1	42.3	17.0	2.6
	30대	(205)	47.3	38.0	9.8	4.9
	40대	(240)	42.5	35.8	17.5	4.2
	50대	(225)	48.9	31.6	15.6	4.0
	60대 이상	(136)	51.5	33.8	9.6	5.1
지역	수도권	(501)	42.1	38.9	13.8	5.2
	충청권	(101)	46.5	31.7	19.8	2.0
	호남권	(97)	50.5	35.1	13.4	1.0
	대경권	(102)	41.2	34.3	18.6	5.9
	동남권	(160)	53.8	30.0	12.5	3.8
	강원/제주	(39)	46.2	48.7	5.1	0.0
직업	자영업	(88)	31.8	43.2	23.9	1.1
	블루칼라	(128)	52.3	28.9	11.7	7.0
	화이트칼라	(471)	42.3	38.4	14.4	4.9
	주부	(171)	60.8	28.1	8.8	2.3
	학생	(86)	37.2	44.2	17.4	1.2
	무직/기타	(56)	41.1	37.5	16.1	5.4
학력	고졸 이하	(204)	52.9	35.3	8.8	2.9
	대졸	(700)	43.6	36.9	15.4	4.1
	대학원 이상	(96)	41.7	34.4	17.7	6.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2.9	32.4	12.3	2.5
	101~ 300만원	(385)	46.8	36.6	13.0	3.6
	301- 500만원	(238)	39.1	40.8	15.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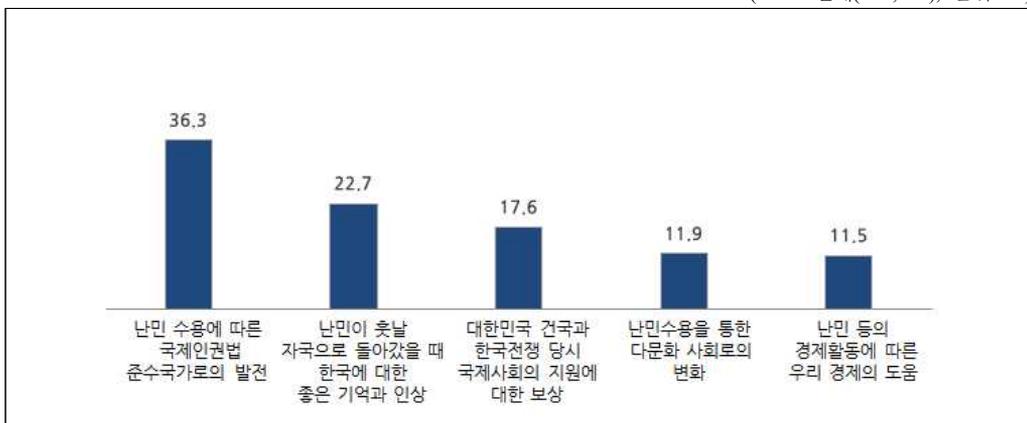
		사례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500명 이하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501만원 이상	(133)	38.3	34.6	19.5	7.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7.1	45.7	14.3	2.9
	없음	(965)	45.6	36.0	14.3	4.1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42.1	36.5	15.5	6.0
	없음	(463)	49.0	36.1	13.0	1.9

20. 난민의 긍정적 영향

-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이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22.7%),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보상’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의 긍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의 긍정적 영향으로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은 성별로 여성이 36.9%, 남성이 35.8%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40대(41.3%)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0.6%),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4.8%), 월 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46.6%)에서 높게 나타남.

<표1-34> 난민의 긍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	난민이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난민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우리 경제의 도움
전 체		(1,000)	36.3	22.7	17.6	11.9	11.5
성별	남성	(509)	35.8	25.3	15.5	13.4	10.0
	여성	(491)	36.9	20.0	19.8	10.4	13.0
연령	20대 이하	(194)	28.4	33.0	11.9	12.4	14.4
	30대	(205)	38.0	20.0	18.0	12.2	11.7
	40대	(240)	41.3	19.6	17.1	12.1	10.0
	50대	(225)	36.9	23.6	19.1	12.4	8.0
	60대 이상	(136)	35.3	16.2	23.5	9.6	15.4
지역	수도권	(501)	37.7	21.0	17.6	13.4	10.4
	충청권	(101)	36.6	27.7	16.8	11.9	6.9
	호남권	(97)	38.1	18.6	23.7	9.3	10.3
	대경권	(102)	31.4	24.5	19.6	8.8	15.7
	동남권	(160)	35.0	23.8	14.4	10.6	16.3
	강원/제주	(39)	30.8	33.3	12.8	12.8	10.3
직업	자영업	(88)	31.8	28.4	18.2	14.8	6.8
	블루칼라	(128)	30.5	25.8	15.6	11.7	16.4
	화이트칼라	(471)	40.6	21.4	16.1	11.3	10.6
	주부	(171)	36.8	15.8	22.8	11.1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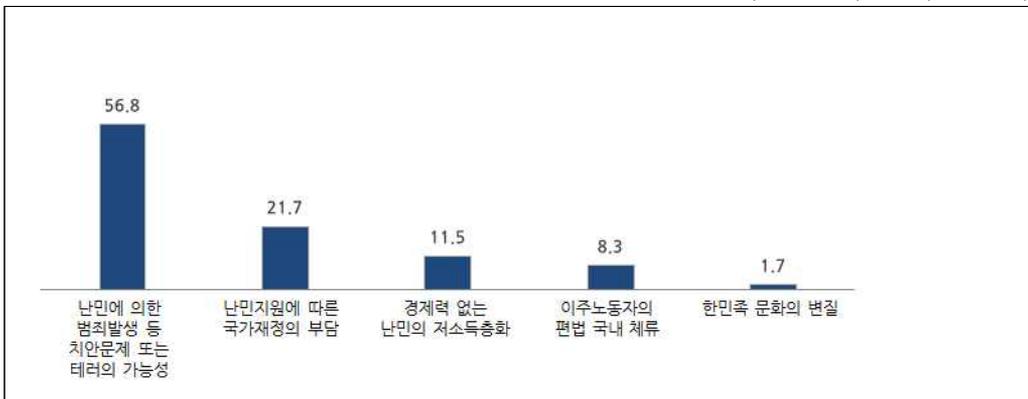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	난민이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난민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난민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우리 경제의 도움
	학생	(86)	27.9	33.7	16.3	10.5	11.6
	무직/기타	(56)	32.1	21.4	19.6	17.9	8.9
학력	고졸 이하	(204)	29.4	27.0	18.1	10.3	15.2
	대졸	(700)	37.1	22.4	16.9	12.9	10.7
	대학원 이상	(96)	44.8	15.6	21.9	8.3	9.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3.6	20.1	20.1	13.1	13.1
	101~300만원	(385)	35.3	22.6	16.9	12.2	13.0
	301-500만원	(238)	34.9	26.5	16.8	10.9	10.9
	501만원 이상	(133)	46.6	21.1	16.5	10.5	5.3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4.3	28.6	17.1	8.6	11.4
	없음	(965)	36.4	22.5	17.6	12.0	11.5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37.4	22.0	17.9	11.9	10.8
	없음	(463)	35.0	23.5	17.3	11.9	12.3

21. 난민의 부정적 영향

-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 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21.7%), ‘경제력 없는 난민의 저소득층화’(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의 부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의 부정적 영향으로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은 성별로 남성이 57.4%, 여성이 56.2%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30대(60.5%), 지역별로 충청권(61.4%), 동남권(60.6%)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블루칼라(62.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 (60.0%)에서 높게 나타남.

<표1-35> 난민의 부정적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	난민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경제력 없는 난민의 저소득층화	이주노동자 의 편법 국내 체류	한민족 문화의 변질
전 체		(1,000)	56.8	21.7	11.5	8.3	1.7
성별	남성	(509)	57.4	18.9	12.4	9.2	2.2
	여성	(491)	56.2	24.6	10.6	7.3	1.2
연령	20대 이하	(194)	53.6	25.3	9.3	9.3	2.6
	30대	(205)	60.5	21.5	10.2	7.3	0.5
	40대	(240)	59.6	18.8	12.5	7.9	1.3
	50대	(225)	52.0	22.2	12.4	10.7	2.7
	60대 이상	(136)	58.8	21.3	13.2	5.1	1.5
지역	수도권	(501)	55.3	21.0	13.4	8.8	1.6
	충청권	(101)	61.4	18.8	9.9	9.9	0.0
	호남권	(97)	56.7	18.6	10.3	9.3	5.2
	대경권	(102)	53.9	25.5	12.7	6.9	1.0
	동남권	(160)	60.6	23.1	9.4	5.6	1.3
	강원/제주	(39)	56.4	30.8	0.0	10.3	2.6
직업	자영업	(88)	58.0	20.5	11.4	8.0	2.3
	블루칼라	(128)	62.5	21.9	10.2	5.5	0.0
	화이트칼라	(471)	54.8	22.1	11.7	9.3	2.1
	주부	(171)	60.2	22.8	11.7	5.3	0.0
	학생	(86)	54.7	19.8	14.0	7.0	4.7
	무직/기타	(56)	51.8	19.6	8.9	17.9	1.8
학력	고졸 이하	(204)	59.8	22.5	10.3	6.9	0.5
	대졸	(700)	56.6	21.9	11.4	8.6	1.6
	대학원 이상	(96)	52.1	18.8	14.6	9.4	5.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5.3	23.8	11.5	8.2	1.2

		사례수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	난민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경제력 없는 난민의 저소득층화	이주노동자 의 편법 국내 체류	한민족 문화의 변질
	101~ 300만원	(385)	56.6	22.1	11.7	7.5	2.1
	301- 500만원	(238)	59.2	19.7	10.9	9.2	0.8
	501만원 이상	(133)	55.6	20.3	12.0	9.0	3.0
일상생활	있음	(35)	60.0	14.3	8.6	14.3	2.9
난민 접촉 경험	없음	(965)	56.7	22.0	11.6	8.1	1.7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55.9	20.9	12.8	8.8	1.7
	없음	(463)	57.9	22.7	9.9	7.8	1.7

22.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 여부

-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57.1%(매우 그렇다 13.4% + 그런 편이다 43.7%)이 ‘동의하지 않음’(16.1% = 전혀 그렇지 않다 3.7% +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4%)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23.8%)
- 5점 평균은 3.51점으로 나타남.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 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성별로 여성(62.5%), 연령별로 60대 이상(66.2%)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8.4%),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62.5%),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8.6%)에서 높게 나타남.

<표1-36>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 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000)	16.1	3.7	12.4	26.8	57.1	43.7	13.4	3.51
성별	남성	(509)	19.8	5.7	14.1	28.3	51.9	37.5	14.3	3.41
	여성	(491)	12.2	1.6	10.6	25.3	62.5	50.1	12.4	3.61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24.7	3.6	21.1	30.9	44.3	34.0	10.3	3.26
	30대	(205)	18.5	4.9	13.7	28.8	52.7	41.0	11.7	3.41
	40대	(240)	13.8	5.4	8.3	23.8	62.5	47.9	14.6	3.58
	50대	(225)	12.4	1.8	10.7	26.7	60.9	47.1	13.8	3.60
	60대 이상	(136)	10.3	2.2	8.1	23.5	66.2	48.5	17.6	3.71
지역	수도권	(501)	16.4	3.6	12.8	25.1	58.5	45.1	13.4	3.52
	충청권	(101)	10.9	2.0	8.9	28.7	60.4	48.5	11.9	3.59
	호남권	(97)	14.4	5.2	9.3	24.7	60.8	43.3	17.5	3.59
	대경권	(102)	18.6	5.9	12.7	28.4	52.9	38.2	14.7	3.43
	동남권	(160)	16.9	3.1	13.8	30.0	53.1	43.1	10.0	3.43
	강원/제주	(39)	20.5	2.6	17.9	30.8	48.7	30.8	17.9	3.44
직업	자영업	(88)	14.8	1.1	13.6	29.5	55.7	42.0	13.6	3.53
	블루칼라	(128)	17.2	3.9	13.3	34.4	48.4	37.5	10.9	3.38
	화이트칼라	(471)	17.2	4.9	12.3	25.5	57.3	44.2	13.2	3.48
	주부	(171)	7.6	1.2	6.4	24.0	68.4	53.2	15.2	3.75
	학생	(86)	29.1	3.5	25.6	23.3	47.7	34.9	12.8	3.28
	무직/기타	(56)	12.5	5.4	7.1	30.4	57.1	41.1	16.1	3.55
학력	고졸 이하	(204)	10.3	2.5	7.8	28.4	61.3	50.0	11.3	3.60
	대졸	(700)	17.4	4.0	13.4	27.4	55.1	41.1	14.0	3.48
	대학원 이상	(96)	18.8	4.2	14.6	18.8	62.5	49.0	13.5	3.5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3.1	2.5	10.7	25.8	61.1	48.0	13.1	3.59
	101~ 300만원	(385)	16.1	3.1	13.0	27.8	56.1	43.1	13.0	3.50
	301- 500만원	(238)	15.5	4.6	10.9	25.6	58.8	43.7	15.1	3.54
	501만원 이상	(133)	22.6	6.0	16.5	27.8	49.6	37.6	12.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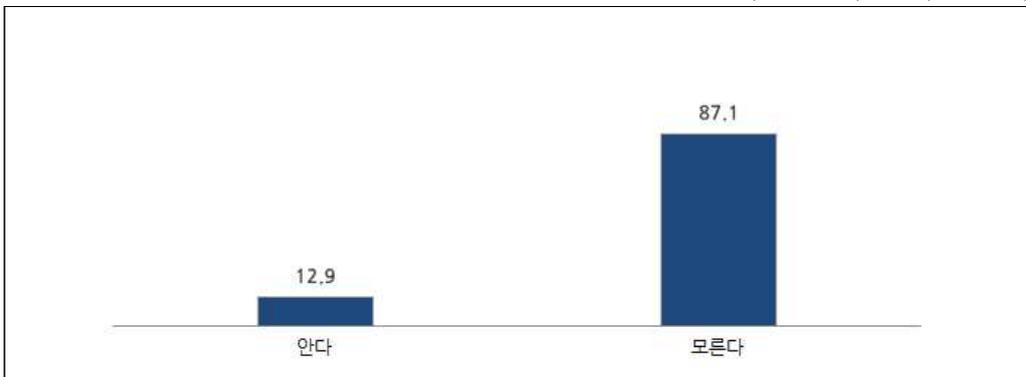
		사례수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11.4	0.0	11.4	20.0	68.6	54.3	14.3	3.71
	없음	(965)	16.3	3.8	12.4	27.0	56.7	43.3	13.4	3.50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6.9	4.1	12.8	26.4	56.6	41.2	15.5	3.51
	없음	(463)	15.1	3.2	11.9	27.2	57.7	46.7	11.0	3.50

23. 난민 보호 시설 인지여부

- 난민 보호 시설의 인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가 87.1%로 ‘안다’(12.9%)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 보호 시설 인지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 난민 보호시설 인지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성별로 여성(89.6%), 연령별로 20대(92.8%), 30대(91.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고졸 이하(91.2%),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없음(94.4%)에서 높게 나타남.

<표1-37> 난민 보호 시설 인지여부

(Base: 전체(n=1,000), 단위: %)

		사례수	안 다	모른다
전 체		(1,000)	12.9	87.1
성별	남성	(509)	15.3	84.7
	여성	(491)	10.4	89.6
연령	20대 이하	(194)	7.2	92.8
	30대	(205)	8.3	91.7
	40대	(240)	14.2	85.8
	50대	(225)	16.4	83.6
	60대 이상	(136)	19.9	80.1
지역	수도권	(501)	13.8	86.2
	충청권	(101)	12.9	87.1
	호남권	(97)	10.3	89.7
	대경권	(102)	16.7	83.3
	동남권	(160)	10.0	90.0
	강원/제주	(39)	10.3	89.7
직업	자영업	(88)	15.9	84.1
	블루칼라	(128)	14.1	85.9
	화이트칼라	(471)	12.5	87.5
	주부	(171)	13.5	86.5
	학생	(86)	9.3	90.7
	무직/기타	(56)	12.5	87.5
학력	고졸 이하	(204)	8.8	91.2
	대졸	(700)	13.0	87.0
	대학원 이상	(96)	20.8	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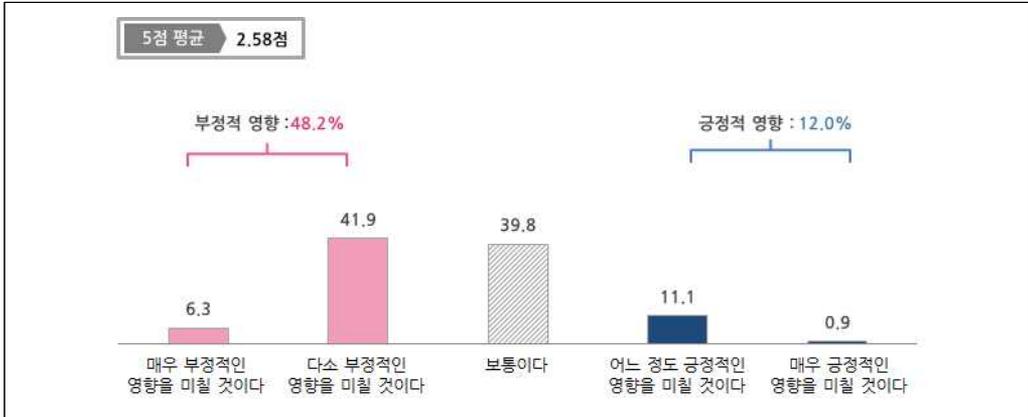
		사례수	안 다	모른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11.1	88.9
	101~300만원	(385)	8.6	91.4
	301~500만원	(238)	16.4	83.6
	501만원 이상	(133)	22.6	77.4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34.3	65.7
	없음	(965)	12.1	87.9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9.2	80.8
	없음	(463)	5.6	94.4

24.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48.2%(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3% +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9%)이 ‘긍정적 영향’(12.0%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0.9% +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1%)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39.8%)
- 5점 평균은 2.58점으로 나타남.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 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정적 영향’은 성별로 여성(51.7%), 연령별로 60대 이상(55.1%), 지역별로 호남권(62.9%)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주부(60.8%), 월평균 소득별로 100만원 이하(54.1%),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없음(53.1%)에서 높게 나타남.

<표1-38>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이다	긍정적 영향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평균
전체		(1,000)	48.2	6.3	41.9	39.8	12.0	11.1	0.9	2.58
성별	남성	(509)	44.8	7.3	37.5	40.1	15.1	13.6	1.6	2.65
	여성	(491)	51.7	5.3	46.4	39.5	8.8	8.6	0.2	2.52

		사례수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이다	긍정적 영향	어느 정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40.7	4.6	36.1	45.9	13.4	12.9	0.5	2.69
	30대	(205)	50.2	7.3	42.9	36.1	13.7	12.7	1.0	2.57
	40대	(240)	48.8	5.8	42.9	39.6	11.7	10.4	1.3	2.58
	50대	(225)	48.0	4.9	43.1	41.8	10.2	9.3	0.9	2.58
	60대 이상	(136)	55.1	10.3	44.9	33.8	11.0	10.3	0.7	2.46
지역	수도권	(501)	46.7	5.2	41.5	40.5	12.8	12.4	0.4	2.61
	충청권	(101)	51.5	5.0	46.5	40.6	7.9	7.9	0.0	2.51
	호남권	(97)	62.9	10.3	52.6	23.7	13.4	12.4	1.0	2.41
	대경권	(102)	38.2	2.9	35.3	50.0	11.8	8.8	2.9	2.74
	동남권	(160)	46.3	9.4	36.9	41.9	11.9	10.0	1.9	2.58
	강원/제주	(39)	56.4	10.3	46.2	33.3	10.3	10.3	0.0	2.44
직업	자영업	(88)	47.7	5.7	42.0	36.4	15.9	14.8	1.1	2.64
	블루칼라	(128)	40.6	8.6	32.0	50.8	8.6	7.8	0.8	2.60
	화이트칼라	(471)	45.2	5.5	39.7	39.7	15.1	14.0	1.1	2.65
	주부	(171)	60.8	7.0	53.8	33.9	5.3	5.3	0.0	2.37
	학생	(86)	44.2	4.7	39.5	43.0	12.8	11.6	1.2	2.65
	무직/기타	(56)	58.9	8.9	50.0	33.9	7.1	5.4	1.8	2.41
학력	고졸 이하	(204)	50.5	3.4	47.1	41.2	8.3	7.8	0.5	2.55
	대졸	(700)	47.9	6.6	41.3	39.7	12.4	11.4	1.0	2.59
	대학원 이상	(96)	45.8	10.4	35.4	37.5	16.7	15.6	1.0	2.6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54.1	5.7	48.4	37.3	8.6	7.8	0.8	2.50
	101~300만원	(385)	44.2	6.8	37.4	43.6	12.2	11.7	0.5	2.62
	301- 500만원	(238)	46.2	6.7	39.5	37.8	16.0	14.7	1.3	2.64
	501만원 이상	(133)	52.6	5.3	47.4	36.8	10.5	9.0	1.5	2.54

		사례수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이다	긍정적 영향	어느 정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42.9	2.9	40.0	42.9	14.3	14.3	0.0	2.69
	없음	(965)	48.4	6.4	42.0	39.7	11.9	11.0	0.9	2.58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43.9	6.0	38.0	41.3	14.7	13.6	1.1	2.66
	없음	(463)	53.1	6.7	46.4	38.0	8.9	8.2	0.6	2.50

25.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 85.1%(매우 그렇다 36.7% + 그런 편이다 48.4%)이 ‘불필요함’(2.9% = 전혀 그렇지 않다 0.8%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12.0%)
- 5점 평균은 4.18점으로 나타남.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은 성별로 여성(88.8%), 연령별로 50대(90.7%), 60대 이상(90.4%), 지역별로 강원/제주(87.2%)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91.0%)에서 높게 나타남.

<표1-39>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000)	2.9	0.8	2.1	12.0	85.1	48.4	36.7	4.18
성별	남성	(509)	3.9	1.4	2.6	14.5	81.5	48.7	32.8	4.09
	여성	(491)	1.8	0.2	1.6	9.4	88.8	48.1	40.7	4.27
연령	20대 이하	(194)	6.7	2.6	4.1	18.6	74.7	40.7	34.0	3.99
	30대	(205)	3.4	1.0	2.4	14.6	82.0	44.4	37.6	4.15

		사례수	불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40대	(240)	2.9	0.4	2.5	9.2	87.9	49.2	38.8	4.23
	50대	(225)	0.4	0.0	0.4	8.9	90.7	58.2	32.4	4.23
	60대 이상	(136)	0.7	0.0	0.7	8.8	90.4	47.8	42.6	4.32
지역	수도권	(501)	3.2	0.8	2.4	10.4	86.4	48.3	38.1	4.21
	충청권	(101)	1.0	1.0	0.0	10.9	88.1	50.5	37.6	4.24
	호남권	(97)	5.2	2.1	3.1	9.3	85.6	43.3	42.3	4.21
	대경권	(102)	1.0	0.0	1.0	16.7	82.4	54.9	27.5	4.09
	동남권	(160)	3.8	0.6	3.1	16.3	80.0	45.0	35.0	4.11
	강원/제주	(39)	0.0	0.0	0.0	12.8	87.2	53.8	33.3	4.21
직업	자영업	(88)	2.3	0.0	2.3	11.4	86.4	53.4	33.0	4.17
	블루칼라	(128)	3.9	1.6	2.3	15.6	80.5	46.9	33.6	4.09
	화이트칼라	(471)	2.8	0.6	2.1	11.0	86.2	48.2	38.0	4.21
	주부	(171)	1.2	0.0	1.2	9.9	88.9	55.6	33.3	4.21
	학생	(86)	5.8	2.3	3.5	17.4	76.7	39.5	37.2	4.06
	무직/기타	(56)	3.6	1.8	1.8	10.7	85.7	37.5	48.2	4.29
학력	고졸 이하	(204)	2.9	1.0	2.0	11.8	85.3	51.5	33.8	4.15
	대졸	(700)	2.9	0.4	2.4	12.3	84.9	47.9	37.0	4.19
	대학원 이상	(96)	3.1	3.1	0.0	10.4	86.5	45.8	40.6	4.2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3.7	1.2	2.5	11.1	85.2	49.2	36.1	4.16
	101~300만원	(385)	2.9	1.0	1.8	15.1	82.1	48.1	34.0	4.12
	301-500만원	(238)	2.9	0.0	2.9	10.5	86.6	49.2	37.4	4.21
	501만원 이상	(133)	1.5	0.8	0.8	7.5	91.0	46.6	44.4	4.33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2.9	0.0	2.9	11.4	85.7	42.9	42.9	4.26
	없음	(965)	2.9	0.8	2.1	12.0	85.1	48.6	36.5	4.18

		사례수	불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3.0	0.7	2.2	11.4	85.7	44.3	41.3	4.23
	없음	(463)	2.8	0.9	1.9	12.7	84.4	53.1	31.3	4.12

26.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

-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 62.6%(매우 그렇다 12.5% + 그런 편이다 50.1%)이 ‘불필요함’(7.7% = 전혀 그렇지 않다 2.6% +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29.7%)
- 5점 평균은 3.65점으로 나타남.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은 성별로 남성이 62.7%, 여성이 62.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68.9%), 지역별로 충청권(67.3%), 수도권(66.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69.9%),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74.3%), 방송에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66.3%)에서 높게 나타남.

<표1-40>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불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000)	7.7	2.6	5.1	29.7	62.6	50.1	12.5	3.65
성별	남성	(509)	7.1	2.9	4.1	30.3	62.7	49.5	13.2	3.66
	여성	(491)	8.4	2.2	6.1	29.1	62.5	50.7	11.8	3.64
연령	20대 이하	(194)	11.3	2.6	8.8	37.1	51.5	41.8	9.8	3.47
	30대	(205)	6.8	2.4	4.4	30.7	62.4	51.2	11.2	3.64
	40대	(240)	7.1	2.5	4.6	28.8	64.2	50.4	13.8	3.68
	50대	(225)	6.7	2.7	4.0	24.4	68.9	57.3	11.6	3.71
	60대 이상	(136)	6.6	2.9	3.7	27.9	65.4	47.8	17.6	3.74
지역	수도권	(501)	7.0	1.8	5.2	26.3	66.7	52.5	14.2	3.72
	충청권	(101)	3.0	1.0	2.0	29.7	67.3	58.4	8.9	3.72
	호남권	(97)	8.2	2.1	6.2	39.2	52.6	42.3	10.3	3.53
	대경권	(102)	2.9	1.0	2.0	38.2	58.8	52.0	6.9	3.62
	동남권	(160)	13.8	7.5	6.3	27.5	58.8	43.8	15.0	3.53
	강원/제주	(39)	15.4	2.6	12.8	35.9	48.7	38.5	10.3	3.41
직업	자영업	(88)	4.5	2.3	2.3	25.0	70.5	61.4	9.1	3.73
	블루칼라	(128)	9.4	6.3	3.1	34.4	56.3	44.5	11.7	3.52
	화이트칼라	(471)	7.2	1.9	5.3	27.0	65.8	51.8	14.0	3.71
	주부	(171)	8.2	1.2	7.0	31.6	60.2	50.3	9.9	3.61
	학생	(86)	9.3	2.3	7.0	36.0	54.7	44.2	10.5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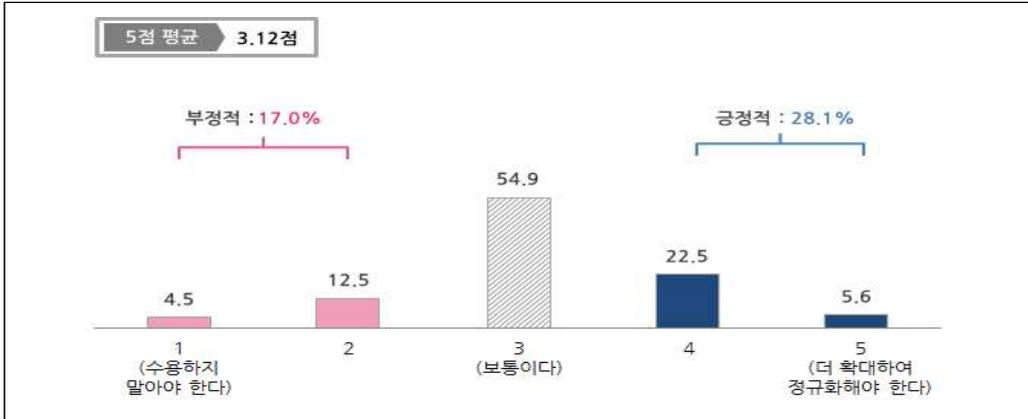
		사례수	불필요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무직/기타	(56)	8.9	5.4	3.6	33.9	57.1	39.3	17.9	3.61
학력	고졸 이하	(204)	7.4	2.5	4.9	35.8	56.9	46.6	10.3	3.57
	대졸	(700)	7.6	2.1	5.4	28.9	63.6	51.3	12.3	3.66
	대학원 이상	(96)	9.4	6.3	3.1	22.9	67.7	49.0	18.8	3.7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7.8	2.0	5.7	34.8	57.4	47.1	10.2	3.58
	101~300만원	(385)	9.1	3.4	5.7	30.1	60.8	50.6	10.1	3.58
	301-500만원	(238)	5.0	1.7	3.4	28.2	66.8	51.3	15.5	3.76
	501만원 이상	(133)	8.3	3.0	5.3	21.8	69.9	51.9	18.0	3.77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5.7	0.0	5.7	20.0	74.3	54.3	20.0	3.89
	없음	(965)	7.8	2.7	5.1	30.1	62.2	49.9	12.2	3.64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6.9	2.6	4.3	26.8	66.3	49.9	16.4	3.73
	없음	(463)	8.6	2.6	6.0	33.0	58.3	50.3	8.0	3.55

27.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 ‘긍정적’이 28.1%(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5.6% + 그런 편이다 22.5%)이 ‘부정적’(17.0% =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4.5% + 그렇지 않은 편 12.5%) 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54.9%)
- 5점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남.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 성별로 남성(30.8%), 지역별로 충청권(31.7%)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3.5%),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0.6%), 월평균 소득별로 501만원 이상(33.8%),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40.6%)에서 높게 나타남.

<표1-41>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부정적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보통이다	긍정적	4	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5점 평균	
전체	(1,000)	17.0	4.5	12.5	54.9	28.1	22.5	5.6	3.12	
성별	남성	(509)	16.7	4.3	12.4	52.5	30.8	23.6	7.3	3.17
	여성	(491)	17.3	4.7	12.6	57.4	25.3	21.4	3.9	3.07

		사례수	부정적	수용 하지 말아야 한다	2	보통 이다	긍정적	4	더 확대 하여 정규화 해야 한다	5점 평균
연령	20대 이하	(194)	19.1	3.6	15.5	55.2	25.8	22.7	3.1	3.06
	30대	(205)	16.1	4.4	11.7	54.6	29.3	22.9	6.3	3.15
	40대	(240)	14.6	6.7	7.9	57.5	27.9	23.3	4.6	3.11
	50대	(225)	17.3	4.0	13.3	52.4	30.2	22.2	8.0	3.17
	60대 이상	(136)	19.1	2.9	16.2	54.4	26.5	20.6	5.9	3.10
지역	수도권	(501)	15.8	4.0	11.8	54.3	29.9	24.4	5.6	3.16
	충청권	(101)	13.9	3.0	10.9	54.5	31.7	26.7	5.0	3.20
	호남권	(97)	16.5	6.2	10.3	55.7	27.8	22.7	5.2	3.10
	대경권	(102)	14.7	3.9	10.8	60.8	24.5	16.7	7.8	3.14
	동남권	(160)	20.6	5.0	15.6	54.4	25.0	19.4	5.6	3.05
	강원/제주	(39)	33.3	10.3	23.1	48.7	17.9	15.4	2.6	2.77
직업	자영업	(88)	14.8	0.0	14.8	61.4	23.9	11.4	12.5	3.22
	블루칼라	(128)	19.5	5.5	14.1	58.6	21.9	17.2	4.7	3.02
	화이트칼라	(471)	14.0	4.2	9.8	52.4	33.5	28.0	5.5	3.21
	주부	(171)	21.6	5.8	15.8	60.2	18.1	14.0	4.1	2.95
	학생	(86)	17.4	5.8	11.6	52.3	30.2	29.1	1.2	3.08
	무직/기타	(56)	25.0	5.4	19.6	44.6	30.4	21.4	8.9	3.09
학력	고졸 이하	(204)	19.6	5.4	14.2	60.8	19.6	14.7	4.9	3.00
	대졸	(700)	16.6	3.9	12.7	54.6	28.9	22.9	6.0	3.14
	대학원 이상	(96)	14.6	7.3	7.3	44.8	40.6	36.5	4.2	3.23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0.1	6.1	13.9	58.2	21.7	18.9	2.9	2.98
	101~ 300만원	(385)	16.4	3.4	13.0	55.6	28.1	21.0	7.0	3.15
	301- 500만원	(238)	15.5	3.8	11.8	52.9	31.5	24.8	6.7	3.19
	501만원 이상	(133)	15.8	6.0	9.8	50.4	33.8	29.3	4.5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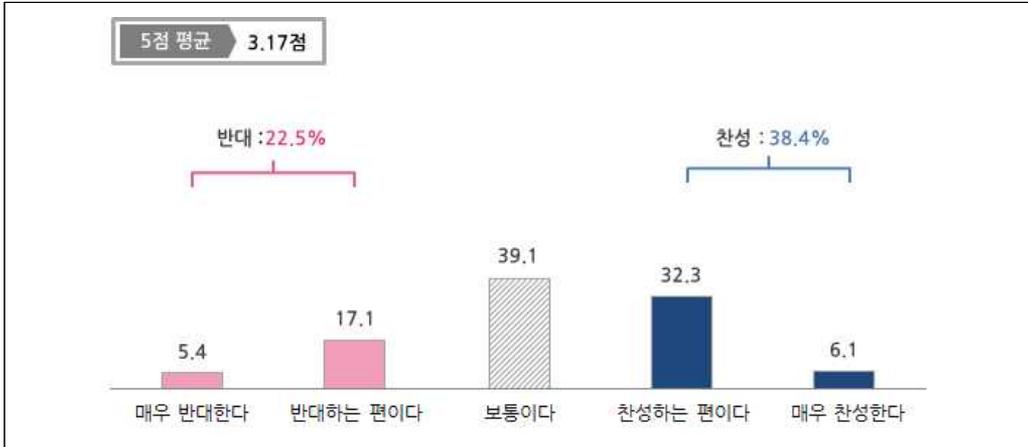
		사례수	부정적	수용 하지 말아야 한다	2	보통 이다	긍정적	4	더 확대 하여 정규화 해야 한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있음	(35)	8.6	2.9	5.7	51.4	40.0	40.0	0.0	3.29
	없음	(965)	17.3	4.6	12.7	55.0	27.7	21.9	5.8	3.12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17.7	4.5	13.2	52.0	30.4	22.9	7.4	3.16
	없음	(463)	16.2	4.5	11.7	58.3	25.5	22.0	3.5	3.08

28.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38.4%(매우 찬성한다 6.1% + 찬성하는 편이다 32.3%)이 ‘반대’(22.5% = 매우 반대한다 5.4% + 반대하는 편이다 17.1%)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39.1%)
- 5점 평균은 3.17점으로 나타남.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은 성별로 남성(41.7%), 연령별로 60대 이상(41.2%), 지역별로 강원/제주(41.0%)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2.7%),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43.8%), 일상생활 난민 접촉 경험별로 있음(57.1%)에서 높게 나타남.

<표1-42>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1,000), 단위: %, 점)

		사례수	반 대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찬성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5점 평균
전 체		(1,000)	22.5	5.4	17.1	39.1	38.4	32.3	6.1	3.17
성별	남성	(509)	22.2	6.1	16.1	36.1	41.7	34.6	7.1	3.20
	여성	(491)	22.8	4.7	18.1	42.2	35.0	29.9	5.1	3.13
연령	20대 이하	(194)	26.3	6.7	19.6	38.1	35.6	30.9	4.6	3.07
	30대	(205)	25.9	5.9	20.0	36.6	37.6	31.2	6.3	3.12

		사례수	반 대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찬성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5점 평균
	40대	(240)	19.6	6.3	13.3	42.9	37.5	31.3	6.3	3.18
	50대	(225)	17.3	3.1	14.2	41.8	40.9	35.6	5.3	3.26
	60대 이상	(136)	25.7	5.1	20.6	33.1	41.2	32.4	8.8	3.19
지역	수도권	(501)	22.6	4.4	18.2	38.5	38.9	33.3	5.6	3.18
	충청권	(101)	20.8	4.0	16.8	40.6	38.6	30.7	7.9	3.22
	호남권	(97)	21.6	7.2	14.4	39.2	39.2	33.0	6.2	3.16
	대경권	(102)	15.7	4.9	10.8	51.0	33.3	27.5	5.9	3.19
	동남권	(160)	28.1	8.1	20.0	33.1	38.8	32.5	6.3	3.09
	강원/제주	(39)	23.1	7.7	15.4	35.9	41.0	33.3	7.7	3.18
직업	자영업	(88)	23.9	5.7	18.2	40.9	35.2	27.3	8.0	3.14
	블루칼라	(128)	25.0	7.8	17.2	44.5	30.5	26.6	3.9	3.02
	화이트칼라	(471)	19.5	4.5	15.1	37.8	42.7	36.7	5.9	3.25
	주부	(171)	21.1	4.1	17.0	42.7	36.3	29.8	6.4	3.18
	학생	(86)	30.2	8.1	22.1	34.9	34.9	29.1	5.8	3.02
	무직/기타	(56)	32.1	7.1	25.0	30.4	37.5	28.6	8.9	3.07
학력	고졸 이하	(204)	24.5	5.9	18.6	40.7	34.8	29.4	5.4	3.10
	대졸	(700)	22.4	5.3	17.1	38.9	38.7	32.9	5.9	3.17
	대학원 이상	(96)	18.8	5.2	13.5	37.5	43.8	34.4	9.4	3.29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244)	24.6	6.6	18.0	40.6	34.8	28.7	6.1	3.10
	101~ 300만원	(385)	18.7	4.7	14.0	43.4	37.9	32.5	5.5	3.20
	301- 500만원	(238)	27.3	4.2	23.1	31.9	40.8	33.2	7.6	3.17
	501만원 이상	(133)	21.1	7.5	13.5	36.8	42.1	36.8	5.3	3.19

		사례수	반 대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찬성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5점 평균
일상 생활 난민 접촉 경험	있음	(35)	20.0	8.6	11.4	22.9	57.1	45.7	11.4	3.40
	없음	(965)	22.6	5.3	17.3	39.7	37.7	31.8	5.9	3.16
방송 난민 접촉 경험	있음	(537)	21.8	4.3	17.5	36.1	42.1	34.1	8.0	3.24
	없음	(463)	23.3	6.7	16.6	42.5	34.1	30.2	3.9	3.08

「난민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난민법」을 포함한 난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11.

한국법제연구원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2.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는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 ① 만 19세 미만 → 설문 종료 ② 만 19-29세
 ③ 만 30-39세 ④ 만 40-49세
 ⑤ 만 50-59세 ⑥ 만 60-69세

SQ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세종 포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A

난민수용에 대한 인식

Q1. 귀하는 난민이란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 ②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
| ③ 알고 있음 | ④ 잘 알고 있음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난민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恐怖)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과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Q2. 귀하는 다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음 | ②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
| ③ 알고 있음 | ④ 잘 알고 있음 |

Q3. 귀하께서는 난민에 관한 (국제)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 | |
|---------------------|------------------|
| ① 그렇다 (→ Q3-1으로 이동) | ② 아니다 (→ Q4로 이동) |
|---------------------|------------------|

Q3-1. 난민 관련 (국제)뉴스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Q4.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난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만나보았다. ② 만나 본 적이 없다.

Q5. 귀하는 다큐멘터리 등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난민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접해본 적 있다 ② 접해본 적 없다

Q6. 귀하께서는 난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거리감이 든다 ② 조금은 거리감이 드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리감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거리감이 들지 않는다

Q7.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부의 난민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1) 기초생활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주거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직업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Q8.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사회의 관심 또는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의 관심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Q9. 우리나라는 난민 관련 국제조약인 난민협정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귀하는 난민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일 응답]

“난민협정”이란 난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지위에 대한 적용범위와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으로, 난민의 비호국에서의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를 정함과 동시에 일련의 행정조치로서 본국을 대신하여 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등의 교부, 이동의 자유, 재산 이전의 자유 등을 규정함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③ 중간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B

「난민법」 관련 인식

Q10.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법」과 별도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을 법으로 정하는 「난민법」을 2012년 2월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일 응답]

- ① 안다(→ 문10-1로) ② 모른다(→ 문11로)

Q1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정책 대상자를 우선순위부터 골라주십시오. [prog : 7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 ①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 ② 유학생 등 장기체류 외국인 ③ 외국인 투자자
 ④ 이주노동자 ⑤ 결혼이민 등 이민자
 ⑥ 귀화 또는 국적회복 희망자 ⑦ 난민

Q15. 귀하는 외국인 정책의 대상으로서 난민이 갖는 특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외국인 정책의 대상으로서 난민은 이민과 다르지 않다.	←①—②—③—④—⑤—⑥→	난민은 이민과 다르게 국제법적인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	---------------	-------------------------------------

Q16. 귀하는 난민의 인정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17. 귀하는 난민인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한국이 수용가능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일 응답]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18. 「난민법」 집행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을 우선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prog : 5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①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 ②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 ③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수용
- ④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체류지원
- ⑤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Q19. 귀하는 한국이 난민정착국으로서 난민들이 선호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그렇다 (→ 문19-1로)
- ② 다소 그렇다 (→ 문19-1로)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그렇지 않다 (→ 문19-1로)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문19-1로)

Q19-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0. 한국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매년 몇 명 정도의 난민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100명 이하 ② 100명 이상 500명 이하 ③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 ④ 1000명 이상

Q21.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단일 응답]

- ① 난민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우리 경제의 도움
- ② 난민 수용에 따른 국제인권법 준수국가로의 발전
- ③ 난민이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인상
- ④ 난민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⑤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상

Q22. 난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느 것입니까? [단일 응답]

- ① 경제력 없는 난민의 저소득층화
- ② 난민에 의한 범죄발생 등 치안문제 또는 테러의 가능성
- ③ 난민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 ④ 한민족 문화의 변질
- ⑤ 이주노동자의 편법 국내 체류

Q23.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신청인과 난민인정인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이후 난민인정인의 수가 100명 남짓 고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그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난민신청자수(명)	1,574	2,896	5,711	7,542
난민인정자수(명)	57	94	105	98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24. 난민인정신청자가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난민보호시설(난민지원센터)이 2013년 인천에 생겼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일 응답]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2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난민보호시설이 있다면 주변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Q26. 난민심사를 할 때 여성난민이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ex: 임신, 성적학대 등)을 질문하기 위해 별도의 여성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등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통역사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27. 난민이 난민 신청부터 정착 과정까지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28. 재정착난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이 재정착난민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일 응답]

재정착난민제도는 해외난민캠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주변국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씩 재정착을 기다리는 난민들이 연간 100만명 규모로 발생합니다. 미국은 연간 8만명 정도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연30명 규모로 재정착난민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34명의 재정착난민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보통이다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Q29.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 논의 중에는 개정 헌법에 망명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망명권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DQ3.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일 응답]

-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200만원 | ③ 201-300만원 |
| ④ 301-400만원 | ⑤ 401-500만원 | ⑥ 501만원 이상 |

※ 오랜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2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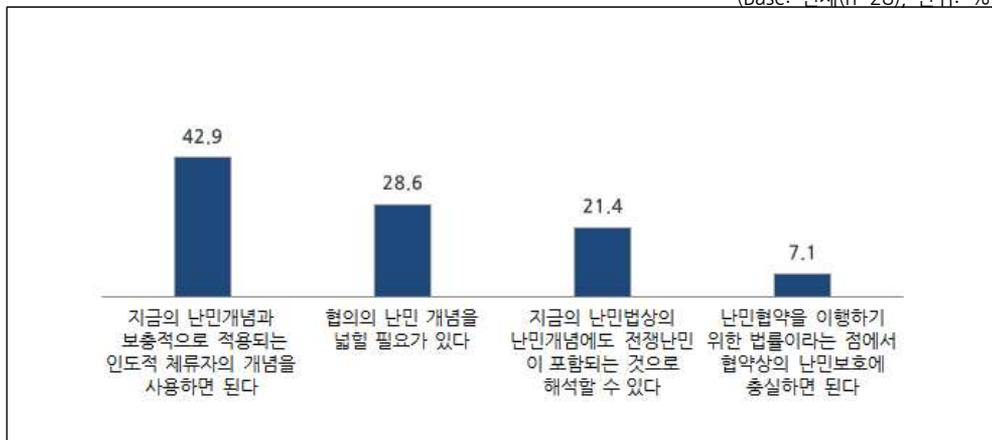
I. 「난민법」 관련 의견

1.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에 대해 ‘지금의 난민개념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협의를 난민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28.6%), ‘지금의 「난민법」상의 난민개념에도 전쟁난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1〉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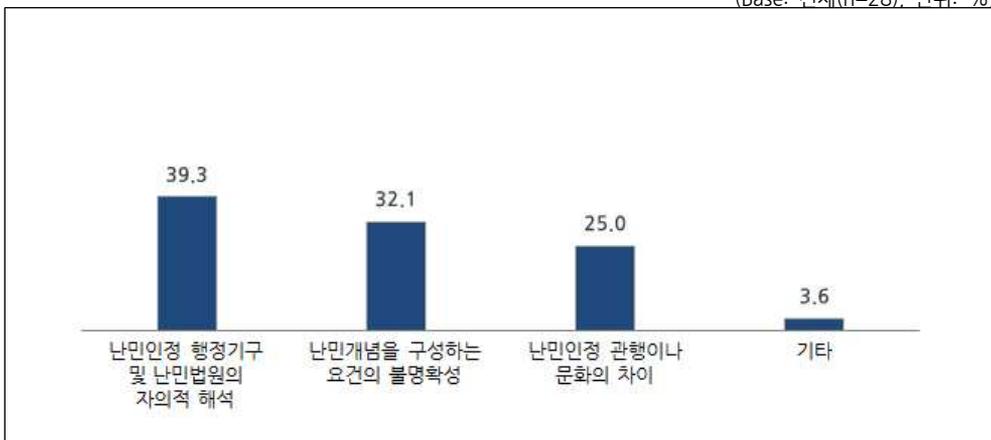
		사례수	지금의 난민개념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인도적체류자의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협의를 난민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의 「난민법」상의 난민개념에도 전쟁난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에 충실하면 된다
전체		(28)	42.9	28.6	21.4	7.1
분야	교수직	(13)	46.2	30.8	15.4	7.7
	공무원/연구직	(7)	57.1	14.3	14.3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37.5	37.5	0.0

2.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 국가마다 동일인의 난민인정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난민인정 행정기구 및 비호법원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의 불명확성’(32.1%), ‘난민인정 관행이나 문화의 차이’(25.0%) 순으로 나타남.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Base: 전체(n=28), 단위: %)



<표1-2>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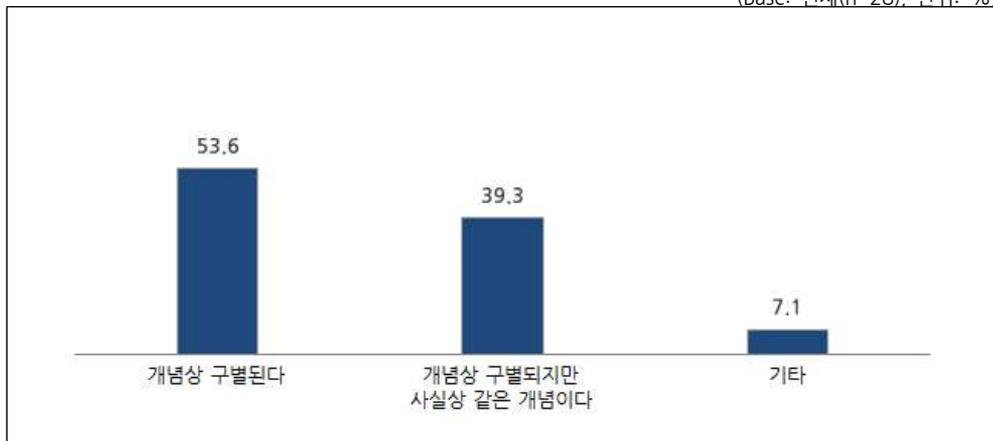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인정 행정기구 및 비호법원의 자의적 해석	난민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의 불명확성	난민인정 관행이나 문화의 차이	기타
전체		(28)	39.3	32.1	25.0	3.6
분야	교수직	(13)	46.2	38.5	7.7	7.7
	공무원/연구직	(7)	42.9	28.6	28.6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25.0	50.0	0.0

3.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의견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의견으로 ‘개념상 구별된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고, ‘개념상 구별되지만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가 39.3%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3〉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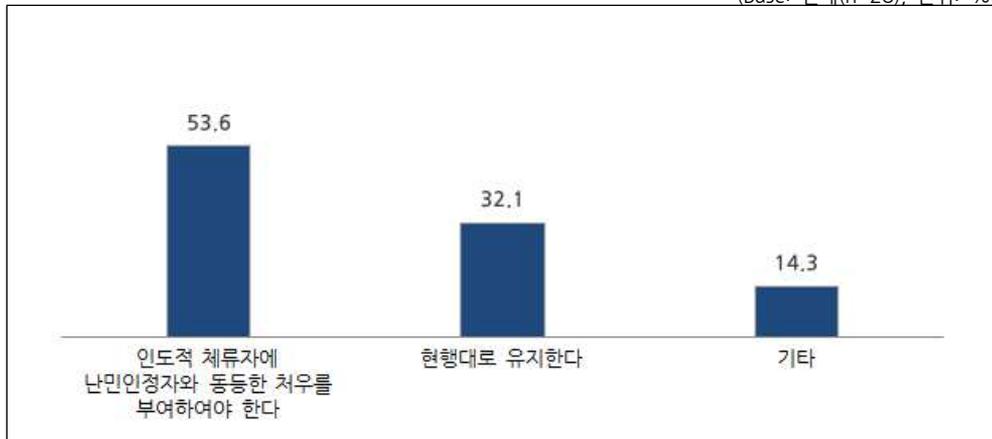
		사례수	개념상 구별된다	개념상 구별되지만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기타
전체		(28)	53.6	39.3	7.1
분야	교수직	(13)	53.8	38.5	7.7
	공무원/연구직	(7)	42.9	57.1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25.0	12.5

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으로 ‘인도적체류자에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처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가 32.1%로 나타남.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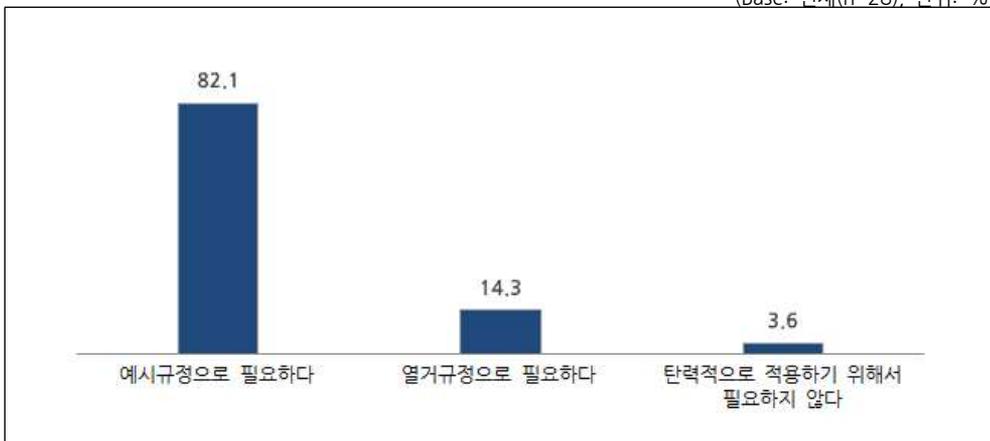
		사례수	인도적체류자에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처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타
전체		(28)	53.6	32.1	14.3
분야	교수직	(13)	53.8	38.5	7.7
	공무원/연구직	(7)	28.6	57.1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75.0	0.0	25.0

5.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 필요성

-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예시규정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열거규정으로 필요하다’(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5〉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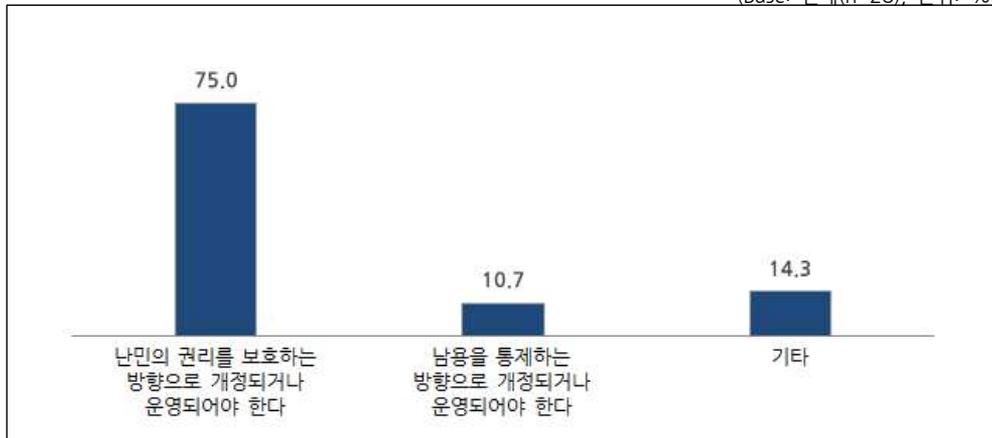
		사례수	예시규정으로 필요하다	열거규정으로 필요하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전체		(28)	82.1	14.3	3.6
분야	교수직	(13)	84.6	7.7	7.7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37.5	0.0

6.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

-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으로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5.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운영되어야 한다’(10.7%) 순으로 나타남.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

(Base: 전체(n=28), 단위: %)



〈표1-6〉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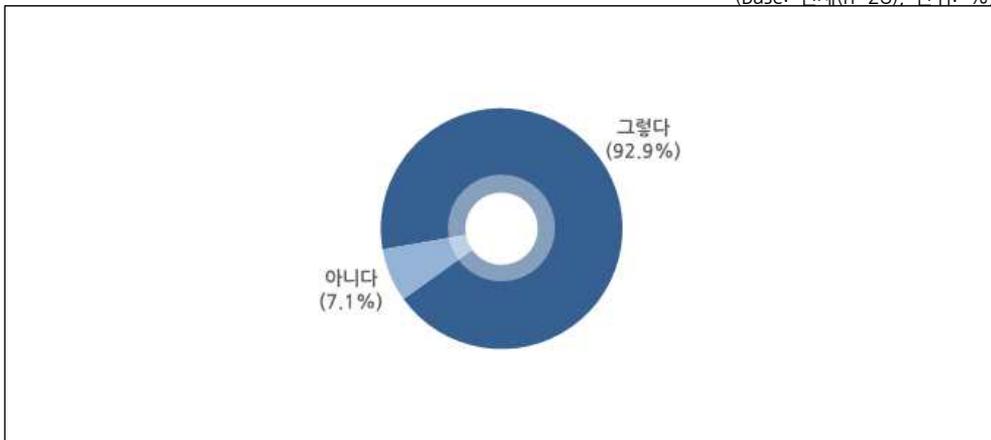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운영되어야 한다	남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운영되어야 한다	기타
전체		(28)	75.0	10.7	14.3
분야	교수직	(13)	84.6	15.4	0.0
	공무원/연구직	(7)	71.4	14.3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0.0	37.5

7.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한계 여부

-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남.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한계 여부

(Base: 전체(n=28), 단위: %)



<표1-7>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한계 여부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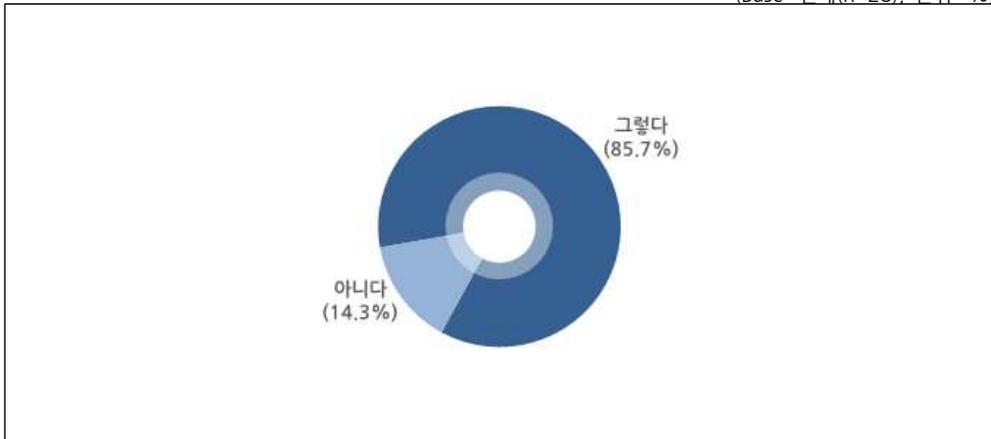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92.9	7.1
분야	교수직	(13)	100.0	0.0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75.0	25.0

8.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 난민협약 내용을 각 국가별로 유연한 해석 적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85.7%로 ‘아니다’ (14.3%)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8〉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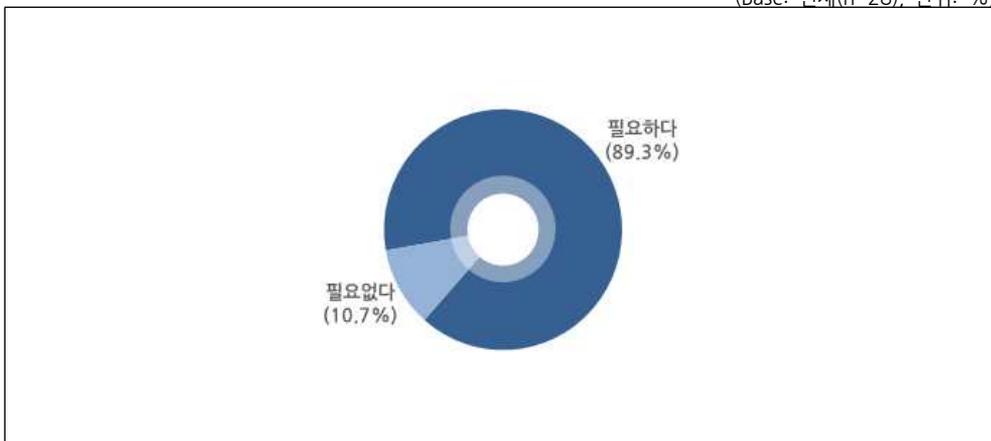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85.7	14.3
분야	교수직	(13)	76.9	23.1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9.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 난민협약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3%로 ‘필요없다’(10.7%)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9〉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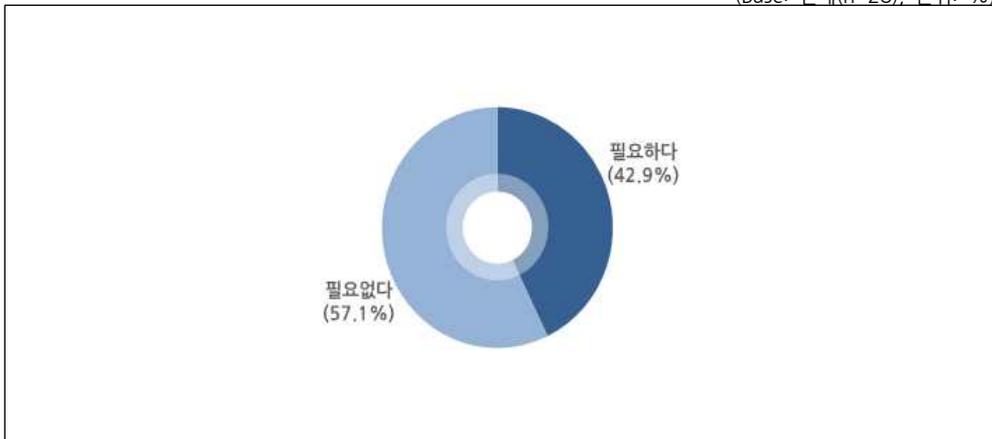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89.3	10.7
분야	교수직	(13)	100.0	0.0
	공무원/연구직	(7)	85.7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75.0	25.0

10.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 필요성

-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가 ‘필요없다’는 응답이 57.1%로 ‘필요하다’(42.9%)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10〉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42.9	57.1
분야	교수직	(13)	30.8	69.2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50.0

11.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 난민 망명권의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7%(매우 찬성 10.7% + 찬성하는 편 50.0%)로 ‘반대’(28.6%=매우 반대 7.1% + 반대하는 편 21.4%)보다 높게 나타남.
- 5점 평균은 3.36점으로 나타남.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점)



〈표1-11〉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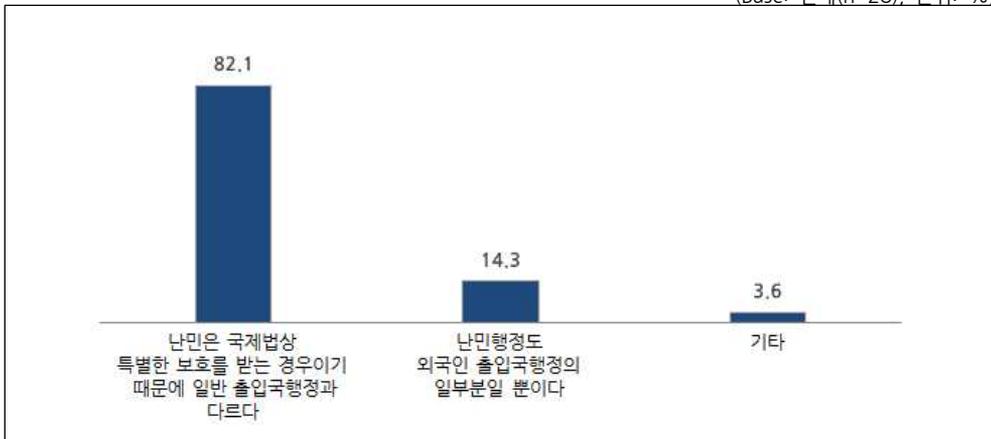
		사례수	반대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보통이다	찬성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5점 평균
전체		(28)	28.6	7.1	21.4	10.7	60.7	50.0	10.7	3.36
분야	교수직	(13)	23.1	15.4	7.7	23.1	53.8	53.8	0.0	3.15
	공무원/연구직	(7)	42.9	0.0	42.9	0.0	57.1	42.9	14.3	3.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0.0	25.0	0.0	75.0	50.0	25.0	3.75

12.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에 대해 ‘난민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출입국행정과 다르다’는 응답이 82.1%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난민행정도 외국인 출입국행정의 일부분일 뿐이다’(14.3%) 순으로 나타남.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Base: 전체(n=28), 단위: %)



<표1-12>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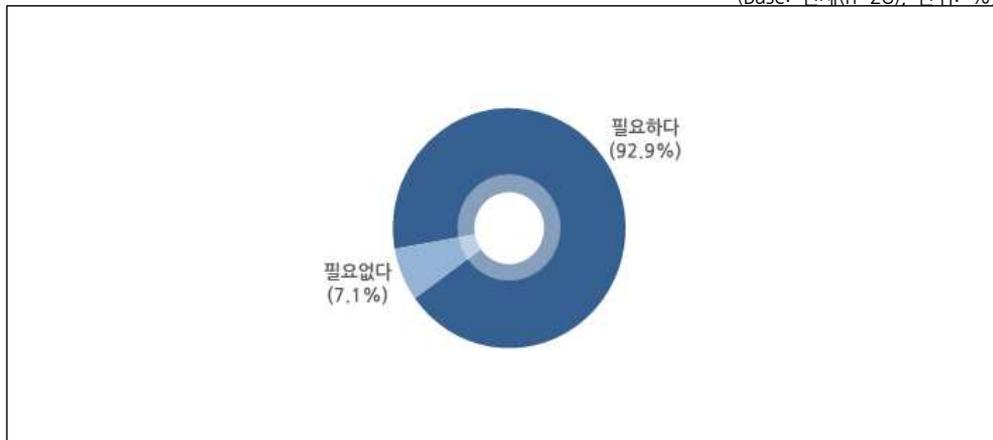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출입국행정과 다르다	난민행정도 외국인 출입국행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기타
전체		(28)	82.1	14.3	3.6
분야	교수직	(13)	69.2	30.8	0.0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0.0	12.5

13.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남.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13>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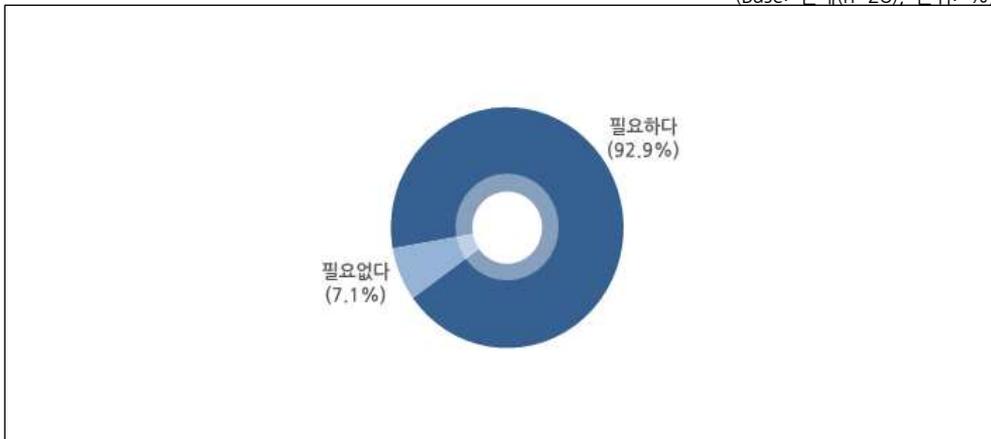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92.9	7.1
분야	교수직	(13)	84.6	15.4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14.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9%로 나타난다.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14〉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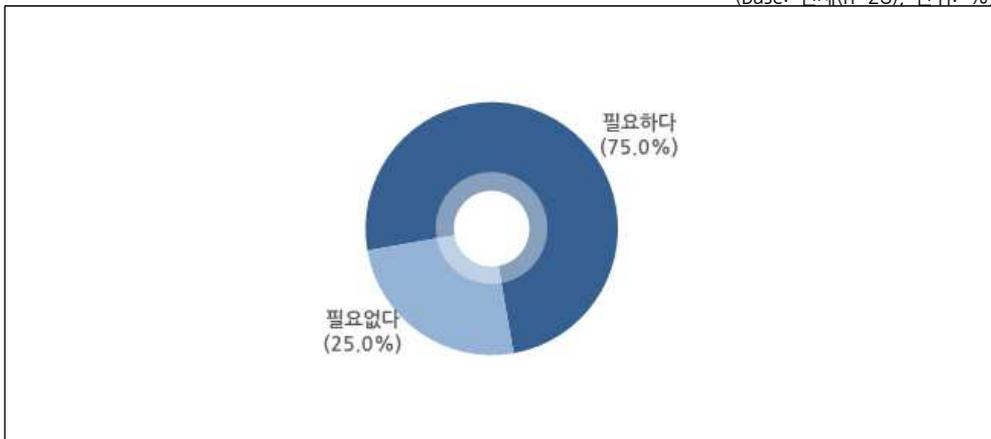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92.9	7.1
분야	교수직	(13)	84.6	15.4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15.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 난민인정자를 위해 완화된 귀화요건을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0%로 ‘필요없다’(25.0%) 보다 높게 나타남.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15〉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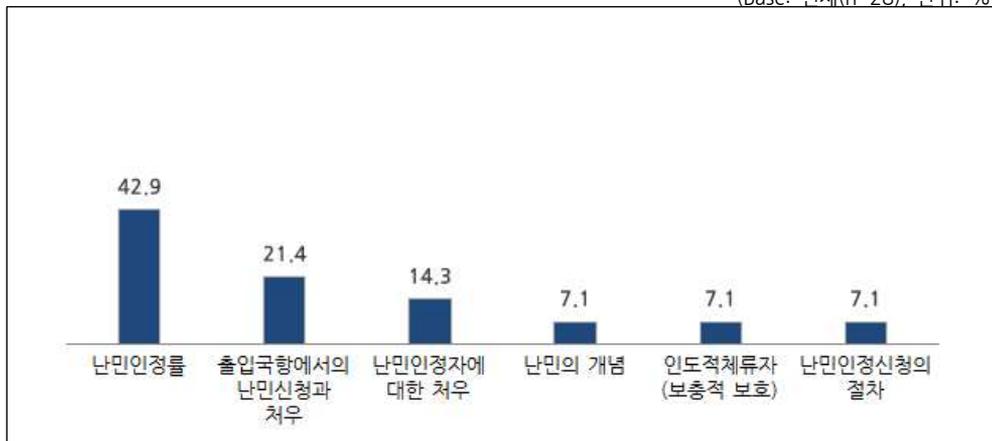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75.0	25.0
분야	교수직	(13)	76.9	23.1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16.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 우리 「난민법」에서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난민 인정률’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21.4%),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Base: 전체(n=28), 단위: %)



<표1-16>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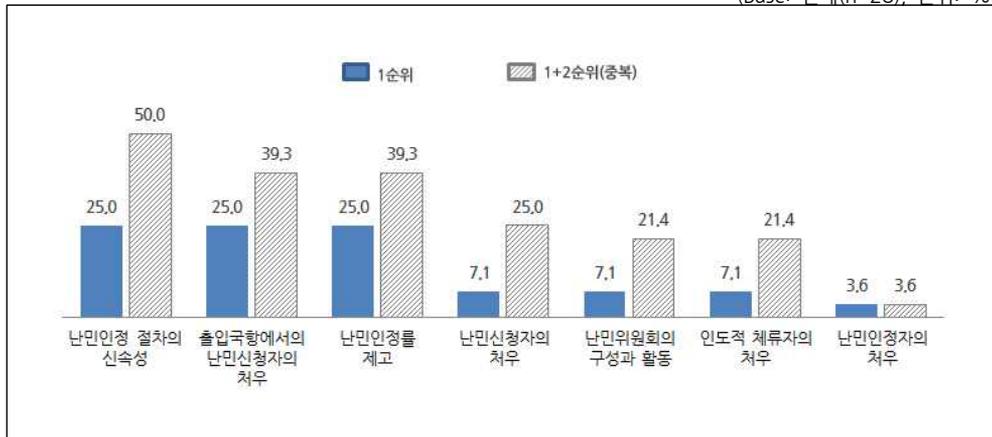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인정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난민의 개념	인도적체류자 (보충적 보호)	난민인정신청의 절차	
전체	(28)	42.9	21.4	14.3	7.1	7.1	7.1	
분야	교수직	(13)	38.5	15.4	23.1	7.7	7.7	7.7
	공무원/연구직	(7)	42.9	28.6	14.3	0.0	0.0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25.0	0.0	12.5	12.5	0.0

17.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

-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률 제고’(각각 25.0%)에서 높게 나타남
- 1+2순위 기준으로는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50.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및 ‘난민인정률 제고’(각각 3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

(Base: 전체(n=28), 단위: %)



〈표1-17〉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률 제고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전체		(28)	25.0	25.0	25.0	7.1	7.1	7.1	3.6
분야	교수직	(13)	23.1	30.8	30.8	7.7	0.0	0.0	7.7
	공무원/연구직	(7)	28.6	14.3	28.6	0.0	14.3	14.3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25.0	12.5	12.5	12.5	12.5	0.0

〈표1-18〉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2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률 제고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전체	(28)	50.0	39.3	39.3	25.0	21.4	21.4	3.6	
분야	교수직	(13)	46.2	46.2	30.8	30.8	15.4	23.1	7.7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42.9	14.3	28.6	14.3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25.0	50.0	25.0	25.0	25.0	0.0

〈표1-19〉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2+3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난민인정률 제고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난민신청자의 처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난민인정자의 처우	
전체	(28)	60.7	60.7	50.0	42.9	39.3	39.3	7.1	
분야	교수직	(13)	61.5	61.5	38.5	23.1	46.2	53.8	15.4
	공무원/연구직	(7)	57.1	71.4	57.1	71.4	28.6	14.3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50.0	62.5	50.0	37.5	37.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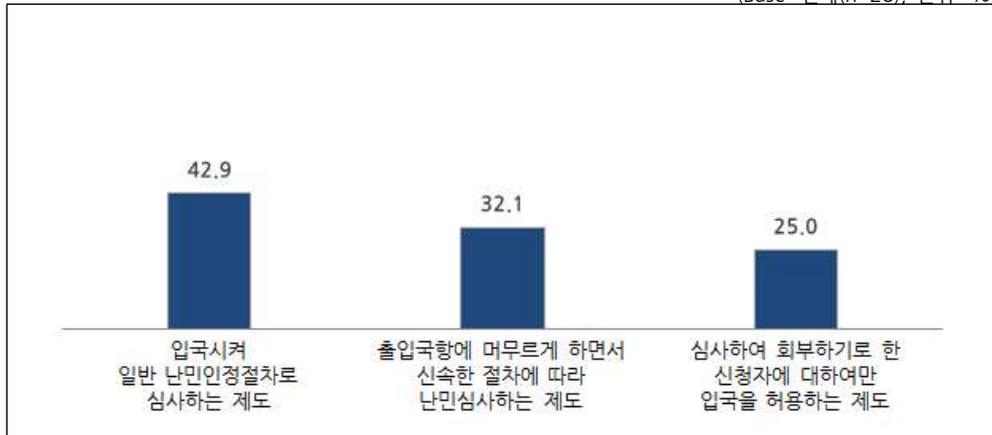
II.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의견

1.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는 제도’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하면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난민심사 하는 제도’(32.1%), ‘심사하여 회부하기로 한 신청자에 대하여만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25.0%) 순으로 나타남.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20>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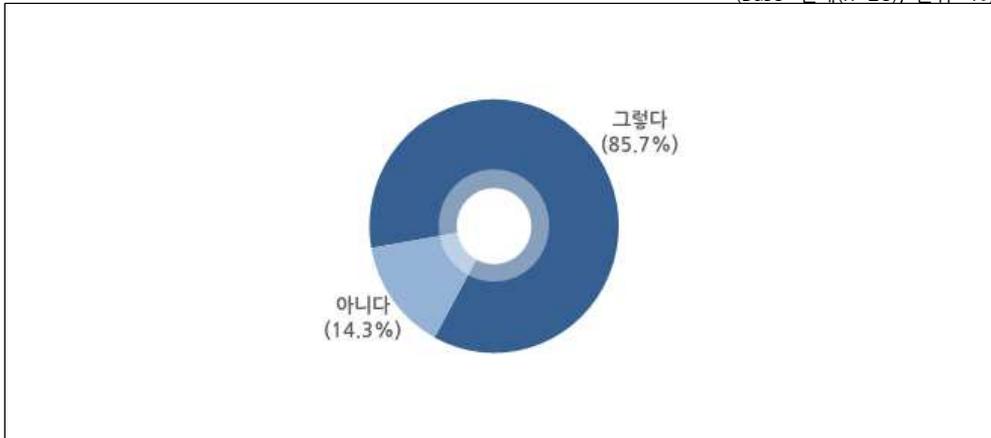
		사례수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는 제도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하면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난민심사하는 제도	심사하여 회부하기로 한 신청자에 대하여만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전체		(28)	42.9	32.1	25.0
분야	교수직	(13)	46.2	30.8	23.1
	공무원/연구직	(7)	14.3	57.1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12.5	25.0

2.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신청자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제2조 난민신청자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85.7%로 ‘아니다’(14.3%)보다 높게 나타남.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신청자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2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신청자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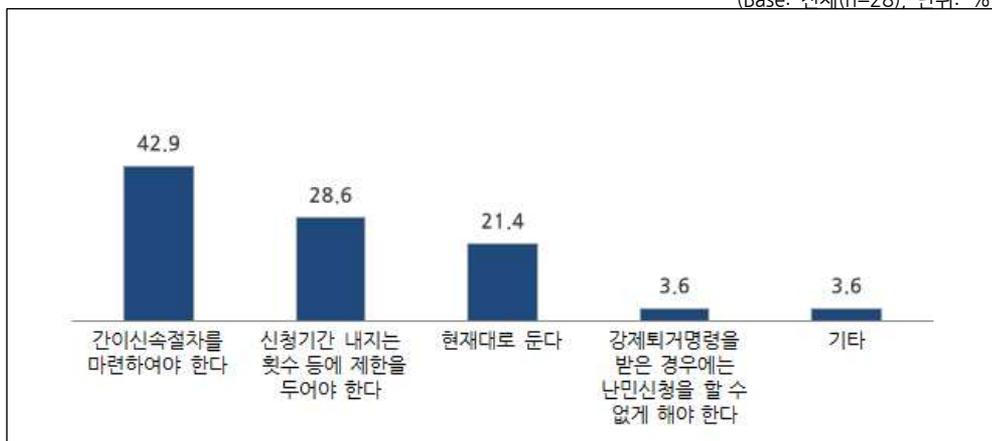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85.7	14.3
분야	교수직	(13)	92.3	7.7
	공무원/연구직	(7)	71.4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3.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 난민인정 반복 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간이신속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청기간 내지는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28.6%), ‘현재대로 둔다’(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22〉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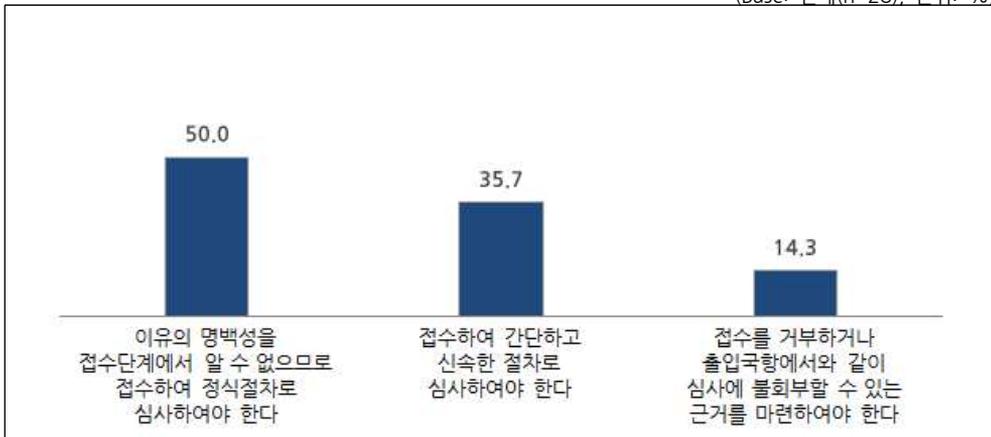
		사례수	간이신속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내지는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현재대로 둔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타
전체		(28)	42.9	28.6	21.4	3.6	3.6
분야	교수직	(13)	38.5	38.5	15.4	7.7	0.0
	공무원/연구직	(7)	42.9	42.9	14.3	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0.0	37.5	0.0	12.5

4.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이유 없는 명백성을 접수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접수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35.7%), ‘접수를 거부하거나 출입국항에서와 같이 심사에 불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14.3%) 순으로 나타남.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23>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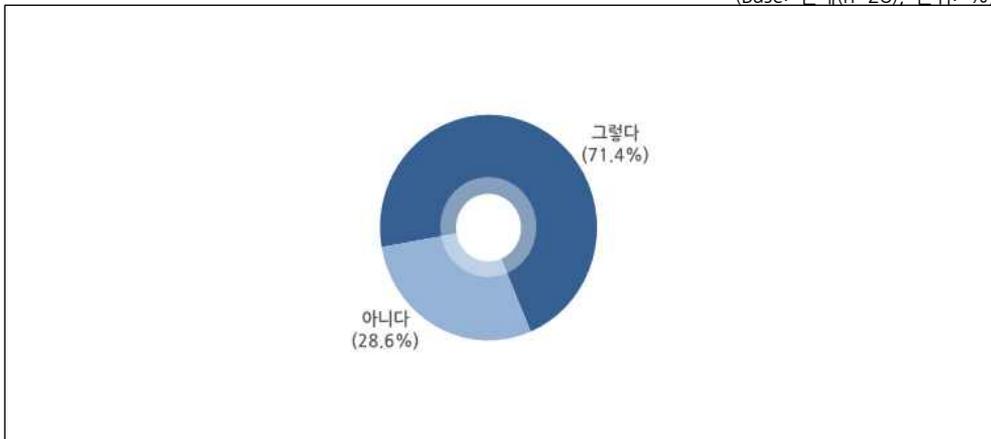
	사례수	이유 없는 명백성을 접수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	접수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	접수를 거부하거나 출입국항에서와 같이 심사에 불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28)	50.0	35.7	14.3	
분야	교수직	(13)	46.2	30.8	23.1
	공무원/연구직	(7)	42.9	57.1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25.0	12.5

5.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 부여에 대한 의견

-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로 ‘아니다’(28.6%)보다 높게 나타남.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 부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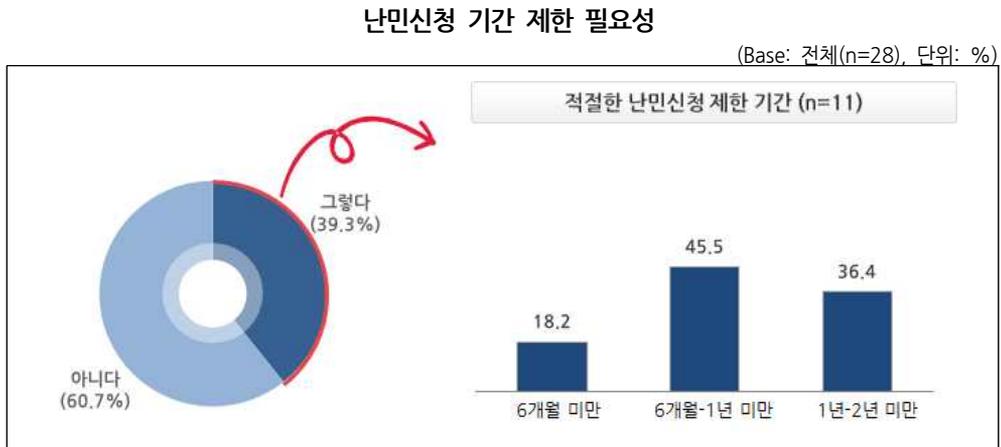
〈표1-24〉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에 부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71.4	28.6
분야	교수직	(13)	61.5	38.5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6. 난민신청 기간 제한 필요성

- 난민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필요없다’는 응답이 60.7%로 ‘필요하다’ (39.3%) 보다 높게 나타남.
-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11)에게 적절한 난민신청 제한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6개월~1년 미만’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2년 미만’(36.4%), ‘6개월 미만’ (18.2%) 순으로 나타남.



〈표1-25〉 난민신청 기간 제한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39.3	60.7
분야	교수직	(13)	46.2	53.8
	공무원/연구직	(7)	42.9	57.1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75.0

〈표1-26〉 적절한 난민신청 제한 기간

(Base: 난민신청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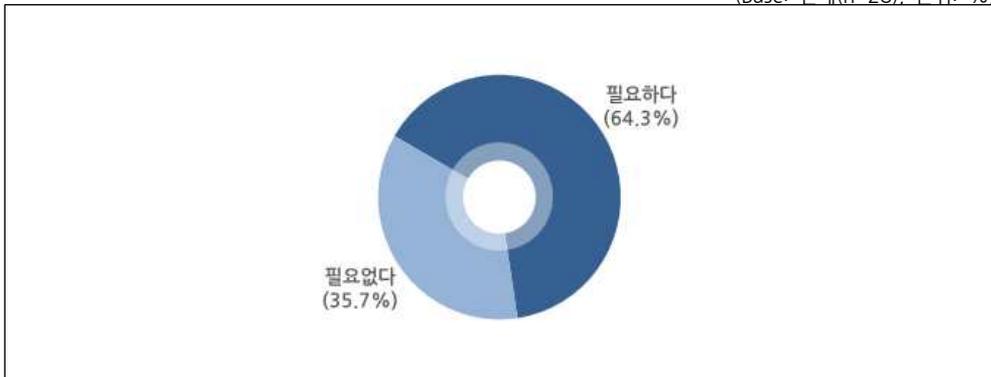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전체		(11)	18.2	45.5	36.4
분야	교수직	(6)	33.3	33.3	33.3
	공무원/연구직	(3)	0.0	66.7	33.3
	변호사/인권활동가	(2)	0.0	50.0	50.0

7.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4.3%로 ‘필요없다’(35.7%) 보다 높게 나타남.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27〉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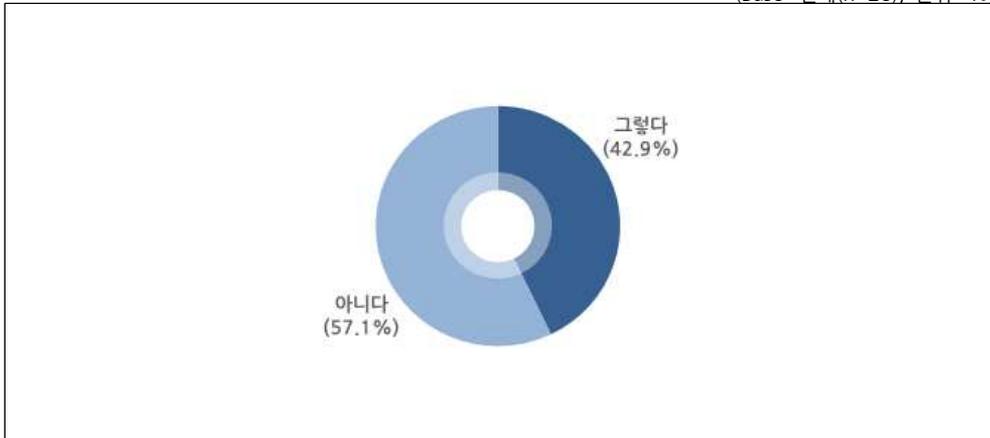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64.3	35.7
분야	교수직	(13)	61.5	38.5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75.0	25.0

8.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 외국인 출입국 관리주체인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7.1%로 ‘합리적이다’(42.9%)보다 높게 나타남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28〉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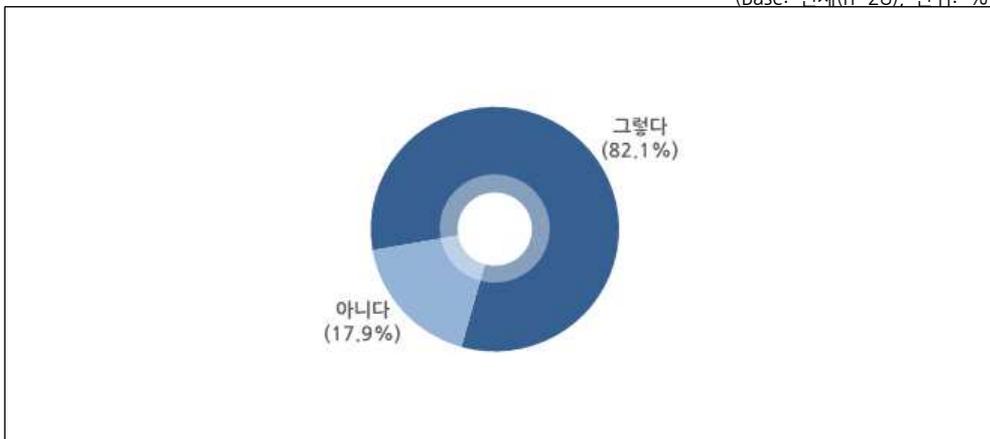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42.9	57.1
분야	교수직	(13)	53.8	46.2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12.5	87.5

9.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

-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부 직원이 난민심사를 할 경우 선입견을 줄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2.1%로 ‘아니다’(17.9%)보다 높게 나타남.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29>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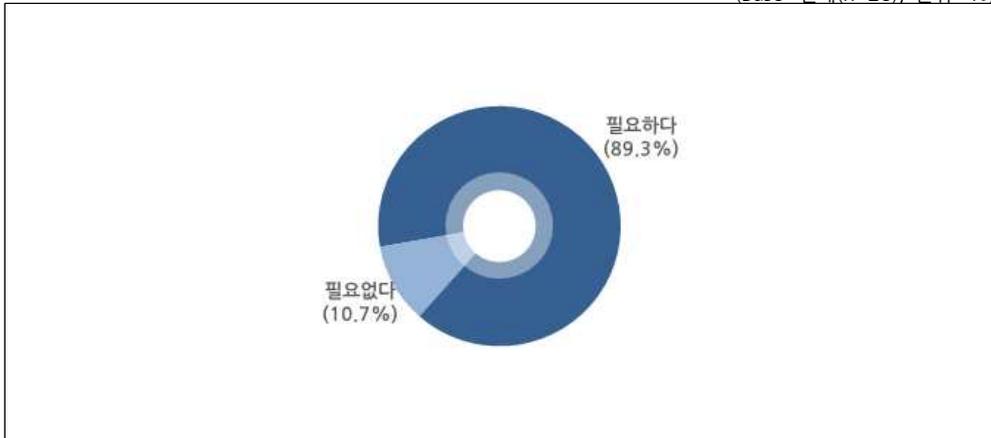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28)	82.1	17.9
분야	교수직	(13)	76.9	23.1
	공무원/연구직	(7)	71.4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10.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3%로 ‘필요없다’(10.7%)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30〉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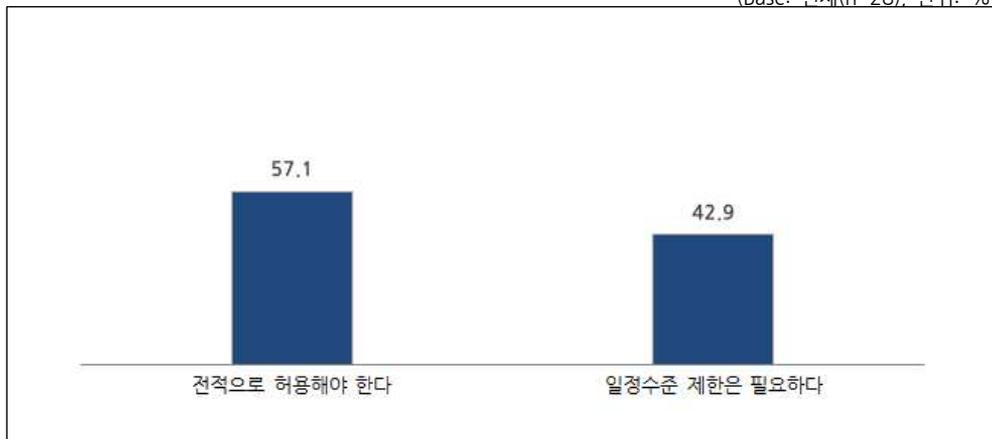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89.3	10.7
분야	교수직	(13)	84.6	15.4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11.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최대 3심 소송제기 허용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 불인정자가 최대 3심까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정수준 제한은 필요하다’(42.9%) 순으로 나타남.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최대 3심 소송제기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31>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최대 3심 소송제기 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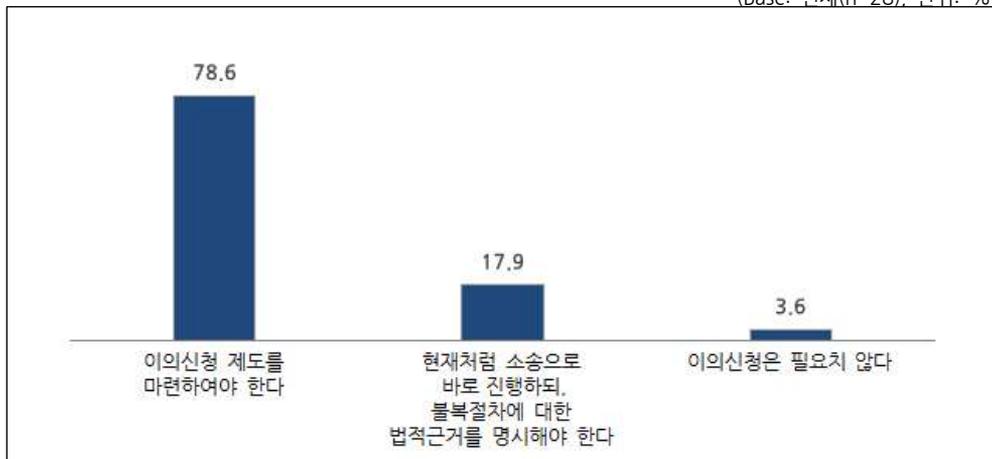
		사례수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정수준 제한은 필요하다
전체		(28)	57.1	42.9
분야	교수직	(13)	53.8	46.2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37.5

12.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가 7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되, 불복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한다’(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32>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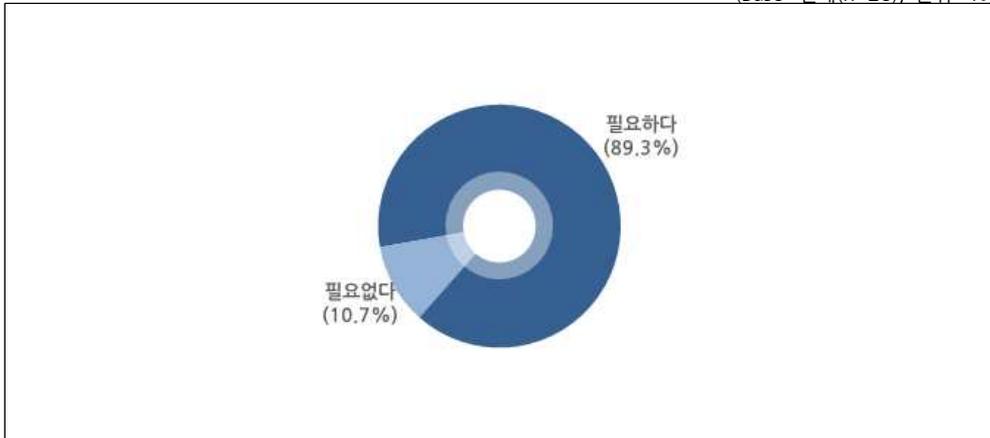
		사례수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되, 불복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필요치 않다
전체		(28)	78.6	17.9	3.6
분야	교수직	(13)	69.2	30.8	0.0
	공무원/연구직	(7)	71.4	14.3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0.0

13.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 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3%로 ‘필요없다’ (10.7%)보다 높게 나타남.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33>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89.3	10.7
분야	교수직	(13)	84.6	15.4
	공무원/연구직	(7)	85.7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 출입국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n=25)의 처우 수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1-34〉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Base: 불회부 외국인 처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25), 단위: %)

분야	내용		
교수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법상 관련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처우와 동일해야 한다고 사료됨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적절한 인도적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인도적 체류자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해야 함 상호주의 원칙 하에 예시적 세부 규정 마련 필요 이의신청에 관하여 외국인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 이의신청 절차 마련 출국대기실의 공간이 과밀하거나 수용 개념이 아니도록 적절한 공간 확보 필요 난민인정신청자 수준의 처우 필요 원칙은 구금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방면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변호인접견권 보장, 불회부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제공 및 언어지원, 송환 전까지 공항만 내 기본적인 숙식환경 제공 신속한 절차로 재심사를 받도록 해야함 불회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 받음으로써 송환금지 원칙에 반해 박해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출국대기실이 아닌, 심사 및 체류에 기능적으로 적합한 시설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봄 		
	공무원/연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타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이 가능해야 함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예를 들어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제공은 있어야 함 난민신청자 수준의 처우 불체자 수용 정도의 처우가 적당하겠지만,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신속진행이 본질적이라 봄 감정적으로 인도적체류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 	
		변호사/인권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입국 이 외에는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장기간 대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 불복절차의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함 의료, 음식, 송환대기실 출입의 자유 보장,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입국 신청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 근본적으로 입국해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 「난민법」을 유지할 경우, 출입국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현재는 송환대기실에서 구금되어 있으므로 심사 기간 동안 숙박과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은 해 주어야 함

〈표1-34〉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들 필요성(계속)

(Base: 불회부 외국인 처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25), 단위: %)

분야	내용
변호사/ 인권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생기는 경우 모든 절차가 끝날때까지 지금처럼 출입국항대기실에서 머무르도록 해야 함. 그 수순은 숙식의 제공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권의 경우 필요시 외부 진료를 보장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 외부와의 접견 교섭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권한의 존중. 구금되지 않아야 하며, 기본적 의식주의 보장 및 통번역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 강제 출국 금지 ▪ 자발적 출국을 위한 도움 제공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임시 생활공간 제공 ▪ 다양한 영양섭취가 가능한 식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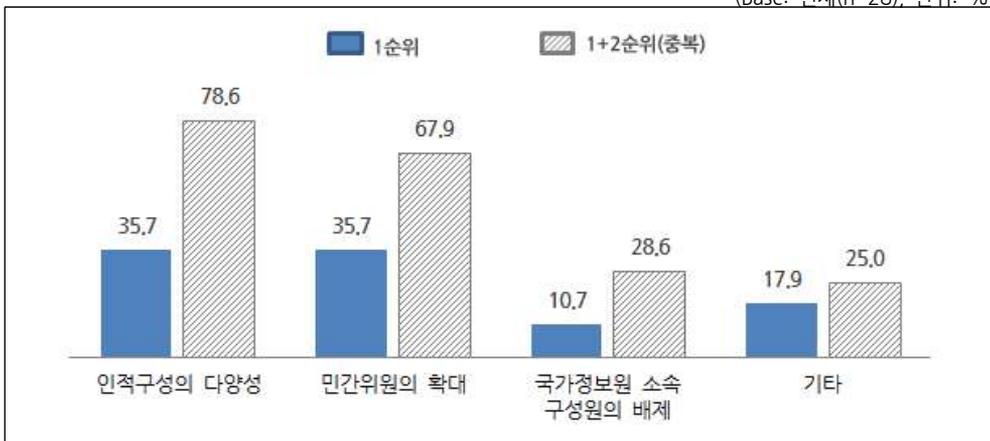
Ⅲ.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1.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

-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으로 ‘인적구성의 다양성’ 및 ‘민간위원의 확대’가 각각 35.7%로 높게 나타남.
- 1+2순위 응답으로는 ‘인적구성의 다양성’(78.6%), ‘민간위원의 확대’(6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

(Base: 전체(n=28), 단위: %)



<표1-35>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인적구성의 다양성	민간위원의 확대	국가정보원 소속 구성원의 배제	기타
전체		(28)	35.7	35.7	10.7	17.9
분야	교수직	(13)	46.2	46.2	0.0	7.7
	공무원/연구직	(7)	42.9	28.6	28.6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12.5	25.0	12.5	50.0

〈표1-36〉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2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인적구성의 다양성	민간위원의 확대	국가정보원 소속 구성원의 배제	기타
전체		(28)	78.6	67.9	28.6	25.0
분야	교수직	(13)	84.6	84.6	23.1	7.7
	공무원/연구직	(7)	85.7	57.1	42.9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50.0	25.0	62.5

〈표1-37〉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2+3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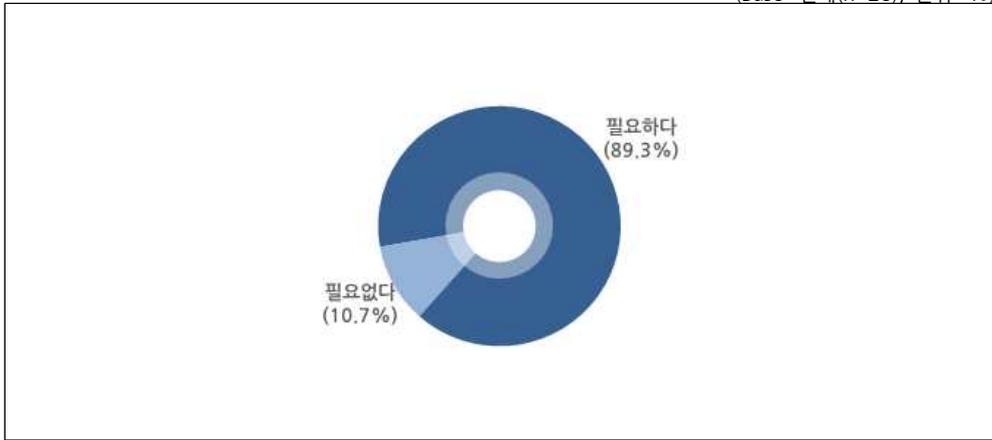
		사례수	민간위원의 확대	인적구성의 다양성	국가정보원 소속 구성원의 배제	임기의 연장	기타
전체		(28)	96.4	89.3	67.9	10.7	35.7
분야	교수직	(13)	100.0	100.0	69.2	7.7	23.1
	공무원/연구직	(7)	100.0	100.0	71.4	0.0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62.5	62.5	25.0	62.5

2. 난민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89.3%로 ‘필요없다’(10.7%)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38〉 난민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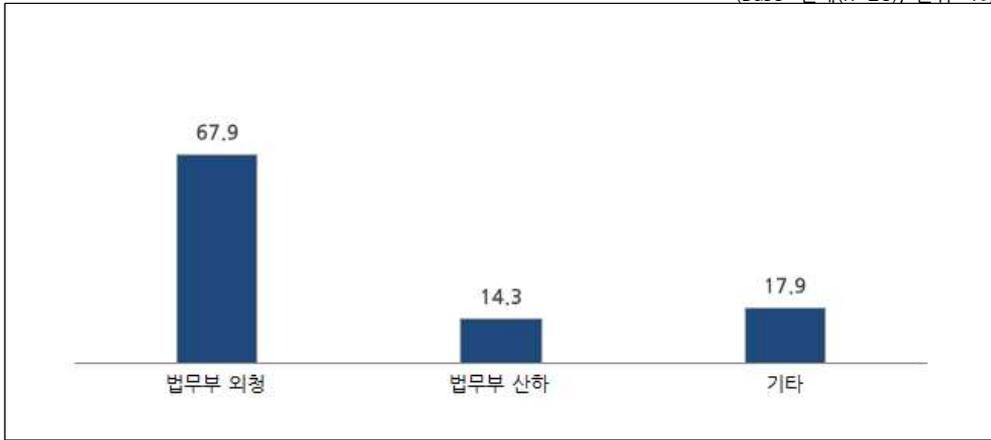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89.3	10.7
분야	교수직	(13)	76.9	23.1
	공무원/연구직	(7)	100.0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100.0	0.0

3.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 난민위원회 상설 시의 소속으로 ‘법무부 외청’이 67.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무부 산하’(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Base: 전체(n=28), 단위: %)



〈표1-39〉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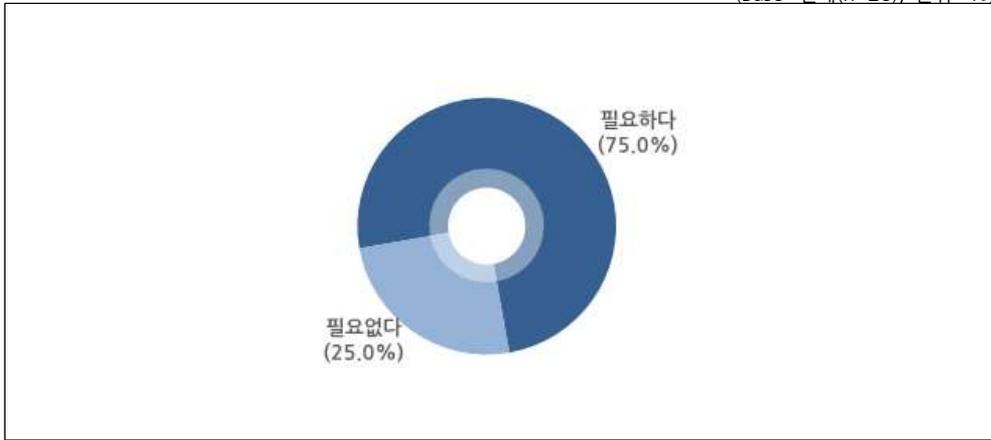
		사례수	법무부 외청	법무부 산하	기타
전체		(28)	67.9	14.3	17.9
분야	교수직	(13)	53.8	23.1	23.1
	공무원/연구직	(7)	71.4	14.3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0.0	12.5

4.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 난민위원회에 1심 재판을 맡도록 준사법적 역할 부여에 대한 의견으로 ‘필요하다’가 75.0%로 ‘필요없다’(25.0%) 보다 높게 나타남.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40〉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28)	75.0	25.0
분야	교수직	(13)	84.6	15.4
	공무원/연구직	(7)	71.4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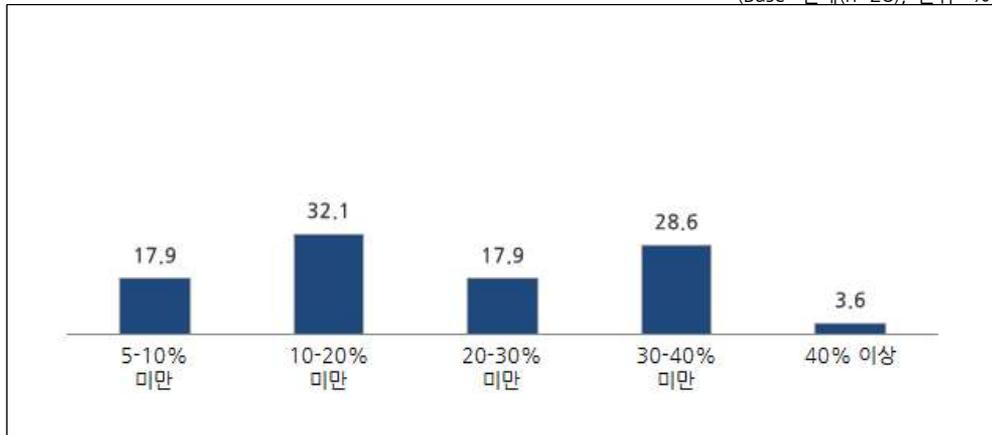
IV. 난민 수용 관련 의견

1.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에 대해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40% 미만’, ‘5~10% 미만’ 및 ‘20~30% 미만’(각각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Base: 전체(n=28), 단위: %)



〈표1-41〉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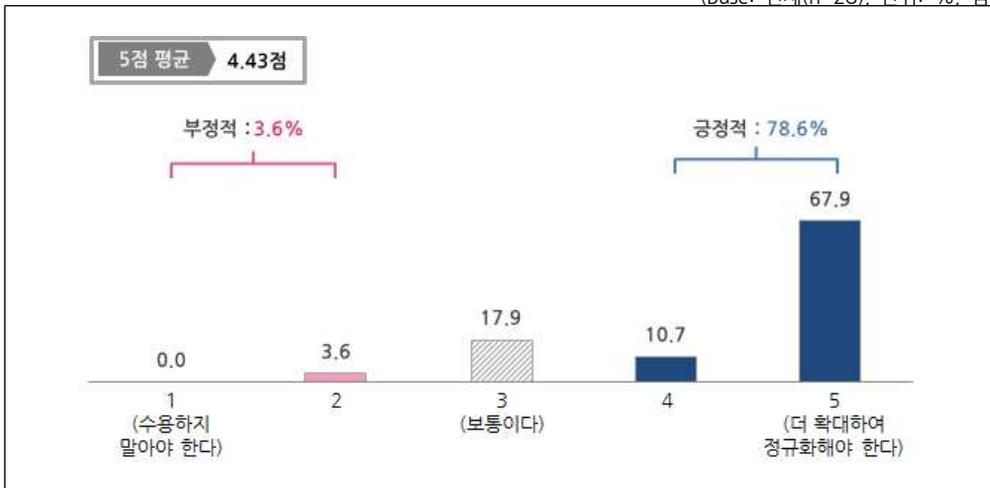
		사례수	5-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전체		(28)	17.9	32.1	17.9	28.6	3.6
분야	교수직	(13)	15.4	38.5	7.7	38.5	0.0
	공무원/연구직	(7)	28.6	42.9	14.3	14.3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12.5	12.5	37.5	25.0	12.5

2.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으로 ‘긍정적’이 78.6%(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67.9% + 그런 편이다 10.7%)이 ‘부정적’(3.6% =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0.0% + 그렇지 않은 편 3.6%) 보다 높게 나타남.
- 5점 평균은 4.43점으로 나타남.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점)



〈표1-42〉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점)

분야	사례수	부정적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보통이다	긍정적	4	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5점 평균
전체	(28)	3.6	0.0	3.6	17.9	78.6	10.7	67.9	4.43
교수직	(13)	0.0	0.0	0.0	23.1	76.9	15.4	61.5	4.38
공무원/연구직	(7)	0.0	0.0	0.0	14.3	85.7	14.3	71.4	4.57
변호사/인권활동가	(8)	12.5	0.0	12.5	12.5	75.0	0.0	75.0	4.38

3.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 난민인정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함’이 53.6%(매우 그렇다 21.4% + 그런 편이다 32.1%)이 ‘동의하지 않음’(39.3% = 전혀 그렇지 않다 10.7%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6%) 보다 높게 나타남.
- 5점 평균은 3.25점으로 나타남.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Base: 전체(n=28), 단위: %, 점)



〈표1-43〉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Base: 전체(n=28),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부정	부정		보통이다	긍정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긍정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8)	39.3	10.7	28.6	7.1	53.6	32.1	21.4	3.25	
분야	교수직	(13)	46.2	7.7	38.5	15.4	38.5	23.1	15.4	3.00
	공무원/연구직	(7)	42.9	0.0	42.9	0.0	57.1	42.9	14.3	3.29
	변호사/인권활동가	(8)	25.0	25.0	0.0	0.0	75.0	37.5	37.5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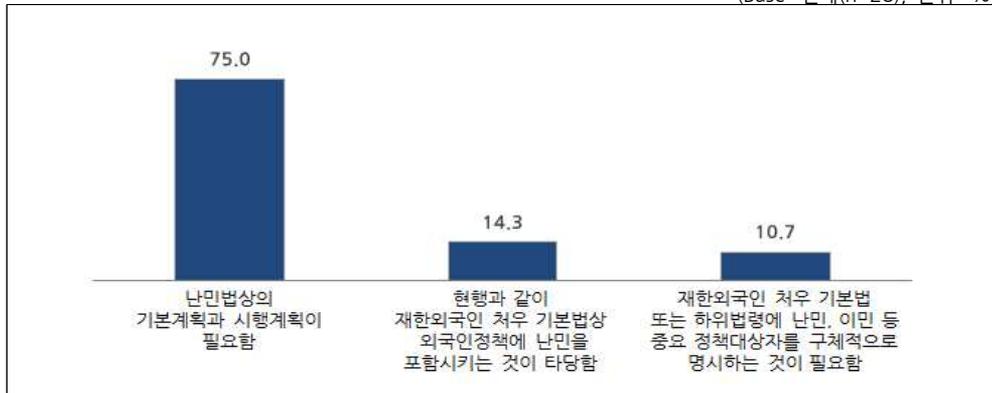
V. 난민 정책 시행 관련 의견

1.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함’이 7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행과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외국인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14.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는 하위법령에 난민, 이민 등 중요정책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10.7%) 순으로 나타남.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표1-44〉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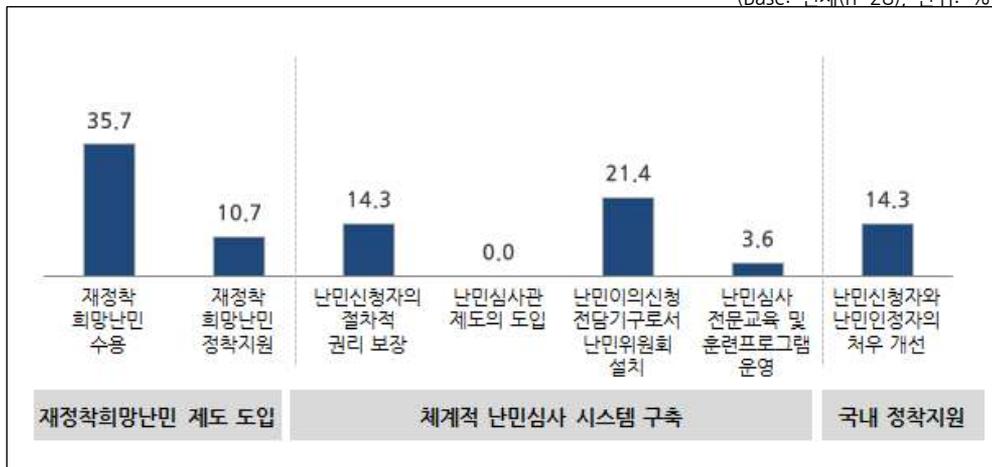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함	현행과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외국인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는 하위법령에 난민, 이민 등 중요 정책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전체		(28)	75.0	14.3	10.7
분야	교수직	(13)	76.9	15.4	7.7
	공무원/연구직	(7)	57.1	14.3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0.0

2.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

-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해 ‘재정착희망난민 수용’이 3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표1-45>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재정착 희망난민 정착지원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심사관 제도의 도입	난민 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전체	(28)	35.7	10.7	14.3	0.0	21.4	3.6	14.3	
분야	교수직	(13)	30.8	0.0	15.4	0.0	30.8	0.0	23.1
	공무원/연구직	(7)	28.6	14.3	14.3	0.0	28.6	14.3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25.0	12.5	0.0	0.0	0.0	12.5

- 각 정책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1-46〉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Base: 전체(n=28), 단위: %)

정 책	내 용		
(1)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써의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이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함 ▪ 다른 정책은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재정착희망난민 수용은 2015-2016에 현실화 됨 ▪ 전에 없던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이 시작 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임 ▪ 다른 정책은 평가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가시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음 ▪ 재정착난민의 조기도입, 성공적 수용, 재정착 제도의 정착 ▪ 재정착 난민의 수용으로 난민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됨 ▪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맞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계획 대비 시행 실적이 명확함. 다른 정책들의 경우 아직 미흡하므로 재정착희망 난민 수용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정책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재정착난민 수용을 실행함 ▪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 ▪ 가장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언론 홍보가 이루어 지고 있음 		
	(2) 재정착 희망난민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이기는 하나 재정착 난민의 수용 이후 법무부 및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재정착 난민들도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용쿼터를 결정하고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이주기구와의 협력으로 계획대로 수용하였음. 수용 이후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사회통합교육 및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음. 그 과정에서 난민을 기존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됨 ▪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재정착희망난민지원 정착 지원은 정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보임 	
		(3)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는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 실질적이지는 못한 것은 아쉬움 ▪ 「난민법」의 시행으로 난민신청 이후 6개월 간의 생계비와 6개월 이후의 취업허가가 보장되면서, 난민신청자의 생계 문제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됨 ▪ 입국 거부시 환승구역 또는 출국대기실(항공사)를 선택하게 되는 등의 제도 개선 ▪ 「난민법」의 제정을 통해 난민인정절차를 체계화, 합리화함으로써 난민신청 단계의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었음

〈표1-46〉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계속)

(Base: 전체(n=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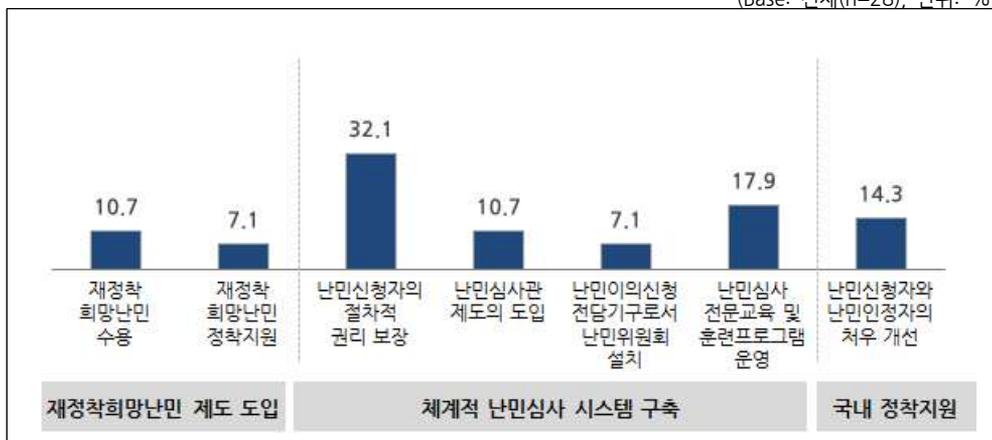
정 책	내 용
(5) 난민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 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추진이 미진함
	▪ 다른 정책에서 명시적인 변화가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민위원회는 현재 그 기능을 하고 있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음
	▪ 결과와 무관하게 기구의 설치와 운영 자체에 대한 평가임
(7)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 난민센터를 마련하였으며, 노동권 부여함
	▪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서, 일정 부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난민인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가장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
	▪ 난민 여부가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3.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

○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3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17.9%),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표1-47〉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재정착 희망난민 정착지원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심사관 제도의 도입	난민 이의신청 전담기구로 난민위원회 설치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전체	(28)	10.7	7.1	32.1	10.7	7.1	17.9	14.3	
분야	교수직	(13)	23.1	0.0	30.8	0.0	7.7	15.4	23.1
	공무원/연구직	(7)	0.0	28.6	28.6	0.0	14.3	28.6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0.0	0.0	37.5	37.5	0.0	12.5	12.5

○ 각 정책별 가장 성과가 적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1-48〉 성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

(Base: 전체(n=28), 단위: %)

정책	내용
(1)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착 희망난민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와 결과를 보임 인원과 예산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미안마 난민 재정착에서 보듯이 아직 외형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함
(2) 재정착 희망난민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착희망난민의 인정도 어렵지만, 정착지원은 더욱 어려움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지위 불분명, 불복기회 부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 관련 공무원의 제한적 인원과 예산에 따른 절차적 운영의 지연 관련 자료에 의하면(서울행정법원 2016년 기준) 난민 불인정 취소 관련 소송이 과거(최근 5개년 기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난민절차가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느슨함. 이런 맥락에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보장도 신속성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난민법」상 절차적 권리 보장의 미흡 공항만 난민신청에 대한 불회부심사에 대한 문제 미해결 송환대기실 내 비인권적 처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미흡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절차 및 소송의 증가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문제 지속. 이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처우문제 심화
(3)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해화된 1차 심사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 독립성이 미비된 심사 전문성의 부족

정 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신청자 및 체류기간 만료 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몰수 등 비인도적 지침 신설 ▪ 신청 이후 6개월간 취업불가로 인한 난민의 궁핍화 및 의식주권 침해 및 제한적 생계비 지원 ▪ 면접 중 심각한 허위 통역 문제 ▪ 난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안내 없이 난민 신청 절차 진행 (면접 중 오디오/비디오 녹화 요청이 가능함을 알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통보 등 행정절차법 미준수

<표1-48> 성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 (계속)

(Base: 전체(n=28), 단위: %)

정 책	내 용
(4) 난민심사관 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관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미흡 ▪ 「난민법」 시행령은 난민심사관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5급 이상의 공무원 수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심사관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난민 면담 당시 난민심사관이 아닌 난민 면담 공무원이 면담을 실시하는데 난민에 대한 이해가 적고 난민을 남용적 신청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
(5) 난민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인식 미흡 ▪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과 행정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 이러한 방식은 진정한 난민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음
(6)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공무원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음. 설사 마련되어 있어도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판단됨 ▪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봄 ▪ 교육 및 훈련의 부족은 심사관 양성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절차적 보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함. (예, 인터뷰 스킬에 관한 교육,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 등) ▪ 축적된 경험이 적음
(7)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인도적체류자 항목을 추가해야 함. ▪ 신청자가 증가하는 반면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이 매우 적음. 생계비 지원받는 수가 난민신청자의 4% 미만임. 그리고 생계비 신청절차와 심사기간이 길어 법에서는 신청 후 6개월을 보장하나 실제로는 평균 3개월 정도만 보장받고 있음 ▪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아님 ▪ “보호” 명목의 사실상 구금 ▪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아직 미흡함 ▪ 강제송환 금지가 철저히 준수되는지 의문

4.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1-49〉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Base: 전체(n=28), 단위: %)

정 책	내 용	
교수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협의의 난민정의의 확대 해석 필요 ▪ 21세기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난민의 유형을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세분화하는 준난민개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책의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난민심판원 설치) ▪ 재정착난민에 대한 지원 확대 ▪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처우 개선 ▪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속 심사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인정 확대와 우리 국가로의 수용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심사와 관련한 정보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증대 ▪ 난민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난민심판원 설립을 통한 난민인정절차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의 처우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송환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성 제고.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적극적 도입 (출입국향 난민처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등 개선) 	
	공무원/ 연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착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관한 처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절차의 신속화 ▪ 난민위원회를 확대 발전시켜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표1-49〉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계속)

(Base: 전체(n=28), 단위: %)

정 책	내 용
공무원/ 연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 특히 1차 심사에서의 공정성 강화 ▪ 신청 접수단계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처우 문제는 기존 이민정책 내 다양한 통합정책(교육 및 정착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난민인정자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이민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센터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 또한 난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자체 난민조례 제정 등도 포함해야 함. 난민의 수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업무를 중앙과 지자체가 같이 관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환경 기반 마련 필요함
변호사/ 인권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담당할 상설기구의 설치 ▪ 심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위원회 상설 및 독립화 ▪ 절차적 권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정확성 담보 및 절차적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뿐만 아니라 보충적 보호지위자 인정하여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해야함. 만일 보충적보호자 지위인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 일부라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개선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는 체류 보장과 취업책임. 난민과 비슷하게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의료보장, 교육, 가족결합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독립적인 난민심사관제 도입 ▪ 준사법적 난민심판원 구성 ▪ 재정착난민제도의 정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이의신청기관의 상설화 ▪ 1차 난민심사의 절차 및 질적강화 ▪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및 정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및 정확성 ▪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신청 이후 즉시 근로가능) ▪ 난민신청자의 권리 안내 ▪ 난민 관련 지침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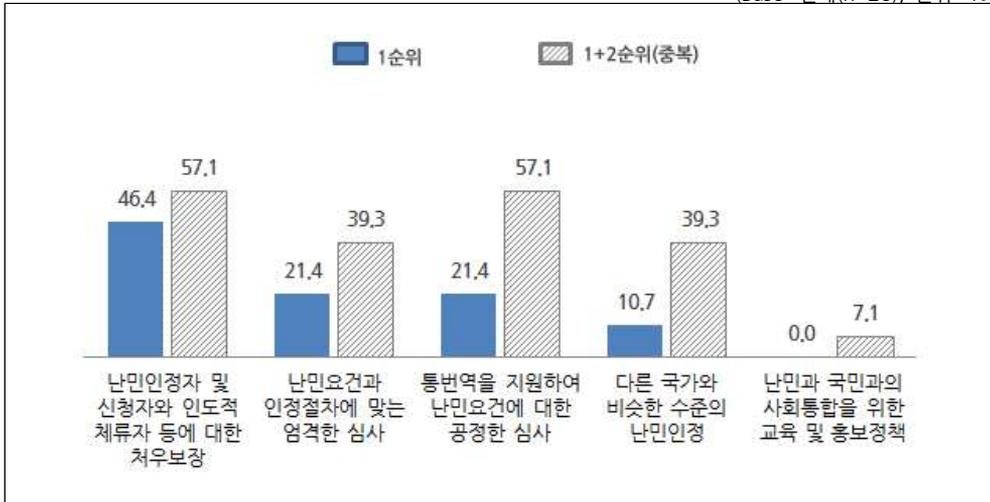
5.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이 4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각각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2순의 응답으로는 ‘난민신청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및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각각 57.1%)에서 높게 나타남.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

(Base: 전체(n=28), 단위: %)



<표1-50>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인정
전체		(28)	46.4	21.4	21.4	10.7
분야	교수직	(13)	61.5	23.1	15.4	0.0
	공무원/연구직	(7)	14.3	28.6	28.6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12.5	25.0	12.5

〈표1-51〉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2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인정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전체		(28)	57.1	57.1	39.3	39.3	7.1
분야	교수직	(13)	61.5	53.8	38.5	38.5	7.7
	공무원/연구직	(7)	42.9	57.1	57.1	28.6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62.5	25.0	50.0	0.0

〈표1-52〉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2+3순위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인정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전체		(28)	85.7	78.6	53.6	50.0	32.1
분야	교수직	(13)	92.3	84.6	53.8	53.8	15.4
	공무원/연구직	(7)	71.4	71.4	57.1	28.6	71.4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75.0	50.0	62.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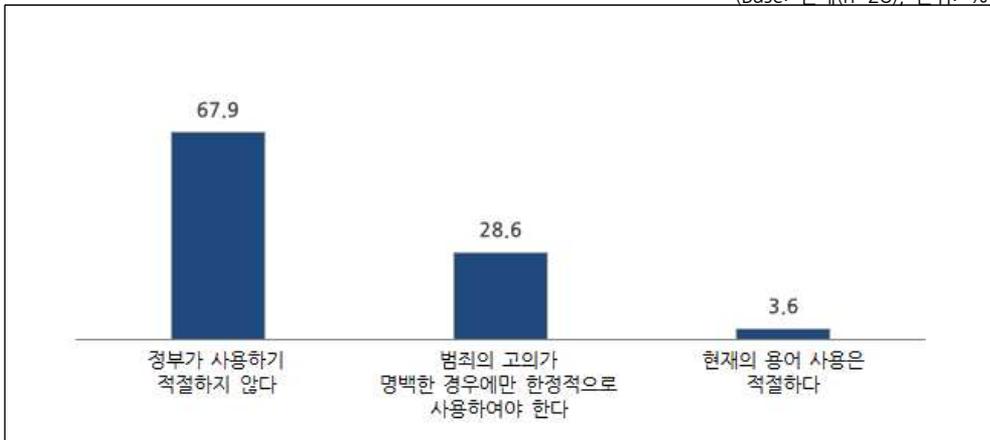
VI. 난민제도 남용 관련 의견

1.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으로 ‘정부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7.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범죄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53〉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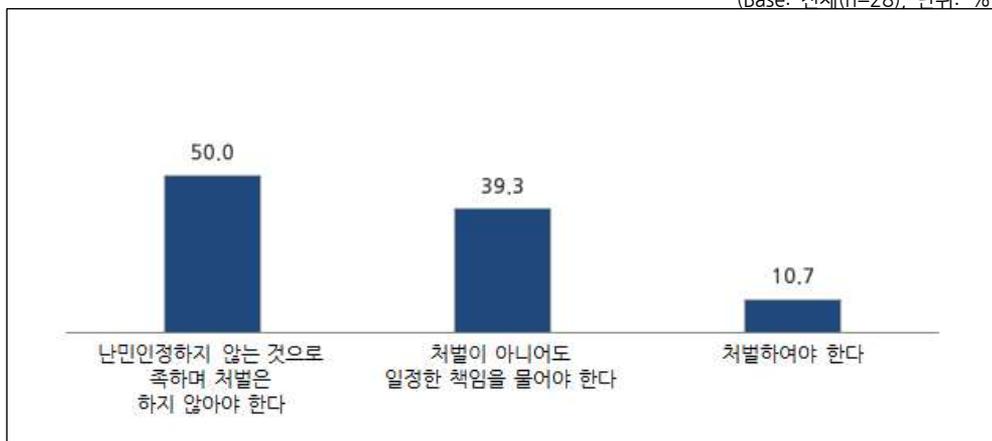
		사례수	정부가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범죄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의 용어 사용은 적절하다
전체		(28)	67.9	28.6	3.6
분야	교수직	(13)	69.2	23.1	7.7
	공무원/연구직	(7)	42.9	57.1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87.5	12.5	0.0

2.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으로 ‘난민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처벌이 아니어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54>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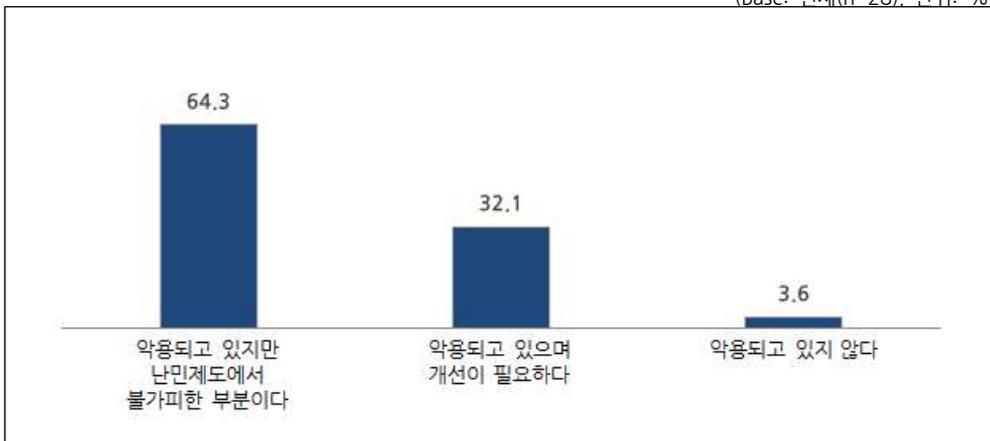
		사례수	난민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처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	처벌이 아니어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처벌하여야 한다
전체		(28)	50.0	39.3	10.7
분야	교수직	(13)	61.5	30.8	7.7
	공무원/연구직	(7)	28.6	57.1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37.5	12.5

3.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난민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3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55〉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악용되고 있지만 난민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악용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악용되고 있지 않다
전체		(28)	64.3	32.1	3.6
분야	교수직	(13)	61.5	38.5	0.0
	공무원/연구직	(7)	57.1	28.6	1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75.0	2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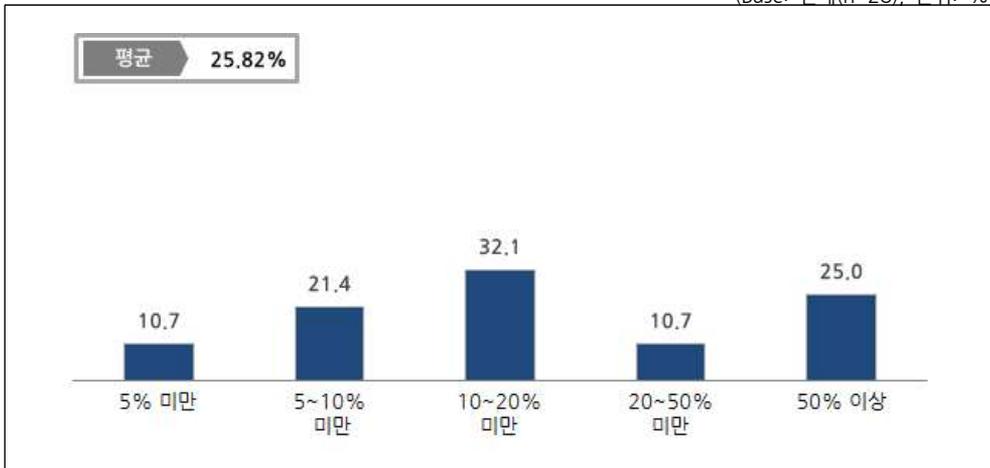
VII. 난민생계 지원에 대한 의견

1.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에 대해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 이상’(25.0%), ‘5~10% 미만’(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적정 규모의 평균 비율을 25.82%로 나타남.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Base: 전체(n=28), 단위: %)



<표1-56>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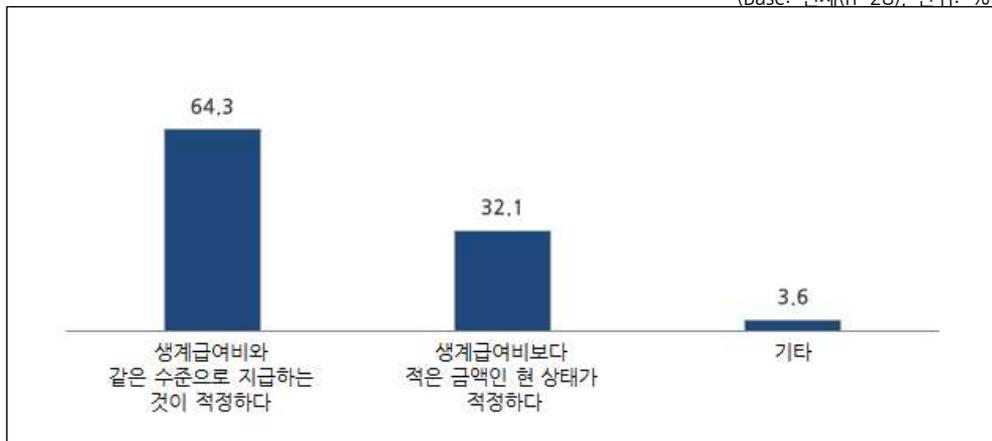
	사례수	5% 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 이상	[평균]	
전체	(28)	10.7	21.4	32.1	10.7	25.0	25.82	
분야	교수직	(13)	15.4	15.4	38.5	23.1	7.7	15.46
	공무원/연구직	(7)	0.0	42.9	42.9	0.0	14.3	16.43
	변호사/인권활동가	(8)	12.5	12.5	12.5	0.0	62.5	50.88

2.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으로 ‘생계급여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계급여비보다 적은 금액인 현 상태가 적정하다’(32.1%) 순으로 나타남.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57>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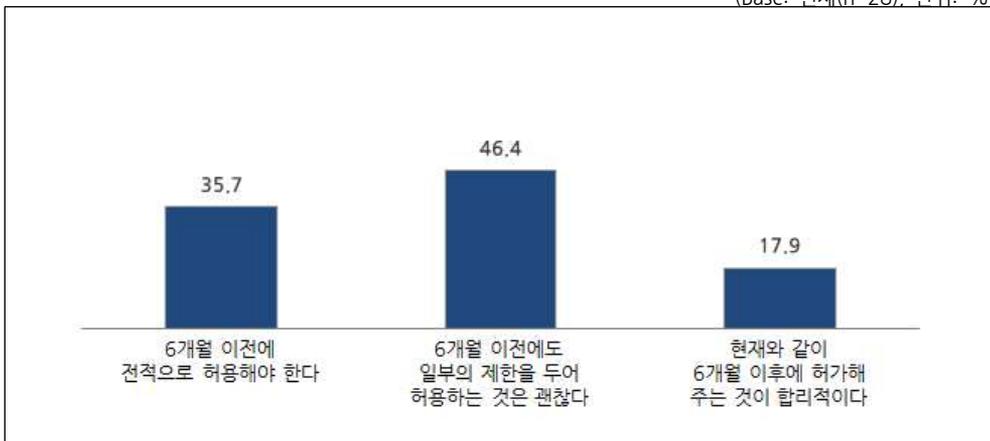
		사례수	생계급여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계급여비보다 적은 금액인 현 상태가 적정하다	기타
전체		(28)	64.3	32.1	3.6
분야	교수직	(13)	69.2	30.8	0.0
	공무원/연구직	(7)	57.1	42.9	0.0
	변호사/인권활동가	(8)	62.5	25.0	12.5

3.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 난민신청자의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전에도 일부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개월 이전에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3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표1-58〉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n=28), 단위: %)

		사례수	6개월 이전에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6개월 이전에도 시간/업종 등 일부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	현재와 같이 6개월 이후에 허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체		(28)	35.7	46.4	17.9
분야	교수직	(13)	30.8	53.8	15.4
	공무원/연구직	(7)	28.6	42.9	28.6
	변호사/인권활동가	(8)	50.0	37.5	12.5

「난민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난민법」을 포함한 난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12.

한국법제연구원

1

「난민법」 관련 의견

Q1.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협약상의 난민은 전쟁난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상의 난민이 전쟁난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시리아 난민과 같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다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난민법」에 전쟁 난민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난민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협의의 난민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 ② 지금의 「난민법」상의 난민개념에도 전쟁난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13. 「난민법」에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Q14. 「난민법」에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Q15. 난민인정자를 위한 완화된 귀화요건을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16. 우리 「난민법」에서 난민협약의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난민의 개념 ② 인도적체류자(보충적 보호)
 ③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
 ⑤ 난민인정신청의 절차 ⑥ 난민인정률
 ⑦ 기타 ()

Q17.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로 8순위 까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처우 ②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③ 난민인정률 제고 ④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⑤ 난민인정자의 처우 ⑥ 난민신청자의 처우
 ⑦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⑧ 기타 ()

2

난민 인정 심사 절차 관련 의견

Q18.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절차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회부하기로 한 신청자에 대하여만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입국시켜 일반 난민인정절차로 심사하는 제도
- ② 난민인정절차로 회부할 것인지를 심사하여 회부하기로 한 신청자에 대하여만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 ③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하면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난민심사하는 제도

Q19. 「난민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도 제2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난민법」 제6조 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난민법」 제2조 4항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20. 현행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때까지(행정소송절차 종결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에 아무런 조건, 기한, 횟수의 제한이 없고, 신청하면 무조건 접수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절차

가 종결되어도 반복하여 신청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골라주십시오.

- ① 현재대로 둔다.
- ② 신청기간 내지는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③ 간이신속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⑤ 기타()

Q21.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골라주십시오.

- ① 접수를 거부하거나 출입국항에서와 같이 심사에 불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접수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이유의 명백성을 접수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접수하여 정식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④ 기타()

Q22. 「난민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난민인정신청자에게 녹음이나 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23.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난민법」 제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귀하께서는 난민인정신청자가 일정기간 안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Q23-1으로 이동) ② 아니다.

- Q23-1.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 Q24. 「난민법」 제9조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난민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Q25.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주체인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Q26.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부 직원이 난민심사를 할 경우 난민심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Q27. 난민신청자에게 국선변호인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Q28. 난민신청자들은 각 거점출입국사무소의 1차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이의심사결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최대 3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② 일정수준 제한은 필요하다
 ③ 전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Q29. 현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에 대하여 절차지연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귀하의 생각을 고르십시오.

- ① 이의신청은 필요치 않다.
 ②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재처럼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되, 불복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④ 기타 ()

Q30. 「난민법」에 출입국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Q30-1로) ② 아니다. (Q31로)

Q30-1. 출입국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처우는 어떤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난민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Q31. 현재의 난민위원회 구성 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우선순위를 골라주십시오.
 우선순위대로 5순위까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재정착난민제도는 해외난민캠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주변국 난민촌에서 평균 17년씩 재정착을 기다리는 난민들이 연간 100만명 규모로 발생합니다. 미국은 연간 8만명 정도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연30명 규모로 재정착난민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34명의 재정착난민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더 확대하여 정규화해야 한다	보통이다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Q37.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신청인과 난민인정인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이후 난민인정인의 수가 100명 남짓 고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그 이유가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	2014	2015	2016
난민신청자수(명)	1,574	2,896	5,711	7,542
난민인정자수(명)	57	94	105	98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난민정책 시행 관련 의견

Q38. 현재 「난민법」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난민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의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난민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함
- ② 현행과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외국인정책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는 하위법령에 난민, 이민 등 중요 정책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Q39.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난민관련 세부 추진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의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①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② 재정착희망난민 정착지원
2.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③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④ 난민심사관 제도의 도입 ⑤ 난민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⑥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3.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정착지원	⑦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Q39-1. Q39에서 선택하신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40. 다음의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었다고 생각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재정착희망난민 제도 도입	①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② 재정착희망난민 정착지원
2.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③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④ 난민심사관 제도의 도입 ⑤ 난민이의신청 전담기구로서 난민위원회 설치 ⑥ 난민심사 전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3.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정착지원	⑦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Q40-1. Q40에서 선택하신 정책이 가장 성과가 적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41. 법무부는 현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난민정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Q42. 「난민법」 집행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을 우선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우선순위대로 5순위까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① 난민요건과 인정절차에 맞는 엄격한 심사
- ② 통번역을 지원하여 난민요건에 대한 공정한 심사
- ③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난민인정
- ④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에 대한 처우보장
- ⑤ 난민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

6

난민제도 남용관련 의견

Q43. 1998년 영국 정부는 난민신청을 남용한 경우 신청자에 대해서 가짜난민신청자 (bogus asylum seekers)라고 지칭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난민신청 남용자를 ‘가짜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짜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인권침해적이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난민신청자를 비하하는 차별적 용어로 인권침해적 용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② 난민신청 남용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용어 사용은 적절하다.
- ③ 고의로 가짜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죄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기타 ()

Q44. 「난민법」 제47조에서는 거짓서류의 제출이나 거짓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발각되어 난민인정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골라주십시오.

- ① 처벌하여야 한다.
- ② 처벌이 아니어도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③ 난민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며 처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기타 ()

Q45.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입국불허자의 입국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악용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 ② 악용되고 있지만 난민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 ③ 악용되고 있지 않다
- ④ 기타 ()

7

난민생계 지원에 대한 의견

Q46.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에서 생계비지원과 난민지원센터에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생계비 지원대상자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난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생계비를 지원받는 난민은 2~3%에 불과합니다. 귀하께서는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대상자를 한국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난민신청자	2,849	5,711	7,542
생계비 지원대상자	88	130	200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대상자 비율	3%	2%	2%

난민 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 대상자 비율 : %

Q47. 2017년 현재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액은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이상
난민신청자 기초생계비 2017년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생계급여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귀하께서는 생계비 금액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 ① 생계급여비보다 적은 금액인 현 상태가 적정하다.
- ② 생계급여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 ③ 기타 ()

Q48.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난민 신청자의 취업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6개월 이전에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② 6개월 이전에도 시간/업종 등 일부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것은 괜찮다
- ③ 현재와 같이 6개월 이후에 허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④ 기타 ()

DQ**응답자 특성 분석**

DQ1. 귀하의 현재 직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교수직 ② 공무원 ③ 연구직
④ 변호사 ⑤ 기타()

입법평가 연구 17-15-④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7년 11월 13일 印刷

2017년 11월 15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13,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02-7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